

연구보고 95-7

統監府法令 體系分析

1995. 12.

研究者 : 鄭肯植(先任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發刊辭

역사는 끊임없이 흘러 과거에 바탕을 두어 현재가 이루어지고 다시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미래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속에 日帝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과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이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는 현재 우리의 삶속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미래를 구상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法曹界는 法制와 法生活에 남아있는 日帝의 殘滓에 대한 인식이 미약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日本的'으로 변용된 서구법이 현행법의 모태가 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法制와 法生活에서 일제의 잔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하여 우리의 생활에 살아있는 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과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에서의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개별·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우리 민족을 지배한 日帝植民地의 法制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도 필요합니다. 設計圖와 鳥瞰圖가 있어야만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전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방향성 있는 개별·구체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統監府는 日帝 植民地 支配의 기초가 된 것으로 그 기간은 짧지만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은 컸습니다. 統監府의 法令은 植民地支配에 앞서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였고, 植民地 치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統監府法令은 형식적으로는 일본법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植民地期를 거쳐 현재까지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밝은 빛으로 일제의 그림자를 없애고 구석구석 일제의 찌꺼기를 쓸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원에서는 현행법제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窺明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1991년에 『韓末法令體系分析』을 간행하였습니다. 이어 금년에는 『統監府法令體系分析』을 간행합니다. 본보고서는 統監府法制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설계도와 같이 日帝植民地 法制에 대한 후일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統監府 法制의 概要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統監府法令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歷史學界에서는 近代史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法制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미진합니다. 이는 일반사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法의 特殊性에 연유하는 바도 있지만, 자료의 미정리가 더 큰 이유라고 봅니다. 본보고서는 統監府의 法令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법학분야만이 아니라 역사학분야에서도 크게 활용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본보고서를 기초자료로 삼아 統監府와 植民地法制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연구를 수행한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 12월

韓國法制研究院
院長 白南辰

目次

| | |
|--------------------------------|----|
| 第一編 序論 | 11 |
| 第二編 統監府 法制 概要 | 17 |
| 第1章 日本의 韓國侵略過程 | 17 |
| I. 朝鮮의 開港과 韓日修好條規의 締結 | 17 |
| II. 壬午軍亂과 濟物浦條約의 締結 | 23 |
| III. 甲申政變과 漢城條約 | 25 |
| IV. 甲午改革과 法制의 改革 | 28 |
| 1. 東學農民戰爭 | 28 |
| 2. 清日戰爭과 甲午改革 | 29 |
| 1) 清日戰爭의 經過 / 29 | |
| 2) 法制의 改革 / 31 | |
| 3. 俄館播遷과 法制의 復歸 | 35 |
| 1) 俄館播遷과 政局의 變化 / 35 | |
| 2) 自主的 法制의 整備 / 37 | |
| V. 統監府와 日本의 韓國支配 | 39 |
| 1. 러일전쟁과 日本의 軍事支配 | 39 |
| 2. 乙巳條約의 締結 | 43 |
| 3. 統監府와 韓國併合 | 45 |
| 4. 日本의 韓國併合 過程에 대한 法的 考察 | 47 |
| 1) 乙巳條約의 不法性 / 48 | |
| 2) 併合條約의 不法性 / 50 | |

| | |
|--------------------------|----|
| 第2章 統監府 法制 概要 | 53 |
| I. 統監府의 組織과 權限 | 53 |
| 1. 統監府와 理事廳의 組織 | 53 |
| 1) 統監府와 理事廳의 設置 / 53 | |
| 2) 統監府와 理事廳의 組織 / 55 | |
| 2. 統監府와 理事廳의 權限 | 57 |
| 1) 固有의 權限 / 57 | |
| 2) 條約上의 權限 / 62 | |
| II. 統監府의 立法權과 性格 | 63 |
| 1. 統監府와 理事廳의 立法權 | 64 |
| 2. 條約上의 立法權 | 66 |
| 3. 韓國·日本 法令과의 關係 | 68 |
| 1) 日本法令과의 關係 / 68 | |
| 2) 韓國法令과의 關係 / 70 | |
| III. 統監府法令의 內容과 特色 | 72 |
| 1. 日本人團體 | 72 |
| 2. 民·刑事法 | 74 |
| 1) 民事法 / 74 | |
| 2) 刑事法 / 76 | |
| 3. 植民地 支配機構 | 77 |
| 4. 經濟關係 | 79 |
| 5. 社會關係 | 80 |
| 6. 產業關係 | 80 |
| IV. 統監府 法制의 歷史의 意義 | 81 |

| | |
|------------------------|-----|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93 |
| 第1章 統監府 及 理事廳 | 93 |
| 第2章 立法 | 108 |
| 第3章 司法 | 110 |
| 第4章 民事法 | 116 |
| 第5章 刑事法 | 121 |
| 第6章 警察・軍隊 | 126 |
| 第7章 財政・租稅 | 136 |
| 第8章 社會・教育 | 147 |
| 第9章 產業 | 166 |
| 第10章 通信 | 183 |

附 錄

| | |
|----------------------------|-----|
| I. 統監府 現行法令 目錄 | 215 |
| II. 主要 日本法令 翻譯 | 237 |
| 1. 大日本帝國憲法(明治 23) | 238 |
| 2. 法例(明治 31 法律 第10號) | 244 |

| | |
|-------------------------------------|-----|
| 3. 公文式(明治 19 勅令 第1號) | 247 |
| 4. 公式令(明治 40 勅令 第6號) | 248 |
| 5. 領事官職務에 관한 件(明治 32 法律 第70號) | 251 |
| 6. 領事官職務規則(明治 33 勅令 第153號) | 252 |
| 7. 憲兵條例(明治 40 勅令 第322號) | 254 |
| 8. 拓殖局官制(明治 43 勅令 第279號) | 256 |
| | |
| III. 舊韓國 條約 目錄 | 258 |

第一編

序論

第一編 序論

올해는 역사적으로 의미깊은 해이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민족의 광영을 가져온 광복50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 韓日간의 國交가 정상화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여 각계에서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법학계에서도 “日帝殘滓의 診斷과 清算”이라는 민족사적 과제에 대한 진지한 研究와 討論이 있었다.

그러나 광복50주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현재에 잔존해 있는 일제의 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청산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이전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제잔재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활과 의식 속에 ‘日本의인 것’이 너무나 많이 침잠해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거의 반세기를 지내왔다는 것과 정당하지 않은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꾸려가고 미래를 준비해온 것을 의미한다.

일제잔재 청산은 단시일에 집중적으로 조망하여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法에서의 일제 잔재청산은 1876년 개항 이후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西歐的 法制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개별연구의 집성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개별구체적인 연구의 집성은 전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한다. 과거의 전체상은 현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후에야 현재의 문제점을 알게 되는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는 ‘일제잔재의 청산’이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일본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패전 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달라지고 있지 않다. 1951년 9월 제1차 한일회담 직전에 요시다총리의 망언과 1953년 10월 구보타 한일회담 대표가 “36년간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였다”는 망언에서부터 1995년 10월 무라야마총리가 “한일병합조약이 유효하다”는 주장 등 일본의 保守右翼政治人은 잊어질 만하면 그들의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¹⁾ 한국인의 반발에 대해 일본은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의 강제로 사퇴시키고 과거사에 대

1) 일본정치인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 내용은 『조선일보』, 1995. 10. 20, 6면 참조.

해 외교적 수사로 '赦罪'를 남발하였지만, 본심은 달라진 것이 없다. 물론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은 과거사에 대해 반성을 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였지만, 이는 일부 소수의 약한 목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 망언이 나올 때마다 잠시 감정적으로 반발을 하고 곧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태도였다. 과거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여 일본의 발언을 논리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대응하여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굴복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 등한시하였다.

현재의 우리법은 개항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통과 단절된 서구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구법은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군함과 대포를 앞세운 帝國主義 앞에 무릎을 꿇고 강요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영향을 준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미숙한 일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된 법은 미숙한 일본의 단점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즉 일반적 서구법이 갖는 근대적 속성,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장이라는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성격은 미약하고 폭력적 편의적 성격이 강하였다.

일본은 그들의 미숙성으로 출발부터 제국주의의 속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본제국주의는 艦砲外交와 萬國公法(國際法)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강제로 한국의 빗장을 풀고 침략하였으며, '內政改革'이라는 명목으로 침략을 합법화하였다. 일본은 1876년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그들의 세력을 강화시켰으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일으키고 이의 해결로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1895년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한국 지배의사를 나타냈으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주권을 강탈하여 사실상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한일간의 조약은 거의 모두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된 것으로 특히 1905년의 을사조약과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은 그 정도가 심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와 일본정부가 정신대와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눈을 돌리지 않았다. 이것은 역사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일관계를 역사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통감부는 을사보호조약의 체결로 1906년 1월 서울에 설치되었다. 통감은 조약상의 外交事務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施政改善'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을 사실상 통치하였다. 統監府法制는 단순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을 보호하고 통치하고 아울러 한국으로부터 위임받은(強奪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법제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법제의 기틀의 일부를 이루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1910년 병합후에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현행법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감부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窺明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감부법제에 대한 연구는 아주 미진하였다. 전체적인 연구는 일본인의 연구²⁾만 있을 뿐이며, 그것도 부분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정도이다. 통감부법제에 대해서는 기간의 단기, 직접적으로 한국의 法源이 아닌 등의 이유로 종래에는 관심이 적었고 그래서 연구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支配와 被支配로 규정되는 근대한일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조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이는 아울러 현행법의 역사적 연원을 규명하는 준비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1991년에 발간된 『韓末法令體系分析』의 후속 작업이며, 이후 『朝鮮總督府法令體系分析』의 예비작업이다.

『韓末法令體系分析』은 서구법이 수용된 1894년의 갑오개혁 이후 1910년 8월 한일병합까지 제정된 대한제국의 법령을 내용별로 정리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어서 통감부의 법령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편 “統監府 法制 概要”에서는 일본의 한국침략과정을 언급하여 통감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하고 그 다음 통감부 법령의 성격, 한국·일본법과의 관계, 법령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3편에서는 1972년 國會圖書館에서 발간한 『統監府法令資料集』³⁾을 대본으로 하여 統監府法令을 크게 “統監府 및 理事廳”, “立法”, “司法”, “民事法”, “刑事法”, “警察·軍隊”, “財政·租稅”, “社會·教育”, “産業”, “通信” 등 열 개 분야로 나누어 統監府法令을 정리하였다. 附錄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적용되

2) 松岡修太郎, 「統監府의 統治法制」, 『京城帝大法學會論集』 12-3·4, 1941 참조.

3) 宋炳基 편으로 통감부법령을 번역하고 공포일별로 정리하였다. 상·중·하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一編 序論

는 실질적인 法源을 파악하기 위하여 1910년 7월 15일 당시의 法令集의 목록과 大日本帝國憲法, 法例 등 관련된 日本法令의 전문을 번역하여 수록하였고 마지막으로 帝國主義 시대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한일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하여 條約目錄을 수록하였다.⁴⁾

물론 이러한 작업은 본격적인 연구물은 아니지만, 향후 統監府法制 자체와 大韓帝國期 및 植民地期 法制의 연구에 지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

4)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편, 『舊韓末條約彙纂』 상·중·하, 1964, 1965; 『舊韓末의 條約』, 신서원 영인본, 1989 참조.

第二編

統監府 法制 概要

第二編 統監府 法制 概要

第1章 日本의 韓國侵略過程

I. 朝鮮의 開港과 韓日修好條規의 締結

열강은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관심이 적어서, 조선에는 개항의 파고가 늦었다. 대원군 집정하에서 조선정부는 쇄국정책을 취하여 중국 외의 외국과는 교섭할 기회가 없었다. 중국이 개방됨에 따라 조선도 외국과 접촉을 강요받았다. 우선 1831년에는 영국의 상선 로드 암허스트(The Lord Amherst)호, 1845년에는 군함 사마랑(The Samarang)호가 연해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해안을 측량하였다. 1846년에는 프랑스 군함이, 1865년에는 러시아가 함경도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였고, 1868년에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The General Sherman)호가 대동강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다가 전소되었다. 이러한 이양선의 출몰과 서양의 중국침략 소식은 조야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래서 대원군은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천주교를 탄압하였다. 프랑스는 천주교박해를 빌미로 강화를 점령하였고(병인양요; 1866), 또 미국도 제너럴 셔먼(The General Sherman)호의 책임을 물어 江華島를 점령하였으나 격퇴되었다(신미양요; 1871). 이에 자신감을 얻은 대원군은 쇄국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척화비를 세우고,⁵⁾ 쇄국정책을 지속하였다.

서양 여러 나라와 일본의 문호개방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며 쇄국주의를 고수하던 대원군정권은 두 번의 洋擾를 치른 후 경복궁 재건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하여 백성들의 심한 반발을 샀으며, 崔益鉉의 상소를 계기로 하여 대원군정권이 무너지고 민씨정권이 수립되었다. 민씨정권은 안으로는 일본과의 분쟁을 피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으로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문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문호개방할 수밖에 없었다.⁶⁾

5) 申國柱, 『韓國近代政治外交史』(탐구당, 1965), 26~8면.

6) 강만길, 『한국근대사』(개정판, 창작과 비평사, 1994), 176면.

일본은 임란 후 300년간의 조선과 우호관계를 지속하였고, 德川幕府가 쇠국을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幕府末 소요기에 일본이 개국함에 따라 조선은 간접적인 서양문물의 침투를 우려하여 국교를 단절하였다.⁷⁾ 일본은 明治維新 후 조선에 대해 국교재개를 요청했으나 國書가 관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조선이 국교의 회복을 거절하자 일본내에는 征韓論이 대두하였다. 1873년 西郷隆盛을 중심으로 하는 “大陸派”는 무력으로 조선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內治派”는 현재는 兵制의 未確立 등으로 시기상조이며, 내치를 강화한 후 해외로 진출할 것을 주장하여 征韓論을 물리쳤다. 그러나 明治政府도 정한론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시 연기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 후 明治政府는 西郷일파의 불만이 높아지고 또 板垣退助가 중심이 된 自由民權運動이 일어나자 明治政府를 이를 밖으로 돌리기 위하여 1874년에 오키나와인이 대만 원주민에게 살해된 것을 이유로 臺灣을 침략하여 청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다. 일본이 대만을 침략한 사실이 청국을 통하여 조선에 전해졌다. 조선정부에서는 美佛 등과 수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일본의 침략을 부인하고 美佛 등과의 수교도 거부하며 일본을 曉諭하고 美佛 등에도 과거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淸에 통고하는 것으로 그쳤다.⁸⁾

일본 자본가들은 후발성을 극복하기 위해 처음부터 군사력에 의존하여 식량과 원료를 얻고 상품을 판매할 시장을 해외에서 구하려고 하였고 또 구미 각국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었다.⁹⁾ 1875년 9월에는 이는 미국보다 한 발 빠르게 조선을 개항시키려는 의도에서 그리고 征韓論을 실천하기 위해 “江華島 事件”을 일으켰다. 일본은 강화도조약을 체결할 때에 경험한 幕末外交의 피고로서의 일본의 체험을 오히려 반대로 조선에 대해 원고로서 강요하였다.¹⁰⁾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해 1873년 청국시찰을 한 副島種臣은 청국은 조선의 외교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는 한일관계에 간섭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서구제국이 침략하기 전에 조선을 침략할 것을 결정

7) 申國柱, 『前掲書』, 26~7면.

8)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편, 『舊韓末條約彙纂』 상, (국회도서관 1964) 3~5면.

9) 강만길, 『전게서』, 179면.

10) 申國柱, 『前掲書』, 32~6면.

하였다. 일본은 조선과의 교섭을 일거에 끝내기 위해 무력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여 雲揚號를 1875년 5월 25일 부산항에 입항시켰는데, 조선 정부가 항의하였으나, 森山茂 理事官은 이는 상례이고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묵살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의 관민은 크게 당혹해 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무력시위는 예상 밖으로 효과를 거두었다. 민씨정권은 당시까지 對馬島를 통한 대일외교의 실무를 담당한 東萊府使 鄭鉉德, 訓導 安東峻 등을 파면하였는데,¹¹⁾ 실무담당자의 급작스런 교체로 조선은 일본의 개항요구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본격적으로 1875년 9월 일본군함 雲揚號는 수로측량을 구실로 하여 조선을 도발시켜 개국을 강요하기 위하여 강화도에 접근하여 포격전을 벌였다. 그리고 일본은 黒田·井上 全權公使를 임명하여 군함 6척을 이끌고 통상조약을 강요하였다.¹²⁾ 조선에 대해 雲揚號사건에 대한 배상과 통상조약을 체결할 뜻을 통지하고 1876년 1월에 강화도담판에 들어갔다. 일본정부가 전권공사에게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대비하여 다음의 訓諭를 내렸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國交再開의 거부와 國旗侮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②국교의 재개와 무역을 허용하면 이를 雲揚號의 배상으로 인정하며, ③만약 이를 거부하면 全權公私가 臨機의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화친이 성립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성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①대등한 예로 교섭하고, ②무역허용, ③부산에서의 자유상업과 江華 또는 都城 附近에 일본신민의 거주·무역지의 허용, ④무역장 사이에 일본인의 자유왕래의 허용과 조선정부의 보호, ⑤일본군함·상선의 자유측량권, ⑥표류민의 扶助·護 還方法 마련, ⑦使臣을 在留와 우대, ⑧양국인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영사관의 설치

그리고 교섭이 결렬될 것을 대비하여 “조선정부를 위협하고 일본군을 주둔시

11)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편, 『前掲書』 상, 4면.

12) 申國柱, 『前掲書』, 38면.

켜 강화도를 점령” 하라는 內訓을 내렸다.¹³⁾

淸의 李鴻章도 조선정부에 일본과의 수교를 권고하였다. 조선에서는 接見大使 申櫛과 尹滋承을 파견하였다. 일본의 黒田 全權公使는 2차 회담에서 훈령에 따른 13조의 수호조규의 복안을 설명하고 10일 이내에 회답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교를 단절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제3차회담에서는 수교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조선정부에서는 일본에 대항할 수 없다는 金炳始의 의견에 따라 일본의 수호통상을 접견대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4차회담에서는 조선정부안을 일본에 전달하였는데, 일본은 陳謝와 雲揚號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로써 회담이 결렬되어 黒田은 군함으로 돌아가면서 絶交書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협박에 조선은 서둘러 일본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여 1876년 2월 27일에 강화조규가 체결되었다.¹⁴⁾ 조약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규정함(제1조).
- ②15개월 이내에 서울에 공사관을 설치할 것(제2조).
- ③부산은 즉시, 기타 2개 항은 20개월 내에 개항하기로 하고 토지·가옥의 임대권을 허용받았다(제4, 5조).
- ④일본합선의 피난권과 필수품의 구입, 수리 등을 위한 특별규정(제6조).
- ⑤조선의 해안을 측량하여 해도를 작성권(제7조).
- ⑥개항장에서 무역과 상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관리의 파견권(제8조).
- ⑦자유무역권(제9조)
- ⑧일본인의 치외법권의 인정(제10조)
- ⑨이와 부속한 통상장정이나 세목 등은 6개월내에 교섭하기로 함(제11조)¹⁵⁾

일본은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하여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또 일본인관리 파견의 허용으로 일본은 조선에 공사관을 설치할 수 있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제2조). 해로측량권과 해도작성권은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無關稅自由貿易은 1858년 “日英修好通商條約” 제4조와

13) 申國柱, 『前掲書』, 52~7면.

14) 申國柱, 『前掲書』, 58~61면.

15) 원문과 번역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편, 『前掲書』 상, 3면 이하 참조.

제5조를 본뜻 것으로 일본은 자기들이 받은 치욕을 그대로 조선에 강요하였고, 조선정부는 무역통제권을 박탈당하여 일본은 관세없이 무역할 수 있었다.

강화도조규의 특색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록조규의 세목을 정할 수 있는 점이다. 부록조규회담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에서, 서울에 일본공사관의 설치, 일본외무관 및 수행원의 자유여행, 개항장 遊步地域의 설치 등에 대해 일본은 江華條規에 부속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선정부는 별개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있었다. 회담이 결렬에 직면하게 되자 일본은 서울에 일본공사관의 설치, 일본외무관 및 수행원의 자유여행의 주장을 철회하였고, 조선도 외무관의 여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개항장 세 곳을 지정하여 조선척도로 10리 이내에서 자유무역을 허용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일본은 10리 밖인 초량과 마산포·동래포의 월 10회의 왕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는 마산포는 제외하고 동래에 대해서는 항상 통행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안하자 일본이 동의하여 江華條規附錄에 대한 교섭이 끝났다.

일본은 通商章程을 체결하기 위해 宮本理事官에게 훈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첫째, 무역의 촉진을 위해 무관세로 하되, 조선이 반대하면 5%의 수입관세를 수락할 것, 둘째, 일본정부 소속의 선박은 船舶稅를 면제하고 私船만 船舶稅를 부과할 것, 셋째, 일본의 금은화를 조선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금은괴 및 금은화의 수입·사용은 허용할 것, 넷째, 안정적으로 식량을 제공받기 위하여 곡물의 수출을 금지할 때에는 公貿易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조선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서 1876년 8월 24일 자구수정과 1개조를 추가하여 附錄條規에 각서의 형식으로 체결을 하였다.¹⁶⁾

‘江華條規附錄’ 및 ‘通商章程’¹⁷⁾은 본조규에 규정되지 않은 개항장에서의 일본 영사, 일본인의 권리 및 통상절차의 세목을 정한 것인데, 여기에 관세의 면제를 규정하였다. 일본정부는 양국 서로 수출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 관철시켰으며 아울러 조선은 일본인을 위해 港灣稅를 폐지하였다. 이는 江華條規의 부록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不當한 片務條約이었다.¹⁸⁾ 이로써 조일무역은 조선관세권의 부인, 일본화폐의 유통, 영사재판권의 행사라는 삼위

16) 申國柱, 『前揭書』, 113~121면.

17) 원문과 번역문은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편, 『前揭書』 상, 17~23면 참조.

18) 申國柱, 『前揭書』, 127면.

일체적 편무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후 조선정부는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임을 알고 1878년 8월 10일부터 조선인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하였다. 일본은 이를 항의하였고 결국 관세 없이 조선의 米穀과 金銀寶貨를 임의로 일본에 반출하여 일본상품을 조선에 수출하고 조선에 일본의 不兌換紙幣를 통용시킬 수 있고, 일본인의 광산채굴을 허용하고, 일본인은 조선 전역을 자유로이 여행하며, 조사·상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¹⁹⁾

1877년에 花房義質이 대리공사로 서울에 와서 江華條規를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서울에 공사관을 개설할 것과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1879년에 원산의 개항을, 1882년에 인천의 개항을 약속하여 1880년과 1882년에 개항하였다. 개항 후 곡물은 조선의 주요수출품으로 일본상인이 곡물을 매점하여 국내에는 곡물이 품귀되어 식량난이 야기되었다.²⁰⁾ 1880년에는 花房義質이 변리공사로 서울에 파견되고, 이로서 개항 후 일본이 조선시장을 독점하였다. 일본은 자국이나 제3국의 상품을 조선에 수출하고 곡물을 수입하여 자본주의 발달의 토대를 닦았으며, 조선경제는 도탄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일본은 조선을 무마하기 위하여 조선의 高官을 일본에 초빙하기로 하였다. 강화도조규에 따라 1876년 5월에 예조참판 金綺秀가 동경을 방문하였고, 1879년에 花房義質이 辦理公使로 서울에 주재하였다. 수신사 일행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일본을 시찰을 하면서 근대화된 근대나 산업 등을 시찰하였고, 그들이 귀국할 때에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다.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진 수신사의 일본시찰보고는 반일기운이 높은 조선정계에 복잡하고 심각한 대립을 낳았으며, 일본은 계획대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다.²¹⁾

일본은 1880년 8월에 김홍집 등을 초청하였는데, 이 때 주일청국공사관 黃遵憲이 『朝鮮策略』을 김홍집에게 주었으며, 김홍집은 고종에게 바쳤다. 그 내용은 러시아의 남방을 막기 위한 외교정책으로 “親中國 結日本 聯美國”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 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편, 『前掲書』 상, 110~7면; 부속서의 원문과 번역문은 117~121면 참조.

20) 申國柱, 『前掲書』, 144면.

21) 申國柱, 『前掲書』, 96~7면.

청국은 조선에 일본이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자국 상인을 파견하면서 한편으로 조선에게 서구국과 교섭을 권하면서 또한 중개까지 하였다. 한미통상수호조약(1882. 5. 22)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을 한국에 끌어들이므로써 러일 양국의 한국침투를 막으려는 李鴻章의 '以夷制夷' 정책의 산물이었다. 계속해서 한영수호통상조약과 한독수호통상조약의 체결도 같은 맥락이었다.²²⁾ 일본의 진출과 청국을 통한 서구국가의 국교수립으로 조선은 더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닌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의 대상이 되었다.

II. 壬午軍亂과 濟物浦條約의 締結

1881년 일본은 군제의 개편을 권하여 교관 堀本禮造를 파견하여 別技軍을 설치하였다. 별기군의 설치로 구식군대의 대우는 나빠졌고 특히 1882년에는 1년간 봉급을 받지 못하다가 1개월치의 봉급을 받았는데, 그 것은 모래 등이 반 정도 섞인 불량미였다. 분개한 군인은 민씨일가를 처단하고 대원군을 옹립하였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자 일본은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일본으로 도망갔다(壬午軍亂).

일본은 철수후에 거류민보호를 내세워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정세는 청국에 즉각 알려졌으며, 청국도 조선에서의 宗主權을 확보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 일본은 군대를 앞세워 서울에 와 고종을 알현하고 그들의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청국은 조선과 일본의 중재를 핑계로 조선에 일본과의 교섭을 강요하였는데, 대원군이 강하게 반발하자 그를 납치하였다. 이로써 청국의 지원을 받아 민씨정권이 부활하였고, 청국은 조선의 정치 경제 외교면에 간섭을 강화하였다. 청국이 대원군을 납치한 이유는 대원군의 강경책이 일본의 무력개입의 구실이 될 우려가 있으며, 민씨정권이 훨씬 더 내정을 간섭하기가 쉽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의 책략은 적중하여 청일전쟁 때까지 청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진출이 크게 진전되었다.²³⁾

임오군란에 일본으로 도망간 花房義質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교섭을 주장하였고 일본 정부는 회담을 개시하고 회담이 결렬되면 전쟁을 개시하기로 하였

22) 최문형, 『제국주의시대의 列強과 韓國』 (민음사, 1990), 44면.

23) 강만길, 『전계서』, 183면.

다. 일본은 조선정부의 사죄와 손해배상, 함흥·대구·양화진의 개방과 공사관·영사관 직원의 자유여행, 원산·안변사변의 처분, 통상조약의 개정을 약속할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1882년 8월 조선과 일본은 제물포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본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조선이 일본에 대해 사죄와 손해배상을 하고 주동자를 일본의 입회하에 처단하며, 公使館에 군대의 주둔을 인정하고, 3港에서의 일본인의 활동지역을 조선척도로 50리로, 2년 후에 100리로 확대하며, 1년 후에 楊花津을 개방하며, 공사관과 영사관 직원의 내륙여행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다시 척화비의 철폐를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일본은 이에 따라 1개 중대를 서울에 주둔시켰다.²⁴⁾

청국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민씨정권을 이용하여 외교와 내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종전의 儀禮的 朝貢關係를 實質的 支配關係로 바꾸고 조선을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對朝鮮政策을 변경하였다.²⁵⁾ 청국은 袁世凱와 吳長慶이 군대를 장악하였고, 독일인 穆麟德(P. G. Möllendorf)와 청국인 馬建忠을 通商과 外交顧問으로 추대하고 군대와 무기도 청국식으로 개편하였다.²⁶⁾ 경제적으로는 1882년 10월에 '淸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²⁷⁾을 체결하여 조선에 대한 宗主權을 분명히 하고 상업상의 특권을 유지하였다. 무역에서는 청국상인은 조선상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조선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²⁸⁾ 이러한 청의 간섭으로 조선내에는 반청의식이 드높았다.

청의 조선에 대한 以夷制夷의 외교정책으로 조선은 이권을 획득하려는 서구 열강의 각축장으로 바뀌었다. 열강은 조선에 대한 청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最惠國待遇를 주장하였다. 영국과 독일은 이를 이유로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청국과 같은 수준의 내용으로 조약을 개정하여 비준하였다. 단지 미국만은 영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조약을 비준하여 우호적인 초기 한미관계를

24) 申國柱, 『前揭書』, 179~182면.

25) 강만길, 『전계서』, 184면.

26) 申國柱, 『前揭書』, 248~250면.

27) 이는 통상조약이 아니라 청국이 조선에 대한 "通商上の 命令書"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信夫淳平, 『韓半島』, 428~3면. 申國柱, 『前揭書』, 249면에서 재인용. 원문과 번역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편, 『前揭書』 중, 392면 이하 참조.

28) 彭澤周, 『前揭書』, 359~361면, 368면.

형성하였다.²⁹⁾

Ⅲ. 甲申政變과 漢城條約

18세기 후반기에 北學派를 중심으로 한 집단은 서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통상을 주장하였다.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는 1874년 경에 중국의 洋務運動을 왕에게 보고하는 등 초기 개화파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를 중심으로 김옥균·박영효·홍윤식·서광범·유길준·김윤식 등은 『海國圖志』 등 漢譯 서양서를 통해 서구문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박규수 사후에 譯官 吳敬錫과 醫員 劉大致를 중심으로 정부의 개화정책을 지원하였다.

한편 明治政府는 문화정책을 중시하였고, 초대공사 花房義質은 문화정책을 불가결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조선의 양반자제를 일본에 유학시켜 친일파를 양성하고 우호관계를 촉진하려고 하였다. 1877년 일본공사 花房義質은 예조판서 李祖淵에 대해 근대기술은 일본이 우월하며,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일본에 양반자제를 유학보낼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1881년 4월에 어윤중을 단장으로 한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일본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³⁰⁾

임오군란 후 花房義質 등은 김옥균, 박영효 등과 함께 일본으로 귀국하였으며, 김옥균 등은 일본문물을 목격함에 따라 일본의 후원으로 조선의 개혁을 꿈꾸었고, 이를 福澤諭吉, 後藤上二郎 등에게 피력하니, 문화정책을 실천한 文明開化論者인 福澤諭吉 등이 이를 지원하였다. 일본도 친일파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제물포조약의 배상을 연기하였다.

淸佛戰爭을 계기로 일본은 김옥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福澤諭吉도 문하생 井上各五郎 등을 김옥균이 귀국할 때 함께 보냈다.³¹⁾ 福澤諭吉은 문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의 사상적 지주가 되었다. 그는 井上角五郎 등을 조선에 파견하여 한성순보의 발간을 주도하는 등 친일파의 부식에 노력하였다.³²⁾ 福澤諭吉은 일본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조선의 자주독립을

29) 崔文衡, 『前揭書』, 45면.

30) 彭澤周, 『明治初期日韓淸關係の研究』(塙書房, 昭和 44), 338~341면.

31) 申國柱, 『前揭書』, 251~3면.

32) 彭澤周, 『前揭書』, 351면.

고려하였다. 그의 조선독립론은 일본의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면에서 다시 말하면 일본의 세력권 내에서의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³³⁾

임오군란 이후의 일본 외무경 井上薫은 온건책을 주장하여 조선정책을 청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한계내에서 추진하였다. 그러나 伊藤博文은 적극책을 주장하였고, 일본 정부도 이를 추종하였다. 청불전쟁에서 청국의 패배는 일본을 고무시켜 井上도 온건책에서 적극책으로 변하여 김옥균 등을 지원하여 쿠데타를 추진하였고,³⁴⁾ 아울러 조선에서도 反淸 분위기가 무르익어감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서 청국세력을 제거하고 일본의 종주권을 확립하려고 하였다.³⁵⁾

임오군란 후 일본에 갔던 박영효와 김옥균은 福澤諭吉의 후원으로 『漢城旬報』를 발간하였고(1883), 홍영식은 근대적 우편제도가 도입되어 郵政總局이 설치되자(1884) 그 總辦을 맡았다. 그들은 지속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제도의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나, 벽에 부딪히는데다가 민씨일파의 親淸守舊政策에 위기를 느껴 그들은 비상책을 강구하였다.³⁶⁾

1884년 12월 4일에 郵政局의 낙성식 기념연회에서 개화파는 일본군의 지원하에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일본군이 宮을 호위하고 민씨일족을 제거하여 친일파와 대원군 일파의 반청의 연립정권을 출범시켰으며 6일에 정강을 공포하였다.

개화파의 쿠데타 소식을 접한 청국은 반격을 준비하였고, 高宗은 김윤식 등을 비밀리 청국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쿠데타 소식을 청국을 통하여 듣고,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청군과의 충돌을 피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조선 군중은 친일파와 일본인을 살해하였고, 일본은 다시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인천으로 달아났고 김옥균 등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쿠데타를 지원하고 궁중을 호위하여 국왕의 거처를 옮긴 일본의 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역사상에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조선은 일본공사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다.³⁷⁾

갑신정변에 대해서는 일본내에서도 조선공사 竹添公使를 비난하였지만, 일본은 竹添公使를 처벌하여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해군을 파견하

33) 彭澤周, 『前掲書』, 354면.

34) 申國柱, 『前掲書』, 292~9면.

35) 申國柱, 『前掲書』, 253~6면.

36) 강만길, 『前掲書』, 185~6면.

37) 申國柱, 『前掲書』, 269~286면.

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청국의 군대가 강력하고 조선정부의 태도도 완강하였기 때문에 井上特使는 伊藤博文에게 군대의 지원을 요청하여 육해군을 동원하였다. 일본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선정부와 협상에 임하였던 것이다.³⁸⁾

1884년 12월 30일 外務卿 井上薰이 군함과 육군을 대동하여 인천에 왔다. 일본의 협상방침은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은 회피하고 일본인의 학살, 공사관의 燒失을 추궁하여 조선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교섭 결과는 강자의 주장이 관철되어 1885년 1월 5일에 漢城條約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조선의 陳謝와 배상, 공사관 신축을 위한 부지의 제공과 일본군 호위병의 청사 제공 등 일방적으로 조선에 불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井上 特派大使는 일본군 1개 대대를 주둔시켜 공사관을 경비하게 하였다.³⁹⁾

淸은 진상을 공동으로 조사하기 위해 일본에 조사단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일본도 이에 응하여 井上외무경을 特派大使에 임명하였다. 청국정부는 갑신정변 당시에 청불전쟁관계로 조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였다. 일본은 청국을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국과의 타협책을 모색하여 1885년 2월에 井上外務卿은 조선에서 일청양군의 철군을 제의하고 駐淸英國全權公使 파크스(Sir H. S. Parkers)를 통해 李鴻章과 회담을 주선하였다. 4월 3일 일본측의 伊藤博文과 청의 李鴻章이 회담을 개시하여 4월 18일에 '天津條約'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4개월 내에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서 철병하며, 일본은 공사관호위병까지 철군하기로 한다. ②조선에서의 군대의 양성 등에 대해서는 청일 양국이 공동으로 한다. ③조선에 중대한 사변이 있어 군대를 파병할 경우가 있으면 상호 통지하고 협의한다.⁴⁰⁾

청일간의 天津條約으로 조선에 일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이는 폭풍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즉 청일 양국은 조선에 대한 침략의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국내사정으로 잠시 보류한 것에 불과하였다. 특히 문제로 된 것은 제3조의 同時

38) 申國柱, 『前揭書』, 300~2면.

39) 申國柱, 『前揭書』, 289~315면.

40)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전거서』 중, 142면 이하 참조.

出兵權이었다. 李鴻章은 宗主權에 입각하여 우선출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伊藤博文은 이는 상호균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평등권을 관철시켰다. 天津條約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⁴¹⁾ 天津條約의 결과 청은 다시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하였다. 일본은 경제적 침략을 늦추지 않아 민중들에게 '斥倭洋·保國安民'을 기치로 내건 민족운동이 태동하고 있었다.

IV. 甲午改革과 法制的 改革

1. 東學農民戰爭

조선후기 이래 三政문란 등으로 조선사회는 통치체제의 모순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으며, 농민들은 민란의 형태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개항후에는 외세의 침략앞에 무기력한 지배층의 모습에 분노하였고 자본주의 상품의 무제한적 수입과 곡물 등 원자재의 수출로 농촌의 재생산 기반이 파괴되는 등 극도의 생활고를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은 새 세상을 갈구하게 되어 신앙운동으로 나타났다.

崔濟愚가 창시한 동학은 “人乃天”을 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를 희구하는 신앙이었다. 동학은 초기에 “惑世誣民”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교주 崔濟愚도 처형당하였다. 그러나 동학은 包接制를 통하여 비밀리 교세를 확장하였다. 나아가 정부에 대해 敎主伸冤을 요구하는 등 정치력도 강화시켜 갔다. 동학교단 주도의 대중집회가 처음 열린 것은 參禮集會이었다(1892. 음 11. 1). 여기에서는 교주신원과 동학도에 대한 탄압의 금지를 요구하였고, 전라감사의 宣諭에 따라 해산하였지만, 삼례집회의 효과가 없자 다시 보은집회를 열었다(1893. 음 3. 11).

보은집회를 전후하여 동학은 “掃破倭洋”을 표방하는 등 단순히 교주신원 등 종교적 성격이 아니라 탐관오리의 규탄, 서양 선교사가 경영하는 학교의 배척 등 반외세주장 등 정치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 보은집회와 별도로 全羅道 金溝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들은 보은집회를 정치적 성격으로 유도하려고 하였다.

41) 申國柱, 『前揭書』, 321~3면.

정부에서는 금구집회를 주도한 全瑋準·徐璋玉 등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 금구집회는 마침 고부군수 趙秉甲의 弊政을 규탄하는 고부민란으로 이어져 갑오농민전쟁의 도화선으로 되었다(음 1894. 1. 9).

전봉준 등은 고부관아를 습격하여 군수와 아전을 징벌하고 일단 해산하였는데, 고부민란 후 농민층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더욱 심해졌다. 전봉준 등 동학군의 지도자는 다시 농민군을 집결하여 서울로 진출하여 민씨일파를 축출하려고 하였다. 동학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정읍 등지를 함락하고 장성에서 京軍을 대파한 후 전주에 입성하였다(1894. 3). 전주가 함락되자 정부는 동학군과 全州和約을 맺었다(1894. 5. 8).

全州和約을 맺은 후 동학군은 전라도에서 執綱所를 설치하여 농민의 자치로 弊政改革을 실시하였다. 폐정개혁안은 동학교도와 정부와의 庶政協力, 탐관오리와 횡포한 富豪, 불량양반에 대한 엄징, 노비문서의 소각, 천인에 대한 대우의 개선, 청상과부의 개가 허용, 무명잡세의 폐지, 문벌타파와 인재등용, 일본내통자의 처벌, 公私債의 무효, 토지의 평균분작 등이었다. 그러나 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은 것은 정부에게 외세를 끌어들이는 여유를 준 것에 불과하였다.

정부는 전주화약 전에 청국에 대해 원조를 요청하였고, 청은 기꺼이 응하고 天津條約에 따라 일본에 통지하였다. 일본도 역시 조선에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킬 호기로 생각하여 일본군을 파견하였다. 정부는 외세를 등에 업고 동학군을 토벌하려고 하였으며, 동학군은 외세, 특히 일본세력이 발호하는 것을 보고 반외세투쟁을 전개하여 다시 봉기하였다(1894. 10. 12). 동학군은 일본군과의 공주우금치전투에서 패하여, 전라도 일대로 흩어져 재기를 노렸으나 전봉준의 체포로 역사의 흐름속에 파묻혀 버렸다.⁴²⁾

2. 淸日戰爭과 甲午改革

1) 淸日戰爭의 경과

동학집회가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자 정부에서는 이의 진압방법을 의논하였는데, 裸負商을 동원하는 방법과 청국이 태평천국의 난을 영국군의 힘을 빌어 진

42) 강만길, 『전계서』, 213~7면.

압한 것처럼 外兵借入이 논의되었다. 전자는 신분간의 대립과 모순을 격화시킨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으며, 후자는 재정문제 등으로 대신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고종은 비밀리에 袁世凱에게 의사를 타진하고 內諾을 받았다. 동학군이 위세를 떨치자 招討使 洪啓薰은 청국군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金炳始 등은 외국군으로 국민을 토벌할 수 없고, 외국군이 진주하면 폐해는 전국에 미치게 되며, 또 다른 나라도 공관과 교민의 보호를 핑계로 출병할 우려가 있고, 또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있다는 등으로 반대하고 내정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학군이 진주성을 점령(1894. 5. 31)하자 정부는 원세개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청국은 약 2,800명의 군사를 아산만에 파견하였다.⁴³⁾

일본은 조선과 청의 동향을 파악하고 청에 앞서 군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청이 군대를 파견하자 天津條約에 따라 청국군보다 훨씬 더 많은 8,000명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조선정부는 동학군과 全州和約이 성립하자 청일양국에 대해 撤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제물포조약상의 公館保護와 난이 평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무시하고 서울로 진격하였다.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도 일본에 대해 철군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에 대한 이권이 크지 않고 또 각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지는 않았다.⁴⁴⁾

일본은 열강의 눈치를 보며 청에 대한 개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침내 1894년 6월 25일 조선정부에 대해 강제로 내정개혁을 요구하고 아울러 청에 대해서도 이를 통고하였다. 7월 25일 일본은 아산만 부근 風島에서 海戰을 개시하여 전쟁을 도발하였다.⁴⁵⁾ 그리고 전쟁을 합법화하기 위해 8월 20일에 日軍의 경복궁 쿠데타(7. 23)에 대한 면책과 경인·경부선철도의 부설과 전라도 1개항의 개항 및 군사상 필요지의 임의적 수용을 인정하는 '暫定合同條款'의 체결을 요구하였고, 26일에 일본군의 작전과 식량공급에 협력하고 동맹관계를 맺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兩國盟約'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는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침략본색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⁴⁶⁾ 이에 대해 조선정부는 局外中立을 선언하

43) 金昌洙, 「清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半島 軍事侵略政策」, 韓國史研究會 편, 『清日戰爭과 韓日關係』(일조각, 1985), 3~14면.

44) 청일전쟁에 대한 열강의 태도에 대해서는 崔文衡, 『前揭書』, 143-171면 참조.

45) 金昌洙, 「前揭論文」, 15~21면.

46) 金雲泰, 『朝鮮王朝行政史-近代編-』(전정신판, 일조각, 1984), 243면.

였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였다.

청일전쟁은 쉽게 일본의 승리로 끝나 양국은 馬關條約과 附屬議定書를 체결하였다(1895. 4. 17), 그 내용은 청국의 조선에 대한 宗主權 부인(제1조)과 청국영토의 할양, 배상금의 지불 등이다.⁴⁷⁾

2) 法制的 改革

일본은 개전에 앞서 각의에서 대한무력개입의 첫 걸음인 '朝鮮國內政改革案'을 결정하였는데(1894. 6. 12), 청국과 공동으로 내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만약 청국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내정개혁의 내용은 ①재정 조사 ②관리 정리 ③군제개편 및 경비대 설치 ④재정정리 및 공채발행으로 재원충당 등이었다.

그리고 일본공사 大鳥圭介는 고종을 알현하여 내정개혁안을 上奏하고 조선측 위원의 임명과 협의를 요구하였고(6. 23), 이어 외무독판을 만나 ①중앙정부 및 지방제도의 개혁과 인재의 등용 ②재정의 정리와 재원의 개발 ③법률의 정돈과 재판법의 정비 ④민란을 진정하고 안경을 유지함에 필요한 경찰과 병력의 유지 ⑤교육제도의 확립 등 '內政改革方案綱領'⁴⁸⁾을 제출하고 이의 시행 여부를 7월 8일까지 결정하라고 요구하였다(7. 3). 이러한 일본의 처사에 대해 조선정부는 외무진의 보강과 함께 7월 7일에 위원 3명을 임명하였다. 한일양국의 첫 모임을 가져(7. 10), 大鳥圭介가 案을 설명하고 나아가 실행을 강요하였다.⁴⁹⁾

조선정부는 안으로도 내정개혁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밖으로는 일본의 압력이 계속되면서 자주적으로 내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7월 13일에 廟堂에 校正廳을 설치하고 총재관을 임명하였고 자주적 개혁을 위해 일본에 대해 철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총재관의 불참 등으로 校正廳은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

47) 원문과 번역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편, 『前掲書 中』, 155~172면 참조.

48) 이는 '綱領'과 '細目'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綱領'은 5개조 26항으로, '細目'은 앞의 26항을 시행시기에 따라 다시 10일내(甲), 6개월내(乙), 2년내(丙)로 분류하여 재정리한 것이다. 일본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은 甲에 분류하였다. 자세한 것은 金雲泰, 『前掲書』, 269~271면 참조.

49) 金雲泰, 『前掲書』, 249~252면; 전봉덕, 「일제의 사법권 강탈과정의 연구」, 『애산학보』 2(애산학회, 1982), 153~4면 참조.

다.⁵⁰⁾ 다시 일본은 내정개혁을 요구하였고, 조선정부는 자주적 개혁을 위해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철군요구를 거부하고 7월 23일 경복궁을 점령하고 반일민씨정권을 몰아내고 대원군을 옹립하여 김홍집을 영의정으로 하는 친일정권을 세웠다. 곧 대원군과 일본의 의견이 대립되자 대원군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하여 軍國機務處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⁵¹⁾

군국기무처는 杉村書記官과 岡本柳之助·安駟洙·兪吉濬 등과 협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다른 대신의 반발이 있었다. 이의 구성과 권한은 일본의 元老院(1875. 6. 3 설치, 1890. 9. 7 폐지)와 樞密院官制(1888. 3. 18 설치)를 모방한 것이다. 그 성격은 국왕의 권한 및 대행자인 대원군의 지위도 무시된 사실상의 초정부적인 立法府의 성격이 강하였다. 총재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민씨일파를 제외한 친일파, 중도파, 대원군파로 구성되어 있다가 친일파가 중핵으로 되었다.⁵²⁾

군국기무처에서는 改革法案을 議案의 형태로 공포하였다. 이의 제정은 군국기무처의 상임기초위원이 杉村·岡本柳之助 등과 사전협의하여 原案을 작성하고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심의는 커녕 중대사안도 1회에 통과되는 등 일본의 의도대로 진척되었다. 의안은 4개월간 208건의 의안을 공포하였는데, 이로써 일본의 침략의도와 그 졸속성을 엿볼 수 있다.⁵³⁾

군국기무처에 한 내정개혁의 중요 내용은 ①정치기구의 개혁, ②과거제도의 폐지, ③국가재정관리체계를 탁지부로 일원화한 것, ④사법제도개혁의 착수 등을 들 수 있다. 사법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무아문권설재판소의 설치, 고문과 연좌제의 폐지, 사법과 행정의 분리와 사법관에 의한 재판과 처벌 등을 들 수 있다.⁵⁴⁾

의안의 내용은 청국에 대한 자주독립의 주장, 한글의 사용과 애국애족의 정신의 함양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지향적인 것도 있고, 일본의 대한진출을 옹호하고 일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등 일제에 대한 굴종성을 노정한 의안도 있다. 그리고

50) 金益魯, 「1894年の 校正廳의 設置와 國政改革運動 -中道改革派의 思想을 中心으로-」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85) 참조.

51) 金雲泰, 『前揭書』, 254~6면 참조.

52) 金雲泰, 『前揭書』, 257~9면 참조.

53) 金雲泰, 『前揭書』, 260~2면.

54) 전봉덕, 「전계논문」, 158~9면 참조.

신분제의 폐지 등 '革命的' 의안과 민주주의적 개혁안도 있으며, 특히 동학농민군의 주장을 수용한 의안도 있다. 또 한편 반민족적 반민중적 의안도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왕권을 약화시키면서 종전의 왕권을 견제한 역할을 한 言官三司의 폐지와 상소의 억압 등 민권을 탄압하는 의안도 있다. 軍國機務處의 改革은 전체적으로 淸日戰爭을 배경으로 하여 日本侵略軍과 야합한 親日勢力이 民族主義 民主主義 및 平等主義 등 近代原則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사회질서의 창출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일제의 침략을 방조하고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한 것이다.⁵⁵⁾

군국기무처의 개혁조치는 안팎으로 반발을 불러 일으켜 예정대로 개혁이 추진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내에서도 조선공사에 대한 문책론이 있어 大鳥圭介이 해임되고 外務卿을 역임한 당시 內務大臣 井上薰이 자원하여 조선공사로 부임하였다. 井上薰은 부임한(1894. 9. 17) 후 고종을 만나 일본의 정략과 일본거류민의 상업상의 이익을 위한 '內政改革要綱說明'을 제시하였다(9. 30). 그리고 대원군이 반일태도를 취하자 그의 청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대원군을 축출하고 다시 고종을 등장시켰다(10. 21).

대원군의 퇴진에 따라 군국기무처는 존재가치가 없어져서 의정부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택하여 위 '要綱'을 고종과 대신에게 설명하고, 고종으로부터 위 '要綱'의 실시를 확답받았다(10. 24). 그리고 갑신정변 때 망명한 朴泳孝·徐光範 등이 귀국하자 金弘集·朴泳孝 聯立內閣을 발족 시키고 군국기무처를 대신한 中樞院을 설치하여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度支顧問(仁尾惟茂 大藏省主稅官), 議政府顧問(石塚英藏 法制局參事), 內務顧問(齋藤修一郎 前農商務次官), 軍務顧問(岡本柳之助 陸軍中佐·南瀨幸彦 公使館武官), 法務顧問(星亨 前衆議院議長), 警務顧問(武久克透 警視廳警視) 등 고문을 파견하여 위 '要綱'에 따른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⁵⁶⁾

고종은 개혁을 만방에 공포하기 위하여 1894년 12월 12일(음)에 洪範14條를 반포하였다. 이는 개혁을 약속한 것으로 청국으로부터의 독립, 국가와 왕실의 분리 등을 공포하였는데, 民法과 刑法을 제정하여 감금과 징벌을 남용하지 않으며,

55) 柳永益, 「軍國機務處 議案의 分析」, 한국사연구회 편, 『淸日戰爭과 韓日關係 - 日本의 對韓 政策形成에 관한 研究』, (일조각, 1985), 202~3면 참조.

56) 金雲泰, 『前揭書』, 264~7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은 근대적 법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법제사적 의의가 크다.

우선 命令頒布式, 公文式(1894. 11. 21)을 공포하여 근대적 법령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법률 제1호 '裁判所構成法'(1895. 3. 25)의 공포를 비롯하여 5월 21일까지 약 70건의 법령을 공포하여 내정을 개혁하였다.⁵⁷⁾ 이러한 개혁은 중앙관료제도, 지방행정제도, 인사제도, 재정제도 등 경제개혁, 군제의 개편, 신분제의 폐지 등 사회적 개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 가운데 혼인·양자제 등 관습과 관련된 개혁은 선언적인 것에 그쳤지만, 開國紀元의 사용·의복의 간소화·과거제의 폐지 등은 이후 사회개혁의 바탕이 되었다.⁵⁸⁾ 그러나 이러한 법령은 주체적인 것이 아니라 외국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었으며, 또 제정자조차도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洪水立法이었다.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일본은 청국으로부터 山東半島 등을 할양받았으나(下關條約; 1895. 3. 23), 러시아는 일본세력의 확대를 막으려고 프랑스·독일과 함께 山東半島의 반환을 주장하였고, 일본은 이에 굴복하였다(三國干涉; 3. 29).

三國干涉은 많은 파란을 일으켰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친러파가 등장하고 일본이 견제하고 있는 明成王后가 등장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일본은 內政指導를 통해서 韓國에서의 支配權 확립을 목표로 하는 積極的 政策에서 내정간섭을 피하는 消極的 政策으로 대한정책의 노선을 변경하였다(5. 12).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친러파가 등장하였다. 친일파는 친러파의 견제를 위해 왕궁경비군을 일본의 훈련을 받은 訓練隊로 교체하려고 하였다. 고종은 갑오 이래의 개혁법을 취소하겠다고 반대하였고, 결국 친일파는 실각하였으며, 고종은 政務를 親裁할 것을 선언하였다.

井上薫은 다시 서울에 와 제2차 김홍집내각을 발족시켰으나, 이들은 친러성격이 강하였고 친일파는 열세였다. 조선정국이 불리하게 되자 일본은 井上薫을 소환하고 浪人出身 三浦梧樓를 公使로 부임시켜 긴급조치를 강구하여 明成王后를 弑害하였다(을미사변; 8. 20).⁵⁹⁾ 조선인의 반발은 거세서 각지에 의병이 일

57) 金雲泰, 『前掲書』, 284~9면 참조. 개혁법령 일람은 287~9면 <表 10-1> 참조.

58) 각부분의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金雲泰, 『前掲書』, 298~325면 참조.

59) 金雲泰, 『前掲書』, 325~332면 참조.

어났고, 일본은 三浦梧樓 등을 파면·소환하고 재판에 회부하였으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하였다.⁶⁰⁾

새로운 정권은 개혁을 지속하여 1895년 7월부터 11월까지 140 여건의 법령을 공포하였다. 그 대상은 軍制·學制·郵遞·太陽曆의 채용·建陽年號의 사용·의복제·斷髮令 등이었다. 개혁의 기본정신은 갑오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나, 좀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개혁도 있으며, 반일·반갑오적 개혁도 있다.⁶¹⁾

이 때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것은 斷髮令인데, 이를 계기로 하여 전국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였으며, 이는 정정의 불안을 가져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였고, 이로서 친일내각은 붕괴하고 친러내각이 성립하였다(俄館播遷: 1896. 2. 11).

3. 俄館播遷과 法制的 復歸

1) 俄館播遷과 政局의 變化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아관파천(1896.2)으로 세력을 잃어 친러 정권이 성립하였다. 러시아는 각부분에 고문을 파견하여 조선의 국정에 관여하였다. 일본과 러시아는 베베르-小村 覺書(1896. 5. 14; 서울)를 체결하여 아관파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일본군의 일부철수와 러시아군의 주둔을 인정하였다. 이는 조선에서의 러시아의 정치적 우위속에서 러일양국의 동등한 권리를 상호승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의 방침은 로마노프-山方 議定書(1896. 6. 9; 모스크바)에도 이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조선을 양국의 세력범위로 인정하였다. 즉 조선은 양국의 보호국으로 된 것이다.⁶²⁾ 열강은 아관파천에 대해 묵인하였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영국, 미국 등이 철도부설권, 산림별채권, 광산채굴권 등을 쟁겼다. 열강의 지나친 이권추구는 열강 상호간의 반목과 조선인의 불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은 열강의 이권사업을 매수하거나 이양받아 침략의 바탕을 굳혀갔다.⁶³⁾

60) 1896년 1월 20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예심종결서는 杉村濤, 『在韓苦心錄 外編』 / 한상일 역, 『서울에 남겨둔 꿈』(범우사, 1993), 241~251면에 번역·수록되어 있다.

61) 金雲泰, 『前揭書』, 333~5면 참조.

62) 崔文衡, 『列強의 東아시아政策』(일조각, 1979), 18~41면 참조.

63) 金雲泰, 『前揭書』 341~6면 참조.

일국의 왕이 타국의 공사관에 있다는 것은 국가의 체면에 크게 손상되는 일이었다. 국민은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였으나, 고종은 신변의 안전을 이유로 미루었다. 러시아는 일본의 협조를 얻어 고종의 신변보장을 확약하였고, 그 결과 서울에 러시아군대와 교관·고문이 진주하였다. 고종은 덕수궁으로 환궁하였고(1897. 2. 20), 곧 자주국가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국호를 '大韓帝國', 연호를 '光武', '皇帝'로 하여 자주독립국임을 세계만방에 선언하였다(1897. 8. 17).

안팎으로 정세가 어수선해지자 개화파는 국민계몽운동을 펼쳤다. 우선 서재필·윤치호·이상재·남궁억은 독립신문을 창간하여(1896. 4. 7), 민주정치, 관리의 민선운동, 교육의 중요성, 미신타파와 사회관행의 개선 등 근대화를 주장하였는데 보수층의 반발을 가져왔다. 이들은 반동세력을 물리치고 자주독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獨立協會를 결성하였다(1896. 7. 2). 독립협회는 초기에는 보수관료를 포함한 사교집단이었으나 점차 정치세력으로 되어가자 관료들이 탈퇴하였고, 이에 따라 독립운동결사체로 변하였다. 독립협회는 지방에 지회를 설립하고 萬民共同會를 통하여 일반인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키는 등 대중조직체로 발전하였다. 독립협회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러시아 대해 철병과 부당한 간섭의 철회를 요구하니 러시아는 이에 따랐다.⁶⁴⁾

만민공동회에서는 의회개설 등 정치적 참정권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입헌군주제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운동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獻議 6條이다(1898. 10. 29). 헌의6조의 내용은 ①외국에 아부하지 않고 황권을 확립할 것, ②광산 등의 계약, 차관의 도입 등 외국인과의 계약은 각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의로 할 것, ③탁지대신이 재정을 관장하고 예산과 결산을 공개할 것, ④범죄자의 죄상을 조사하여 자백을 얻고 처벌할 것, ⑤勅任官 이상의 임명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을 것, ⑥법령과 장정을 준수할 것 등이었다.

고종은 이를 수용하여 ①中樞院章程의 制定·實施, ②集會規則과 新聞紙規則의 制定, ③貪官汚吏의 處罰과 財産의 返還, ④不法官吏의 告發, ⑤商工學校의 設立과 民業의 勸獎 등을 선언하였다(10. 30). 그리고 의회개설의 요구에 대응하여 유명무실한 中樞院을 개편하였는데(1898. 11. 2), 중추원은 諮問機關으로 그의 구성인원의 반을 독립협회 회원에게 할당하였고, 이에 따라 中樞院議官을 선거하였다(11. 5).

64) 金雲泰, 『前揭書』, 274~5면.

그러나 보수층은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시작하여 보부상들을 결집시켜 皇國協會를 결성하여 독립협회를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치안문제를 야기하자 고종은 양단체의 해산을 명하여 독립협회는 해산하였다.

독립협회는 자주독립과 자생적 근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이후의 애국계몽운동의 연원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⁶⁵⁾

2) 自主的 法制의 整備

光武政權은 갑오을미기의 개혁입법을 거의 무효로 하고, 의정부제의 복고 등 구제도로 회귀하였다.⁶⁶⁾ 특히 위정척사파인 崔益鉉은 갑오·을미개혁의 법을 “先王之 法制를 폐하고 倭夷의 지휘에 따라 中華를 夷賊으로 만들고 人類를 짐승으로 삼은 開闢 이래의 최대의 변고”⁶⁷⁾로 보았다. 복고기 입법의 기본방침은 ‘舊本新參’, 즉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갑오 이래의 신제도를 참고로 하는 “復古主義”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1897년 3월 23일에는 中樞院 내에 校典所를 설치하였다. 校典所의 설립취지는 “新舊典式을 절충하여 법규들을 하나로 통일집성함”⁶⁸⁾으로 입법의 기본방침이 잘 반영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인적 구성에서도 總裁代員은 보수파의 비중을 높이고 실무담당위원은 개화파를 위주로 하여 전통적인 제도와 갑오개혁을 절충하려 하였다.⁶⁹⁾

대한제국기에는 밖으로는 열강이 세력균형을 이루었고, 안으로는 독립협회 등을 비롯하여 민권운동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국가를 재건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를 光武改革이라고 한다. 정치체제는 황제절대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또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개편이 이루어졌다.⁷⁰⁾

광무정권은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양전사업을 추진하였다(光武量田). 전국적인 양전사업은 갑오개혁기에 구상되었다가 1898년에 준비하여

65) 金雲泰, 『前揭書』, 357~370면.

66) 전봉덕, 「전계논문」 169면; 鄭鍾休, 『前揭書』 25면 참조.

67) “自開化以後 盡先王之法制 一從倭夷之指揮 使中華爲狄 人類爲禽獸 此開闢以來 所未有之大便” 建陽 元年 2月 25日, 『高宗純宗實錄』 中 581면.

68) ‘折衷新舊典式 諸般法規 集成一通’ 『高宗純宗實錄』 中 620면.

69) 金雲泰, 『前揭書』, 343면.

70) 나애자, 「대한제국의 권력구조와 광무개혁」, 『한국사 11』(한길사, 1994), 170면 참조.

1899년 여름부터 수행되었다. 이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호구의 파악, 산업 재편 등을 기도하였다.⁷¹⁾ 1902년 이후 地契와 家契-官契-사업으로 이어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려고 하였고, 아울러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였다. 광무양 전사업은 중세적 소유권에서 근대적 소유권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제도였다.⁷²⁾

독립국가의 기틀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제를 개편하였으며, 이는 陸軍法律(1900. 9. 법률 제5호), 법령이 제정되었는데, 陸軍法律은 전 317조 4편으로 구성되었다. 육군법률은 特別法의 제정이 일단락되고 一般刑法(刑法大畧)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된 데 의의가 있다.⁷³⁾

화폐금융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金本位制를 확립하려고 하였으나, 金의 일본유출과 조선을 同一經濟圈에 포함시키려는 일본의 책략으로 실패하였다. 상업정책은 자유상업을 허용한 갑오기의 정책을 철폐하고 특권상인을 육성하는 특권상업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왕실재정의 확충을 위한 것이었고 결국 소상공인을 몰락시켜 민족자본의 붕괴와 일본자본의 침투를 가져왔다. 산업·철도·광산 등의 분야에서도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자본의 부족과 왕실의 사치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⁷⁴⁾

광무개혁은 입법·행정·사법·군사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된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전제군주의 틀속에서 조선사회를 유지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안으로는 개혁추진세력과 민중의 유리, 밖으로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실패하였다.⁷⁵⁾

광무개혁기 입법의 성격은 개별법령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舊本新參”이라는 입법방침에서 보듯이 법적으로는 자주성과 보수성이 두드러진다. 자주성은 『刑法大畧(1905. 4. 29 법률 제2호)』의 제정에서 잘 드러난다. 1905년에 공포된 ‘刑法大畧’은 전문 680조로 이루어진 한말 최고 최대의 입법인데, 『明律』, 『大典會通 刑典』 그리고 갑오 이후의 개별형사법령을 국한문혼용체로 근대적 법전체제로 편찬한 것이다.

71) 이영학, 「대한제국기 토지조사사업의 의의」,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편,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민음사, 1995) 참조.

72) 朴秉濠, 『前掲書』, 70~3면; 최원규, 「대한제국기 量田과 官契發給事業」, 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편, 『前掲書』 수록 참조.

73) 朴秉濠, 「舊韓國時代의 刑事立法의 沿革」,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429면.

74) 나애자, 「전계논문」, 173~185면 참조.

75) 나애자, 「전계논문」, 185~191면 참조.

한편 독립협회 등의 의회개설운동,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大韓國國制」의 반포로 절대군주제를 천명하였으며, 연좌제의 부활기도, 참형의 부활 등 형사법에서 보수성이 잘 나타났다. 전문 9조 國漢文混用體인 「大韓國國制(1899. 8. 17. 공포)」는 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法規校正所에서 기초한 것으로 光武政權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정권의 성격은 3권을 황제가 모두 장악하는 專制君主國으로서 당시의 군권의 제약을 요구하는 사상과 운동에 대한 한계와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⁷⁶⁾

광무개혁기에는 갑오개혁의 기틀 아래에 자주적인 입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가 활성화되었다. 개혁기에 설치된 법률기초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였고, 校典所, 校正所- 후에 法規校正所로 개칭- 를 특설하여 개폐를 전담시켰으며 軍法起草委員會, 同校正所, 刑法校正所 등을 설치하여 입법의 내실을 기하였다. 개혁기에는 일본인 고문이 활동을 하였으나 복고기에는 일본인은 거의 배제되고 독일인 穆麟德(Möllendorf), 프랑스인 金雅始(L. Crémazy), 미국인 具禮(Greathouse) 등 서양인 법률고문의 활동이 활발하였다.⁷⁷⁾ 이러한 외국인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활동- 프랑스인 보아소나드(Boissonade), 독일인 뢰슬러(Rösler)가 중요함- 에 비하여 보면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는 견해가 있다.⁷⁸⁾ 현재의 연구성과에서는 金雅始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의 평가는 이르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V. 統監府와 日本의 韓國支配

1. 러일전쟁과 日本의 軍事支配

청일전쟁으로 조선에서 청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한 일본은 러시아 주도의 삼

76) 田鳳德, 「大韓國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 『韓國近代法思想史』(박영사, 1981) 참조.

77)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受容史』(박영사, 1982) 제1부 및; 李元淳, 「韓末顧聘歐美人綜鑑-外國人顧聘問題 研究序說-」, 『한국문화』 10(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9) 참조.

78) 鄭鍾休, 『前揭書』 17~8면; 曹圭昌, 「西洋法受容에 있어서 法學教育의 歷史的 意義」, 『西歐學問의 受容과 普專』(고려대출판부, 1986), 143면 참조.

국간섭으로 한국에서 후퇴하였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남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하여 외교적 교섭을 하여 조선에서의 정치적 후퇴를 만회하려고 하였다. 베베르-고무라覺書(1896. 5), 로마노프-야마가타議定書(1896. 6)를 체결했지만, 열세를 만회하지는 못하였다. 집요한 노력으로 로센-니시協定(1898. 4. 25)을 체결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러시아와 일본은 조선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 ②조선政府가 조언을 구할 경우, 군사교관이나 재정고문의 임용에는 사전에 협상하여 결정한다.
- ③러시아政府는 조선내의 일본의 상공업 발달과 거류인이 다수임을 인정하고 조선과 일본 양국의 상공업 발달에 방해하지 않는다.

로센-니시협정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정치적으로는 대등한 지위, 경제적으로는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의 정치적 변동과 관계있다. 즉 조선진출을 적극 주장한 재무대신 위테가 실각하고 만주에 중점을 두는 외무대신 무라비에프가 등장한 결과이다.⁷⁹⁾ 그러나 러시아의 만주로의 후퇴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만주에서 지배의 기초를 다진 러시아는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조선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록강 하류의 용암포를 불법점령하였다(1903. 4).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견제하는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계산하고 1903년 12월에 러시아와의 전쟁방침을 확정하였다.⁸⁰⁾

1904년 2월 8일 일본해군은 러시아함대를 기습하고 10일 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조선정부는 전운이 감돌자 1월 21일 局外中立을 선언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일본은 무력점령을 바탕으로 정치적 지배기반의 구축에 착수하였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정한 직후 일본은 다음과 같은 對韓方針을 확정하였다.

한국은 반드시 지배하에 두어야 하지만 명분이 있어야 하므로 청일전쟁 당시의 攻守同盟 등의 형태로 保護의 協約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을

79) 최문형, 『列強의 東아시아政策』, 30면.

80) 박만규, 「보호국체제의 성립과 통감정치」, 『한국사』 11, (한길사, 1994) 193~5면.

조선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결국 실력에 달려 있다. 요컨대 對韓政策은 직·간접 군사력에 관계되므로 군사적 고려속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본은 러일전쟁 이전에 요구하였으나 조선정부의 局外中立宣言으로 무산된 韓日議定書를 1904년 2월 23일에 강제로 체결하였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한일 양국은 친선의 유지와 동양평화를 위해 한국政府는 시설개선에 관한 일본政府를 충고를 받아 들인다(제1조). 일본政府는 황실의 안전을 도모하며(제2조),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증한다(제3조).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한국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문제가 있으면 일본政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이 때 한국政府는 일본의 행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은 목적달성을 위해 전략상 필요한 곳을 수용할 수 있다(제4조). 양국政府는 이후 이 협정과 위반되는 협정을 상호승인 없이 체결할 수 없으며(제5조), 세부사항은 일본정부대표와 한국외부대신이 체결한다(제6조).

한일의정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치적·군사적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제1조 시설개선에 관한 충고권과 제4조의 군사적 권리이다.

일본은 개전과 동시에 韓國臨時派遣隊를 편성하여 서울을 점령하고⁸¹⁾ 나아가 전국의 요충지를 점령하고 점령지에서는 軍政을 실시하여 조선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일본은 군정의 실시에 따라 1904년 4월에는 일본군의 군사작전에 대한 보도통제를 요청하였고, 한국정부는 이에 따랐다.⁸²⁾ 그리고 한일의정서의 체결에 공이 큰 李址鎔을 탄핵하는 洪祐錫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내정간섭을 자행하였다.⁸³⁾

일본은 구체적으로 한국정부에 대해 입법을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81) 현재 용산 일대의 미군부대는 이 때 일본군이 점령한 것으로 해방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여 형성되었다.

82) 1904. 4. 8: 8. 1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편, 『日案』(동 연구소, 1970) 7~12, 20, 28면 참조. 이하 『日案』으로 약칭함.

83) 1904. 5. 10: 『日案』 7~66.

「漢城內清潔法施行規定(1904. 5. 19. 奏本)」이다. 이는 일본군의 진주에 따라 방역상 청결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공동위원회를 만들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였고, 한국정부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자 일본인위원을 임의로 임명하여 한국정부에 통고하였고, 한국정부는 따랐다.⁸⁴⁾

일본은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군사작전의 필요에 따라 불법으로 조인된 한일의정서에 근거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한국인을 강제로 탄압하였다. 특히 京元, 京釜, 京仁, 平義 간의 鐵道 및 電線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軍令을 실시하여 임의로 한국인을 처벌하였다.⁸⁵⁾ 또 일본에 비협조적인 지방관을 감금하고 직접 임명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⁸⁶⁾ 나아가 鐵道建設의 敷地確保를 위해 임의로 토지를 수용하고 토지의 처분을 금지하였다.⁸⁷⁾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후 對韓지배의사를 분명히 하여 1904년 3월에는 韓國臨時派遣隊를 韓國駐劄軍으로 개편하고 병력도 증파하여 영구주둔의 태세를 갖추었다. 또 일본은 체계적인 침략정책을 수립하여 '對韓方針'과 '對韓施設綱領' 및 '對韓施設細目' 등을 결정하였다. '對韓方針'에는 “한국에 대하여 政事上 軍士上 보호의 實權을 거두고 경제상에서는 더욱 이권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對韓施設綱領'에는 ①군사점령의 영구적 강화 ②외교권의 장악 ③재정권의 탈취 ④교통기관의 장악 ⑤통신기관의 장악 ⑥농업, 임업, 광업, 어업의 각 경제분야의 지배라는 침략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일의정서의 시설개선충고 조항에 근거하여 韓日協約書를 체결하였다(1904. 8. 22). 이에 따라 재정고문에는 일본대장성 국장 目賀田種太郎을, 외교고문에는 일본외무성에서 일한 스티븐스(Stevens)가 고용되었다. 이들은 자문이 아니라 재정과 외교에 관한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傭聘의 형태로 고문을 두도록 요구하였다.⁸⁸⁾ 이러한 결과로 한국에서는 顧問政治가 실시되었다.

84) 1904. 4. 29; 5. 4; 5. 14; 5. 19. 『日案』 7~50면, 56면, 67~73면, 82면.

85) 1904. 7. 5; 7. 21; 9. 22; 10. 10 등, 『日案』 7~184면, 200면, 298면, 326면 등 참조.

86) 1905. 1. 19. 『日案』 7~410면.

87) 1904. 9. 7. 『日案』 7~282면.

88) 박만규, 「전제논문」, 198~200면.

2. 乙巳條約의 締結

러일전쟁은 예상과 달리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내각회의에서 '한국에서의 보호권확립에 관한 방침'을 확정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대외관계를 대행함과 아울러 한국政府의 내정을 감독하고 일본인을 보호할 駐劄官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격파하고(1904. 5) 유리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에 주선을 부탁하였다. 당시 일본은 더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고 러시아 역시 대혁명 등 내정의 불안으로 이를 수용하여 종전하였다(포츠머드講和條約; 1904. 9. 5). 일본은 종전전에 미국과 카쓰라-태프트條約(1904. 7. 27)을 체결하여 미국의 필리핀지배를 인정하고 한국의 지배를 인정받았으며, 영국과는 제2차英日同盟(8. 12)을 체결하여 한국지배를 국제적으로 승인받았다.⁸⁹⁾

종전후 일본은 한국의 보호국화에 국제적 장애가 없음을 확인하고 1905년 10월 27일에 '韓國保護權確立 實行에 관한 件'을 확정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의 외교권을 접수·대행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조약초안을 마련하였다. 실무자로는 樞密院議長 伊藤博文을, 시기는 11월로 잡고,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도, 그것도 안되면 일방적으로 선언할 의도였다.

일본정부의 최종결정에 따라 주한일본공사 林權助는 韓國駐劄司令官 長谷川好道와 협의하여 조약체결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다. 우선 이완용 등 조약체결에 찬성할 대신을 매수하였고, 一進會를 사주하여 조약체결을 지지하는 선언서를 발표하여 여론을 조작하도록 하였다.

伊藤博文은 서울에 도착하여 고종을 면담하여 조약초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강요하였다. 고종은 관료의 의견과 백성의 뜻을 묻겠다고 하여 승락을 거부하였다. 伊藤博文은 전제군주국가에서 백성의 뜻을 불필요하다고 하여 관료의 의견만 묻기로 하였다(1904. 11. 15).⁹⁰⁾ 이틀 후 일본군의 포위 속에서 각료회의가 소집되었는데, 伊藤博文이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강력하게 반대한 參政大臣 韓

89) 박만규, 「앞의 글」, 201~2면.

90) 강제언, 『한국근대사연구』(한밭, 1982), 252~3면.

圭高을 감금하고, 일본에 매수당한 이완용 등 5대신이 찬성하여 조약이 통과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⁹¹⁾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兩帝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主義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富強의 實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목적을 위하여 좌의 條款을 약정함.

第1條 일본국정부는 在東京 外務省을 경유하여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하는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할 것이요,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領事는 외국에 있어서의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것임.

第2條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담당하고 한국정부는 금후에 일본국정부의 仲介를 경유하지 않고 國際的 性質을 가진 어떠한 條約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기를 相約함.

第3條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闕下에 1명의 統監을 설치하되 통감은 오직 外交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韓國皇帝陛下에게 內謁하는 권리를 가짐. 日本國政府는 또한 韓國의 각 開港場 및 기타 日本國政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理事官을 설치하는 권리를 갖되, 理事官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在韓國 日本領事에게 속하던 일체의 職權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협약의 條款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掌理할 것임.

第4條 日本國과 韓國과의 간에 현존하는 條約 및 約束은 본협약에 저촉하지 않는 한 모두 다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임.

第5條 日本國政府는 韓國 皇室의 安寧과 尊嚴을 유지하기를 보증함.⁹²⁾

이는 일본의 초안에 약간의 형식적 수정을 한 것이다. 즉 條約序文에 한국의 부강을 인정할 때까지라는 한시적 의미를 추가한 것과 제5조의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하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단지 매국대신의 체면치레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1904년 12월에 각국 주재공관원에게 철수명령을 내렸고 그 업무는 일본영사관에서 대신하였다. 이로써 한국정부는 외교권을 명실상

91) 이선근, 『한국사-현대편』(을유문화사, 1963), 920~3면.

92) 국회도서관 입법자료실 편, 『前掲書』상, 76~7면; 원문은 78~9면 참조.

부하게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었다.⁹³⁾ 일본은 1906년 1월에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였고, 초대통감으로 伊藤博文이 취임하였다.

3. 統監府와 韓國併合

을사조약 체결후 고종은 비준을 거부하였고 또 선교사 헐버트를 미국에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미국정부에 호소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는 미국의 정책과 상반되었기 때문에 좌절되었다. 그후에도 의병봉기를 은밀히 지원하는 등 반일적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고종이 국왕의 지위에 있는 한 식민지화의 길은 험난하였다. 이는 일본총리대신 카쓰라가 “한국황제 및 정부당국자들로 하여금 과실을 범하게 할 수 있다면 대한정책상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⁹⁴⁾

일본의 의도대로 1907년 6월에 헤이그 밀사사건이 터졌는데, 일본은 고종을 퇴위시킬 호기로 삼았다. 伊藤博文은 고종에게 이를 추궁하고 음모보다는 선전포고를 하라고 협박하였고 또 參政大臣 이완용에게도 같은 협박을 하였다. 이완용과 日進會 會長 宋秉俊은 伊藤博文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고종의 퇴위를 강요하였다. 고종은 7월 19일 황태자에게 대리시킨다는 詔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복귀를 전제로 한 일시적 양위였다. 그러나 친일대신은 이튿날 고종의 의도와는 다르게 양위를 발표하였다. 大韓自強會와 군인들이 이에 대해 항거하였지만 압도적 무력을 앞세운 일본군을 당하지는 못하였다. 어린 나이인 純宗은 이름 그대로 허수아비에 불과하여 일본은 한국 국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⁹⁵⁾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일본은 나아가 고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해온 한국정부를 직접 통제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⁹⁶⁾ 고종퇴위 직후인 7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韓日新協約(丁未7條約)을 체결하였다.

93) 박만규, 「前揭論文」, 205면.

94) 金容德, 「대한제국의 종말」, 『한국사』 19(국사편찬위원회, 1976), 196면.

95) 박만규, 「前揭論文」, 210~3면.

96) 박만규, 「前揭論文」, 213면.

일본정부 및 한국정부는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조항을 약정함.

제1조 한국정부는 施設改善에 관하여 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의 法令制定 및 중요한 行政處分은 먼저 統監의 承認을 거칠 것.

제3조 한국의 司法事務는 보통 行政事務와 구별할 것.

제4조 한국 高等官吏의 任命과 解任은 統監의 同意를 받아서 할 것.

제5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韓國官吏에 임명할 것.

제6조 한국정부는 통감의 同意없이 外國人을 雇用하지 않을 것.

제7조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⁹⁷⁾

정미7조약을 통해 한국내정에 대한 통감의 지배가 施設改善과 중요사항에 대한 통감의 승인이라는 명목으로 보장되었다. 일본인 재정고문의 채용을 의무화한 한일협약 제1항은 일본인을 직접 한국관리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폐지하였다. 그리고 통감 伊藤博文과 참정대신 이완용 간에 합의형식으로 한 비밀각서에는 軍隊解散, 次官政治 및 司法權과 警察權의 移讓이 포함되어 있었다.⁹⁸⁾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었고, 해산된 군인은 의병에 합류하여 의병의 전력이 강화되었지만, 일본군을 적대하기에는 벅찼다. 일본은 1909년 7월 6일에 한국 병합방침을 확정하고, 9월과 10월에 南韓大討伐作戰을 펼쳐 의병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그 해 10월 안중근이 伊藤博文을 살해하자 일본국내에는 한국 병합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으며, 이에 따라 병합에 착수하였다.

일본은 1910년 5월에는 統監으로 육군대신 寺內正毅를 겸임발령하였고, 6월 24일에 경찰권을 접수하고 일본헌병 2천명, 한국인 헌병보조원 4천명, 일본인 경찰 2천명에 한국인 경찰 2,300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헌병경찰체제를 구축하였다. 寺內正毅는 7월 23일 일본군의 위압 속에서 이완용과 합병을 논의하여 8월 18일에 한국정부의 내각회의를 열어 통치권의 양도를 결의하였고, 22일에 한국황제가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황제에게 넘긴다는 合併條約⁹⁹⁾이 조인되었다. 그리고 29일에 합병이 공포되고 이어

97)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前掲書』 상, 87~9면.

98) 박만규, 「前掲論文」, 214면.

99) 원문과 번역문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실 편, 『前掲書』 상, 100~3면 참조.

조선총독부가 설치됨으로서 한국은 마침내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되었다.¹⁰⁰⁾

4. 日本의 韓國併合 過程에 대한 法的 考察

일본은 국제법에 근거하여 조선을 개항시키고 국교를 맺었다. 이후로도 일본은 철저하게 조약을 통하여 한국을 침략하였다. 물론 한일간의 조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보다는 군사력을 앞세운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된 것이 대부분이다. 개항 후 한일간에 체결된 기본조약은 다음과 같다.

| 조약 명 칭 | 체 결 일 | 주 요 내 용 |
|--------|------------|-----------------------|
| 한일수호조규 | 1876. 2.26 | 국교재개 및 한국의 개항, 불평등 조약 |
| 제물포조약 | 1882. 8.30 | 임오군란, 군대주둔권 인정 |
| 한성조약 | 1885. 1. 9 | 갑신정변, |
| 잠정합동조관 | 1894. 8.20 | 갑오농민전쟁 |
| 한일공수동맹 | 1894. 8.26 | 청일전쟁, |
| 한일의정서 | 1904. 2.23 | 러일전쟁, |
| 을사조약 | 1905.11.17 | 보호정치, 통감부 설치 |
| 한일신협약 | 1907. 7.24 | 차관정치 |
| 한일합방조약 | 1910. 8.22 | 합방조약, 한국독립상실 |

개별조약의 체결과정에 드러난 위법성에 대해 보기로 한다. 우선 한일간의 국교를 재개한 한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은 일본의 위협 아래 체결된 것이다. 일본은 자기들의 안을 마련하여 한국에 강요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강제로 조인하였다. 내용에 수정된 부분이 있다면 단지 황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도만 수정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조약은 國璽의 날인 등 형식적으로는 흠이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私法上으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효인 조약에 근거하여 한일간에 각종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행위의 추인에 따라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0) 박만규, 「前掲論文」, 215~6면.

1) 乙巳條約의 不法性

최근에 1905년의 을사조약과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의 경우에는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없는 흠이 있음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치자의 위임을 받은 전권대표가 조약의 내용에 대해 교섭을 한 후 서명하고, 통치권자가 국가의사로써 批准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고 국내적으로는 공포를 하여야 완전하게 성립한다.

을사조약과 한일합방조약의 유효·무효와 불성립, 부존재 등에 대한 논의는 근래에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그 성과는 이태진편, 『일본의 대한제국 강점』(까치, 1994. 8)에 정리되었지만,¹⁰¹⁾ 법학자들의 관심은 전무하다. 여기에서는 역사학자들이 근간 규명한 사실을 정리하여 앞으로 법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한다.

1905년의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흠이 있다.

첫째, 조약의 등급이 한일양국간에 체결된 것과 국제사회에 공포된 것이 다르다. 일본은 한국의 반발을 고려해서인지 위임이나 비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약식조약인 協約(Agreement)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후에 국제사회에 공포할 때에는 “Agreement”보다 한 등급 위인 “Convention”으로 하였다. 일본도 외교권을 위임하는 등 한국의 독립주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조약은 정식조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무효가 될 것이다.

둘째, 을사조약은 다른 조약과 달리 정식명칭이 없다.¹⁰²⁾ 조약 원본에는 통상

101) 여기에는 윤병석, 「을사5조약의 신고찰」; 이태진, 「조약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 “을사보호조약”」; 동, 「통감부의 대한제국 寶印 탈취와 순종황제의 서명」; 동, 「공포칙유가 날조된 “한일병합조약”」; 김기석, 「光武帝의 주권수호 외교 : 乙巳勒約 무효 선언을 중심으로」; 프랑시스 레이/최종고·남효순 역,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 도츠카 에쓰로/김익한 역, 「“을사보호조약”의 불법성과 일본정부의 책임」; 박태균, 「해후 한일회담과정에 나타난 1900년대 “한일협약”에 대한 인식 고찰」 등 8편의 논문과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또 이상찬,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역사비평』 31, 1995년 겨울호에는 위 논의를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상찬의 글을 중심으로 전개하였고 각주를 달지 않는다.

102) 현재 1905년의 외교권위탁에 대해서는 乙巳條約, 乙巳5條約, 乙巳保護條約, 乙巳勒約, 韓日協商條約, 第2次 韓日協約, 韓日新協約 등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

적으로 조약명칭을 기재하는 첫 줄이 비어 있다. 이는 조약체결 당시에 조약의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고, 다시 당시에 한일 양국 정부간에 조약의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과 조약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외무대신인 박제순이 고종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 않고 체결하였다. 당시에는 군주국가이므로 고종만이 조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으므로 고종의 전권을 위임받은 정당한 대표만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박제순이 고종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明治천황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당한 대리권자가 아닌 자가 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무권대리의 이론으로 조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넷째, 조약은 조인되지 않았다. 박제순은 이토의 강요에 못이겨 찬성하였지만, 조인하지는 않았다. 일본은 처음부터 조인을 중시하여 韓國外部를 감시하였고, 박제순이 끝까지 조인하지 않자 이토는 前間恭作(日本公使館 한국어 통역관)과 沼野(외부 補助員)을 시켜 외부대신의 직인을 훔쳐 조인하였다. 이러한 조약은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당연무효가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불성립인 것이다.

다섯째, 고종은 끝까지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미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국제사회에 공포하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고종의 비준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관보에 게재하고 국제적인 승인을 얻었다. 그래서 고종은 지속적으로 을사조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백성들에게 따르지 말 것을 선언하였고, 험버트에게 비밀리 親書를 보내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또 주한미공사 알렌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1906년 1월에 일본이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자 영국의 트리뷴 신문에 조약을 부인하는 기사를 내었다. 또 1906년 6월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본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1907년 6월에는 만국평화회의에 조약의 부당을 간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빌미로 삼아 선전포고를 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켰다.

여섯째, 일본은 광무황제가 퇴위한 직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1907. 7. 24)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한국측의 대표자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었고, 일본측

대표자는 特命全權代使이며 統監인 伊藤博文이었다. 만약 을사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라면 통감은 한국의 외교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伊藤博文이 한국측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을사조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대리권이 없는 자(이완용)가 대리한 것으로 무효이다. 일본이 한국의 내각총리대신을 대표자로 인정하여 한일신협약을 체결한 것은 그들 스스로 을사조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을사조약은 형식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 不存在인 조약으로 이 조약에 터잡은 일본의 통감부설치와 외교권의 박탈 등은 불법적 침략이다.

2) 併合條約의 不法性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에 양도하여 일본이 대한제국을 통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10년 8월 22일 조인된 한일병합조약이다. 일본은 이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을사조약과 달리 위임·조인·비준 단계를 설정하여 조약으로서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조약 제8조에 “양국 황제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규정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합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흠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대표자격에 흠이 있다. 병합조약의 한국측 대표는 내각총리대신 李完容이고 일본측은 統監 寺內正毅이다. 그런데 사실적으로(de facto) 통감은 정미 7조약(1907)으로 한국의 내정을 총괄하고 있었고 한국의 내각총리대신은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 통감과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한국의 내각총리대신이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自己代理行爲로 무효이다. 그리고 만약 을사조약이 유효하다면 법적으로는(de jure) 한국의 내각총리대신은 한국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즉 한국의 외교권을 통감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에 통감이 외교권을 대리행사하는 자이므로 통감이 대리하여 병합조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내각총리대신은 법적으로는 병합조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고 따라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체결한 병합조약은 무효이다. 즉 병합조약은 사실적으로든 법적으로든 대표자격에 흠이 있는 무효인 조약이다.

둘째, 조약에 대한 비준과정이 결여되었다. 병합조약 제8조에는 “양국 황제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명시하였고 또 한국측 대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즉 대표 통감 寺內正毅 사이에 비밀각서에서 詔勅으로 병합조약을 공포하기로 합의하였다. 국가의 주권을 타국에 양도하는 조약은 조약문에 비준을 하였다는 사실을 표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황제의 비준(裁可)이 있어야 한다.

병합조약은 황제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며 그리고 합병조약을 공포한 1910년 8월 29일의 詔勅을 순종이 裁可하지 않았다. 위 詔勅에는 순종의 親筆署名이 없고 단지 御璽만 捺印되어 있다.¹⁰³⁾ “詔勅에 순종의 친필서명이 없다는 사실”에서 순종에게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포하였거나 순종이 서명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御璽를 탈취하여 날인하고 조칙을 공포하였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병합조약에는 형식적으로는 순종의 재가가 있지만 실제로는 순종이 재가를 하지 않았으며, 그 증거도 명백하므로 병합조약은 비준이 결여된 무효인 조약이다.

셋째, 순종의 황제권에 흠이 있다. 순종의 즉위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을 이유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이 황제권을 계승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양위하지 않고 단지 일본의 강요로 1907년 7월 18일에 황태자에게 “軍國大事의 代理”를 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7월 20일에 고종과 순종 모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內官 2명이 대리하는 형태로 양위식을 거행하였고, 7월 22일에는 禪讓에 반대하는 박영호 등을 체포하였으며, 8월 2일에 ‘隆熙’年號를 결정하고 고종을 太皇帝로 올리고 隆熙를 이튿날부터 사용하였다. 그리고 8월 27일에 즉위식을 거행하고 11월 18일에 誓告式을 거행하고 정식 황제로 활동하였다. 年號使用法도 한국 전통과는 다르게 일본의 것을 따랐다.¹⁰⁴⁾ 이러한 것은 완전히 일본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다.

순종의 즉위는 석연하지 않은 점이 있다. 우선 고종이 퇴위할 연령상·건강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그리고 퇴위식에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정식 즉위식을 거행하기 전에 연호를 먼저 사용하였다. 또 황제의 즉위를 誓告하는 儀式은 4개월이 지난 12월에 거행하였다. 이러한 것은 고종이 禪讓한 것이 아니라 황제권을 위임한 것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본의 의도가 관철되어 더 이상

103) 순종은 즉위후 각종 법령의 공포 등 공문서에는 모두 친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였다.

104) 우리나라의 연호나 왕의 재위년을 계산할 때에는 先王을 폐위한 경우(燕山君, 光海君) 외에는 신왕이 즉위한 해는 元年으로 하지 않고 卽位年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나, 일본은 즉위년 없이 곧바로 원년으로 한다.

고종이 저항할 수 없게 된 후에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순종은 정당한 황제권의 계승자가 아니며 따라서 대한제국의 정당한 통치자가 아니었다. 위에서 설사 특별사정이 있어 병합조약을 순종이 親筆署名하지 않은 것이 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통치권자가 아닌 다시 말하면 비준할 권한이 없는 자가 비준한 병합조약은 무효인 조약이다.

결론적으로 1910년의 병합조약은 일본의 의도와는 달리 을사조약과 마찬가지로 부존재인 조약이다.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것은 이미 1930년대와 1960년에 국제적으로 결론이 났다. 1927년 미국국제법학회에서 국제법의 成文化를 하버드대학교에 의뢰하였는데, 하버드대학교에서는 1935년에 이에 대한 보고로 조약을 정하면서 을사보호조약을 강박으로 체결되어 무효인 조약의 대표로 들었다. 그리고 1965년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국가대표에게 대한 개인적 강압” 아래 체결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국제조약 사례 4개 중의 하나로 을사조약을 예시하였다.

이제 법학계에서도 일본의 한국침략과정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직접적인 문제이다. 그리고挺身隊·原爆被害者 등 현재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다. 한일간의 과거를 청산하고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안이다.

第2章 統監府 法制 概要

I. 統監府의 組織과 權限

1. 統監府와 理事廳의 組織

1) 統監府와 理事廳의 設置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1905년 11월 22일에 일본은 칙령으로 서울에 통감부를, 서울,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목포, 마산, 기타 요충지에 이사청을 설치하기로 하였다.¹⁰⁵⁾ 그리고 12월 20일에 일본은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를 공포하고,¹⁰⁶⁾ 駐韓日本公使館을 1906년 1월 31일자로 폐쇄시키고 1906년 2월 1일에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통감으로 伊藤博文이 부임하였는데, 부임하기 전에는 駐節韓國軍司令官 長谷川好道가 대리하였다.¹⁰⁷⁾

統監의 일차적인 권한은 한국의 외교권을 위임받아 대리행사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본은 1905. 12. 15 한국의 在外公館을 폐쇄시켰고 韓國外部는 1906. 1. 17에 議政府 外事局으로 격하되었다. 일본은 주한공사관의 폐쇄 등으로 열강에게 그들의 한국지배를 사실화하여 공사관철폐에 압력을 가하였다. 그래서 1905년 11월에서 1906년 3월 사이에 청국과 미국을 필두로 하여 清英佛獨伊 등 각국은 주한공사관이 폐쇄시키고 이권보호를 위해 영사관 또는 총영사를 파견하였다. 일본의 통감부설치에 대해 미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최초로 공사관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국을 설득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공사관을 폐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외교관계수립에 가장 큰 희생을 치렀고 또 이익을 얻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소극적이었다. 駐韓外國公使館의 철수로 일본은 대한정

105) 勅令 제240호 “統監府 및 理事廳을 設置하는 件”; 宋炳基 편, 『統監府法令資料集』 상, (국회도서관, 1972), 1면. 이하 『統法』으로 약칭함.

106) 勅令 267호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 『統法』 상, 1~5면.

107) 姜昌錫, 『朝鮮統監府 研究』(국학자료원, 1995), 25면.

책을 외국에 과시할 수 있고 또 열강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막았으며, 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¹⁰⁸⁾

統監府가 中央行政機關이라면 理事廳은 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일본은 을사조약체결시에 이미 정치적·경제적 요충지에 이사청을 설치하여 일본인의 보호와 함께 한국의 지방내정을 지배하려고 하였다. 1906년 2월 1일 통감부 개설 당시에는 서울, 부산, 인천, 진남포, 목포, 마산, 군산, 평양, 성진, 원산 등 10개 지에 이사청을 설치하였고, 1906년 8월에 대구, 11월에 신의주, 1907년 12월에 청진이사청을 설치하여 韓半島 全域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¹⁰⁹⁾ 각 理事廳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은 다음 표와 같다.

| 이 사 청 | 관 할 구 역 |
|---------|--|
| 부 산 이사청 | 경남남부일대, 경북동부해안일대, 강원연해안일대 |
| 마 산 이사청 | 경남서부일대 지역중 부산, 대구이사청 관할 이외 지역 |
| 군 산 이사청 | 전북일대, 충남남부일대 |
| 목 포 이사청 | 전남일대 지역 |
| 경 성 이사청 | 경기 동부일대, 강원 서부일대, 충북 동부일대, 충북서부일대, 황해 동남부일대 |
| 인 천 이사청 | 경기 서부일대, 황해 남부일대 |
| 평 양 이사청 | 평안동부, 황해동부지역 |
| 진남포 이사청 | 황해서북부 지역 |
| 원 산 이사청 | 함남 일대, 강원동북부지역 |
| 성 진 이사청 | 함북 서남 지역 |
| 대 구 이사청 | 경북연해안을 제외한 경북지역, 충북 동남부, 강원남부지역 (1906. 8 설치) |
| 신의주 이사청 | 평북 일대지역(1906. 11 설치) |
| 청 진 이사청 | 함북 일대지역(1907. 12 설치) |

그리고 한국을 더욱 확고히 지배하기 위해 이사청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방에

108) 姜昌錫, 『前掲書』, 43~55면.

109) 姜昌錫, 『前掲書』, 63~5면.

에는 理事廳 支廳을 설치하였는데, 수원지청(1906. 11. 18 개청)을 시작하여 11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理事廳支廳은 1907년 7월 24일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일본인을 한국인 관리로 임명할 수 있게 되자 굳이 이사청지청을 통한 간접지배방식이 불필요하였기 때문에 1908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다. 각 이사청지청의 본청과 존속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 지 청 명 | 관 할 본 청 | 설 치 | 폐 지 |
|-------|---------|------------|------------|
| 수 원 | 경 성 이사청 | 1906.11.18 | 1908.12.31 |
| 해 주 | 인 천 이사청 | 1906.11.18 | 1908.12.31 |
| 충 주 | 경 성 이사청 | 1907. 6. 8 | 1908.12.31 |
| 신 의 주 | 신의주 이사청 | 1907. 6.30 | 1908.12.31 |
| 청 진 | 성 진 이사청 | 1907. 7.30 | 1908.12.10 |
| 공 주 | 군 산 이사청 | 1906.11.18 | 1908.12.31 |
| 전 주 | 군 산 이사청 | 1906.11.18 | 1908.12.31 |
| 광 주 | 목 포 이사청 | 1906.11.18 | 1908.12.31 |
| 진 주 | 마 산 이사청 | 1906.11.18 | 1908.12.31 |
| 함 흥 | 원 산 이사청 | 1906.11.18 | 1908.12.31 |
| 경 성 | 성 진 이사청 | 1906.11.18 | 1908.12.31 |

총 13개의 이사청과 11의 이사청지청으로 일본은 병합에 앞서 사실상 한국을 말단 지방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2) 統監府와 理事廳의 組織

통감부는 親任인 통감 아래에 總務長官(칙임; 1인), 農商工務總長(勅任 또는 奏任; 1인), 警務總長(勅任 또는 奏任; 1인), 秘書官, 書記官, 警視(2인), 技士(5인), 通譯官(10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⁰⁾ 이러한 기본골격은 1907년 한일 의정서의 체결로 일본이 사실상 한국의 내정을 장악한 후 개정되었다. 이 때에는 친임으로 副統監을 두었고 總務長官, 參與官, 秘書官, 書記官을 두었다.¹¹¹⁾

110) 1905년 12월 20일 勅令 제267호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 참조; 『統法』 상, 1~5면.

111) 1907년 9월 20일 勅令 제295호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 改正” 참조; 『統法』 상, 449면.

그리고 통감부에는 總務部(長官), 外務部(總長), 農商工務部(總長), 警務部(總長)가 있다. 총무부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지방과를 두어 지방행정과 교육·종교, 병사, 經濟 관련업무를 담당하였다. 外務部에서는 韓國課와 外國課를 두어 업무를 담당하였다. 農商工務部에서는 산업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주의할 것은 警務部인데, 여기에는 警務課, 保安課, 衛生課를 두었다. 보안과에서는 고등경찰, 사법경찰, 裁判·監獄 事務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統監府 법령의 제정을 위해 法制審査會를 두어 조약과 법령에 관한 제안과 질의를 담당하였다.¹¹²⁾

官制와 마찬가지로 分掌規程도 1907년 韓日議定書 체결후에 개정되었는데, 개별업무를 담당한 農商工務部, 警務部가 폐지되었다. 이는 일본인이 한국관리로 임용될 수 있어서 굳이 개별업무를 통감부에서 관장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다. 다만 외무부를 존치시켜 대외업무를 담당시켰고, 法制審査會 대신에 監査部를 두어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 지방부에서는 지방행정과 금융 등 산업, 종교·교육과 아울러 사법과 경찰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중 사법사무는 1909년 사법권 위탁 이후 司法廳으로 이관되었다.¹¹³⁾

이러한 통감부의 조직과 사무분장은 규모는 작지만 정부와 동일하고 업무는 실질적으로 한국을 통치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그리고 高等警察 등 식민지 지배기구의 틀이 이미 통감부기에 형성된 것이다.

理事廳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성원으로 奏任인 이사관과 勅任인 副理事官, 그리고 屬, 警部, 通譯生 등을 들 수 있다(統監府 및 理事廳官制 제23조). 그리고 理事廳 管轄 區域내에 理事廳支廳을 들 수 있는데, 副理事官이나 警視를 두며, 이들은 統監의 명을 받아 韓國地方 施政改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¹¹⁴⁾

日本은 서울에서는 統監府를, 지방 중심지에는 理事廳을, 기타지역에는 理事廳支廳을 두어 체계적이고 통일된 조직체로 한국지배를 위한 중추기관을 확립하였다.

112) 1907. 4. 27. 統監府訓令 제10호 “統監府事務分掌規程” 『統法』상, 371면 참조.

113) 1907. 10. 9. 統監府訓令 제21호 “統監府事務分掌規程 改正” 『統法』상, 462면 참조.

114) 1906. 9. 26 統監府令 제37호 “理事廳支廳分掌規程” 『統法』상, 186면.

2. 統監府와 理事廳의 權限

統監府와 理事廳은 日本의 官廳으로서의 權限과 을사조약에 근거한 조약상의 權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을사조약의 체결로 駐韓日本公使館이 폐쇄되어 통감부와 이사청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보호·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감부와 이사청의 權限은 고유의 權限이라고 할 수 있다. 을사조약에서는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하여 통감이 대리행사를 하였고, 通信에 대해서는 1905년 11월에 일본에 위임하였다. 그리고 1904년의 제1차 韓日協約에서는 한국의 施政改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는 일본의 권고를 받을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약에 근거하여 통감은 한국의 내정에 간여하였고, 이러한 權限을 조약상의 權限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 固有의 權限

(1) 統監府

통감의 일본헌법상의 지위는 특이하다. 우선 통감부는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獨立機關이었다. 통감은 천황이 직접 임명하였고(親任官), 天皇에 直隸하여 外交에 관하여서는 外務大臣을 거치고 다시 內閣總理大臣을 경유하여, 기타 사무는 內閣總理大臣을 거쳐 上奏하여 裁可를 받을 수 있다(統監府 및 理事廳 官制 제2조; 이하 官制로 약칭함). 관제 제2조에는 외무대신과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기껏 '협의'해야 하는 것일 뿐 監督과 從屬의 관계는 아니었다.¹¹⁵⁾ 그리고 이러한 統監의 지위는 1910년 병합 때까지 그리고 한국병합후 조선총독의 지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통감이 유고할 때에는 통감이 정한 바에 따라 韓國守備軍司令官 또는 總務長官(칙임)이 대행하지만 실재는 없고 후에 삭제되었다.

이러한 조선 통감의 특수성은 일본의 다른 식민지인 臺灣과 비교하여도 두드러진다. 1898년 7월 22일 勅令 제259호 內務省官制에서는 臺灣에 대한 사무는

115) 정중섭·김창록,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구조의 성격」,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 1 : 과거청산』(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23면.

內務省의 일반사무로 규정하여 臺灣總督은 內務省의 감독을 받았다. 그렇지만 朝鮮統監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위 官制는 1907년 4월 30일 勅令 제166호로 개정되었지만 朝鮮統監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통감은 일본 내 무성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다만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이었다. 또 초대 통감인 伊藤博文이 明治維新의 功臣이며 당시에 이미 네 차례나 內閣總理大臣을 지내고 세 차례나 樞密院 議長을 지낸 巨物인 점에서도 분명하다.¹¹⁶⁾ 이러한 사실은 일본이 조선을 중시하여 특별하게 취급한 것을 의미한다.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에 따르면 統監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에서 帝國을 대표하며 外國領事館 및 外國人에 관한 事務를 統轄하고 아울러 韓國의 施政事務로 外國人과 관계되는 것을 감독한다.
- ② 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에서의 帝國官憲 및 公署가 시행해야 할 政務를 감독하고 기타 제국관헌에 속하는 일체의 감독사무를 한다(이상 官制 제3조).
- ③ 한국의 안녕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韓國守備軍 司令官에게 병력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官制 제4조).
- ④ 韓國施政에 관하여 조약에 근거하여 政務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한국정부에 이첩하여 그 시행을 촉구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韓國地方官憲에게 이첩하여 시행을 촉구하고 후에 한국정부에 통고한다(官制 제5조).
- ⑤ 제국관리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용병과 피용자를 감독한다(官制 제6조).
- ⑥ 統監府令을 발하여 禁錮 1년 이하, 罰金 200圓 이내의 刑罰을 부과할 수 있다(官制 제7조).
- ⑦ 소속관청의 명령 또는 처분이 조약 또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권한을 넘어섰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官制 제8조).
- ⑧ 소속관리를 감독하고 奏任官의 任免은 內閣總理大臣을 경유하여 上奏하고 判任官 이하의 임면은 單獨으로 하고 소속관리의 敍位·敍勳을 상주한다(官制 제9조, 제10조).

일본은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종래의 간접 지도방침에서 統監이 직접 施政改善을 지휘하는 방침으로 바꾸어서 일본인은 顧問으로 임명하여 한국시정을 감독하는 顧問政治를 폐지하고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직접 임용하는

116) 정종섭·김창록, 「전계논문」, 23면.

次官政治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를 개정하였다. 그렇지만 統監의 지위는 변함이 없었고, 제3조를 “통감은 한국에서 제국정부를 대표하고 조약 및 법령에 근거하여 제반정무를 統轄한다”라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5조, 제6조를 삭제하였고 조직을 개편하였다.¹¹⁷⁾ 관제개정의 특색은 통감의 職權을 간결하게 하였고, 보호권이 확대되어 열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또 부통감을 두고 총장을 폐지하고 參與官을 두어 한국정부의 차관을 참여관으로 하였다. 이는 한국정부의 차관이 일본인이 임용되었기 때문에 연락을 위한 것이었다.¹¹⁸⁾

위에서 본 것처럼 통감은 한국에서 외교권만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을 장악하였고, 統監府令을 제정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 理事廳을 감독하므로 간접적으로 사법권을 감독하는 등 立法·司法·行政의 全權을 행사하였다.

통감은 일반행정만이 아니라 군사권까지 장악하였다. 문관인 통감이 군령기관에 대해 명령권을 갖는 규정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¹¹⁹⁾ 이는 韓國駐劄軍司令部條例(1906. 7. 3. 칙령 제205호) 3조에 “軍司令官은 韓國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統監의 命令이 있으면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태가 긴급한 경우에는 재량으로 행사하고 후에 통감에게 보고한다”로 규정되었다. 통감의 군령권은 러일전쟁 개시때부터 한국에 군정을 실시하는 등 무력점령을 계속한 것으로 한국을 무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各省大臣이 관장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勅令으로 統監의 직권에 속하게 하여 처리하게 하였다.¹²⁰⁾ 그리고 같은 날 칙령 제167호로 “居留民團法, 淸國 및 朝鮮國在留帝國臣民取締法, 戶籍法, 在外指定學校職員 退隱料 및 遺族扶助法, 外國領海水產組合法, 郵便法, 電信法, 電信線·電話線建設條例” 중 각대신의 관장사항으로 한국에 관한 것은 통감이 행사

117) 1907. 9. 19 勅令 제295호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 改正” 『統法』 상, 449면.

118) 松岡修太郎, 「前掲論文」, 188~191面.

119) 松岡修太郎, 「統監府の統治法制」, 『法學會論集』 12책 3·4권, (京城帝國大學校, 昭和16年), 182面.

120) 1906. 6. 27 법률 제57호 “內國官憲의 管掌에 속하는 事項에 대한 統監의 職權에 관한件” 『統法』 상, 103면.

한다고 규정하였다.¹²¹⁾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준거법으로 일본법령이 그대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 적용되었다. 이는 통감이 各省大臣과 동격으로 독립적으로 한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식민지에서 법적용원칙의 원형이 되었다.

통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였고, 조약에 근거하여 한국의 내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최고 통치자의 지위에 있었다.

(2) 理事廳

理事官은 통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거 영사관에 속한 업무와 조약과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관장한다(統監府 및 理事廳官制 제24조). 과거 영사의 업무는 한국에서의 영사재판과 거류지 및 거류민에 대한 행정이다. 이사관은 조약의 범위내에서 재한거류민에 대한 행정 및 사법기관이면서 한국에 대한 보호조약의 실시를 감시하고 한국의 외교사무를 감리하는 지방기관이다.¹²²⁾ 위의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에 따르면 理事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안녕질서를 유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통감의 명령 없이도 地方駐幸帝國軍隊司令官에게 出兵을 청구할 수 있다(官制 제25조).
- ②한국의 施政事務에 대해 한국정부가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지를 감시하며, 긴급한 경우에 통감의 명령없이도 한국지방관에게 移牒할 수 있고, 사후에 통감에게 통지해야 한다(官制 제26조).
- ③理事廳令을 발할 수 있으며, 10圓 이내의 罰金과 拘留·科料를 부과할 수 있다(관제 제27조).

일본은 한국에서 치외법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日本人은 日本領事館에서 재판을 받았다. 을사조약의 체결로 영사관이 폐지됨에 따라 재판업무는 理事廳으로 이관되었다. 理事官은 종래 관할구역내에서 치외법권에 기초하여 소송사건의 始審, 非訟事務 및 檢察事務를 수행하였고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이 단독으로 재판

121) 1906. 6. 27 칙령 제167호 “韓國에서의 內國官憲의 管掌事項을 統監의 職權에 관한 件” 『統法』상, 103면.

122) 松岡修太郎, 「前掲論文」, 183~5면.

하였다. 과거 영사재판의 항소심은 長崎控訴院, 상고심은 大審院이었지만, 이사청 설치후에는 統監府法務院을 두어 이사청의 재판에 대한 상소를 담당하였다.¹²³⁾

理事官도 統監의 지휘를 받을 뿐 나머지는 행정권, 입법권과 사법권을 갖는 통감과 같았다. 또 韓國施政改善에 대해 일본의 충고를 받아야 한다는 조약에 근거하여 사실상 한국의 지방관을 대신하여 지방행정을 통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사관은 한국지방행정의 사실상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韓國地方施政에 관한 理事官의 執務規程”¹²⁴⁾에 따르면 理事官은 한국인 외의 외국인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는 통감의 명을 받아 한국지방관헌을 감독하며(제1조), 한국에 고용된 官吏를 보조·관찰하고(제2조), 한국인이 담당하는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지방관헌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사무의 집행을 보조·감독할(제3조) 권한이 있었다.

또 실제 한국인을 상대하는 理事廳支廳에서는 더욱더 철저히 한국지방행정에 관여하였다. “理事廳支廳執務規程”¹²⁵⁾에 따르면 理事廳支廳의 책임자인 副理事官의 권한도 理事官과 같아서 그 구역내의 行政事務를 이사관의 지휘를 받아 통괄하고(제1조), 區裁判所의 業務를 관장하며 司法行政인 證明·登記·登錄·非訟事件을 취급하였으며(제2조,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업무(제4조)와 한국에 고용된 일본인에 대한 보조와 관찰(제5조)을 담당하였고, 한국지방관헌을 보조하고 감독하였다(제6조).

통감과 이사관 등은 그들의 고유 임무인 일본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국내정을 좌지우지하였다. 統監은 서울에서 施政改善이라는 명목으로 內閣會議에 참석하고 또 한국 황제를 협박하기도 하여 그들의 의사를 관철하였고, 理事廳의 책임자인 理事官과 이사청지청의 책임자인 부이사관은 한국의 지방행정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또 감독권을 빙자하여 한국지방행정을 임의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이사관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일본인 1910년 병합전에 식민지화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사실상 식민지로 지배하였다. 1910년의 병합조약은 겉치장에 불과하였다.

123) 1906. 6. 25. 법률 제56호 “韓國에서의 裁判事務에 관한 件”: 동일 勅令 제160호 “韓國에서의 裁判事務에 관한 件 施行日期의 件” 『統法』 상, 94~5면.

124) 1906. 11. 18 統監府令 제48호, 『統法』 상, 240면.

125) 1906. 11. 18 統監府令 제46호, 『統法』 상, 237~8면.

2) 條約上의 權限

통감은 한국에서 일본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가져 한국과 일본간의 조약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조약에 근거한 대표적인 권한으로 “施政改善權”을 들 수 있다.

조약에 따라 권한을 일본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그 권한,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표자인 통감이 행사하였다. 구체적으로 1905년 4월에 통신관계,¹²⁶⁾ 1909년 7월 사법·감옥사무와 1910년 6월에 경찰사무를 위탁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1905년 12월에 체결된 을사조약에서는 한국은 일본에게 외교권만 위탁하였고, “統監府 및 理事廳 官制” 제2조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통감과 이사관은 한국의 내정을 간섭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들 마음대로 한국내정을 조정하였다. 일본은 한국정부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한 감독·통제권을 행사하여 한국내정을 조정하였다. 1904년의 “제1차 한일협약”에서는 한국정부가 일본이 추천하는 일본인 재정고문(目田種太郎)과 외국인 外交顧問(Stevens)을 고용하게 하였고, 협약의 범위를 넘어서 다수의 일본인 고문을 고용하였다(顧問政治). 통감은 바로 이러한 고문을 통제·감독할 권한이 있었다(官制 제6조). 통감 伊藤博文은 이를 통해 한국내정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그러나 “施政改善權”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것이었다. 통감은 시정개선권고자로서 한국의 내정개혁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을사조약에는 施政改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다만 1904년 2월 23일 강제체결된 “제2차 韓日協約” 제1조에 “韓日 兩帝國간에 恒久不易의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大韓帝國政府는 大日本帝國政府를 확신하며, 施政의 改善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일 것” 이라고 규정하였다. 일본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한국정부에 대해 시정개선권고권을 가졌고, 통감은 일본정부의 대표자로 施政改善權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와 “理事廳執務規程”, “理事廳支廳執務規程”에도 한국시정에 관하여 政務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한국정부에 이첩하여 그 시행을 촉구할 수 있었다(官制 제5조).

126) 1905. 4. 1. 조인 “韓國通信機關委託에 관한 取極書” 참조.

그러나 을사조약은 외교에 관한 것이므로 통감의 시정개선권은 조약에서 위임한 外交權을 벗어난 것으로 불법적인 것이다. 1907년에 체결한 “韓日新協約(丁未7條約)” 제1조에서 통감의 시정개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을사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아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국정부에 대한 일본의 시정개선권고권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약상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伊藤博文은 1906년 3월 9일 고종을 알현하고 시정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갖고 있음을 알리고 한국정부와 협의하여 시행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고하였다. 이후 伊藤博文 등은 그들의 계획에 따라 3월 13일에 자기의 관사에서 한국대신을 소집하여 “제1회 韓國 施政改善協議會”를 열었다.

1907년의 한일신협약에서는 통감은 한국정부의 시정개선을 지도하고(제1조), 한국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을 사전에 승인하고(제2조),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을 사전에 동의하고(제4조)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하게(제5조) 하였다. 이로서 통감의 시정개선권은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이후 1909년 12월 28일까지 총 97회에 걸쳐 열린 이 협의회에서 통감은 한국 내정 전반에 대한 지시를 하고 관철시켰다.¹²⁷⁾

통감은 통신기관 등 조약에 근거하여 관할권이 일본정부- 그 대표자인 통감에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조약상의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施政改善에 대한 충고라는 명목으로 한국의 내정을 손바닥에 놓고 주물렀다. 결론적으로 통감은 식민지배를 하기 전부터 한국에 대한 입법·사법·행정의 전 영역을 장악하였고, 이러한 지위는 식민지배기 전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II. 統監府의 立法權과 性格

통감부 법령은 원칙적으로 일본법령이다. 즉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居留民과 일본 統監府 및 理事廳 官吏-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위탁한

127) 이상의 논의는 정중섭·김창록, 「前掲論文」, 25~8면을 정리한 것이다. 施政改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姜昌錫, 『前掲書』, 제3장 “統監府의 役割: 施政改善을 중심으로”; 權泰億, 「1904~1910년 일제의 한국침략구상과 ‘시정개선’」, 『한국사론』 31(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참조.

사무, 예컨대 통감부 설치 이전에는 通信, 통감부설치 이후에는 외교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의 통감부가 법령제정권을 갖고 있어서 통감부법령이 한국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졌다.

한편 일본인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屬地主義의 특성상 한국법령도 일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즉 통감부의 법령은 일본인에게만 효력이 있는 일본법령으로서의 통감부법령과 한국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통감부법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한국법령도 한국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법령과 일본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한국법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統監府와 理事廳의 立法權

統監府와 理事廳은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으며, 1910년 6월 경찰권을 위탁한 후에는 警務總監部도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다.

통감이 제정하는 統監府令에서는 禁錮 1년 이하 또는 200圓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관제 제7조), 理事官이 제정하는 理事廳令에서는 10圓 이내의 벌금과 拘留, 料料를 부과할 수 있다(관제 제27조). 統監府와 理事廳의 法令制定에 대해서는 統監府公文式과 각 理事廳公文式이 있다.

統監府法令에는 統監府令과 統監府訓令, 統監府告示가 있다. 이들 상호간의 효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統監府令은 행정명령이나, 한국에서는 법률에 준하는 것이었다. 訓令은 통감부의 규칙에 해당하였고, 告示는 일반적인 사항이나 한국법률을 적용할 때 활용되었다.

統監府令은 統監府令임을 명기하고 統監이 署名하고 日字를 기입하여 公布하며(제1조), 이는 漢城新報에 포고한다(제2조). 효력의 발생시기는 각 관청에 도달한 다음날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발생하되, 統監府令에서 특별히 시행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3조). 그 후 제2조를 개정하여 京城日報, 統監府公報에 공포하는 것으로 하였다.¹²⁸⁾

理事廳의 法令에는 理事廳令, 告示, 布達 등의 형식이 있다. 理事廳令은 理事廳令인 것을 명기하고 理事官이 署名하고 公布日字를 기입하여 공포하고(제

128) 1906. 1. 19 統監府令 제4호 “統監府公文式”, 『統法』 상, 19~20면; 1906. 8. 31. 統監府令 제31호 『統法』 상, 161면; 1909. 4. 30 統監府令 제4호 『統法』 중, 597면.

1조), 포고하는 방법은 理事官이 정하며(제2조), 효력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7일이 경과한 후 발생하며, 시행기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제3조).¹²⁹⁾ 理事廳令公文式 제2조에 따라 각 理事廳은 각 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理事廳令을 공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¹³⁰⁾ 그리고 신문의 폐간과 발간에 따라 수시로 理事廳令의 公布紙가 변경되었다.

警務總監部令 및 警務部令은 이를 명기하고 警務總監 또는 警務部長이 서명하고 공포일자를 기입하여 공포한다(제1조). 警務總監部令은 統監府公보로 공포하고, 警務部令을 공포하는 방법은 警務部長이 정한다(제2조). 警務總監部令은 각 관청에 도달한 후, 警務部令은 공포후 7일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하되, 별도로 시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3조). 統監府警務總長과 統監府警務部長은 명령으로 구류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¹³¹⁾

각 지방의 警務部令은 일반적으로 지방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하였지만, 忠靑北道·京畿道 警務部에서는 관내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공포하기도 하였다.¹³²⁾ 이러한 공포방법은 일반인이 법령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점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령제정자의 편의성을 표출한 것으로 식민지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法例(1898. 6. 법률 제10호)에 따르면 법령은 공포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特例로 통감부법령의 경우에는 공포후 7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는 법령의 신속한 적용을 위한 조치로, 식민지법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리고 統監府·理事廳의 公文式이나 警務總監部 公布式의 경우는 즉시 또는 공포 익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는 法例와 公文式에 대한 특례로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統監府令 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1906년 1월 11일에 공포된 통신관계 일본

129) 1906. 1. 19 統監府令 제5호 “理事廳令公文式”, 『統法』상, 20면.

130) 현재 각 지방신문이 완전하게 전해오지 않아 각 理事廳令을 전부 찾을 수 없다.

131) 1910. 6. 29 勅令 제297호 “統監府警務總長 및 統監府警務部長이 발하는 命令에 關係件” 『統法』하, 609면.

132) 1910. 8. 15. 忠靑北道 警務部令 제1호 “忠靑北道 警務部令公布式”; 京畿道 警務部令 제1호 “京畿道 警務部令公布式” 『統法』하, 704면.

법령을 고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統監府令公文式이 제정되기 전에 공포된 것으로 비록 조약에 의해 일본이 한국의 통신기관을 위탁관리하여 일본법령이 한국에 적용되는 데는 근거가 있지만, 법형식의 면에서는 통감부령이 존재하기 전에 나온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¹³³⁾

통감부법령은 한국거류일본인에 대해 효력을 갖는 行政命令이지만, 조약에 근거하여 통감이 한국행정권을 수행하는 권한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韓國人 및 在韓外國人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2. 條約上의 立法權

한국이 조약으로 일본에게 업무를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표인 통감부가 업무를 관장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는 통감부법령이 적용되었다. 처음 통신분야에서 외교, 司法, 경찰분야로 확대되었다.

한국에서의 일본통신사업은 1876년 이래 일본인의 증가와 한국통신의 불비로 체신성 관하의 우편국을 부산에 설치한 것으로 시작하였다. 1905년 4월 1일에 「韓國通信機關의 委託에 관한 取極書」를 체결하여 한국정부의 재정상 여유가 생길 때까지 통신기관의 관리를 일본에 위탁하였다. 통감부 통신관서는 통감의 관리에 속하는 한국에서의 우편·우편저금·우편위체·전신·전화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서울에 통신관리국을, 지방에 우편국과 우편소를 설치하였다.¹³⁴⁾ 이에 따라 통신에 관련된 일본법령이 일본 법령 그대로 또는 통감부법령의 형태로 한국에 적용되었는데, 통감부법령의 형태로 적용될 때에는 告示의 형태로 적용되었다. 통감부법령 가운데 통신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다. 그 내용은 대개 일본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일본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제3국과의 조약으로 일본법령이 한국에 적용된 예가 있다. 無體財產權에 대한 美日條約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었다. 일본과 미국은 협상을 하여 1908. 5. 19 미일조약이 타결되었다. 위 조약으로 미국은 한국에서에서 治外法權을 포기

133) 한일병합시에는 병합 당일에 緊急勅令 제234호 “朝鮮에서 施行할 法令에 관한 件”을 공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134) 松岡修太郎, 「前掲論文」, 178~9面.

하고 한국에서의 일본의 재판권에 복종하였다. 한국인에 대해서도 일본인과 같이 권리를 인정하였다. 한국에서는 위 조약과 통감부령인 한국특허령 등을 內閣告示를 통하여 반포하였다. 統監府令인 韓國特許令 등과 韓國法令인 韓國特許令 등은 서로 내용이 비슷하다. 그리고 각칙령의 시행규칙은 통감부령으로 특례를 정한 외에는 일본법률의 시행규칙을 의용하였다.¹³⁵⁾

일본법의 적용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는 司法分野이다. 외국은 일본과 수교조약을 체결할 때 법률·사법제도가 미흡하여 인권보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외법권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일본은 치외법권 등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법률·사법제도를 정비하였다. 일본도 한국과 수교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은 서구열강에 당한 그들의 고초를 그대로 한국에 전가시켰다. 일본은 법률제도와 사법제도의 미비와 그의 개선을 시정개선의 명목으로 삼았다.

사법분야에서도 1907년에 감옥사무와 사법권을 위탁함에 따라 1907년 11월에 韓國의 法部와 裁判所를 폐지하고 1908년 1월 12일 裁判所構成法, 監獄法을 공포하여 통감부재판소로 대체하였다.¹³⁶⁾ 이에 따라 統監府裁判所令이 공포되고 統監府法務院과 裁判事務取扱令이 폐지되고 通常裁判所의 예에 따르게 되어 司法事務에 관한 司法大臣의 권한은 統監이 행사하게 되었다.

일반의 예에 따르면 재판의 준거법이 일본법이 되어야 하지만, 특례를 인정하여 民事事件에서는 原被告 모두 한국인인 경우에만 한국법규를 적용하였다. 일방이 한국인이 아니면 日本法規를 적용하나 執行은 한국법규에 따랐다. 刑事事件에서도 檢事字格에 차등을 두었고 韓國人 檢事は 被告人이 한국인인 경우에만 직무를 수행하였다.¹³⁷⁾

경찰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治外法權과 居留民의 보호를 위해 外務省 관할의 경찰관을 파견하여 領事館과 公使館에 소속시켰다. 1904년에는 일본인이 한국경찰의 고문으로 용병되었고(顧問政治),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에는 統監府와 理事廳에 배치하였다. 이등박문 암살 이후 1910.6.24 경찰권을 인수

135) 松岡修太郎, 「前掲論文」, 192~6面.

136) 사법권의 침탈과정에 대해서는 전봉덕, 「일제의 사법부 강탈과정의 연구」, 『애산학보』 2(애산학회, 1982) 참조.

137) 松岡修太郎, 「전계논문」, 196~8面.

하였다. 憲兵은 軍事警察이었지만, 統監의 지휘를 받아 司法 및 行政警察을 장악하였다. 이는 문관통감 아래에 특이한 현상이다.¹³⁸⁾

일본법령은 원칙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지만, 조약으로 일본이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일본법령이 한국인에게도 적용되었다. 대개의 경우에는 일본법령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司法關係에서는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다.¹³⁹⁾

3. 韓國 · 日本 法令과의 關係

위에서 보았듯이 통감부법령은 통감부가 한국에 있는 일본의 기관이며 또 駐韓日本人이 적용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일본법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일본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약에 의해서 한국의 내정을 담당하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인도 통감부법령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일본인도 한국에서 생활함에 따라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물론 치외법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과정에서는 일본법이 적용되었지만, 실제법은 한국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서 통감부법령과 일본법령 및 한국법령과의 관계가 문제로 되었다.

1) 日本法令과의 關係

일본의 法令形式은 法律, 勅令, 閣令, 省令 등이 있다(明治 19. 2. 勅令 제1호 公文式; 동 40. 2 勅令 제6호 公式令).¹⁴⁰⁾ 법률은 제국의회에서 제정한 것을 의미한다. 천황이 발하는 勅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公共秩序의 유지 또는 긴급시에 제국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여유가 없을 때 발하는 勅令과 법률의 집행을 위한 칙령이 있다. 전자는 '法律에 준하는 緊急命令'으로 帝國議會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大日本帝國憲法 제8조 참조). 후자는 施行命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138) 松岡修太郎, 「前掲論文」, 199~201面.

139)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1910년 병합 이후에도 존속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1912년에 제정된 “朝鮮民事令”과 “朝鮮刑事令”을 들 수 있다. 그들은 한국의 고유성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지만, 식민지 지배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140) 내용은 부록 II. 참조.

할 수 있다(大日本帝國憲法 제9조 참조). 그리고 천황은 관제와 봉급을 정하며(大日本帝國憲法 제10조 참조), 군대를 통솔하고(大日本帝國憲法 제11, 12조 참조), 敍勳과 赦免을 한다(大日本帝國憲法 제15, 16조 참조). 그리고 황실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大日本帝國憲法 제17조 참조). 이와 관련된 입법은 칙령으로 하고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¹⁴¹⁾

閣令과 省令은 행정규칙으로 閣令은 內閣總理大臣이, 省令은 各省大臣이 제정하는 것이다(公文式 제5조 참조). 그리고 各省大臣은 관련된 告示를 발할 수 있다.

日本法令은 憲法, 法律 및 법률과 同格인 勅令,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勅令, 閣令·省令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⁴²⁾ 통감부법령은 통감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법령이 적용되었다. 위에서 말한 法律, 勅令, 閣令, 省令 등은 그대로 통감부법령에도 적용된다. 官制와 官員, 敍勳, 군대에 대한 입법은 勅令으로, 기타는 법률과 閣令, 省令의 형태로 적용되었다. 1910년 7월 15일 당시 통감부법령의 형식별 현황¹⁴³⁾은 다음 표와 같다.

| 종류 | 순수 일본 법령 | 小計 | 통감부 법령 | 小計 | 기타 | 총계 |
|----|-------------------|-----|----------|-----|----|-----|
| 形式 | 法律 勅令 閣令 省令 訓令 告示 | | 令 訓令 告示 | | | |
| 건수 | 53 126 9 25 24 16 | 253 | 76 76 10 | 115 | 26 | 388 |

이러한 일본법령은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일본법령이 전부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다. 法例(1898. 6. 법률 제10호)¹⁴⁴⁾에서 보듯이 법령의 효력발생일을 통감부법령에서는 공포 후 20일에서 7일로 단축하였다. 즉 일본법령을 적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변경하였다. 이는 본국영토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례를 규정한 것이며, 관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141) 大日本帝國憲法의 全文은 부록 II. 참조.

142) 大韓帝國의 法令은 憲法은 없지만, 法律, 勅令, 部令, 部訓令, 告示 등이 있으며, 일본의 법령형식과 효력단계는 대한제국의 법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43) 자세한 것은 부록 I. 統監府 現行법령 목록 참조.

144) 내용은 부록 II. 주요 일본법령 번역 참조.

그리고 이러한 특례는 統監이 결정하고 집행하게 하였다. 1906년 6월 26일 법률 제57호 “內國官憲의 管掌에 속하는 事項에 대한 統監의 職權에 관한 件”¹⁴⁵⁾에서는 일본에서는 법률로 규정할 것이지만, 칙령으로 통감이 관장하게 하였다. 이는 통감이 내각과 帝國議會의 감독을 받지 않고 천황에 직예하는 것과 일맥상 통하는 것이다. 즉 일본국내에서는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지만, 천황에게 직예하는 통감은 천황이 발하는 칙령에 따라 법률사항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일본법령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쟁점은 日本帝國憲法의 적용여부이었다. 이는 단지 통감부만이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법제 전체와 관련되는 문제이다.¹⁴⁶⁾ 일본의 領土로 特別統治地域인 ‘外地’ 및 關東州 등과 같이 領土는 아니나條約에 의해 영토와 같이 일본이 統治權을 행사하는 特別統治地域인 ‘領外外地’에 대해 憲法原則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지만, 한국은 保護國이므로 保護領 또는 領外外地가 아니어서 일본제국헌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¹⁴⁷⁾ 일본법령의 시행방식은 보호국에서의 법령시행과 같다.¹⁴⁸⁾

통감부법령은 원칙적으로 일본법령으로 대일본제국헌법 원칙의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통감의 특수한 지위에 따라 통감부법령 역시 특수성을 띠었다. 이는 일본헌법원칙의 배제와 법률사항을 통감의 행정명령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법령을 적용하면서도 특례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 韓國法令과의 關係

통감부법령과 한국법령과의 관계는 두 측면에서 고찰하여야 한다. 즉 통감부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본인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私法關係에서의 實體法은 한국법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과 반대로 일본이 한국의 내정을 장악함에 따라

145) 『統法』 상, 103면.

146) 식민지법제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拓殖局 편/ 鄭肯植 역, 「植民地法制概要」, 『법제연구』 5.(한국법제연구원, 1993) 참조.

147) 식민지에 헌법이 적용되는지의 논란은 대만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 일본헌법이 적용되는가는 병합 직후에 朝鮮總督의 制令權과 관련하여 일본제국의회에서 논란되어 위헌론과 합헌론으로 나누어져 합헌으로 결론이 났고, 1945년까지 식민지 조선에 일본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金昌祿, 「일본제국주의의 헌법사상과 식민지 조선」, 『법사학연구』 14(한국법사학회, 1993) 참조.

148) 松岡修太郎, 「前掲論文」, 185~6면.

통감부법령이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통감부법령이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과정은 한국정부에서 告示를 통하여 통감부법령의 적용을 선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통감부 설치 이후 1910년 병합까지 총 315건의 통감부법령이 한국인에게 적용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 형식 | 연도 | 法律 | 勅令 | 省令 | 條約 | 統·令 ³⁾ | 統·告 ⁴⁾ | 警務 ⁵⁾ | 계 |
|-------------------|------|----|----|----|----|-------------------|-------------------|------------------|-----|
| 內·告 ¹⁾ | 1908 | 7 | 1 | 7 | 1 | 13 | 73 | . | 102 |
| | 1909 | 4 | 20 | 9 | . | 17 | 77 | . | 127 |
| | 1910 | . | . | . | . | 2 | 75 | 3 | 80 |
| 農·告 ²⁾ | 1908 | 3 | . | 3 | . | . | . | . | 6 |
| 계 | | 14 | 21 | 19 | 1 | 32 | 225 | 3 | 315 |

* 1) 內閣告示; 2) 農商工部告示; 3) 統監府令; 4) 統監府告示; 5) 警務總監部令¹⁴⁹⁾

위 법령 가운데 內閣告示로 적용한 법률과 조약은 無體財産權과 관련된 법령이며, 農商工部告示로 적용한 것은 東洋拓植株式會社와 관련된 법령이다. 1909년의 勅令은 사법권의 강탈에 따라 統監府裁判所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것은 통신기관과 관련된 것이다.

통감부법령 가운데에서 한국법령이 그대로 적용된 분야는 주로 民事關係와 産業·經濟關係에서이다. 이는 주로 統監府令과 統監府告示의 형태로 한국법령의 적용을 선언하였다. 1910년 7월 15일 당시 중요한 한국법령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¹⁵⁰⁾

| 형식 | 法律 | 勅令 | 閣令 | 度令 ¹⁾ | 農令 ²⁾ | 法令 ³⁾ | 警令 ⁴⁾ | 訓令 ⁵⁾ | 총계 |
|----|----|----|----|------------------|------------------|------------------|------------------|------------------|----|
| 건수 | 38 | 13 | 1 | 12 | 11 | 4 | 1 | 2 | 82 |

* 1) 度支部令; 2) 農商工部令; 3) 法部令; 4) 警務總監部令; 5) 各部訓令

149) 이 표는 한국법령에서 통감부법령을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150)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I. 統監府 現行法令 目錄 중 한국법령 참조.

그런데 통감부가 한국법령의 적용을 선언한 법령은 대부분이 일본의 지도 또는 간섭 아래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한국법령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본법령 내지 그들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統監府法令과 韓國·日本法令은 告示의 형태로 서로 적용되었다. 이는 속주주의 특성상 불가피한 현상이었고, 이는 법을 통한 일본의 한국침탈과 지배를 나타내는 것이다.

Ⅲ. 統監府法令의 內容과 特色

본절에서는 統監府法令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통감부 법령을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법령 및 한국법령과 상호비교를 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일본인단체, 민형사법, 식민지배기구, 사회와 경제 등의 분야로 나누어 통감부법령의 전체적인 윤곽만 그려 향후의 연구에 보탬을 주기로 한다.

1. 日本人團體

개항 이래 일본인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진출하였고, 초기에는 개항장에 그쳤지만, 점차 내륙으로 진출하였다. 일본은 맬더스의 인구론의 관점에서 일본인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진출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에 식량문제는 불가피하며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과잉인구를 해외로 배출하여 인구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해외에 안정적인 식량공급원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일본정부는 한국에 농업이민을 장려하였다.¹⁵¹⁾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영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는 영사관의 업무는 이사청과 지청에서 대신하였다. 일본은 이사청을 전국각지에 설치하고 일본인의 보호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청소재지에 '居留民團'을 그리고 관할지역내의 주요지역에 '居留民會'

151) 鄭然泰, 「日帝의 韓國農業政策 : 1905~1945」(서울대 문학박사학위논문, 1994), 12~20면.

또는 ‘日本人會’를 설치하였다.¹⁵²⁾ 그 준거법으로 居留民團法施行規則(1906. 7. 14 統監府令 제21호)을 제정하였다.

居留民團은 그 지구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 統監과 理事官의 감독을 받았다. 조직은 民長과 助役, 會計役을 두고 居留民會를 두었다. 자체로 課稅權 및 徵稅權이 있다.

1908년 2월 신의주이사청 관할 거류민단과 일본인회가 설치된 이래 1910년 1월 城津日本人會를 조직함에 따라 12개 이사청에 모두 일본인회가 설치되었다. 居留民團의 상황은 다음표와 같다.¹⁵³⁾

| 이사청 | 거류민단 | 일본인회, 거류민회 | 호 수 | 인 구 |
|-----|--------|---------------------------------|-------|--------|
| 경 성 | 경성, 용산 | 영등포, 개성, 수원, 오산, 조치원, 대전, 평택 | 8,842 | 29,563 |
| 인 천 | 인 천 | 해주 | 3,185 | 12,369 |
| 군 산 | 군 산 | 전주, 강경, 공주 | 1,272 | 4,591 |
| 목 포 | 목 포 | 영산포, 광주, 제주도 | 1,200 | 4,572 |
| 마 산 | 마 산 | 창원, 入佐村, 진주, 고성, 삼천포 | 1,510 | 5,554 |
| 부 산 | 부 산 | 동래, 구포, 낙동, 김해, 삼량진, 밀양, 울산, 鬱島 | 5,666 | 21,955 |
| 대 구 | 대 구 | 경주, 청도, 김천, 경산, 상주, 추풍령, 영동 | 1,423 | 4,523 |
| 원 산 | 원 산 | 함흥, 북청, 청진, 鏡城, 성진 | 2,578 | 9,447 |
| 평 양 | 평 양 | 안주, 신안주, 황주, 兼二浦 | 2,837 | 9,646 |
| 진남포 | 진남포 | 新幕, 사리원 | 774 | 2,661 |
| 신의주 | 신의주 | 정주, 車輦館, 의주, 용암포, 宣川 | 1,366 | 4,119 |

居留民團 외에 일본인단체로 일본인회가 있었다. 일본인회는 居留民團法 시행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로 公共目的을 수행하려는 자는 理事官의 인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다.¹⁵⁴⁾ 일본인회의 목적은 일본인 세력의 강화이었고 일본 스스로

152) 강창석, 『전계서』, 6면.

153) 강창석, 『前掲書』, 67면.

154) 일본인회에 대한 통일적인 준거법은 없고 각 理事廳에서 이사청령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도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만족하였다. 거류민단과 일본인회의 설치에 따라 일본인이 점차 증대하였는데, 일본인의 증가는 다음 표와 같다.¹⁵⁵⁾

| 구분 년도 | 호 수 | 인 구 |
|----------|--------|---------|
| 1908년 | 33,169 | 116,437 |
| 1907년 | 28,189 | 98,115 |
| 1906년 | 21,531 | 81,747 |
| 1905년 | - | 42,460 |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증대하게 되자 교육을 위해 학교를 증설하고 교육관계 법령을 공포하였다. 교육관계법령은 일본인교육을 위한 육성법과 교육내용을 통제하는 두 방면에 걸쳐 제정되었다. 그리고 일본인을 통제하기 위한 居住規則(1908. 1. 18 청천이사청령 제2호), 居留規則(1908. 10. 10 통감부령 제45호) 등을 제정하였다. 居留規則은 일본의 호적법을 간단히 한 것으로 거류자의 가족관계, 이동상황 등을 기재하고 거류민단을 경유하게 하였다.

2. 民 · 刑事法

1) 民事法

일본인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토지를 확보해야 하였고, 이의 선결문제는 소유권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었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확보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매매를 통한 구입과 황무지의 개간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방법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대개는 高利貸를 통한 불법적인 것이었다. 일본의 소규모 상업자

대체적인 내용은 理事官의 허가, 조직, 목적 등을 규정하였는데, 목적은 산업의 조사·발달 등이었다. 1908. 2. 15. 淸津理事廳令 제4호 “日本人會規則”; 1908. 9. 2. 大邱理事廳令 제3호 “日本人會設置規則”, 『統法』 중, 19面, 291面 참조.

155) 강창석, 『전계서』, 68~9면.

본은 典當業을 통하여 한국 농민의 토지를 침탈하고 국토를 잠식하였다.

일본인의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고 또 일본인 소유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문란한 토지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소유권을 확정하는 실체법의 정비와 韓日 兩國人간의 토지분쟁을 해결할 절차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한국의 토지법 정비에 관여하였다.

토지법의 정비는 한국정부로서도 시급한 과제였다. 토지의 정비는 세수의 확보와 연결되는 것으로 국가재정의 기반이 되었고, 현실적으로 토지에 대한 분쟁을 막는 것은 사회질서의 확립과도 연관되었다. 그래서 1905년 <刑法大全>을 제정한 후 “民法典”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민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방대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우선 토지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기로 하여 1906년 7월 13일에 土地所關法起草委員 6명을 임명하였지만 곧 일본과 공동으로 不動產法調査會를 설치하였다.¹⁵⁶⁾ 한국정부의 부동산에 관한 입법의 원칙은 종래대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면서 문란한 토지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국정부에서는 大韓自強會의 건의에 따라 “토지건물의 매매 교환 양여 전당의 건(1906. 10. 16. 법률 제6호)”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통감부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못마땅한 것이었다. 즉 이 법의 제정으로 외국인, 특히 일본인의 토지소유금지가 다시 확인되면 앞으로 한국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금까지 사실상 소유한 한국내의 토지를 상실할 우려까지 있었다. 그리고 이는 일본인의 한국진출에 커다란 장애로 여겼다. 그래서 위 법률을 무력화시켰다. 伊藤博文의 법률고문이며 不動產法調査會 회장인 梅謙次郎은 위 법률을 공포하지 않고 10일 후에 “土地家屋證明規則(1906. 10. 26. 勅令 제65호)”을 제정하였다. 이 칙령의 내용은 대개는 위 법률과 같고 단지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한 것 정도만 차이가 있다. 이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1908. 7. 16 칙령 제46호)이 제정되었다.¹⁵⁷⁾

토지는 가장 속주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띠는 권리의 객체이다. 그래서 통감부 법령은 토지에 대해서는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한국의 법령을 적용하였다.

156) 鄭肯植, 『韓末法令體系分析』(한국법제연구원, 1991), 49면.

157) 鄭然泰, 「전계논문」, 41~59면 참조.

즉 統監府令이나 統監府告示를 통하여 한국법령을 수용하였다. 다만 부분적으로 토지관련 통감부법령을 제정하였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법령과 큰 차이가 없는 유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일제의 주도로 1910년부터 土地調査事業을 실시함에 따라 일본인과 관련하여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商事法の 영역에서는 日本과 韓國皇室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東洋拓植株式會社와 관련하여 일본상법이 적용되었다. 東洋拓植株式會社法는 일본 상법 중 회사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따라서 회사법 부분이 한국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제국주의 아래에서 법이 수용되는 사회적·민족적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절차법은 일본인의 토지침탈을 합법화시키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일본인이 실체법의 정비에 앞서 절차법의 정비를 서둘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는 梅謙次郎은 1910년경에 일본민사소송법을 모방한 “韓國民事訴訟法草案”을 기초하였다.¹⁵⁸⁾ 절차법에서도 토지법과 마찬가지로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등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는 피고가 한국인라는 점과 민사재판의 토지관할권 그리고 집행지 때문에 한국법령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刑事法

일본인은 한국에서 치외법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형사법 분야에서는 민사법과 달리 일본법이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刑法, 刑法施行法, 刑事訴訟法 등 형사법령은 그대로 적용되었다.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 중에서는 농업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려 온 부랑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하기 위해 保安規則(1906. 4. 17. 統監府令 제 10호)과 警察犯處罰令(1908. 10. 1. 統監府令 제44호)¹⁵⁹⁾ 등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사청에서는 違警罪目¹⁶⁰⁾을 제정하였다.

158) 이에 대해서는 鄭肯植, 「日帝의 慣習調査와 그 意義」, 『國譯 慣習調査報告書』(한국법제연구원, 1992), 8면 참조.

159) 현재의 輕犯罪處罰法에 해당한다.

160) 위경죄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알 수 없다. 앞서 밝혔듯이 이사청령은 지방신문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전모를 다 알 수 없다. 1907년 群山理事廳令 제8호가 처음인 것같으나 남아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統法』 중, 115~6면 참조.

刑事法에서 주목할 것은 병합 직전인 1910년 8월 23일에 統監府警務部令 제 3호 “政治에 관한 屋外多衆集會를 금하는 件”¹⁶¹⁾을 공포하여 양심적인 일본인과 한국인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였다.

刑事節次法에서는 사법권을 위임받은 후인 1909년 10월 16일 勅令 제240호 “韓國에서의 犯罪即決令”¹⁶²⁾을 제정하였다. 이는 범죄사건의 아래층을 이루는 대부분의 輕罪事件에 대해서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경찰이 바로 즉결처분하는 植民地型 警察司法을 인정하여 철저하게 訴訟經濟를 도모하였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拘留 또는 料料의 형에 처할 죄 ②한국법규로 笞刑, 拘留 또는 30원 이하의 罰金刑에 처할 죄에 대해서 통감부 警視 또는 警察 署長 分署長에게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정식재판 없이 즉시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범죄즉결령 제1조, 제2조). 그리고 구류를 선고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식재판청구기간인 3일 또는 5일간 피고인을 유치할 수 있게 하였다(동령 제6조, 제4조). 1910년 12월에는 범죄즉결례를 개정하여 ①경찰범처벌규칙을 주안으로 하는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죄 ②경미한 폭행 및 도박죄 ③ 3개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구류,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행정법규위반죄로 식민지경찰의 즉결처분권을 확장하였다(범죄즉결례 제1조).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법규위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경찰사법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널리 경찰력이 동원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⁶³⁾

3. 植民地 支配機構

식민지 지배기구의 세 축을 이루는 것은 식민지 행정기구와 경찰·군대이다. 행정기관에서 일본인의 관여는 고문 또는 참여관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161) 『統法』 하, 710면: 이는 8월 24일 內閣告示 제98호로 한국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국회도서관 편, 『韓末近代法令資料集』 IX, 584면.

162) 『統法』 하, 107면.

163) 정궁식, 「사법제도 운용의 실상」, 『역사비평』 24(역사비평사, 1994), 228면.

증가하였다. 일본인을 한국인관리로 임명된 건은 1908년에는 248건, 1909년에는 254건, 1910년 8월까지 173건이다. 이 중 1910년 3월에서 8월까지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일본인이 임명되었는데, 이는 식민지화의 인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인이 임명된 관직을 보면 1908년에는 정책을 입안하는 高等官과 判任官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행정을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1909년에는 경찰관리를 집중적으로 임용하였는데, 이는 식민지화의 추진에 따른 한국인의 저항을 억압하려는 의도였다. 1909년 1월을 기준으로 한 일본인의 임용건수는 다음 표와 같다.¹⁶⁴⁾

| | 高等官 | 判任官 | 계 |
|------|-----|-------|-------|
| 宮內府 | 12 | 15 | 27 |
| 內閣 | 5 | 8 | 13 |
| 內部 | 95 | 278 | 373 |
| 度支部 | 102 | 860 | 962 |
| 法部 | 187 | 206 | 393 |
| 學部 | 20 | 86 | 106 |
| 農商工部 | 45 | 161 | 206 |
| 계 | 466 | 1,614 | 2,080 |

식민지화에 대한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본경찰을 증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07년 한일신협약을 체결하여 일본경찰을 한국경찰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후 1907년 10월 29일에는 “警察事務執行에 관한 取極書”를 조인하여 통감부에서 한국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확보하여 한국의 경찰력을 장악하였다.

경찰은 단순히 치안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술과 출판, 위생, 호적과 이민 등 사실상 한국인의 생활 전체를 감시하였다. 1907년 당시의 경찰서의 배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 표와 같다.¹⁶⁵⁾

164) 강창석, 『전계서』, 88면.

165) 강창석, 『전계서』, 89~91면.

| 강원 | 경찰서 | 경찰분서 | 순사주재소 | 경 찰 서 명 |
|----|-----|------|-------|----------------------------------|
| 경기 | 8 | 4 | 40 | 경성중부, 동부, 남부, 서부, 북부, 수원, 개성, 인천 |
| 충북 | 1 | 3 | 15 | 충주 |
| 충남 | 1 | 4 | 40 | 공주 |
| 전북 | 2 | 3 | 28 | 전주, 군산 |
| 전남 | 2 | 4 | 30 | 광주, 목포 |
| 경남 | 3 | 3 | 36 | 진주, 마산, 부산 |
| 경북 | 1 | 5 | 36 | 대구 |
| 강원 | 1 | 4 | 22 | 춘천 |
| 함남 | 2 | 3 | 14 | 함흥, 원산 |
| 함북 | 2 | 2 | 9 | 경성, 성진 |
| 평북 | 2 | 4 | 22 | 영변, 신의주 |
| 평남 | 2 | 2 | 20 | 평양, 진남포 |
| 황해 | 1 | 2 | 25 | 해주 |
| 계 | 28 | 43 | 337 | |

식민지 지배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군대였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러일전쟁을 개시하면서 韓國駐劄軍을 편성하여 서울을 점령하고 강제로 한일공수동맹을 체결하고 임의로 군정을 실시하였다. 한국주차군은 천황에 직예하며 한국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감의 명에 따라 병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1906. 7. 31 칙령 제205호 韓國駐劄軍司令部條例). 그리고 군사경찰을 담당하는 憲兵은 통감의 지휘를 받아 行政·司法경찰업무를 담당하였다(1906. 2. 8. 勅令 제18호 韓國에 駐劄하는 憲兵의 行政警察 및 司法警察에 관한 件). 헌병경찰은 식민지 지배에서 최강의 역할을 하였다.

4. 經濟關係

경제관계에서는 독자적인 통감부법령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한국법령을 적용하였다. 이는 경제활동지가 한국이라는 점에 연유하지만, 그 당시에 일본이 한국의 상권을 장악하고 中央銀行 등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감부법령을 특별히 제정할 필요도 없었다. 주로 法定貨幣에 관한 법령, 度量衡, 銀行, 國庫 조세

관련 등에 대해서는 한국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주의할 사실은 일본이 통신기관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國庫金 출납사무를 일본이 장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과 함께 일본이 한국의 재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5. 社會關係

식민지 지배에 가장 큰 장애는 민중의 여론이다. 統監府는 反日輿論을 막기 위해 言論과 出版을 철저히 규제하였다. 1908년 4월 30일 통감부령 제12호로 전문 28조의 “新聞紙規則”과 1910년 5월 28일 통감부령 제20호로 “出版規則”을 공포하여 언론을 통제하였다.¹⁶⁶⁾ 이러한 일본의 언론에 대한 탄압은 한국정부에 1907년 법률 제1호 “新聞紙法(光武新聞紙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친일적인 신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간되었다.¹⁶⁷⁾ 그리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무기류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하여 폭발물, 총기류의 휴대를 제한하였다.

식민지 지배자가 식민통치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 중의 하나가 위생이다. 公衆接客業, 전염병, 음식·숙박, 가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규제를 하였다.

6. 産業關係

식민지 경영의 제일목표는 잉여생산물의 착취, 즉 경제적 이익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민지의 산업을 육성시키고 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통수단의 개선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자원과 식량은 일본의 자본주의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다.

166) 언론에 대한 탄압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870년대 후반 新聞紙條例를 제정하였는데, 어떤 신문은 1개월 내내 민중을 선동하였다고 기소되었고, 또 어떤 신문은 편집자가 기소되어 판결을 받기 전에 후임 편집자가 기소되어 편집자의 재판이 없는 날이 없었다고 한다. 関斗基 편, 『日本の歴史』(지식산업사, 1976), 229면 주 2) 참조.

167) 치외법권이 인정된 영국인 裨說(Bethel)이 경영하는 對韓每日申報만 반일언론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도 일본의 공작으로 상해에서 영사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산업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통감부의 독자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고 한국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農業, 山林, 漁業, 海路, 鑛業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일본의 지도하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통감부법령으로 특례를 제정할 필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림과 어업에 관한 법령은 현재 법체계의 기틀을 이루었다. 다만 無體財産權에 대해서는 美日條約에 근거하여 통감부법령이 한국 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철도는 단기간내에 건설할 수 있고 또 최대의 인원과 물량을 운송할 수 있는 교통기관이다. 일본은 식민지 경영을 위하여서는 철도의 장악이 필수적이라고 여겨 외국인이 획득한 철도부설권을 매수하거나 직접 한국정부로부터 철도부설권을 허가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서 교통의 근간인 철도를 장악하였다.

일본은 철도에 대해서는 통감부법령을 제정하여 규율하였다. 즉 1906년 6월 29일 勅令 제176호 “統監府鐵道管理局官制”와 부속법령을 제정하여 한국에서의 일본철도를 관리하였다. 그리고 철도건설을 위하여 철도부지를 지정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하여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이는 외국자본의 침투를 배제하면서 한편으로 일본인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에서 간략하게 통감부 법령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통감부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통감부 법령만이 아니라 일본법률과의 관계, 즉 일본에서의 특별법이 통감부 법령에는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법령과의 관계도 검토하여야 한다. 통감부설치 이후에는 “施政改善協議會”에서 한국에 대한 중요사항을 모두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주요 법령은 통감부에서 안을 마련하고 시정개선협의회에서 한국정부에 통고하고 그에 따라 법령이 결정되어 법으로 완성되었다. 형식은 한국법령이지만, 실질에서는 통감부 법령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은 1910년 병합하기 전에 식민지 지배를 위한 법제를 구축해둔 것이다. 식민지법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통감부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IV. 統監府 法制的 歷史的 意義

일본은 서구의 함포앞에 그들의 문호를 개방하였고 서구열강과의 조약에서 治外法權의 인정, 관세권의 제약이라는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그들

이 당한 경험을 한국에 전가하여 무력으로 개항시키면서 치외법권의 인정과 무관세무역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미숙성으로 타국을 침략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은 그 주요대상이었다. 일본은 일방적인 전쟁선포 등 무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조약체결을 통하여 한국을 침략하였으며, 철저하게 合法을 가장하였다. 그들은 조약체결과정에서 흠은 문제로 삼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였다.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1905년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이다. 이는 조약체결 절차의 중대한 흠으로 조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不存在'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근래에 역사학자들이 개항 이후 한일간의 조약, 특히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의 체결과정에서 일본이 자행한 불법성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暴露'에 불과할 뿐 논리적인 대응은 아니었다. 논리적인 대응은 한일간의 조약체결과정의 흠을 찾아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았고, 따라서 불법인 조약에 근거한 일본의 한국 지배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그리고 大日本帝國을 법적으로 계승한 日本國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1906년 서울에는 統監府, 지방중심지역에는 理事廳과 理事廳支廳이 설치되었다. 통감은 외교권만이 아니라 을사조약이 아닌 1904년에 체결된 한일의정서의 "施政改善에 대한 勸告"에 근거하여 施政改善權을 행사하여 사실상 한국내정을 장악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지방행정에 대한 理事官의 권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1907년에 체결된 '韓日新協約'에는 통감의 內政指導權을 법적으로 인정하였고, 사실상 통감이 한국을 지배하였다.

통감의 지위는 천황에 직예하여 내각과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지위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일본에서는 법률사항을 통감이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統監과 理事官은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일본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조약에 근거하여 통감이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부법령이 한국인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처음에는 통신기관에 대한 법령에서 사법, 경찰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統監府法令은 원칙적으로 일본법령이었다. 다만 屬地主義 특성상 부분적으로 한국법령과 관련을 맺었는데, 이 때에는 告示의 형태로 양국의 법령을 적용하였다. 통감부법령이 원칙적으로 일본법령이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한국

법령을 도외시할 수 없었다. 이는 민사관계 등 경제관계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두드러졌는데, 통감부에서는 한국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통감부에서 그대로 적용한 한국법령도 내용적으로는 일본법령과는 차이가 없었다. 즉 형식적으로는 한국법령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법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907년 이후에는 일본인이 한국관리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각부처에서 법령을 입안하는 자는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관련법 등 주요법령을 기초한 不動產法調査會와 法典調査局 등의 인적 구성을 보면 이러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통감부법령은 일본법령이었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통감부법령의 특수성이 부각되는 부분은 일본인단체에 대한 居留民團과 日本人會 관련 법령이었다. 이는 한국내에서 일본인을 보호하고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형사법분야에서는 치외법권의 결과로 일본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지만, 병합이 가까와짐에 따라 부분적으로 한국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사회분야에서는 반일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무기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지배국의 피지배국에 대한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위생·풍속관계 법령을 대대적으로 제정하였다.

경제적 수탈을 위해 피지배국의 제도를 존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산업분야에서는 독자적인 統監府法令이 드물었다. 다만 식민지수탈의 동맥인 철도에 대해서는 특례를 규정하였고, 특히 철도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으로 한국인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침탈하였다.

전반적으로 통감부의 법령은 단순히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한 일본의 법령이 아니라 한국을 식민지로 하기 위한 예비적 법령의 성격을 띠고 있다. 1906년 이후에도 한국은 외교권만 일본에 위탁하였을 뿐, 법적으로는 한국이 주권을 갖는 독립국이었다. 그렇지만 행정조직은 일본인이 고위층에 포진하고 있었으며, 군대는 해산되어 없고 日本憲兵이 司法·行政警察을 담당하였고, 경찰과 사법권도 일본이 장악하여 일본경찰이 한국의 치안을 담당하여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상태였다. 1906년 1월에서 1910년 8월까지의 統監府法令은 법적으로 한국을 병합하기 전에 사실상 한국을 지배한 상태의 법령이고, 이는 1910년 8월부터 1945년 8월까지의 식민지 지배법제의 기초로 된 것에 통감부법령의 의의가 있다.

현재 統監府法令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다. 이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로만 향하는 우리의 의식구조에 연유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왜곡된 한국의 근현대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일제법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일제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정한 “역사 바로 세우기”가 될 수 없다.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凡 例

1. 본 자료는 宋炳基 편, 『統監府法令資料集』 상·중·하(국회도서관, 1972)를 대상으로 하였다.
2. 統監府 法令을 내용적으로 10개로 대분류하여 동일 내용의 법령을 수록하였다.
3. 정리순서는 법령 공포일, 법령형식 및 공포호수, 법령명, 수록권·면이다.
4. 동일내용의 법령의 경우에는 공포순서에 따라 정리하였고, 제정기관을 고려하지 않았다.
5. 統監府 法令에서 한국법령을 그대로 게시한 경우에는 위 자료집에서는 『韓末近代法令資料集』을 인용하였다. 본서에서도 이에 따르고 []에 권수와 면수를 부기하였다.
6. 法令公布年은 日本의 明治年號에 따랐다. 일본과 한국 및 西紀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日 本 | 明 治 | 38 | 39 | 40 | 41 | 42 | 43 |
| 韓 國 | 光 武 | 9 | 10 | 11/隆熙 1 | 2 | 3 | 4 |
| 西 紀 | | 1905 | 1906 | 1907 | 1908 | 1909 | 1910 |

細目次

第1章 統監府 및 理事廳 / 93

I. 統監府 / 93

1.1. 一般 / 93

1.2. 業務 / 93

II. 理事廳 / 94

2.1. 管轄 / 94

2.2. 個別理事廳 및 支廳 / 94

2.3. 業務 / 95

III. 官制 · 業務 / 96

3.1. 官制 / 96

3.1.1. 官制 / 96

3.1.2. 官等 / 96

3.2. 服務 / 97

3.2.1. 給與 / 97

3.2.2. 服制 / 97

3.2.3. 賞罰 / 98

3.2.4. 支援 / 98

3.2.5. 援護 / 99

3.3. 會計 / 99

3.3.1. 官制 / 99

3.3.2. 業務 / 99

IV. 日本人 團體 / 100

4.1. 居留民團 / 100

4.1.1. 法令 / 100

4.1.2. 業務 / 101

4.1.3. 組織 / 101

4.1.3.1. 居留民團會議 / 101

4.1.3.2. 官員 / 101

4.1.4. 個別居留民團 / 101

4.2. 日本人會 / 102

4.2.1. 會則 / 102

4.2.2. 個別 日本人會 / 103

4.3. 居住規則 / 104

4.3.1. 居住規則 / 104

4.3.2. 戶口調查 등 / 106

V. 出入國 / 106

5.1. 移民 / 106

5.2. 出入國 / 106

第2章 立法 / 108

I. 公文式 / 108

1.1. 統監府 / 108

1.2. 理事廳 / 108

1.3. 其他 / 108

II. 涉外關係 / 109

第3章 司法 / 110

I. 官制 / 110

1.1. 官制 / 110

1.2. 官員 / 110

II. 裁判制度 / 111

- 2.1. 大韓帝國 / 111
- 2.2. 司法權 委託 / 112
- 2.3. 統監府 / 112
- 2.4. 領事裁判 / 113
- Ⅲ. 司法行政 / 113
 - 3.1. 司法權 委託 / 113
 - 3.2. 業務 / 113
 - 3.3. 司法共助 / 114
 - 3.4. 法曹 / 115
- 第4章 民事法 / 116
 - I. 民法 / 116
 - 1.1. 土地所有權 / 116
 - 1.2. 土地調查 / 117
 - 1.3. 外國人土地 / 117
 - II. 商事法 / 118
 - 2.1. 一般 / 118
 - 2.2. 會社 / 118
 - Ⅲ. 節次法 / 119
 - 3.1. 一般 / 119
 - 3.2. 國家 / 119
- 第5章 刑事法 / 121
 - I. 實體法 / 121
 - 1.1. 保安規則 / 121
 - 1.2. 違警罪 等 / 121
 - II. 節次法 / 121
 - 2.1. 一般 / 121
 - 2.2. 特別法 / 122
 - Ⅲ. 行刑 / 122
 - 3.1. 監獄 / 122
 - 3.1.1. 一般 / 122
 - 3.1.2. 官員 / 123
 - 3.1.2.1. 任用 / 123
 - 3.1.2.2. 給與 / 123
 - 3.1.2.3. 服務 / 124
 - 3.2. 行刑 / 124
 - 3.2.1. 一般 / 124
 - 3.2.2. 假出獄・赦免 / 125
- 第6章 警察・軍隊 / 126
 - I. 警察 / 126
 - 1.1. 官制・管轄 / 126
 - 1.2. 官員 / 126
 - 1.2.1. 官等 / 126
 - 1.2.2. 任用 / 127
 - 1.2.3. 給與 / 127
 - 1.3. 業務 / 128
 - 1.4. 警察權 委託 / 128
 - 1.4.1. 警察權 委託 / 128
 - 1.4.2. 間島派出所 / 129
 - 1.5. 司法警察 / 130

- II. 軍隊 / 130
 - 2.1. 官制 / 130
 - 2.2. 徵兵 / 131
 - 2.3. 給與 / 131
 - 2.3.1. 一般 / 131
 - 2.3.2. 支給地 / 132
 - 2.4. 憲兵 / 134
 - 2.5. 援護 / 134

第7章 財政・租稅 / 136

- I. 貨幣・度量衡 / 136
 - 1.1. 貨幣 / 136
 - 1.2. 度量衡 / 138
 - 1.3. 銀行 / 139
 - 1.3.1. 中央銀行 / 139
 - 1.3.2. 銀行業 / 139
- II. 國有財產 / 139
 - 2.1. 國庫 / 139
 - 2.1.1. 國庫金庫 / 139
 - 2.1.2. 管轄區域 / 139
 - 2.1.3. 擔當機關 / 141
 - 2.2. 國有財產 / 142
 - 2.3. 地方財政 / 142
- III. 專賣 / 143
 - 3.1. 印紙 / 143
 - 3.2. 專賣 / 144
- IV. 租稅 / 144

- 4.1. 國稅 / 144
 - 4.1.1. 一般 / 144
 - 4.1.2. 國稅徵收 / 145
- 4.2. 關稅 / 145
 - 4.2.1. 一般 / 145
 - 4.2.2. 稅關 / 146
- 4.3. 日本人課稅 / 146

第8章 社會・教育 / 147

- I. 社會 / 147
 - 1.1. 宗教・言論 / 147
 - 1.2. 安全規制 / 148
 - 1.2.1. 消防 / 148
 - 1.2.2. 銃器類 / 148
 - 1.3. 經濟活動 / 150
 - 1.3.1. 營業規制 / 150
 - 1.3.2. 公衆接客 / 151
 - 1.3.3. 市場 / 151
 - 1.4. 風俗 / 152
 - 1.5. 其他 / 152
- II. 交通 / 153
 - 2.1. 市街地 / 153
 - 2.2. 交通手段 / 153
 - 2.2.1. 陸上 / 153
 - 2.2.2. 渡船 / 154
- III. 衛生 / 154
 - 3.1. 一般 / 154
 - 3.2. 水道 / 155

- 3.3. 傳染病 / 155
- 3.4. 個人衛生 / 156
 - 3.4.1. 飲食物 / 156
 - 3.4.2. 畜產物 / 157
 - 3.4.3. 家畜 / 158
- IV. 教育 / 159
 - 4.1. 一般 / 159
 - 4.1.1. 法令 / 159
 - 4.1.2. 學事行政 / 159
 - 4.1.3. 給與 / 160
 - 4.2. 學校組合 / 160
 - 4.2.1. 法令 / 160
 - 4.2.2. 個別學校組合 / 161
 - 4.3. 民團設立學校 / 163
- 第9章 產業 / 166
 - I. 農·漁業 / 166
 - 1.1. 勸業場 / 166
 - 1.2. 開墾等 / 166
 - 1.3. 山林 / 167
 - 1.3.1. 一般 / 167
 - 1.3.2. 營林廠 / 167
 - 1.3.3. 保安林 / 167
 - 1.4. 漁業 / 168
 - II. 海運關係 / 169
 - 2.1. 船舶 / 169
 - 2.1.1. 一般 / 169
 - 2.1.2. 船舶檢查 / 169
 - 2.2. 船路·燈臺·觀測所 / 170
 - 2.2.1. 船路 / 170
 - 2.2.2. 燈臺 / 172
 - 2.2.3. 觀測所 / 173
- III. 鑛工業 / 173
 - 3.1. 鑛業 / 173
 - 3.2. 無體財產權 / 175
 - 3.2.1. 一般 / 175
 - 3.2.2. 特許 / 175
 - 3.2.2.1. 法令 / 175
 - 3.2.2.2. 官制 / 175
 - 3.2.2.3. 業務 / 176
 - 3.2.3. 意匠·實用新案 / 176
 - 3.2.4. 商標·商號·著作權 / 177
 - 3.3. 電氣 / 177
- IV. 鐵道 / 177
 - 4.1. 官制 / 177
 - 4.2. 官員 / 178
 - 4.2.1. 任用 / 178
 - 4.2.2. 給與 / 179
 - 4.3. 業務 / 179
 - 4.3.1. 會計 / 179
 - 4.3.2. 營業 / 180
 - 4.4. 鐵道建設 / 181
 - 4.4.1. 一般 / 181
 - 4.4.2. 土地收用 / 181

第10章 通信/183

- I. 綜合/183
 - 1.1. 官制/183
 - 1.2. 官員/183
 - 1.3. 業務/183
 - 1.4. 經費/184
- II. 郵便/185
 - 2.1. 官制/185
 - 2.1.1. 官制/185
 - 2.1.2. 官員/185
 - 2.2. 業務/185
 - 2.2.1. 一般/185
 - 2.2.2. 郵票/187
 - 2.2.3. 金融/187
 - 2.3. 個別郵便局/188
 - 2.4. 外國郵便/196

III. 電信/197

- 3.1. 業務/197
- 3.2. 個別電信/197
- 3.3. 外國電信/203
 - 3.3.1. 外國電報/203
 - 3.3.2. 新聞電報/204

IV. 電話/205

- 4.1. 電話規則/205
- 4.2. 業務/205
 - 4.2.1. 電話料金/205
 - 4.2.2. 地域/207
- 4.3. 個別電話/207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第1章 統監府 및 理事廳

I. 統監府

1. 1. 一般

| | | | |
|----------------|-----------|--|------|
| 明治 38. 11. 22. | 勅令 제240호 | 統監府 및 理事廳을 設置하는 件 | 상-1 |
| 明治 39. 1. 31. | 統監府告示 제2호 | 統監府 및 理事廳의 事務開始 | 상-23 |
| 明治 39. 2. 14. | 勅令 제21호 | 統監旗 制定의 件 | 상-33 |
| 明治 39. 5. 26. | 統監府令 제13호 | 統監府 및 所屬官署에서 使用하는 時間은 帝國標準 時에 의하는 件 | 상-77 |
| 明治 41. 2. 14. | 통감부령 제5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의 한국표준시 준용하는 건 | 중-16 |

1. 2. 業務

| | | | |
|----------------|------------|---|-------|
| 明治 39. 6. 26. | 法律 제57호 | 內國官憲의 管掌에 속하는 事項에 대한 統監의 職權 에 관한 件 | 상-103 |
| 明治 39. 6. 26. | 勅令 제167호 | 한국에 있어서의 내국관헌의 관장사항을 통감의 직 권에 속하게 하는 건 | 상-103 |
| 明治 42. 12. 15. | 勅令 제341호 | 明治 39年 칙령 제167호 개정 | 하-300 |
| 明治 42. 3. 30. | 통감부고시 제28호 | 統監府告報 發行에 관한 件 | 중-597 |
| 明治 42. 5. 29. | 統監府訓令 제14호 | 御影 및 勅語謄本奉置心得 | 중-688 |
| 明治 39. 6. 14. | 閣令 제3호 | 統監府 및 所屬官署執務時間에 관한 件 | 상-85 |
| 明治 39. 7. 14. | 統監府令 제22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의 집무시간 | 상-131 |
| 明治 39. 7. 14. | 統監府訓令 제14호 | 통감부집무시간에 관한 건 | 상-131 |
| 明治 40. 10. 27. | 統監府令 제40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의 집무시간 개정 | 상-468 |
| 明治 40. 10. 27. | 統監府訓令 제22호 | 통감부집무시간에 관한 건 폐지 | 상-469 |

II. 理事廳

2. 1. 管轄

| | | | |
|----------------|--------------|------------------------------|-------|
| 明治 39. 1. 19. | 통감부령 제6호 | 理事廳의 位置 및 管轄區域 | 상-21 |
| 明治 39. 8. 17. | 통감부령 제28호 |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 개정 | 상-156 |
| 明治 39. 11. 17. | 통감부령 제44호 | 이사청의 위치 · 관할구역 개정 | 상-234 |
| 明治 40. 12. 10. | 통감부령 제43호 |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 개정 | 상-476 |
| 明治 40. 12. 10. | 통감부령 제45호 | 이사청지청의 명칭 위치 및 구역 폐지 | 상-477 |
| 明治 41. 8. 22. | 인천이사청고시 제18호 | 仁川理事廳管轄 東波稷島를 群山理事廳管轄로 定하는 件 | 중-275 |

2. 2. 個別理事廳 및 支廳

| | | | |
|----------------|---------------|-----------------------------------|-------|
| 明治 40. 1. 4. | 통감부고시 제1호 | 新義州理事廳의 事務開始 | 상-289 |
| 明治 39. 8. 2. | 통감부고시 제75호 | 平壤理事廳 移轉 | 상-147 |
| 明治 41. 6. 26.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9호 | 新廳舍로 移轉하는 件 | 중-216 |
| 明治 41. 10. 8.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12호 | 신청사에서 집무하는 건 | 중-378 |
| 明治 41. 10. 25. | 평양이사청고시 제17호 | 신청사로 이전하는 건 | 중-401 |
| 明治 42. 1. 1. | 군산이사청고시 제1호 | 청사이전의 건 | 중-487 |
| 明治 42. 5. 15. | 원산이사청고시 제9호 | 假廳舍에서 執務하는 件 | 중-674 |
| 明治 42. 6. 29. | 부산이사청고시 제19호 | 釜山理事廳事務를 釜山琴平町 및 釜山警察署樓上에서 取扱하는 件 | 중-719 |
| 明治 42. 10. 11. | 성진이사청고시 제11호 | 淸津理事廳廳舍 移轉 | 하-95 |
| 明治 42. 11. 29. | 대구이사청고시 제25호 | 大邱理事廳이 新廳舍에서 事務를 取扱하는 件 | 하-267 |
| 明治 42. 12. 17. | 원산이사청고시 제27호 | 신청사에서 집무하는 건 | 하-304 |
| 明治 42. 12. 26. | 부산이사청고시 제40호 | 부산이사청사무를 신청사에서 취급하는 건 | 하-311 |
| 明治 40. 7. 28. | 통감부고시 제102호 | 신의주이사청영변지청의 사무개시 | 상-433 |
| 明治 40. 8. 1. | 통감부고시 제103호 | 성진이사청청진지청사무를 경성지청에서 취급하는 건 | 상-433 |

| | | | |
|----------------|--------------|---|-------|
| 明治 40. 9. 5. | 통감부고시 제115호 | 성진이사청청진지청의 사무개시 | 상-445 |
| 明治 39. 11. 18. | 통감부고시 제128호 | 신의주이사청 및 이사청지청의 사무를 평양 이사청 및 본청에서 취급하는 건 | 상-240 |
| 明治 42. 12. 19. | 경성이사청고시 제33호 | 경성이사청사무를 구내신축청사에서 취급하 는 건 | 하-305 |
| 明治 39. 12. 15. | 통감부고시 제142호 | 京城理事廳水原支廳의 事務開始 | 상-274 |
| 明治 39. 12. 15. | 통감부고시 제143호 | 인천이사청해주지청의 사무개시 | 상-274 |
| 明治 39. 12. 15. | 통감부고시 제144호 | 성진이사청경성지청의 사무개시 | 상-274 |
| 明治 39. 12. 19. | 통감부고시 제145호 | 원산이사청함흥지청의 사무개시 | 상-277 |
| 明治 39. 12. 25. | 통감부고시 제146호 | 군산이사청공주지청의 사무개시 | 상-278 |
| 明治 39. 12. 28. | 통감부고시 제147호 | 마산이사청진주지청의 사무개시 | 상-280 |
| 明治 40. 1. 12. | 통감부고시 제5호 | 목포이사청광주지청의 사무개시 | 상-294 |
| 明治 40. 1. 30. | 통감부고시 제17호 | 군산이사청전주지청의 사무개시 | 상-301 |
| 明治 40. 7. 2. | 통감부고시 제93호 | 京城理事廳忠州支廳·新義州理事廳寧越支廳 事務를 本廳에서 取扱하는 件 | 상-426 |

2.3. 業務

| | | | |
|----------------|------------|---|-------|
| 明治 39. 11. 18. | 통감부령 제48호 | 韓國地方施政에 관한 理事官의 執務規程 | 상-240 |
| 明治 40. 12. 26. | 통감부령 제46호 | 한국지방시정에 관한 이사관의 집무규정 폐 지 | 상-481 |
| 明治 40. 7. 3. | 통감부훈령 제16호 | 轉動의 命을 받은 理事廳理事官 支廳在勤副 理事官의 執務에 관한 件 | 상-426 |
| 明治 39. 11. 18. | 통감부령 제46호 | 理事廳支廳職務規程 | 상-237 |
| 明治 40. 12. 10. | 통감부령 제45호 | 이사청지청집무규정 폐지 | 상-477 |
| 明治 39. 9. 26. | 통감부령 제37호 | 이사청지청분장규정 | 상-186 |
| 明治 40. 12. 10. | 통감부령 제45호 | 이사청지청분장규정 폐지 | 상-477 |
| 明治 39. 11. 18. | 통감부령 제47호 | 理事廳支廳의 名稱·位置 및 區域 | 상-239 |
| 明治 39. 12. 28. | 통감부령 제56호 | 이사청지청의 명칭·위치 및 구역 개정 | 상-280 |
| 明治 40. 6. 30. | 통감부령 제27호 | 이사청지청의 각청·위치 및 구역 개정 | 상-425 |
| 明治 40. 7. 30. | 통감부령 제32호 | 이사청지청의 명칭·위치 및 구역 개정 | 상-433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明治 40. 12. 10. | 통감부령 제44호 | 이사청지청의 명칭·위치 및 구역 개정 상-477 |
| 明治 41. 7. 1. | 경성이사청고시 제13호 | 경성이사청집무시간 중-221 |
| 明治 42. 9. 22. | 경성이사청고시 제23호 | 경성이사청집무시간 하-81 |
| 明治 42. 10. 13. | 경성이사청고시 제25호 | 경성이사청집무시간 개정 하-95 |
| 明治 41. 7. 3. | 마산이사청고시 제9호 | 마산이사청집무시간 중-223 |
| 明治 42. 6. 30. | 마산이사청고시 제13호 | 마산이사청집무시간 중-720 |
| 明治 42. 6. 30. | 성진이사청고시 제9호 | 성진이사청집무시간 중-721 |

Ⅲ. 官制·業務

3. 1. 官制

3. 1. 1. 官制

| | | |
|----------------|------------|-----------------------------|
| 明治 38. 12. 20. | 칙령 제267호 |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 상-1 |
| 明治 40. 3. 5. | 칙령 제15호 |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 개정 상-317 |
| 明治 40. 3. 28. | 칙령 제65호 |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 개정 상-341 |
| 明治 40. 9. 19. | 칙령 제295호 |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 개정 상-449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41호 |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 개정 하-108 |
| 明治 40. 4. 27. | 통감부훈령 제10호 | 統監府事務分掌規程 상-371 |
| 明治 40. 10. 9. | 통감부훈령 제21호 | 통감부사무분장규정 개정 상-461 |
| 明治 42. 10. 21. | 통감부훈령 제23호 | 통감부사무분장규정 개정 하-146 |
| 明治 40. 3. 5. | 칙령 제18호 | 統監府外務總長 任用に 관한 件 상-319 |
| 明治 40. 9. 19. | 칙령 제301호 | 통감부외무총장의 임용에 관한 건 폐지 상-454 |
| 明治 39. 6. 15. | 칙령 제150호 | 韓國政府에 聘用되는 者에 관한 件 상-86 |
| 明治 40. 3. 5. | 칙령 제20호 | 한국정부에 빙용되는 자에 관한 건 개정 상-320 |

3. 1. 2. 官等

| | | |
|----------------|----------|-------------------|
| 明治 38. 12. 20. | 칙령 제269호 | 理事廳職員定員令 상-6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45호 | 이사청직원정원령 개정 하-112 |
| 明治 40. 2. 1. | 칙령 제9호 | 이사청직원정원령 개정 상-302 |
| 明治 40. 3. 28. | 칙령 제66호 | 이사청직원정원령 개정 상-341 |
| 明治 40. 9. 19. | 칙령 제296호 | 理事廳職員定員令 改正 상-451 |

| | | | |
|----------------|----------|---------------------------------------|-------|
| 明治 43. 6. 17. | 칙령 제267호 | 文武判任官等級令 | 하-587 |
| 明治 38. 12. 20. | 칙령 제272호 | 문무판임관등급표 개정 | 상-8 |
| 明治 38. 12. 20. | 칙령 제271호 | 統監府理事廳高等官官等令 | 상-7 |
| 明治 40. 3. 5. | 칙령 제16호 | 통감부 및 이사청고등관관등령 개정 | 상-318 |
| 明治 40. 9. 19. | 칙령 제297호 | 통감부 및 이사청고등관관등령 개정 | 상-451 |
| 明治 38. 12. 20. | 칙령 제276호 | 統監府 및 理事廳職員特別任用令 | 상-12 |
| 明治 40. 9. 19. | 칙령 제300호 | 통감부 및 이사청직원특별임용령 개정 | 상-453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53호 | 통감부 및 이사청직원특별임용령 개정 | 하-118 |
| 明治 42. 12. 15. | 칙령 제344호 | 통감부 및 이사청직원특별임용령 개정 | 하-302 |
| 明治 38. 12. 20. | 칙령 제275호 | 統監府總務長官 및 統監秘書官의 任用 分限 및 官 等에 관한 件 | 상-11 |
| 明治 40. 4. 9. | 칙령 제112호 | 統監府 및 所屬官署雇員 使用의 件 | 상-361 |

3.2. 服務

3.2.1. 給與

| | | | |
|----------------|----------|-------------------|-------|
| 明治 38. 12. 20. | 칙령 제273호 | 統監府 및 理事廳職員給與令 | 상-9 |
| 明治 39. 6. 25. | 칙령 제162호 | 통감부 및 이사청직원급여령 개정 | 상-96 |
| 明治 40. 3. 5. | 칙령 제17호 | 통감부 및 이사청직원급여령 개정 | 상-318 |
| 明治 40. 9. 19. | 칙령 제298호 | 통감부 및 이사청직원급여령 개정 | 상-452 |
| 明治 40. 3. 28. | 칙령 제68호 | 統監府 및 所屬官署技師官等給與令 | 상-342 |
| 明治 43. 3. 26. | 칙령 제134호 | 高等官官等俸給令 改正 | 하-411 |
| 明治 43. 6. 29. | 칙령 제298호 | 고등관관등봉급령 개정 | 하-609 |
| 明治 43. 3. 26. | 칙령 제135호 | 判任官俸給令 | 하-439 |
| 明治 43. 3. 26. | 칙령 제162호 | 統監府 및 所屬官署職員特別給與令 | 하-443 |

3.2.2. 服制

| | | | |
|---------------|-----------|--------------------|-------|
| 明治 39. 2. 2. | 칙령 제14호 | 統監府 및 所屬官署職員服制 | 상-23 |
| 明治 39. 5. 17. | 칙령 제108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직원복제개정 | 상-76 |
| 明治 40. 3. 14. | 칙령 제44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직원복제개정 | 상-326 |
| 明治 41. 3. 31. | 칙령 제74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직원복제개정 | 중-75 |
| 明治 39. 7. 19. | 통감부령 제23호 | 統監府 및 所屬官署職員 襟章 | 상-139 |
| 明治 40. 4. 13. | 통감부령 제15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직원금장 개정 | 상-362 |
| 明治 41. 9. 29. | 통감부령 제43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직원 금장 개정 | 중-357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2. 10. 21. | 통감부령 제32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직원 금장 개정 | 하-143 |
| 明治 43. 1. 8. | 통감부령 제1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직원금장 개정 | 하-338 |
| 明治 43. 3. 30. | 통감부령 제10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직원의 금장 개정 | 하-460 |
| 明治 41. 12. 1. | 칙령 제292호 | 勳章·記章·褒章의 佩用 取締에 관한 件 | 중-437 |

3.2.3. 賞 罰

| | | | |
|----------------|------------|--|-------|
| 明治 38. 12. 20. | 칙령 제279호 | 文官懲戒令 改正 | 상-14 |
| 明治 40. 2. 23. | 통감부고시 제26호 | 韓國在住者의 恩賞諸祿 受領에 관한 件 | 상-310 |
| 明治 41. 11. 9. | 칙령 제282호 | 韓國暴徒鎮壓事件에 從事하여 功勞가 있는 者에 對 明治 28年 勅令 第155號를 準用하는 件 | 중-418 |
| 明治 41. 12. 1. | 칙령 제291호 | 勳章褫奪令 | 중-435 |
| 明治 41. 10. 24. | 통감부훈령 제19호 | 勳位功給收奪의 訓令을 받았을 때 이를 犯人의 本籍 地戶籍吏에 通知하는 件 | 중-400 |
| 明治 43. 3. 5. | 통감부훈령 제1호 | 勳章 勳記 功記 年金 證書 外國勳章佩用 免許證을 沒 수하였을 때 이를 本籍地戶籍吏에 通知하는 件 | 하-370 |

3.2.4. 支 援

| | | | |
|----------------|--------------|--|-------|
| 明治 39. 11. 30. | 칙령 제306호 | 滿韓在勤文官加俸令 | 상-244 |
| 明治 42. 3. 29. | 칙령 제52호 | 만한재근문관가봉령 개정 | 중-595 |
| 明治 43. 3. 26. | 칙령 제137호 | 臺灣 滿韓 및 樺太在勤文官加俸令 | 하-442 |
| 明治 43. 3. 31. | 통감부령 제11호 | 統監府 및 所屬官署職員의 加俸額에 관한 件 廢 止 | 하-464 |
| 明治 40. 3. 29. | 통감부령 제13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직원의 가봉액에 관한 件 | 상-351 |
| 明治 40. 4. 22. | 칙령 제149호 | 統監府 및 所屬官署職員宿舍料의 件 | 상-367 |
| 明治 40. 4. 22. | 칙령 제150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직원의 봉급수당 및 숙소료 지 급에 관한 件 | 상-368 |
| 明治 39. 1. 11. | 大藏大臣承認 제150호 | 統監府 및 理事廳囑託員·雇員 기타 旅費規則 | 상-18 |
| 明治 40. 9. 19. | 칙령 제302호 | 統監府 및 理事廳巡查의 任用·給與에 관한 件· 統監府 및 理事廳警部·巡查의 旅費에 관한 件 ·統監府經費內 巡查駐在所費 渡切에 관한 件 廢止 | 상-454 |

3.2.5. 援護

| | | | |
|---------------|----------|--|-------|
| 明治 40. 5. 14. | 법률 제48호 | 統監府 및 關東都督府在勤官吏의 恩給 및 遺族扶助料에 관한 件 | 상-400 |
| 明治 40. 5. 14. | 법률 제49호 | 統監府·關東都督府·樺太在勤巡查·看守·女監取締의 退隱料 및 遺族扶助料에 관한 件 | 상-400 |
| 明治 40. 5. 14. | 칙령 제188호 | 統監府 및 關東都督府在勤官吏의 恩給 및 遺族扶助料에 관한 件을 適用하지 않은 官吏에 관한 件 | 상-401 |
| 明治 40. 5. 14. | 칙령 제189호 | 統監府·關東都督府·樺太廳在勤巡查·省守·女監取締의 退隱料 및 遺族扶助料에 관한 件을 適用하지 않은 巡查·看守·女監取締에 관한 件 | 상-402 |

3.3. 會計

3.3.1. 官制

| | | | |
|----------------|------------|------------------------------------|-------|
| 明治 40. 3. 5. | 칙령 제19호 | 統監府財政監查廳官制 | 상-319 |
| 明治 40. 5. 10. | 통감부훈령 제13호 | 統監府財政監查廳事務分掌規程 | 상-398 |
| 明治 40. 3. 5. | 칙령 제21호 | 統監府財政監查廳職員官等給與令 | 상-320 |
| 明治 40. 3. 28. | 칙령 제67호 | 통감부재정감본청직원관등급여령 개정 | 상-342 |
| 明治 40. 9. 19. | 칙령 제299호 | 통감부재정감사청관제 및 통감부재정감사청직원관등급여령 폐지 | 상-452 |
| 明治 39. 2. 13. | 통감부훈령 제1호 | 理事廳所管現金出納官吏 및 物品會計官吏의 任命에 관한 件 | 상-32 |
| 明治 41. 4. 1. | 통감부훈령 제7호 | 이사청소관 현금출납관리 및 물품회계관리의 임명에 관한 건 폐지 | 중-77 |
| 明治 39. 12. 20. | 통감부훈령 제30호 | 理事廳支廳의 歲入徵收·出納官吏에 관한 件 | 상-278 |

3.3.2. 業務

| | | | |
|---------------|------------|----------------------|-------|
| 明治 39. 4. 27. | 통감부훈령 제5호 | 統監府 및 理事廳諸收入 取扱規程 | 상-66 |
| 明治 39. 10. 9. | 통감부훈령 제25호 | 통감부 및 이사청 제수입취급규정 개정 | 상-203 |
| 明治 39. 3. 30. | 통감부훈령 제2호 | 統監府 및 理事廳物品會計規程 | 상-41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1. 6. 18. | 통감부훈령 제11호 | 이사청회계사무장정 | 중-154 |
| 明治 40. 6. 29. | 통감부훈령 제15호 | 統監府財政監査長官委任 事項 | 상-424 |
| 明治 39. 9. 27. | 통감부령 제38호 | 統監府 및 所屬官署에서 徵收하는 手數料는 收入印 紙로 納付하는 件 | 상-197 |
| 明治 39. 11. 16. | 통감부령 제43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입인 지로 납부하는 건 개정 | 상-233 |
| 明治 40. 2. 1. | 통감부령 제4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입인 지로 납부하는 건 개정 | 상-303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39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입인 지로 납부하는 건 개정 | 하-164 |
| 明治 42. 11. 13. | 통감부령 제66호 | 통감부 및 소속관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개정 | 하-252 |
| 明治 39. 1. 22. | 칙령 제7호 | 在外公館에 있어서 會計規則에 정하여진 手續을 省 略하는 件(明治 30年 勅令 第58號)를 統監府 및 理 事廳에 準用하는 件 | 상-22 |
| 明治 39. 10. 9. | 통감부훈령 제24호 | 現金前渡를 받은 官吏가 提出할 仕拂計算書送付에 관한 件 | 상-203 |

IV. 日本人 團體

4. 1. 居留民團

4. 1. 1. 法令

| | | | |
|---------------|------------|----------------------------------|-------|
| 明治 39. 7. 14. | 통감부령 제21호 | 居留民團法施行規則 | 상-123 |
| 明治 41. 5. 15. | 통감부령 제15호 | 거류민단법시행규칙 개정 | 중-124 |
| 明治 41. 7. 22. | 통감부령 제23호 | 거류민단법시행규칙 개정 | 중-228 |
| 明治 43. 6. 24. | 통감부령 제28호 | 거류민단법시행규칙 개정 | 하-597 |
| 明治 42. 2. 02. | 통감부훈령 제1호 | 居留民團法施行規則實施心得 | 중-502 |
| 明治 43. 6. 24. | 통감부훈령 제9호 | 거류민단법시행규칙실시심득 개정 | 하-598 |
| 明治 39. 7. 15. | 통감부훈령 제15호 | 거류민단법시행규칙실시심득 | 상-132 |
| 明治 41. 5. 27. | 경성이사청령 제7호 | 영등포거류민규칙 | 중-142 |
| 明治 42. 6. 2. | 경성이사청령 제5호 | 영등포거류민규칙 | 중-693 |
| 明治 43. 6. 10. | 경성이사청령 제4호 | 영등포거류민단규칙 폐지 | 하-579 |
| 明治 42. 6. 25. | 인천이사청령 제5호 | 居留民團法施行地域以外에서의 居留者의 集團에 관 한 件 | 중-715 |

4.1.2. 業務

| | | | |
|---------------|-------------|-------------------|-------|
| 明治 41. 4. 29. | 부산이사청훈령 제6호 | 居留民團役所の 執務時間 및 休日 | 중-103 |
| 明治 41. 7. 29. | 인천이사청훈령 제3호 | 居留民團事務報告例에 관한 件 | 중-234 |
| 明治 42. 2. 2. | 통감부훈령 제2호 | 居留民團의 財務에 관한 件 | 중-515 |
| 明治 41. 5. 22. | 부산이사청훈령 제8호 | 居留民會議決事項報告에 관한 件 | 중-134 |

4.1.3. 組織

4.1.3.1. 居留民團會議

| | | | |
|---------------|--------------|--|-------|
| 明治 41. 2. 15.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2호 | 新義州居留民會議員 定數에 관한 件 | 중-21 |
| 明治 42. 7. 27.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9호 | 신의주거류민단민회의원 정수 | 하-12 |
| 明治 42. 10. 8. | 경성이사청고시 제24호 | 龍山居留民會議員 定數 改正 | 하-93 |
| 明治 43. 6. 24. | 통감부고시 제131호 | 용산거류민회의원을 경성거류민회의원으로 재임케 하는 件 | 하-598 |
| 明治 43. 6. 24. | 통감부령 제29호 | 居留民團의 合併으로 인하여 失職될 居留民會議員에 대한 措處에 관한 件 | 하-598 |

4.1.3.2. 官員

| | | | |
|---------------|-------------|------------------------------|-------|
| 明治 41. 2. 15. | 신의주이사청령 제1호 | 新義州居留民團吏員服務規律 | 중-16 |
| 明治 41. 2. 15. | 신의주이사청령 제3호 | 新義州居留民團會計役賠償責任 및 身元保證에 관한 規程 | 중-18 |
| 明治 41. 2. 15. | 신의주이사청령 제2호 | 新義州居留民團吏員事務引繼規程 | 중-17 |
| 明治 41. 4. 27. | 인천이사청훈령 제2호 | 仁川居留民團役所の 執務時間 및 休曜日 | 중-98 |
| 明治 41. 4. 28. | 군산이사청훈령 제1호 | 群山居留民團役所執務時間 및 休曜日 | 중-103 |
| 明治 41. 4. 28. | 목포이사청훈령 제1호 | 목포거류민단집무시간 및 휴가일 | 중-103 |

4.1.4. 個別居留民團

| | | | |
|---------------|------------|-----------------------|-------|
| 明治 39. 7. 29. | 통감부훈령 제17호 | 居留民團에 관한 名稱 | 상-142 |
| 明治 39. 8. 2. | 통감부고시 제76호 | 경성·인천·부산·진남포·군산거류민단 설 |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明治 39. 8. 11. | 통감부고시 제81호 | 립 상-147 |
| 明治 39. 8. 21. | 통감부고시 제86호 | 평양·목포거류민단 설립 상-153 |
| 明治 39. 8. 26. | 통감부고시 제90호 | 원산거류민단 설립 상-158 |
| 明治 39. 10. 25. | 통감부고시 제118호 | 마산거류민단 설립 상-160 |
| 明治 40. 9. 5. | 통감부고시 제116호 | 대구거류민단 설립 상-215 |
| 明治 40. 9. 5. | 통감부고시 제117호 | 용산거류민단 설립 상-445 |
| 明治 41. 2. 8. | 통감부고시 제8호 | 경성거류민단지구 개정 상-445 |
| 明治 41. 2. 22. | 통감부고시 제16호 | 신의주거류민단 설립 중-15 |
| 明治 41. 2. 26. | 부산이사청훈령 제1호 | 부산거류민단 지구변경 중-34 |
| 明治 41. 3. 18. | 대구이사청령 제1호 | 居留民團財産調에 관한 件 중-45 |
| 明治 41. 6. 19. | 부산이사청고시 제10호 | 帝國居留民團體規則 廢止 중-67 |
| 明治 41. 7. 29. | 인천이사청훈령 제4호 | 釜山日本帝國專管居留地の 永代借地에 관한 建 中-211 |
| 明治 41. 8. 22. | 부산이사청령 제4호 | 仁川居留民團役所の 豫備費支出에 관한 件 中-234 |
| 明治 42. 2. 3. | 부산이사청령 제1호 | 釜山日本專管居留地の 附屬地에 관한 件 中-272 |
| 明治 42. 5. 21. | 부산이사청령 제3호 | 부산일본제국전관거류지의 부속지에 관한 建 中-517 |
| 明治 42. 5. 27. | 부산이사청고시 제13호 | 釜山居留民團區域内の 町名·區域을 變更하 는 件 中-675 |
| 明治 42. 6. 30. | 통감부고시 제60호 | 釜山日本帝國專管居留地內 市街道路區劃追 加 中-686 |
| 明治 43. 4. 16. | 통감부고시 제51호 | 馬山日本專管居留地取極書 廢止 中-720 |
| 明治 43. 6. 24. | 통감부고시 제130호 | 仁川 釜山 및 元山淸國居留地規程 하-504 |
| | | 용산거류민단을 경성거류민단에 합병하는 建 하-598 |

4.2 日本人會

4.2.1. 會 則

| | | |
|---------------|------------|-------------------|
| 明治 41. 2. 15. | 청진이사청령 제4호 | 日本人會規則 中-19 |
| 明治 41. 3. 7. | 목포이사청령 제1호 | 日本人會設置規則 中-54 |
| 明治 41. 9. 2. | 대구이사청령 제3호 | 일본인회설치규칙 中-291 |
| 明治 41. 9. 29. | 대구이사청령 제4호 | 일본인회설치규칙 개정 中-358 |

| | | | |
|----------------|--------------|----------------------|-------|
| 明治 41. 10. 20. | 부산이사청령 제7호 | 日本人會令 | 중-388 |
| 明治 41. 10. 21. | 부산이사청고시 제19호 | 日本會會則準則 | 중-392 |
| 明治 41. 11. 26. | 군산이사청령 제4호 | 일본인회설치규칙 | 중-430 |
| 明治 42. 2. 20. | 목포이사청령 제1호 | 일본인회설치규칙 개정 | 중-527 |
| 明治 42. 3. 26. | 평양이사청령 제1호 | 일본인회규칙 | 중-589 |
| 明治 42. 9. 5. | 청진이사청령 제12호 | 일본인회규칙 | 하-57 |
| 明治 42. 12. 17. | 원산이사청령 제8호 | 일본인회설치규칙 | 하-302 |
| 明治 42. 12. 28. | 성진이사청고시 제19호 | 일본인회회칙준칙 | 하-323 |
| 明治 42. 12. 28. | 성진이사청령 제6호 | 일본인회규칙 | 하-317 |
| 明治 42. 12. 28. | 성진이사청령 제7호 | 日本人會評議員選舉規則 | 하-321 |
| 明治 43. 3. 8. | 성진이사청령 제1호 | 明治 39年 성진이사청령 제7호 개정 | 하-371 |
| 明治 41. 4. 21. | 청진이사청령 제6호 | 일본인회평의원선거규칙 | 중-94 |

4. 2. 2. 個別 日本人會

| | | | |
|----------------|--------------|-----------------|-------|
| 明治 41. 12. 9. | 부산이사청고시 제22호 | 동래일본인회회칙 | 중-442 |
| 明治 41. 12. 27. | 부산이사청고시 제25호 | 울산일본인회회칙 | 중-466 |
| 明治 41. 12. 27. | 부산이사청고시 제26호 | 김해일본인회회칙 | 중-467 |
| 明治 41. 12. 27. | 부산이사청고시 제27호 | 밀양일본인회회칙 | 중-467 |
| 明治 41. 12. 27. | 부산이사청고시 제28호 | 울산만일본인회회칙 | 중-468 |
| 明治 41. 12. 27. | 부산이사청고시 제29호 | 삼랑진일본인회회칙 | 중-469 |
| 明治 41. 12. 27. | 부산이사청고시 제30호 | 낙동일본인회회칙 | 중-469 |
| 明治 42. 1. 16. | 부산이사청고시 제2호 | 울릉도일본인회회칙 | 중-495 |
| 明治 42. 2. 12. | 부산이사청고시 제4호 | 하단일본인회회칙 | 중-526 |
| 明治 42. 2. 13. | 부산이사청고시 제3호 | 구포일본인회회칙 | 중-526 |
| 明治 42. 2. 25. | 부산이사청령 제5호 | 다대포일본인회회칙 | 중-529 |
| 明治 42. 3. 26. | 부산이사청령 제8호 | 영일일본인회회칙 | 중-595 |
| 明治 42. 6. 17. | 부산이사청고시 제17호 | 물금일본인회회칙 | 중-699 |
| 明治 42. 7. 5. | 목포이사청고시 제13호 | 거문도일본인회 설립인가 | 하-2 |
| 明治 42. 11. 13. | 부산이사청고시 제31호 | 낙동일본인회회칙변경인가 | 하-254 |
| 明治 42. 11. 28. | 부산이사청고시 제34호 | 진영일본인회회칙 인가 | 하-266 |
| 明治 42. 12. 14. | 부산이사청고시 제35호 | 울산항일본인회회칙 변경 인가 | 하-298 |
| 明治 42. 12. 14. | 부산이사청고시 제36호 | 방어진일본인회회칙 인가 | 하-298 |
| 明治 43. 3. 31. | 평양이사청고시 제9호 | 황주일본인회폐지 인가 | 하-465 |

| | | | |
|--------------|--------------|---------------|-------|
| 明治 43. 5. 2. | 평양이사청고시 제12호 | 안주일본인회 폐지 인가 | 하-546 |
| 明治 43. 5. 5. | 평양이사청고시 제15호 | 신안주일본인회 폐지 인가 | 하-547 |
| 明治 43. 5. 7. | 평양이사청고시 제16호 | 겸이포일본인회폐지 인가 | 하-551 |
| 明治 43. 6. 7. | 평양이사청고시 제24호 | 사리원일본인회폐지 인가 | 하-578 |

4.3. 居住規則

4.3.1. 居住規則

| | | | |
|----------------|---------------|---|-------|
| 明治 41. 1. 18. | 청진이사청령 제2호 | 居住規則 | 중-8 |
| 明治 41. 10. 10. | 통감부령 제45호 | 거류규칙 | 중-379 |
| 明治 41. 5. 11. | 목포이사청령 제4호 | 在留願届에 관한 件 | 중-121 |
| 明治 41. 10. 14. | 경성이사청고시 제26호 | 居留規則에 의한 届書式 | 중-380 |
| 明治 41. 10. 14. | 경성이사청령 제10호 | 居留規則施行地區에 관한 件 | 중-380 |
| 明治 41. 10. 14. | 경성이사청諭達 제8호 | 居留規則 遵守에 관한 件 | 중-382 |
| 明治 41. 10. 15. | 군산이사청고시 제20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 중-384 |
| 明治 41. 10. 15. | 마산이사청고시 제21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 중-384 |
| 明治 41. 10. 15. | 마산이사청령 제4호 | 居留規則施行地區에 관한 件 | 중-382 |
| 明治 41. 10. 15. | 부산이사청고시 제18호 | 居留規則에 의한 届書式 | 중-383 |
| 明治 41. 10. 15.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13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 중-386 |
| 明治 41. 10. 15. | 인천이사청고시 제23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 중-385 |
| 明治 41. 10. 15. | 인천이사청령 제6호 | 居留規則施行地區에 관한 件 | 중-382 |
| 明治 41. 10. 15.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6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 중-385 |
| 明治 41. 10. 15. | 평양이사청고시 제16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 중-385 |
| 明治 41. 10. 15. | 평양이사청령 제5호 | 거류지규칙 시행지를 겸이포·안주·신안주·황주·사리원·신막을 지정하는 건 | 중-383 |
| 明治 41. 10. 16. | 대구이사청고시 제19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 중-388 |
| 明治 41. 10. 16. | 대구이사청령 제6호 | 帝國臣民居留法 轉居届出規則 廢止 | 중-387 |
| 明治 41. 10. 16. | 대구이사청령 제7호 | 거류규칙시행지구에 관한 건 | 중-387 |
| 明治 41. 10. 20. | 군산이사청고시 제21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개정 | 중-390 |
| 明治 41. 10. 21. | 원산이사청고시 제16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 중-396 |
| 明治 41. 10. 21. | 원산이사청령 제8호 | 거류규칙시행지구에 관한 건 | 중-390 |
| 明治 41. 10. 23. | 마산이사청고시 제23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에 관한 건 | 중-399 |

| | | |
|----------------|---------------|---|
| 明治 41. 10. 24. | 경성이사청령 제11호 | 거류지규칙 시행지구에 관한 건 개정 중-399 |
| 明治 41. 10. 24. | 대구이사청고시 제20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에 관한 건 중-400 |
| 明治 41. 10. 25. | 인천이사청고시 제24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에 관한 건 중-401 |
| 明治 41. 10. 25. | 청진이사청령 제13호 | 거류규칙시행지구에 관한 건 중-401 |
| 明治 41. 10. 26.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7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에 관한 건 중-402 |
| 明治 41. 10. 26. | 평양이사청고시 제18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개정 중-402 |
| 明治 41. 10. 26. | 평양이사청령 제6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에 관한 건 중-402 |
| 明治 41. 10. 27. | 군산이사청고시 제22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에 관한 건 중-403 |
| 明治 41. 10. 29. | 청진이사청고시 제15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중-411 |
| 明治 41. 10. 30. | 청진이사청고시 제17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에 관한 건 중-411 |
| 明治 41. 10. 31. | 원산이사청령 제9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개정 중-412 |
| 明治 41. 11. 1. | 성진이사청고시 제5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중-415 |
| 明治 41. 11. 1. | 성진이사청령 제1호 | 거류규칙시행지에 관한 건 중-415 |
| 明治 41. 11. 6. | 목포이사청령 제7호 | 居留規則施行區域 및 該規則에 의한 届出手 續 중-417 |
| 明治 41. 11. 9. | 부산이사청령 제8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에 관한 건 중-419 |
| 明治 41. 11. 12. | 대구이사청령 제13호 | 管內在留帝國臣民業務行爲에 관한 願届手續 改正 중-420 |
| 明治 41. 12. 29. | 부산이사청령 제12호 | 釜山領事館法令(實印届出의 件·願伺届現紙 의 件·貿易銀行海運業者届出의 件·人民間 行里程再擴의 件·朝鮮國內地旅行取締規則 ·各銀行商會支配人届出方·外國人家屋賃 與者願出의 件·商業 또는 職業을 營하는 者 의 鑑札下付方·營業鑑札을 總代役場에서 取扱하게 하는 件·警察署를 經由한 諸願届 出의 件·日傭渡世營業規則·桶工 및 鍛冶 工業營業區域의 件·鍛冶職營業者의 住居區 域·船舶製造 또는 買入의 時 届出方·赤崎 石材採取規則·韓錢買賣仲立人營業規則에 의한 鑑札下付의 件·鑄物工營業場所區域의 件·外國人雇入常宿者의 届出方·居留地衛 生會規則·諸願届字體의 件·釜山港實業調 査會規則·船舶檢疫規則·檢疫部規則·爆 發物 및 有毒物使用取締規則) 廢止 중-472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2. 3. 11. | 부산이사청령 제2호 | 거류규칙 시행지구에 관한 건 | 중-550 |
| 明治 43. 6. 1. | 부산이사청령 제6호 | 거류규칙시행지역에 관한 건 개정 | 하-561 |
| 明治 43. 6. 3. | 평양이사청고시 제23호 | 거류규칙에 의한 계서식 개정 | 하-562 |
| 明治 43. 6. 3. | 평양이사청령 제2호 | 거류지규칙 시행지로 겸이포·안주·신안주·황주·사리원·신막을 지정하는 건 개정 | 하-562 |

4.3.2. 戶口調査 등

| | | | |
|----------------|--------------|--|-------|
| 明治 41. 12. 29. | 부산이사청령 제11호 | 明治 20年 12月達 第20號 出産届規則·布第21號 死亡届規則·32年 6月 告 第11號 戶籍法에 의한 届出方の 件 改正 | 중-471 |
| 明治 41. 12. 29. | 부산이사청령 제15호 | 戶番號規則 改正 | 중-476 |
| 明治 42. 5. 25. | 부산이사청령 제5호 | 호번호규칙 개정 | 중-686 |
| 明治 43. 6. 22. | 진남포이사청유고 제3호 | 戶口調査에 관한 件 | 하-596 |
| 明治 41. 5. 22. | 원산이사청고시 제10호 | 元山日本專管居留地 地番號 改正 | 중-134 |

V. 出入國

5.1. 移民

| | | | |
|---------------|------------|-------------------------------|--------------------|
| 明治 39. 7. 13. | 통감부고시 제68호 | 한국법률 제2호 移民保護法을 告示하는 件 | 상-122 [IV 588~590] |
| 明治 41. 6. 2. | 통감부고시 제82호 | 한국법률 제7호 이민보호법 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 중-145 [VI 373~4] |
| 明治 39. 7. 29. | 통감부고시 제74호 | 농상공부령 제44호 移民保護法施行細則을 告示하는 件 | 상-143 [VI 43~7] |
| 明治 41. 6. 2. | 통감부고시 제83호 | 내부령 제8호 이민보호법시행세칙 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 중-146 [VI 374~5] |

5.2. 出入國

| | | | |
|---------------|-----------|-------------|-------|
| 明治 39. 4. 27. | 통감부훈령 제6호 | 護照下付 및 査證心得 | 상-67 |
| 明治 39. 9. 8. | 통감부령 제34호 | 韓國人外國旅券規則 | 상-168 |
| 明治 40. 3. 15. | 외무성령 제1호 | 外國旅券規則 | 상-328 |

| | | | |
|---------------|--------------|--|-------|
| 明治 40. 4. 20. | 통감부령 제16호 | 외국여권규칙 | 상-363 |
| 明治 40. 4. 1. | 外務省고시 제7호 | 外國旅券規則에 의하여 同一旅券으로 數次 往復할 수 있는 地域 指定에 관한 件 | 상-360 |
| 明治 40. 5. 2. | 통감부고시 제65호 | 외국여권규칙에 의하여 동일여권으로 수차 왕복할 수 있는 지역 | 상-380 |
| 明治 42. 5. 15. | 통감부훈령 제11호 | 外國旅券規則取扱手續 改正 | 중-669 |
| 明治 43. 3. 9. | 경성이사청고시 제7호 | 「러시아」入國査證에 관한 件 | 하-373 |
| 明治 43. 3. 16. | 원산이사청고시 제6호 | 「러시아」입국사증에 관한 件 | 하-388 |
| 明治 43. 3. 19. | 부산이사청고시 제8호 | 「러시아」입국사증 취급에 관한 件 | 하-400 |
| 明治 43. 3. 24. | 목포이사청고시 제10호 | 「러시아」입국사증 취급에 관한 件 | 하-401 |
| 明治 43. 3. 24. | 원산이사청고시 제7호 | 薪島韓人部落에의 船舶擊泊 및 上陸의 件을 告示하는 件 | 하-400 |
| 明治 42. 11. 3. | 성진이사청고시 제15호 |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廢止, 龍井村日本領事館·局子街日本領事館分館 開館件을 告示하는 件 | 하-250 |
| 明治 41. 1. 10. | 군산이사청고시 제1호 | 清津港 開放에 관한 韓國勅令을 告示하는 件 | 중-2 |
| 明治 41. 1. 10. | 성진이사청고시 제1호 | 청진항 개방에 관한 韓國勅령을 고시하는 件 | 중-3 |
| 明治 41. 1. 10. | 청진이사청고사 제2호 | 청진항 개방에 관한 韓國勅령을 고시하는 件 | 중-3 |

第2章 立法

I. 公文式

1. 1. 統監府

| | | | |
|---------------|-----------|------------|-------|
| 明治 39. 1. 19. | 통감부령 제4호 | 統監府令公文式 | 상-19 |
| 明治 39. 8. 30. | 통감부령 제31호 | 통감부령공포식 개정 | 상-161 |
| 明治 42. 3. 31. | 통감부령 제4호 | 통감부령공문식 개정 | 중-597 |

1. 2. 理事廳

| | | | |
|----------------|---------------|--------------|-------|
| 明治 39. 1. 19. | 통감부령 제5호 | 理事廳令公文式 | 상-20 |
| 明治 41. 1. 18. | 청진이사청령 제1호 | 청진이사청령공포식 | 중-8 |
| 明治 41. 2. 1. | 군산이사청고시 제3호 | 군산이사청령공포식 | 중-14 |
| 明治 41. 4. 8. | 원산이사청고시 제8호 | 원산이사청령호수 정정 | 중-81 |
| 明治 41. 4. 15. | 군산이사청고시 제8호 | 군산이사청령공포식 | 중-91 |
| 明治 41. 7. 11. | 부산이사청고시 제12호 | 부산이사청령공포식 | 중-225 |
| 明治 41. 8. 7. | 청진이사청령 제9호 | 청진이사청령공문식 개정 | 중-241 |
| 明治 41. 10. 5. | 마산이사청령 제3호 | 마산이사청령공포식 | 중-367 |
| 明治 42. 8. 7. | 평양이사청고시 제24호 | 평양이사청령공포식 | 하-16 |
| 明治 42. 12. 1. | 원산이사청고시 제26호 | 원산이사청령공포식 | 하-268 |
| 明治 42. 12. 18.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20호 | 신의주이사청령공포식 | 하-305 |

1. 3. 其他

| | | | |
|---------------|------------|------------------------------|-------|
| 明治 41. 4. 28. | 경성이사청령 제3호 | 京城領事館令 · 達, 京城理事廳令의 廢止訂正 | 중-100 |
| 明治 41. 6. 6. | 인천이사청령 제3호 | 인천영사관포달 · 달폐지에 관한 건 | 중-146 |
| 明治 43. 6. 29. | 칙령 제297호 | 統監府警務總長 및 警務部長이 發하는 命令에 관한 件 | 하-609 |
| 明治 43. 7. 9. | 통감부령 제36호 | 警務總監部令 및 警務部令 公文式 | 하-620 |

| | | | | | |
|--------|----|-----|---------------|---------------|-------|
| 明治 43. | 8. | 1. | 경상북도警務部고시 제1호 | 慶尙北道 警務部令 公布式 | 하-658 |
| 明治 43. | 8. | 9. | 경상남도경무부고시 제1호 | 경상남도 경무부령 공포식 | 하-696 |
| 明治 43. | 8. | 10. | 평안남도경무부고시 제1호 | 평안남도 경무부령 공포식 | 하-697 |
| 明治 43. | 8. | 15. | 충청북도경무부령 제1호 | 충청북도 경무부령 공포식 | 하-704 |
| 明治 43. | 8. | 19. | 경기도경무부고시 제2호 | 경기도 경무부령 공포식 | 하-704 |

II. 涉外關係

| | | | | | |
|--------|-----|-----|-------------|-------------------------------|-------|
| 明治 39. | 6. | 25. | 칙령 제161호 | 韓國에서 適用하는 法律命令의 施行期限에 관한 件 | 상-96 |
| 明治 40. | 2. | 13. | 칙령 제11호 | 韓國 및 關東州에 適用할 法律·命令施行時期에 관한 件 | 상-307 |
| 明治 43. | 4. | 5. | 칙령 제196호 | 韓國人에게 日本法規를 適用할 경우에 관한 件 | 하-475 |
| 明治 41. | 12. | 29. | 부산이사청령 제10호 | 法令의 施行地域 및 願屆經由에 관한 件 | 중-470 |

第3章 司法

I. 官制

1.1. 官制

| | | | |
|----------------|------------|------------|-------|
| 明治 39. 6. 25. | 칙령 제164호 | 統監府法務院官制 | 상-98 |
| 明治 39. 8. 10. | 통감부훈령 제19호 | 統監府法務院分課規程 | 상-152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42호 | 統監府司法廳官制 | 하-109 |
| 明治 42. 10. 21. | 통감부훈령 제24호 | 統監府司法廳分課規程 | 하-146 |

1.2. 官員

| | | | |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54호 | 統監府司法廳職員特別任用令 | 하-118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57호 | 통감부재판소서기장 및 통감부재판소서기특별임용령 | 하-121 |
| 明治 39. 6. 25. | 칙령 제165호 | 統監府法務院職員官等給與令 | 상-99 |
| 明治 41. 9. 24. | 칙령 제232호 | 통감부법무원직원관등급여령 개정 | 중-351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46호 | 統監府司法廳職員官等給與令 | 하-112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48호 | 統監府裁判所書記長 統監府裁判所通譯官 統監府裁判所書記 統監府裁判所通譯生 및 統監府監獄職員官等給與令 | 하-115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50호 | 統監府司法廳 統監府裁判所 및 統監府監獄의 職員手當에 관한 件 | 하-116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59호 | 統監府裁判所 職員이 된 韓國人의 任用 分限 및 給與에 관한 件 | 하-122 |
| 明治 43. 3. 26. | 칙령 제164호 | 통감부재판소 직원이 된 한국인의 임용 분한 및 급여에 관한 건 개정 | 하-445 |
| 明治 43. 3. 26. | 칙령 제178호 | 통감부재판소 직원이 된 한국인의 임용 분한 및 급여에 관한 건 개정 | 하-447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60호 | 臺灣總督府 · 臺灣總督府法院 · 關東都督府의 巡查 및 判任官待遇職員 등의 懲戒에 관한 件 改正 | 하-123 |

- 明治 40. 9. 4. 칙령 제293호 대만총독부·통감부 및 이사청·관동도독부의 순사 및 관임대우감옥직원 등의 징계에 관한 건 상-444
- 明治 42. 11. 1. 통감부령 제63호 統監府司法廳·統監府裁判所 및 統監府監獄囑託職員·雇員·傭人旅費規則 하-246

II. 裁判制度

2. 1. 大韓帝國

- 明治 41. 8. 1. 통감부고시 제114호 韓國法律 第8號 裁判所構成法, 第9號 裁判所構成法 施行法, 第10號 裁判所設置法, 法部令 第11號 裁判所開廳期日에 관한 件, 法律 第17號 裁判所構成法 改正件을 告示하는 件 중-239 [VI 160~9; VII 71~2, 77~8]
- 明治 41. 11. 5. 통감부고시 제178호 韓國法律 第27號 裁判所設置法 改正件을 告示하는 件 중-416 [VII 466~7]
- 明治 41. 12. 15. 통감부고시 제202호 韓國法律 第30號, 재판소설치법 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중-449 [VII 531]
- 明治 42. 3. 30. 통감부고시 제27호 韓國法律 第9號 재판소설치법 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중-596 [VIII 127~8]
- 明治 42. 5. 1. 통감부고시 제37호 韓國法律 第16號 재판소설치법 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중-652 [VIII 221]
- 明治 42. 5. 1. 통감부고시 제38호 韓國法律 第17號 재판소설치법 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중-653 [VIII 221~2]
- 明治 41. 8. 1. 통감부고시 제115호 韓國法律 第18號 未開廳區裁判所事務處理에 관한 件, 法部令 第13號 未開廳區裁判所事務處理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중-239 [VII 78, 109~112]
- 明治 41. 11. 5. 통감부고시 제179호 법부령 제16호 미개청구재판소사무처리에 관한 건 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중-416 [VII 475]
- 明治 41. 11. 5. 통감부고시 제180호 법부령 제17호 미개청구재판소사무처리에 관한 건 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중-416 [VII 475~8]
- 明治 41. 11. 6. 통감부고시 제181호 法部令 第18號 地方裁判所支部設置件을 告示하는 件 중-417 [VII 478~9]

2.2. 司法權 委託

- 明治 42. 7. 24. 통감부고시 제66호 韓國의 司法 및 監獄事務를 日本國政府에 委任하는 件에 관한 覺書 하-10
- 明治 42. 11. 6. 통감부고시 제115호 韓國法律 第28號 裁判所構成法 廢止件, 第29號 裁判所構成法施行法 廢止件, 第30號 裁判所設置法 廢止件, 第32號 未開廳區裁判所事務處理에 관한 件 廢止件, 勅令 第85號 法部官制 廢止件을 告示하는 件 하-250 [Ⅷ 546~7, 551]
- 明治 42. 11. 1. 통감부훈령 제39호 統監府法務院·理事廳·韓國裁判所·郡守로부터의 司法事務 및 이에 관한 文書 金錢 物件 引繼에 관한 件 하-247
- 明治 42. 11. 1. 통감부훈령 제40호 理事廳·韓國監獄으로부터 監獄事務 및 이에 관한 文書 金錢 物件 引繼에 관한 件 하-248

2.3. 統監府

- 明治 42. 10. 16. 칙령 제236호 統監府裁判所令 하-97
- 明治 42. 10. 16. 칙령 제237호 統監府裁判所司法事務取扱令 하-102
- 明治 42. 10. 21. 통감부고시 제106호 統監府裁判所 開廳 하-150
- 明治 42. 10. 21. 통감부령 제28호 統監府裁判所의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表 하-126
- 明治 42. 10. 21. 통감부령 제29호 統監府地方裁判所支部管轄表 하-129
- 明治 42. 10. 21. 통감부령 제30호 統監府未開廳區裁判所事務取扱에 관한 件 하-141
- 明治 43. 8. 27. 통감부령 제49호 明治 42年 통감부령 제30호에 의하여 수리한 재판 사무의 취급에 관한 건 하-712
- 明治 43. 6. 4. 통감부고시 제109호 平壤地方裁判所 鎭南浦支部·釜山地方裁判所 馬山支部·光州地方裁判所 群山支部 開廳 하-577
- 明治 43. 6. 4. 통감부령 제21호 統監府裁判所의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表 개정 하-563
- 明治 43. 6. 4. 통감부령 제22호 統監府地方裁判所支部管轄表 개정 하-564
- 明治 43. 8. 20. 통감부고시 제179호 統監府未開廳區裁判所 事務取扱에 관한 건 개정 하-707
- 明治 43. 8. 27. 통감부고시 제196호 瑞山區裁判所 開廳 하-717

2.4. 領事裁判

- 明治 43. 4. 5. 법률 제40호 間島에 있어서의 領事館의 裁判에 관한 件 하-472
- 明治 43. 4. 16. 통감부령 제14호 間島에 있어서의 領事館의 裁判에 관한 件 (法律 第40號)에 의하여 管轄權을 갖는 統監府裁判所를 정하는 件 하-501

III. 司法行政

3.1. 司法權 委託

- 明治 39. 6. 25. 법률 제56호 韓國에 있어서의 裁判事務에 관한 件 상-94
- 明治 42. 10. 16. 칙령 제235호 韓國에 있어서의 재판사무에 관한 건 폐지 하-96
- 明治 39. 6. 25. 칙령 제160호 韓國에 있어서의 재판사무에 관한 건 시행·기일의 건 상-95
- 明治 39. 6. 25. 칙령 제166호 韓國에 있어서의 裁判事務取扱規則 상-100
- 明治 42. 10. 16. 칙령 제238호 韓國人에 關係하는 司法에 관한 件 하-105
- 明治 42. 10. 21. 통감부훈령 제20호 統監府司法廳 및 統監府裁判所 開廳에 즈음하여 司法事務引繼에 관한 件 하-138
- 明治 42. 10. 21. 통감부훈령 제21호 통감부재판소개청에 즈음하여 사법사무인계에 관한 건 하-139

3.2. 業務

- 明治 42. 10. 28. 통감부훈령 제29호 司法警察官의 外國人에 관한 執務心得改正 하-180
- 明治 42. 10. 28. 통감부훈령 제28호 區裁判所在地在 勤統監府警視 및 警部の 區裁判所 檢査職務取扱에 관한 件 하-179
- 明治 42. 10. 29. 통감부령 제52호 韓國人 統監府裁判所 및 統監府監獄官吏·奏任 및 判任官待遇者·雇員 및 傭人の 韓國內旅費는 內國 旅費規則을 準用하는 件 하-185
- 明治 39. 9. 20. 통감부령 제35호 判決의 正本·謄本 및 抄本의 手數料에 관한 件 상-173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41호 | 判決의 正本·謄本 및 抄本의 手數料에 관한 件 廢止 하-165 |
| 明治 39. 10. 9. | 통감부훈령 제23호 | 統監府 및 理事廳物品會計規程을 統監府法務院에 準 用하는 件 상-202 |
| 明治 41. 6. 28. | 통감부훈령 제12호 |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統監府法務院會計事務에 관 한 手續은 理事廳會計事務章程에 의하는 件 중- 217 |
| 明治 42. 2. 27. | 통감부훈령 제3호 | 統監府法務院 및 理事廳司法事務에 관한 書類保存規 程 중-530 |
| 明治 42. 3. 23. | 통감부훈령 제4호 | 理事廳에 있어서의 裁判所書記事務取扱規則 중- 552 |
| 明治 42. 11. 6. | 통감부고시 제116호 | 度支部告示 第17號 法部 所管 會計事務取扱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하-251 [Ⅷ 558~9] |
| 明治 43. 4. 9. | 통감부훈령 제4호 | 民事月報·刑事月報 및 檢査搜查事件月報樣式·報 告例 하-482 |

3. 3. 司法共助

| | | |
|---------------|----------|--|
| 明治 40. 9. 4. | 법률 제52호 | 裁判所·臺灣總督府法院·統監府法院 또는 理事廳 및 關東都督府法院間의 共助에 관한 件 상-442 |
| 明治 43. 4. 5. | 법률 제41호 | 재판소·대만총독부법원·통감부법원 또는 이사청 및 관동도독부법원간의 公조에 관한 件 개정 하-473 |
| 明治 40. 9. 4. | 칙령 제292호 | 재판소·대만총독부법원·통감부법원 또는 이사청 및 관동도독부법원간의 公조에 관한 費用 및 수인 ·형사피고인 압송에 관한 件 상-443 |
| 明治 43. 4. 5. | 칙령 제197호 | 재판소·대만총독부법원·통감부법원 또는 이사청 및 관동도독부법원간의 公조에 관한 費用 및 수인 ·피고인 압송에 관한 件 개정 하-475 |
| 明治 42. 4. 13. | 법률 제36호 | 裁判所·臺灣總督府法院·統監府法務院 및 理事廳 의 判決의 執行에 관한 件 중-645 |
| 明治 43. 4. 5. | 법률 제42호 | 재판소·대만총독부법원·통감부법무원 및 이사청 의 판결의 집행에 관한 件 개정 하-474 |
| 明治 43. 1. 11. | 칙령 제1호 | 特赦 및 減刑에 관한 件을 韓國·臺灣·關東洲 및 帝 國이 治外法權을 行使하는 地域에서의 特赦減刑에 |

準用하는 件 改正 하-339

3.4. 法曹

| | | | |
|----------------|------------|--|-----------|
| 明治 39. 10. 30. | 칙령 제281호 | 外國政府에 聘用된 判事·檢事に 관한 件 | 상-2 23 |
| 明治 42. 10. 21. | 통감부령 제33호 | 統監府裁判所 및 檢事局事務章程 | 하-144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47호 | 統監府判事 및 統監府檢事官等給與令 | 하-113 |
| 明治 43. 3. 26. | 칙령 제163호 | 통감부판사 및 통감부검사관등급여령 개정 | 하- 444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52호 | 統監府裁判所判事 檢事に 高等官官等給與令 第7條 의 規程을 適用하지 않는 件 | 하-117 |
| 明治 42. 10. 21. | 통감부훈령 제26호 | 統監府裁判所 및 檢査局處務規程 | 하-147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55호 | 統監府判事 및 檢事の 任用に 관한 件 | 하-119 |
| 明治 43. 3. 26. | 칙령 제177호 | 통감부판사 및 檢사의 임용에 관한 건 개정 | 하- 446 |
| 明治 43. 4. 23. | 통감부령 제15호 | 統監府判事 統監府檢事特別任用試驗規則 | 하-5 35 |
| 明治 42. 5. 8. | 통감부령 제9호 | 辯護士規則 | 중-657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34호 | 변호사규칙 | 하-158 |
| 明治 43. 4. 23. | 통감부령 제16호 | 韓國人辯護士試驗規則 | 하-537 |

第4章 民事法

I. 民法

1. 1. 土地所有權

| | | | |
|----------------|-------------|---|------------------------|
| 明治 39. 11. 15. | 통감부령 제42호 | 土地建物證明規則 | 상-232 |
| 明治 41. 5. 19. | 통감부고시 제77호 | 韓國勅令 第77號 土地建物證明規則 改正件을 告示하는 件 | 중-127 [VI 195~6] |
| 明治 40. 2. 1. | 통감부령 제3호 | 土地建物證明規則에 의하여 證明 또는 査證을 받은 典當의 執行은 韓國勅令 第80號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및 法部令 第2號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施行細則에 따르는 件 | 상-302 |
| 明治 39. 11. 16. | 통감부고시 제126호 | 韓國勅令 第65號 土地家屋證明規則, 法部令 第4號 土地家屋證明規則施行細則을 告示하는 件 | 상-233 [V 291~2, 300~1] |
| 明治 39. 11. 28. | 통감부고시 제129호 | 法部訓令 土地家屋證明規則의 施行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 상-242 [V 318~320] |
| 明治 41. 7. 30. | 통감부고시 제113호 | 韓國勅令 第47號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法部令 第14號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施行細則을 告示하는 件 | 중-237 [VII 52, 115~8] |
| 明治 41. 7. 30. | 통감부령 제24호 | 土地建物所有權證明規則 | 중-236 |
| 明治 41. 10. 21. | 대구이사청령 제8호 | 토지건물증명사증의 신청계출에 관한 건 | 중-390 |
| 明治 42. 11. 6. | 통감부고시 제116호 | 한국칙령 제95호 토지가옥증명사무에 관한 건을 고시하는 건 | 하-251 [VIII 555~6] |
| 明治 41. 12. 29. | 부산이사청령 제16호 | 土地建物證明査證申請手續 | 중-478 |
| 明治 42. 11. 24. | 대구이사청령 제5호 | 토지건물사증 증명의 신청계출에 관한 건 폐지 | 하-261 |
| 明治 43. 6. 1. | 부산이사청령 제5호 | 토지건물증명사증신청수속 개정 | 하-561 |
| 明治 43. 7. 16. | 청진이사청령 제2호 | 토지건물증명사증 신청수속 | 하-629 |
| 明治 42. 2. 23. | 목포이사청령 제2호 | 土地建物取得 届出 | 중-529 |

1.2. 土地調査

- 明治 42. 4. 16. 마산이사청고시 제6호 金海郡內 土地所有者 또는 同 管理者의 토지申告에 관한 件 중-646
- 明治 42. 4. 24. 부산이사청고시 제10호 김해군내 토지소유자 또는 동 관리자의 토지신고에 관한 件 중-649
- 明治 43. 8. 25. 통감부고시 제186호 韓國法律 第7號 土地調査法, 勅令 第43號 高等土地調査委員會規則, 勅令 第44號 地方土地調査委員會規則, 度支部令 第26號 土地調査法施行規則을 告示하는 件 하-711 [IX 572~7]

1.3. 外國人 土地

- 明治 41. 3. 17. 원산이사청고시 제5호 元山港居留地の 永代借에 관한 件 중-67
- 明治 41. 3. 17. 원산이사청령 제2호 元山日本居留地借地權規則 중-64
- 明治 41. 3. 29. 통감부고시 제52호 韓國勅令 第15號 淸津土地規則을 告示하는 件 중-75 [VI 330~2]
- 明治 41. 3. 29. 통감부고시 제53호 韓國勅令 第17號 淸津官有地賣下規則을 告示하는 件 중-75 [VI 335~6]
- 明治 41. 4. 10. 청진이사청고시 제6호 韓國勅令 第15號 淸津土地規則 第17號 淸津官有地拂下規則을 告示하는 件 중-87
- 明治 41. 4. 10. 청진이사청령 제5호 淸津官有地拂下規則施行細則 중-86
- 明治 41. 4. 28. 청진이사청령 제7호 淸津土地規則施行細則 중-101
- 明治 41. 6. 19. 부산이사청령 제3호 地所貸渡規則 중-203
- 明治 42. 6. 22. 인천이사청고시 제17호 仁川各國居留地에서의 建物築造에 관한 件 중-714
- 明治 43. 6. 30. 군산이사청유달 제4호 全州財務監督局의 管内 日本人所有 土地調査에 관한 通知를 諭達하는 件 하-616
- 明治 43. 7. 16. 부산이사청고시 제22호 土地所有者는 管内 韓國財務署에 申告하는 件 하-632
- 明治 43. 7. 18. 대구이사청유고 제5호 토지소유자는 관내 한국재무서에 신고하는 件 하-632
- 明治 43. 7. 19. 마산이사청고시 제25호 토지소유자는 관내 한국재무서에 신고하는 件 하-633

II. 商事法

2.1. 一般

| | | | |
|----------------|---------------|---|-------|
| 明治 39. 12. 11. | 통감부령 제51호 | 手小荷物賃金表 | 상-268 |
| 明治 40. 2. 10. | 통감부령 제7호 | 수소하물임금표 개정 | 상-306 |
| 明治 42. 5. 1. | 통감부고시 제8호 | 수소하물임금표 개정 | 중-651 |
| 明治 39. 12. 11. | 통감부령 제50호 | 大貨物賃金表 | 상-266 |
| 明治 40. 7. 19. | 통감부령 제30호 | 대화물임금표 · 수소하물임금표 개정 | 상-431 |
| 明治 41. 10. 30. | 통감부령 제46호 | 대화물임금표 개정 | 중-411 |
| 明治 42. 5. 1. | 통감부고시 제7호 | 대화물임금표 개정 | 중-651 |
| 明治 41. 8. 23. | 통감부령 제31호 | 桴船配達料過剩納付額 還付에 관한 件 | 중-275 |
| 明治 41. 9. 13. | 통감부령 제36호 | 約束郵便取扱規則 | 중-305 |
| 明治 42. 3. 25. | 진남포이사청령 제1호 | 同業組合規則 | 중-587 |
| 明治 41. 12. 17.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15호 | 商業 기타 法令에 의하여 公告를 요하는 登記는 新義州時報에 게재하는 件 | 중-457 |

2.2. 會社

| | | | |
|---------------|-------------|-------------------------------------|-------------------|
| 明治 41. 2. 6. | 통감부고시 제7호 | 東洋火災保險株式會社設立 許可 | 중-15 |
| 明治 41. 8. 26. | 법률 제63호 | 東洋拓殖株式會社法 | 중-276 |
| 明治 43. 4. 5. | 법률 제49호 |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개정 | 하-476 |
| 明治 41. 9. 3. | 통감부고시 제137호 | 한국법률 제22호 東洋拓殖株式會社法을 告示하는 件 | 중-292 [VII 270~7] |
| 明治 43. 4. 23. | 통감부고시 제66호 | 한국법률 제4호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개정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 하-541 [IX 406~7] |
| 明治 41. 10. 8. | 대장성인가 | 東洋拓殖株式會社定款 | 중-368 |
| 明治 43. 5. 21. | 대장성인가 | 동양척식주식회사정관 변경 | 하-557 |
| 明治 41. 9. 15. | 칙령 제210조 | 東洋拓殖株式會社設立委員長 및 委員의 旅費支給에 관한 件 | 중-311 |
| 明治 41. 8. 26. | 契約* | 東洋拓殖株式發行 社債 保證에 관한 件 | |

중-282 *대일본제국 헌법 제62조제2항
참조

Ⅲ. 節次法

3.1. 一般

- | | | | | |
|--------|-----|-----|-------------|--|
| 明治 40. | 2. | 1. | 통감부고시 제18호 | 韓國勅令 第80號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法部令 第2號 土地家屋典當規則施行細則을 告示하는 件 상-303 [V 378~380, 406~410] |
| 明治 41. | 8. | 1. | 통감부고시 제116호 | 韓國法律 第13號 民刑訴訟規則, 第20號 民事訴訟期限規則을 告示하는 件 중-240 [VII 25~45, 94~5] |
| 明治 41. | 11. | 6. | 통감부고시 제182호 | 韓國勅令 第75號 民事訴訟手數料規則 改正件, 韓國法律 第28號 民事訴訟費用規則 改正件을 告示하는 件 중-418 [VII 467~471] |
| 明治 42. | 5. | 1. | 통감부고시 제36호 | 韓國法律 第15號 民事證據調查費用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중-652 [VIII 205~6] |
| 明治 42. | 11. | 6. | 통감부고시 제116호 | 韓國法律 第34號 民刑訴訟規則 改正件을 告示하는 件 하-251 [VII 548~9] |
| 明治 41. | 10. | 29. | 통감부고시 제175호 | 韓國法律 第26號 非訟事件手續規則을 告示하는 件 중-409 [VII 405~8] |
| 明治 42. | 10. | 23. | 통감부령 제37호 | 訴訟 및 非訟事件에 대하여 韓國인이 貼用할 收入印紙에 관한 件 하-163 |
| 明治 42. | 10. | 23. | 통감부령 제36호 | 執達吏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手數料에 관한 件 하-163 |

3.2. 國家

- | | | | | |
|--------|-----|-----|-----------|---|
| 明治 39. | 7. | 10. | 칙령 제184호 | 統監府 및 所屬官署의 民事訴訟에 관하여 國家를 代表하는 件 상-121 |
| 明治 39. | 8. | 1. | 통감부령 제24호 | 統監府所屬官署의 司掌事務에 係하는 民事訴訟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하는 件 상-146 |
| 明治 40. | 11. | 22. | 勅令 제337호 | 明治26년 칙령 제261호 개정 상-472 |
| 明治 41. | 8. | 23. | 통감부령 제32호 | 통감부소속관서의 사장사무에 係하는 民事소송에 대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40호 |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건 개정 통감부소속관서의 사장사무에 계하는 민사소송에 대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건 개정 | 중-275 하-164 |
|----------------|-----------|--|----------------|

第5章 刑事法

I. 實體法

明治 41. 9. 23. 칙령 제217호 刑法施行前に 公布한 命令에 관한 件 중-346

1. 1. 保安規則

明治 39. 4. 17. 통감부령 제10호 保安規則 상-53
 明治 40. 7. 24. 통감부령 제31호 보안규칙 개정 상-431
 明治 42. 5. 22. 통감부령 제13호 보안규칙 개정 중-680
 明治 43. 8. 23. 통감부경무부령 제3호 政治에 관한 屋外多衆集會를 禁하는 件 하-7
 10

1. 2. 違警罪 등

明治 41. 5. 7. 군산이사청령 제2호 違警罪目 改正 중-115
 明治 41. 7. 15. 군산이사청령 제3호 위경죄목 개정 중-226
 明治 41. 10. 16. 대구이사청령 제5호 위경죄목 개정 중-386
 明治 41. 10. 1. 통감부령 제44호 警察犯處罰令 중-360
 明治 41. 12. 29. 부산이사청령 제13호 부산이사청경찰범처벌령 중-473
 明治 42. 11. 13. 군산이사청령 제5호 군산이사청위경죄목 개정 하-252

II. 節次法

2. 1. 一般

明治 41. 11. 6. 통감부고시 제182호 韓國법률 제24호 刑事裁判費用規則을 告示하는 件 중-418 [VII 400~1]
 明治 42. 11. 6. 통감부고시 제116호 韓國法律 제35호 刑事 재판비용규칙개정건을 告示하는 件 하-251 [VIII 549]
 明治 42. 10. 23. 통감부령 제38호 刑事判決의 正本 謄本 및 抄本의 手數料에 관한 件 하-164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0. 5. 10. | 통감부훈령 제12호 | 罰金·科料·過料·刑事追徵金·訴訟費用·非訟事件費用을 收入印紙로 納付할 時的 樣式 | 상-397 |
| 明治 42. 12. 4. | 통감부훈령 제44호 | 수입인지로 벌금·과료·과료·형사추징금소송비용 및 비송사건의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건 | 하-268 |
| 明治 43. 3. 5. | 통감부령 제2호 | 刑事事件의 證人 鑑定人 通事에게 日當旅費 止宿料를 支給하는 件 | 하-369 |

2.2. 特別法

| | | | |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40호 | 韓國에 있어서의 犯罪即決令 | 하-107 |
| 明治 43. 3. 19. | 통감부훈령 제2호 | 韓國에 있어서의 犯罪即決令에 의하여 沒收한 金品の 處分 罰金 科料 收贖金の 徵收 手續 | 하-396 |

Ⅲ. 行刑

3.1. 監獄

3.1.1. 一般

| | | | |
|----------------|------------|---|-------|
| 明治 41. 12. 22. | 통감부령 제50호 | 理事廳監獄에 監獄法을 準用하는 件 | 중-460 |
| 明治 42. 10. 21. | 통감부훈령 제22호 | 理事廳監獄事務 引繼手續 | 하-140 |
| 明治 41. 3. 21. | 통감부고시 제42호 | 永登浦에 京城理事廳監獄을 設置하는 件 | 중-69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39호 | 統監府監獄事務取扱에 관한 건 | 하-106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43호 | 統監府監獄官制 | 하-110 |
| 明治 42. 10. 21. | 통감부령 제31호 | 統監府監獄 設置의 件 | 하-143 |
| 明治 43. 6. 4. | 통감부령 제24호 | 통감부감옥설치의 건 개정 | 하-569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41호 | 理事廳看守任用 및 給與規則·理事廳看守定員·理事廳監獄에 監獄法을 準用하는 件 廢止 | 하-165 |
| 明治 43. 5. 21. | 통감부령 제18호 | 統監府監獄事務의 取扱에 관하여는 監獄法施行規則(明治 41年 司法省令 第18號)을 準用하는 件 | 하-555 |

3.1.2. 官 員

3.1.2.1. 任 用

| | | | |
|----------------|------------|----------------------------|-------|
| 明治 40. 10. 22. | 칙령 제326호 | 理事廳看守長特別任用令 | 상-463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56호 | 統監府典獄 및 統監府看守長特別任用令 | 하-120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41호 | 理事廳看守任用 및 給與規則 廢止 | 하-165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43호 | 統監府看守採用規則 | 하-166 |
| 明治 40. 4. 25. | 통감부령 제18호 | 理事廳看守定員 | 상-370 |
| 明治 40. 11. 1. | 통감부령 제42호 | 이사청간수 정원 | 상-470 |
| 明治 41. 3. 21. | 통감부령 제9호 | 이사청간수정원 | 중-69 |
| 明治 41. 11. 15. | 통감부령 제47호 | 이사청간수정원 개정 | 중-423 |
| 明治 42. 5. 29. | 통감부령 제14호 | 이사청간수정원 개정 | 중-687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45호 | 奏任 및 判任待遇統監府監獄職員의 定員에 관한 件 | 하-167 |
| 明治 42. 12. 25. | 통감부훈령 제49호 | 統監府看守考査 및 試驗規則 | 하-306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46호 | 統監府監獄에 看守部長의 職을 設置하는 件 | 하-168 |

3.1.2.2. 給 與

| | | | |
|----------------|------------|---|-------|
| 明治 40. 4. 27. | 통감부령 제19호 | 理事廳看守의 任用 및 給與는 理事廳巡查에 관한 規程을 準用하는 件 | 상-371 |
| 明治 41. 9. 22. | 통감부령 제42호 | 理事廳看守任用 및 給與規則 | 중-347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51호 | 奏任 및 判任待遇統監府監獄職員給與令 | 하-117 |
| 明治 43. 8. 5. | 통감부령 제45호 | 奏任 및 判任待遇統監府監獄職員 旅費規則 改正 | 하-678 |
| 明治 42. 11. 1. | 통감부령 제62호 | 奏任 및 判任待遇統監府監獄職員旅費規則 | 하-245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47호 | 奏任 및 判任待遇 統監府監獄職員 및 統監府巡查의 加俸額에 관한 件 | 하-168 |
| 明治 43. 3. 31. | 통감부령 제12호 | 주임 및 관입대우 통감부감옥직원 및 통감부순사의 가봉액에 관한 건 개정 | 하-465 |
| 明治 42. 10. 29. | 통감부훈령 제32호 | 統監府看守 및 統監府女監取締非番勤務手當·宿料 및 特別手當支給規則 | 하-193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3. 6. 25. | 통감부훈령 제10호 | 통감부간수 및 통감부여감취체비변근무수당 숙료 및 특별수당지급규칙 개정 | 하-602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50호 | 統監府司法廳 統監府裁判所 및 統監府監獄의 職員手當에 관한 件 | 하-116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44호 | 韓國人統監府看守의 給與에 관한 件 | 하-166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59호 | 統監府監獄職員이 된 韓國人の 任用 分限 및 給與에 관한 件 | 하-122 |
| 明治 43. 3. 26. | 칙령 제164호 | 통감부감옥직원이 된 한국인의 임용 분한 및 급여에 관한 件 개정 | 하-445 |
| 明治 43. 3. 26. | 칙령 제178호 | 통감부감옥직원이 된 한국인의 임용 분한 및 급여에 관한 件 개정 | 하-447 |
| 明治 43. 4. 4. | 칙령 제195호 | 統監府看守 및 統監府女監取締의 療治料 給助料 및 弔祭料 給與에 관한 件 | 하-471 |

3.1.2.3. 服務

| | | | |
|----------------|------------|---|-------|
| 明治 40. 11. 17. | 통감부훈령 제24호 | 理事廳監獄官吏의 服裝·禮式·點檢·服務·精勤證書 및 懲戒에 관한 件 | 상-472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49호 | 判任待遇統監府 監獄職員의 懲戒는 監獄判任待遇職員 懲戒規程을 準用하는 件 | 하-169 |
| 明治 42. 12. 25. | 통감부훈령 제50호 | 統監府看守 및 統監府女監取締의 精勤證書授與에 관한 件 | 하-308 |
| 明治 42. 11. 1. | 통감부령 제64호 | 統監府監獄官制 및 統監府司法警察官官制施行時의 看守·巡查의 勤償者取扱에 관한 件 | 하-246 |
| 明治 42. 10. 29. | 통감부령 제53호 | 統監府看守·統監府女監取締給與品 및 貸與品規則 | 하-186 |
| 明治 42. 10. 29. | 통감부령 제54호 | 統監府監獄傭人給與品 및 貸與品規程 | 하-188 |
| 明治 43. 5. 7. | 통감부령 제17호 | 통감부감옥용인급여품 및 대여품규정 개정 | 하-547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48호 | 統監府監獄職員의 銃器携帶에 관한 件 | 하-169 |

3.2. 行刑

3.2.1. 一般

| | | | |
|---------------|-----------|-------------------|-------|
| 明治 42. 4. 10. | 통감부훈령 제9호 | 裁判事務에 관한 領置物品取扱規程 | 중-637 |
|---------------|-----------|-------------------|-------|

| | | | |
|----------------|------------|------------------------|-------|
| 明治 42. 12. 4. | 통감부훈령 제45호 | 監獄領置品取扱規程 | 하-270 |
| 明治 42. 10. 29. | 통감부훈령 제33호 | 統監府裁判所 및 統監府監獄會計事務章程 | 하-194 |
| 明治 42. 7. 24. | 통감부훈령 제18호 | 理事廳監獄在監人 身分帳簿 및 死亡帳簿樣式 | 하-9 |
| 明治 42. 10. 28. | 통감부령 제51호 | 囚人 및 被告人護送規則 | 하-175 |

3.2.2. 假出獄·赦免

| | | | |
|----------------|------------|--|-------|
| 明治 43. 5. 21. | 통감부령 제19호 | 假出獄者의 取締는 假出獄取締細則(明治 41年 司法省令 第25號)을 準用하는 件 | 하-555 |
| 明治 43. 5. 21. | 통감부훈령 제7호 | 가출옥 및 가출장에 관한 취급은 明治 41年 司法省訓令 제7호·內務省訓令 제9호를 준용하는 件 | 하-555 |
| 明治 39. 11. 1. | 통감부훈령 제29호 | 刑의 執行猶豫事件取扱規程 | 상-224 |
| 明治 41. 10. 1. | 통감부훈령 제18호 | 형의 집행유예사건취급규정 개정 | 중-364 |
| 明治 42. 10. 28. | 통감부령 제31호 |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취급규정 | 하-181 |
| 明治 41. 9. 22. | 칙령 제215호 | 特赦 및 減刑에 관한 件 | 중-345 |
| 明治 41. 9. 24. | 칙령 제230호 | 特赦 및 減刑에 관한 件을 韓國·臺灣·關東洲 및 帝國이 治外法權을 行使하는 地域에서의 特許減刑에 準用하는 件 | 중-350 |

第6章 警察·軍隊

I. 警察

1. 1. 官制·管轄

| | | | |
|----------------|--------------|---|-------------------|
| 明治 41. 12. 20. | 통감부고시 제204호 | 內部令 第7號 巡查配置請願規則, 內部告示 第14號 巡查配置請願規則第3條의 費用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 중-458 [VII 535~7] |
| 明治 43. 6. 29. | 칙령 제296호 | 統監府警察官署官制 | 하-607 |
| 明治 43. 7. 13. | 통감부훈령 제14호 | 統監府警務總監部分課規程 | 하-624 |
| 明治 41. 4. 16. | 목포이사청령 제2호 | 警察管轄에 관한 件 | 중-91 |
| 明治 43. 8. 5. | 통감부고시 제170호 | 巡查派出所 및 巡查駐在所의 名稱 位置 | 하-678 |
| 明治 43. 8. 23. | 통감부고시 제184호 | 순사파출소 및 순사주재소의 명칭 위치 개정 | 하-710 |
| 明治 43. 8. 20. | 통감부고시 제182호 | 순사파출소 및 순사주재소 폐지와 설치 | 하-708 |
| 明治 43. 8. 5. | 통감부령 제44호 | 警務部 및 警察署의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表 | 하-672 |
| 明治 43. 8. 20. | 통감부령 제47호 | 경무부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표 개정 | 하-705 |
| 明治 41. 4. 30. | 평양이사청고시 제5호 | 산수정순사파출소에 경부를 파출하여 일반경찰사 무를 취급하는 件을 고시하는 件 | 중-110 |
| 明治 42. 6. 29. | 청진이사청고시 제22호 | 청진이사청관내 경찰서 및 동분서의 관할구역에 관한 件 | 중-719 |
| 明治 43. 8. 10. | 통감부고시 제172호 | 京城本町七丁目·成均館·三坂·竹園町 訓練院 巡查派出所 設置 | 하-696 |

1. 2. 官員

1. 2. 1. 官 等

| | | | |
|---------------|------------|--------------------|-------|
| 明治 39. 4. 16. | 통감부령 제9호 | 統監府 및 理事廳巡查定員 | 상-52 |
| 明治 39. 8. 5. | 통감부훈령 제18호 | 統監府 및 理事廳巡查部長 選任規程 | 상-150 |

| | | | |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49호 | 統監府警視 警部官等給與令 | 하-115 |
| 明治 43. 6. 29. | 칙령 제300호 | 統監府警察官署職員의 官等等級에 관한 件 | 하-610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58호 | 統監府警視 警部の 任用 및 分限에 관한 件 | 하-121 |
| 明治 43. 6. 29. | 칙령 제302호 | 統監府警務總長 警務部長 警視 警部の 任用 및 分限에 관한 件 | 하-611 |
| 明治 43. 7. 9. | 통감부령 제35호 | 統監府巡查在職者가 即日 統監府警察官署 巡查에 採用되었을 때는 勤績者로 하는 件 | 하-620 |

1.2.2. 任用

| | | | |
|----------------|-----------|-------------------------------------|-------|
| 明治 38. 12. 20. | 칙령 제277호 | 統監府 및 理事廳警察官特別任用令 | 상-13 |
| 明治 40. 9. 19. | 칙령 제301호 | 통감부 및 이사청경찰관특별임용령 폐지 | 상-454 |
| 明治 39. 4. 25. | 통감부령 제11호 | 統監府 및 理事廳巡查考試規則 | 상-59 |
| 明治 39. 5. 30. | 칙령 제128호 | 統監府 및 理事廳巡查의 任用·給與에 관한 件 | 상-78 |
| 明治 39. 11. 24. | 칙령 제291호 | 통감부 및 이사청순사의 임용·급여에 관한 건 개정 | 상-241 |
| 明治 39. 6. 15. | 통감부령 제14호 | 統監府 및 理事廳巡查任用規則 | 상-86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42호 | 統監府巡查採用 및 給與令 | 하-165 |
| 明治 43. 6. 29. | 칙령 제303호 | 統監府警官署의 職員이 되는 韓國人의 任用分限 및 給與에 관한 件 | 하-612 |
| 明治 43. 7. 1. | 통감부령 제32호 | 統監府巡查 韓國巡查를 統監府警察官署巡查 巡查補로 採用하는 件 | 하-617 |
| 明治 43. 6. 29. | 칙령 제299호 | 統監府警察官署職員의 俸給 등의 支給에 관한 件 | 하-610 |

1.2.3. 給與

| | | | |
|---------------|------------|--------------------------|-------|
| 明治 39. 5. 30. | 칙령 제129호 | 統監府 및 理事廳警部·巡查의 旅費에 관한 件 | 상-79 |
| 明治 39. 8. 5. | 통감부령 제26호 | 統監府 및 理事廳巡查俸給 및 手當支給規則 | 상-150 |
| 明治 39. 7. 1. | 통감부고시 제17호 | 統監府 및 理事廳巡查給與品 및 貸與品規則 | 상-110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明治 39. 9. 7. | 통감부령 제33호 | 통감부 및 이사청순사급여 및 대여품규칙 개정 상-167 |
| 明治 40. 5. 5. | 통감부령 제21호 | 통감부 및 이사청순사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개정 상-395 |
| 明治 39. 10. 23. | 통감부령 제41호 | 統監府 및 理事廳警部巡查旅費規則 상-208 |
| 明治 39. 12. 4. | 칙령 제309호 | 外國在勤警部巡查任用 및支給規則改正 상-247 |
| 明治 39. 12. 6. | 외무성령 제6호 | 外國在勤警部巡查任用 및支給規則施行細則改正 상-247 |
| 明治 39. 12. 15. | 통감부령 제52호 | 統監府 및 理事廳巡查의 在勤手當에 관한 件 상-273 |

1.3. 業務

| | | |
|---------------|------------|---|
| 明治 39. 4. 25. | 통감부훈령 제3호 | 統監府·理事廳警察官의 禮式·稱號·服裝·提燈徽章·巡閱·非常召集·賞與·徵罰·點檢·訓授·精勤證書·帶劍心得·休暇는 廳府縣警察官의 例에 의하는 件 상-64 |
| 明治 39. 7. 1. | 통감부훈령 제11호 | 巡查敎習規程 상-112 |
| 明治 40. 4. 23. | 칙령 제154호 | 統監府經費內 巡查駐在所費渡切에 관한 件 상-369 |
| 明治 43. 7. 14. | 통감부령 제39호 | 統監府 및 所屬官署의 執務時間改正 하-628 |
| 明治 43. 8. 13. | 통감부령 제46호 | 統監府巡查 및 統監府巡查補服制 하-697 |
| 明治 39. 4. 25. | 통감부훈령 제4호 | 理事廳警察官·警察分署門標樣式 상-65 |
| 明治 40. 4. 25. | 통감부훈령 제9호 | 이사청경찰서경찰분서·경찰분서 문표양식 개정 상-370 |
| 明治 39. 4. 27. | 통감부훈령 제7호 | 普通警察報告例 상-69 |
| 明治 43. 6. 18. | 통감부훈령 제8호 | 보통경찰보고례 개정 하-590 |

1.4. 警察權 委託

1.4.1. 警察權 委託

| | | |
|---------------|-------------|--|
| 明治 40. 11. 1. | 통감부고시 제140호 | 統監府 韓國政府間 警察事務執行에 관한 取極書 상-470 |
| 明治 42. 4. 10. | 통감부고시 제30호 | 在韓國外國人民에 대한 警察事務에 관한 統監府 韓國政府間協定을 告示하는 件 중-644 |

| | | | |
|--------|--------|---------------|--|
| 明治 43. | 6. 25. | 통감부고시 제139호 | 警察事務委託에 관한 韓日覺書 하-605 |
| 明治 43. | 7. 1. | 통감부령 제31호 | 韓國政府가 委託한 警察事務는 當分간 韓國 從來의 規程에 의하는 件 하-617 |
| 明治 43. | 7. 13. | 통감부령 제38호 | 警察에 관한 規程 中 理事官에 속한 職務는 統監府警務部長(警務總長)이 행하는 件 하-623 |
| 明治 43. | 7. 13. | 통감부훈령 제13호 | 理事廳의 警察事務引繼手續 하-623 |
| 明治 43. | 7. 15. | 경성이사청유달 제1호 | 警察事務를 警務總監部에 引繼하는 件 하-629 |
| 明治 43. | 7. 19. | 평양이사청고시 제31호 | 경찰사무를 평안남도 경무부에 인계하는 건 하-632 |
| 明治 43. | 7. 21. | 군산이사청고시 제23호 | 경찰사무를 전라북도경찰부에 인계하는 건 하-633 |
| 明治 43. | 7. 21. | 대구이사청諭告 제6호 | 경찰사무를 경상북도경무부에 인계하는 건 하-634 |
| 明治 43. | 7. 22. | 전라북도경무부고시 제1호 | 군산이사청경찰사무를 인계하는 건 하-634 |
| 明治 43. | 7. 28.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21호 | 경찰사무를 평안북도 경무부에 인계하는 건 하-639 |
| 明治 43. | 7. 31. | 성진이사청고시 제16호 | 경찰사무를 함경북도 경무부에 인계하는 건 하-658 |
| 明治 43. | 8. 20. | 황해도경무부고시 제1호 | 진남포이사청경찰사무를 인계하는 건 하-710 |

1. 4. 2. 間島派出所

| | | | |
|--------|--------|------------|----------------------------------|
| 明治 41. | 4. 9. | 칙령 제86호 |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官制 중-82 |
| 明治 42. | 4. 2. | 칙령 제79호 |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관제 개정 중-599 |
| 明治 41. | 7. 18. | 통감부훈령 제13호 |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分課規程 중-227 |
| 明治 41. | 7. 25. | 통감부훈령 제14호 |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長의 主管事務 專行에 관한 件 중-231 |
| 明治 41. | 4. 9. | 칙령 제87호 |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職員等給與令 중-83 |
| 明治 42. | 4. 2. | 칙령 제80호 |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직원관등급여령 개정 중-599 |
| 明治 41. | 4. 9. | 칙령 제88호 |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職員特別任用令 중-83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明治 41. 4. 9. | 칙령 제89호 |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事務官等の 初敍에 관한 件 중-84 |
| 明治 41. 4. 9. | 칙령 제90호 |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長에 統監府營林廠職員官 等給與令·陸軍現役將校同相當官으로 統監府營 林廠職員에 任用된 者에 관한 件을 準用하는 件 중-84 |
| 明治 41. 4. 9. | 칙령 제91호 |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職員에게 特別手當을 給與 하는 件 中-85 |
| 明治 42. 11. 3. | 성진이사청고시 제15호 |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 廢止, 龍井村日本 領事館 · 局子街日本領事館分館 開館件을 告示하는 件 하-250 |
| 明治 41. 6. 28. | 통감부훈령 제12호 |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統監府法務院會計事務에 관한 手續은 理事廳會計事務章程에 의하는 件 중-217 |

1.5. 司法警察

| | | |
|----------------|------------|--|
| 明治 42. 10. 28. | 통감부훈령 제30호 | 韓國人에 대한 司法警察事務는 韓國司法警察執務 規程에 準하여 取扱하는 件 하-181 |
| 明治 42. 10. 31. | 통감부훈령 제34호 | 在韓國本邦人에 대한 司法警察官執務規則 하-212 |
| 明治 42. 4. 8. | 통감부훈령 제8호 | 재한국본방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집무규칙 중-608 |
| 明治 42. 5. 22. | 통감부훈령 제13호 | 司法警察官의 外國人에 관한 心得 中-682 |
| 明治 42. 10. 16. | 칙령 제244호 | 統監府司法警察官官制 하-111 |

II. 軍隊

2.1. 官制

| | | |
|---------------|------------|---|
| 明治 39. 2. 2. | 칙령 제15호 | 統監府陸海軍武官官制 상-30 |
| 明治 42. 7. 31. | 통감부고시 제71호 | 韓國勅令 第68號 軍部廢止, 親衛隊新設 및 이에 附帶하는 件, 第69號 侍從武官府官制·東官武官 府官制·親王附武官官制·近衛步兵隊編制의 件 · 近衛騎兵隊編制의 件 廢止, 第70號 內閣官制 |

改正, 第71號 各部官制通則 改正, 第72號 憲兵補助員募集에 관한 件 改正件·布達 第3號 親衛府官制, 第4號 侍從武官府官制, 第5號 東宮武官府官制, 第6號 近衛騎兵隊編制件, 第7號 近衛步兵隊編制件, 第8號 武官 및 相當官·下士卒의 官等俸給·給料·乘馬本分·服裝 및 懲戒에 관한 件, 第9號 武官恩給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하-14 [Ⅷ 382~390]

明治 42. 9. 18. 통감부고시 제94호

韓國勅令 第77號 陸軍武官學校 廢止時期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하-78 [Ⅷ 441~2]

2.2. 徵兵

明治 39. 12. 28. 칙령 제318호

臺灣·樺太·韓國에 在한 者의 徵兵身體檢査에 관한 件 상-279

明治 39. 12. 29. 陸軍省令 제16호

대만·화태·한국·청국 등에 在한 자의 징병신체검査에 관한 규정 상-281

明治 41. 9. 15. 마산이사청고시 제19호

鎮海灣海軍用地附近銃獵禁制에 관한 鎮海防備隊의 通告를 告示하는 件 중-313

2.3. 給與

2.3.1. 一般

明治 39. 2. 2. 칙령 제16호

統監府陸海軍武官의 給與에 관한 件 상-31

明治 39. 10. 29. 칙령 제279호

滿洲·韓國·樺太 駐劄陸軍部隊給與令 상-221

明治 40. 1. 15. 칙령 제3호

만주·한국·화태 주차육군부대급여령 개정 상-294

明治 40. 2. 13. 칙령 제13호

만주·한국·화태 주차육군부대급여령 개정 상-308

明治 40. 7. 4. 칙령 제253호

만주·한국·화태 주차육군부대급여령 개정 상-426

明治 40. 10. 22. 칙령 제327호

만주·한국·화태 주차육군부대급여령 개정 상-464

明治 42. 12. 18. 칙령 제348호

만주·한국·화태 주차육군부대급여령 개정 하-304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明治 39. 11. 13. 육군성령 제12호 만주·한국·화태에 시행하는 군인 군속의 여비
상-232

2.3.2. 支給地

- 明治 39. 5. 16. 통감부고시 제32호 新義州郵便局 龍岩浦出張所の 軍人 軍屬 振出 通常爲
替取扱 상-76
- 明治 39. 10. 14. 통감부고시 제115호 성진우편국 경흥·온성·회령·수성·청진출장소 무
산·혜산진우편전신수취소의 군인군속진출통상위
체取扱 상-207
- 明治 39. 12. 13. 통감부고시 제141호 광화문우편국·경성동대문통우편수취소의 군인군속
진출 통상위체取扱 상-273
- 明治 39. 12. 15. 통감부고시 제155호 용산원정우편수취소의 군인군속진출통상위체 不取
扱 상-274
- 明治 39. 12. 15. 통감부고시 제156호 용산우편국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取扱 상-
275
- 明治 40. 1. 12. 통감부고시 제4호 영흥우편취급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取扱
상-294
- 明治 40. 2. 7. 통감부고시 제19호 춘천우편국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取扱 상-
304
- 明治 40. 5. 5. 통감부고시 제66호 태전·충주·전주·부산·대구·금성우편국의 군인
군속진출 통상위체取扱 상-396
- 明治 40. 5. 14. 통감부고시 제73호 나남우편전신취급소의 군인 군속진출통상위체取扱
상-412
- 明治 40. 8. 31. 통감부고시 제114호 강계우편국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取扱 상-
442
- 明治 40. 9. 18. 통감부고시 제123호 신포우편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取扱 상-
449
- 明治 40. 10. 26. 통감부고시 제136호 목포·상주우편국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取扱
상-466
- 明治 40. 10. 26. 통감부고시 제137호 원주우편취급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取扱
상-467
- 明治 40. 11. 14. 통감부고시 제141호 수원우편국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取扱 상-
471
- 明治 40. 11. 17. 통감부고시 제143호 해주우편국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取扱 상-
472

- 明治 40. 11. 23. 통감부고시 제145호 조치원우편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 取扱 상-475
- 明治 40. 12. 19. 통감부고시 제153호 홍주우편국의46개국소의 군인군속진출통상위체 取扱 상-479
- 明治 41. 2. 22. 통감부고시 제15호 남원·경주우편국, 울산·밀양우편전신취급소, 보은·영광·진안·순창·함양·합천·군위·영천·자인·성주·청송·영덕·연일·개천·우편취급소, 영동·삼랑진·왜관우편소의 군인군속진출통상위체 取扱 중-33
- 明治 41. 3. 6. 통감부고시 제29호 안동우편국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 取扱 중-53
- 明治 41. 4. 24. 통감부고시 제64호 강경우편국·경성본정사정목우편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 取扱 중-96
- 明治 41. 5. 24. 통감부고시 제79호 송전우편전신취급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 取扱 중-141
- 明治 41. 6. 24. 통감부고시 제92호 공주·光州·진주우편국, 하동·갑산·단천·웅기우편전신취급소, 이천·남포·면천·영암·순천·장성·능주·함평·김제·거창·삼가·영산·영주·청도·신계·서흥·장련·안악·중화·회천·원창우편취급소, 온정·서호진우편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 取扱 중-212
- 明治 41. 7. 16. 통감부고시 제105호 고부·고창우편전신취급소의 군인군속진출통상위체 取扱 중-226
- 明治 41. 8. 30. 통감부고시 제135호 길주우편취급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 取扱 중-290
- 明治 41. 9. 13. 통감부고시 제149호 장진우편전신취급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 取扱 중-308
- 明治 41. 11. 13. 통감부고시 제188호 간성·장전우편취급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 取扱 중-421
- 明治 42. 5. 22. 통감부고시 제45호 청주우편국, 김천·경원·북창평우편전신취급소, 진위·장연·廣州·연천·안성·김포·아산·전의·홍산·서산·곡성·담양·진도·완도·해남·용담·함열·태인·선산·회양·양구·홍천·구성·증강진·운산금광우편취급소·오산·독도·논산·규암·남평·통영·동래·낙동·금성우편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 取扱 중-683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3. 3. 5. | 통감부고시 제21호 | 정산·창성우편전신취급소, 고성우편취급소, 토성우편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取扱 | 하-370 |
| 明治 43. 4. 9. | 통감부고시 제42호 | 용산한강·법성포별교·전주 우편소의 군인군속진출 통상위체取扱 | 하-494 |

2.4. 憲兵

| | | | |
|----------------|-----------|--|-------|
| 明治 39. 7. 31. | 칙령 제205호 | 韓國駐劄軍司令部條例 | 상-144 |
| 明治 39. 10. 29. | 칙령 제278호 | 憲兵條例改正 | 상-220 |
| 明治 40. 10. 7. | 칙령 제322호 | 헌병대조례 개정 | 상-459 |
| 明治 39. 2. 8. | 칙령 제18호 | 韓國에 駐劄하는 憲兵의 行政警察 및 司法警察에 관한 件 | 상-31 |
| 明治 40. 10. 7. | 칙령 제323호 | 韓國에 駐劄하는 憲兵에 관한 件 | 상-461 |
| 明治 43. 6. 29. | 칙령 제301호 | 한국에 주차하는 헌병에 관한 건 개정 | 하-611 |
| 明治 43. 7. 30. | 통감부령 제41호 | 警察署 未設置地의 警察事務는 憲兵分隊 또는 憲兵分遣隊에서 取扱하는 件 | 하-640 |
| 明治 43. 8. 5. | 통감부령 제42호 | 警察署의 職務를 행한 憲兵分隊의 名稱位置 및 管轄區域表 | 하-660 |
| 明治 42. 10. 28. | 통감부령 제50호 | 韓國駐劄憲兵隊配置 및 憲兵分隊管區表 | 하-174 |
| 明治 43. 8. 5. | 통감부령 제43호 | 헌병대관구 및 배치표 | 하-667 |
| 明治 40. 4. 30. | 법률 제46호 | 關東都督府 및 韓國駐劄軍軍法會議法 | 상-379 |
| 明治 42. 10. 23. | 칙령 제292호 | 韓國軍人 軍屬의 犯罪審判에 관한 件 | 하-150 |
| 明治 42. 12. 15. | 칙령 제340호 | 韓國에서 帝國이 經營하는 鐵道에 대한 統監 및 韓國駐劄軍司令官의 權限에 관한 件 | 하-300 |

2.5. 援護

| | | | |
|---------------|--------------|-------------------------|-------|
| 明治 42. 5. 1. | 통감부고시 제39호 | 日露戰役중 被損者의 救恤金申請에 관한 件 | 중-653 |
| 明治 42. 5. 12. | 경성이사청고시 제8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휼금 신청에 관한 건 | 중-666 |
| 明治 42. 5. 13. | 대구이사청고시 제7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휼금 신청에 관한 건 | 중-667 |
| 明治 42. 5. 13. | 인천이사청고시 제13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휼금 신청에 관한 건 | 중-666 |

| | | |
|---------------|---------------|--|
| 明治 42. 5. 14. | 마산이사청고시 제9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중-669 |
| 明治 42. 5. 14.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7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중-657 |
| 明治 42. 5. 14. | 평양이사청고시 제16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중-668 |
| 明治 42. 5. 18. | 원산이사청고시 제11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중-674 |
| 明治 42. 5. 21.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4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중-677 |
| 明治 42. 5. 22. | 부산이사청고시 제12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중-685 |
| 明治 42. 5. 24. | 청진이사청고시 제18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중-685 |
| 明治 42. 5. 26. | 성진이사청고시 제6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중-686 |
| 明治 42. 7. 20. | 대구이사청고시 제14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하-5 |
| 明治 42. 7. 21. | 경성이사청고시 제15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하-5 |
| 明治 42. 7. 21. | 평양이사청고시 제22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하-5 |
| 明治 42. 7. 22.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8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하-6 |
| 明治 42. 7. 22. | 원산이사청고시 제14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하-6 |
| 明治 42. 7. 23. | 마산이사청고시 제15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하-7 |
| 明治 42. 7. 23. | 부산이사청고시 제20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하-7 |
| 明治 42. 7. 23.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3호 | 일로전역중 피손자의 구출금 신청에 관한 건 하-8 |
| 明治 40. 7. 7. | 통감부고시 제96호 | 韓國政府에서 公布한 浮流水雷拾得者에 대한 行賞의 件을 告示하는 件 상-428 [V 544~5] |

第7章 財政·租稅

I. 貨幣·度量衡

1.1. 貨幣

| | | | |
|----------------|---------------|--|------------------|
| 明治 41. 7. 28. | 경성이사청고시 제19호 | 韓國勅令 第41號 葉錢通用價格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 중-233 [VI 492~3] |
| 明治 41. 7. 28. | 인천이사청고시 제16호 | 한국칙령 제41호 葉錢通用價格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 중-233 |
| 明治 41. 7. 30. | 마산이사청고시 제15호 | 한국칙령 제41호 葉錢通用價格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 중-237 |
| 明治 41. 7. 31. | 군산이사청고시 제14호 | 한국칙령 제41호 葉錢通用價格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 중-237 |
| 明治 41. 7. 31. | 군산이사청고시 제15호 | 탁지부훈령 제157호 葉錢通用價格 및 교환제 한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 중-238 |
| 明治 41. 8. 3. | 원산이사청고시 제13호 | 葉錢通用價格에 관한 件 | 중-240 |
| 明治 41. 3. 20. | 통감부고시 제40호 | 탁지부령 제4호 舊白銅貨 交換期限에 관한 件 을 告示하는 件 | 중-68 [VI 273] |
| 明治 41. 9. 7. | 대구이사청고시 제15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293 |
| 明治 41. 9. 8. | 군산이사청고시 제19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297 |
| 明治 41. 9. 8. | 마산이사청고시 제17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296 |
| 明治 41. 9. 8. | 부산이사청고시 제16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296 |
| 明治 41. 9. 8. | 평양이사청고시 제14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297 |
| 明治 41. 9. 10.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4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299 |
| 明治 41. 9. 11.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10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300 |
| 明治 41. 9. 12. | 원산이사청고시 제14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302 |
| 明治 41. 9. 15. | 청진이사청고시 제13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313 |
| 明治 41. 12. 16. | 인천이사청고시 제32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449 |
| 明治 41. 12. 17. | 경성이사청고시 제32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457 |
| 明治 41. 12. 21. | 청진이사청고시 제21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465 |
| 明治 41. 12. 29. | 대구이사청고시 제23호 |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件 | 중-485 |

| | | |
|---------------|---------------|--|
| 明治 42. 5. 29. | 통감부고시 제46호 | 한국직령 제58호舊白銅貨幣公納使用에 관한件을 告示하는 件 中-689 [VIII 257] |
| 明治 41. 6. 27. | 인천이사청고시 제10호 | 株式會社第一銀行의 壹圓券 改版을 告示하는 件 中-216 |
| 明治 41. 6. 30.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0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일원권 개판을 고시하는 件 中-218 |
| 明治 41. 6. 30. | 평양이사청고시 제8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일원권 개판을 고시하는 件 中-219 |
| 明治 41. 7. 1. | 대구이사청고시 제11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일원권 개판을 고시하는 件 中-220 |
| 明治 41. 7. 18. | 경성이사청유달 제4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일원권 개판을 고시하는 件 中-227 |
| 明治 41. 7. 24. | 마산이사청고시 제11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일원권 개판을 고시하는 件 中-230 |
| 明治 41. 7. 26. | 부산이사청고시 제14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일원권 개판을 고시하는 件 中-231 |
| 明治 42. 6. 18. | 대구이사청고시 제12호 | 株式會社第一銀行의 五圓券 改版 發行에 관한 件 中-704 |
| 明治 42. 6. 19. | 인천이사청고시 제16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오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710 |
| 明治 42. 6. 19.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1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오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711 |
| 明治 42. 6. 20. | 평양이사청고시 제21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오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711 |
| 明治 42. 6. 21. | 군산이사청고시 제14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오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712 |
| 明治 42. 6. 22. | 목포이사청고시 제12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오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714 |
| 明治 42. 6. 23. | 마산이사청고시 제12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오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715 |
| 明治 42. 6. 25. | 부산이사청고시 제18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오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716 |
| 明治 42. 7. 1. | 청진이사청고시 제23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오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하-1 |
| 明治 42. 7. 6.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7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오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明治 41. 12. 21.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16호 | 株式會社第一銀行의 拾圓券 改版 發行에 관한 件 中-460 |
| 明治 41. 12. 21.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21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십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459 |
| 明治 41. 12. 21. | 평양이사청고시 제21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십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459 |
| 明治 41. 12. 22. | 대구이사청고시 제24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십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461 |
| 明治 41. 12. 22. | 인천이사청고시 제33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십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461 |
| 明治 41. 12. 24. | 군산이사청고시 제24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십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463 |
| 明治 41. 12. 24. | 부산이사청고시 제23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십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463 |
| 明治 41. 12. 26. | 청진이사청고시 제20호 | 주식회사제일은행의 십원권 개판 발행에 관한 件 中-465 |

1. 2. 度量衡

| | | |
|----------------|-------------|--|
| 明治 42. 9. 25. | 통감부고시 제98호 | 韓國法律 第26號 度量衡法을 告示하는 件 하-85 [VIII 447~450] |
| 明治 42. 9. 25. | 통감부고시 제99호 | 農商工部令 第3號 度量衡法施行規則을 告示하는 件 하-85 [VIII 451~4] |
| 明治 42. 9. 25. | 통감부령 제23호 | 한국법률 제26호 도량형법·농상공부령 제3호 도량형법시행규칙을 준용하는 件 하-83 |
| 明治 42. 10. 16. | 통감부고시 제104호 | 農商工部令 第4號 度量衡法施行時期 및 地域을 告示하는 件 하-124 [VIII 489~490] |
| 明治 43. 4. 16. | 통감부고시 제47호 | 농상공부령 제5호 도량형법시행 시기 및 지역을 고시하는 件 하-503 [IX 206~7]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91호 | 농상공부령 제4호 도량형법시행 시기 및 지역을 고시하는 件 하-570 [IX 472~3] |

1.3. 銀行

1.3.1. 中央銀行

- 明治 42. 7. 31. 통감부고시 제70호 韓國法律 第22號 韓國銀行條例를 告示하는 件 하-14 [VIII 374~9]
- 明治 42. 7. 31. 통감부령 제21호 韓國銀行 總裁·理事의 韓國銀行條例事犯處理에 관한 件 하-12
- 明治 42. 8. 16. 통감부고시 제76호 韓日兩國政府의 韓國中央銀行에 관한 覺書 하-20
- 明治 42. 8. 25. 大藏省認可 韓國銀行定款 하-40
- 明治 43. 6. 29. 통감부고시 제143호 韓國銀行을 貯金の 當座勘定口振替를 請求할 수 있는 銀行으로 指定하는 件 하-615

1.3.2. 銀行業

- 明治 40. 3. 12. 칙령 제31호 韓國에서의 銀行業에 관한 件 상-324
- 明治 40. 5. 3. 통감부령 제20호 韓國에서의 銀行業에 관한 規則 상-381
- 明治 41. 3. 5. 통감부령 제7호 韓國에서의 銀行業에 관한 規則 개정 중-52
- 明治 42. 10. 16. 통감부령 제26호 韓國에서의 銀行業에 관한 規則 개정 하-124

II. 國有財産

2.1. 國庫

2.1.1. 國庫金庫

- 明治 39. 10. 1. 대장성고시 제166호 韓國內 本·支金庫를 設置하는 件 상-200
- 明治 43. 5. 2. 대장성고시 제70호 경성금고서산·대구·신의주지금고 설치 하-546
- 明治 41. 5. 10. 통감부령 제14호 遞信省令 第20號 郵便局國庫債券償還 및 引換取締規則을 韓國에 準用하는 件 중-118

2.1.2. 管轄區域

- 明治 39. 9. 21. 통감부령 제36호 統監府通信官署의 取扱에 속하는 韓國國庫金에 관한 件 상-173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明治 39. 9. 21. | 통감부고시 제99호 | 統監府通信官署韓國國庫金出納受持區域指定表 상-173 |
| 明治 39. 10. 28. | 통감부고시 제121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상-219 |
| 明治 39. 11. 10. | 통감부고시 제125호 | 통감부고시 제99호 개정 상-231 |
| 明治 39. 11. 28. | 통감부고시 제130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상-243 |
| 明治 39. 12. 29. | 통감부고시 제148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상-283 |
| 明治 40. 1. 12. | 통감부고시 제3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상-293 |
| 明治 40. 1. 24. | 통감부고시 제14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상-300 |
| 明治 40. 5. 14. | 통감부고시 제71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상-406 |
| 明治 40. 6. 20. | 통감부고시 제85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상-421 |
| 明治 40. 9. 28. | 통감부고시 제128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상-457 |
| 明治 40. 12. 15. | 통감부고시 제151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상-478 |
| 明治 41. 2. 22. | 통감부고시 제14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중-28 |
| 明治 41. 5. 1. | 통감부고시 제66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중-111 |
| 明治 41. 7. 1. | 통감부고시 제100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중-219 |
| 明治 41. 7. 21. | 통감부고시 제107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중-228 |
| 明治 41. 10. 1. | 통감부고시 제164호 | 통감부통신관서한국국고금출납수지구역지정표 개정 중-365 |
| 明治 42. 11. 27. | 통감부고시 제122호 | 統監府通信官署의 韓國國庫金出納受指區域內 受持 韓國金庫의 指定 廢止 하-264 |

2.1.3. 擔當機關

- 明治 39. 12. 9. 통감부고시 제137호 차련관·운산·송전·수성·중성·경원·웅기·부거·북창평·부녕우편전신취급소 초량우편취급소 부산원정우편국의 韓國國庫出納 및 保管事務 不取扱 상-249
- 明治 40. 1. 10. 통감부고시 제2호 나주우편취급소의 韓國國庫金出納 및 保管事務 取扱 상-293
- 明治 40. 5. 14. 통감부고시 제69호 강경 대전우편국·부녕우편전신취급소의 韓國國庫金出納 및 保管事務取扱 상-404
- 明治 40. 6. 20. 통감부고시 제86호 경성우편국의 韓國國庫金出納 및 保管事務取扱 상-422
- 明治 40. 12. 15. 통감부고시 제150호 영등포우편국의 韓國國庫金出納 및 保管事務 取扱 상-478
- 明治 41. 2. 22. 통감부고시 제10호 용암포우편국, 무산·경원·중성우편통신취급소의 韓國國庫金出納 및 保管事務 取扱 중-26
- 明治 41. 2. 22. 통감부고시 제11호 공주·충주·광주·제주·전주·진주·춘천·해주·영변우편국의 韓國國庫金出納 및 保管事務取扱 廢止 중-26
- 明治 41. 6. 13. 통감부고시 제84호 김화우편국 설치와 전신사무·한국국고금출납보관 사무취급 중-150
- 明治 41. 7. 21. 통감부고시 제106호 수원우편국의 韓國國庫金出納 및 保管事務取扱 廢止 중-228
- 明治 42. 8. 21. 통감부고시 제77호 청주·의주우편국의 韓國國庫金出納 및 保管事務取扱 廢止 하-35
- 明治 42. 8. 21. 통감부고시 제78호 충주·영변우편국의 韓國國庫金出納 및 保管事務取扱 開始 하-36
- 明治 43. 3. 19. 통감부고시 제25호 우체소 이외의 통감부통신관서로 하여금 韓國國庫金 中 關稅金의 出納 및 保管事務를 取扱케 하는 件 하-397
- 明治 43. 6. 18. 통감부고시 제128호 조치원우편소의 韓國國庫金出納 및 保管事務 取扱 하-595

2.2. 國有財産

| | | | |
|----------------|---------------|---|-------------------------|
| 明治 41. 8. 13. | 통감부고시 제121호 | 韓國 法律 第19號 帝室債務에 관한 件, 勅令 第39號 宮內政所管 및 慶善宮所屬財産의 移屬 및 帝室債務의 整理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 중-262 [VI 403~4, 491~2] |
| 明治 41. 11. 21.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9호 | 驛屯土 기타 國有地買收上 注意件 | 중-428 |
| 明治 41. 11. 25. | 원산이사청고시 제19호 | 역둔토 기타 國유지매수상 주의건 | 중-429 |
| 明治 41. 11. 26. | 평양이사청고시 제20호 | 역둔토 기타 國유토지매수상 주의건 | 중-431 |
| 明治 41. 12. 1. | 인천이사청고시 제30호 | 역둔토 기타 國유토지매수상 주의건 | 중-440 |
| 明治 42. 3. 24. | 청진이사청령 제10호 | 역둔토 기타 國유토지매수상 주의건 | 중-587 |

2.3. 地方財政

| | | | |
|----------------|---------------|-----------------------------------|---------------------|
| 明治 42. 7. 3. | 통감부고시 제61호 | 韓國 法律 第12號 地方費法을 告示하는 件 | 하-1 [VIII 186~8] |
| 明治 42. 10. 5. | 대구이사청고시 제19호 | 慶尙北道令 第6號 地方費賦課金賦課規則을 告示하는 件 | 하-92 [VIII 464~5] |
| 明治 43. 6. 22. | 대구이사청고시 제16호 | 경상북도령 제12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 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 하-596 [IX 489] |
| 明治 42. 10. 11.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2호 | 황해도령 제3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을 고시하는 건 | 하-94 |
| 明治 42. 10. 11. | 평양이사청고시 제28호 | 황해도령 제3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을 고시하는 건 | 하-94 |
| 明治 42. 10. 15. | 군산이사청고시 제24호 | 전라북도령 제2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을 고시하는 건 | 하-96 [VIII 469~470] |
| 明治 42. 10. 15. | 원산이사청고시 제20호 | 함경남도령 제3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을 고시하는 건 | 하-96 |
| 明治 43. 1. 12. | 원산이사청고시 제2호 | 함경남도령 제3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개 | |

| | | |
|----------------|---------------|--|
| 明治 42. 10. 23. | 목포이사청고시 제23호 | 정건을 고시하는 건 하-340 전라남도령 제3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을 고시하는 건 하-173 |
| 明治 42. 10. 23. | 평양이사청고시 제30호 | 평안남도령 제6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을 고시하는 건 하-173 |
| 明治 42. 10. 28.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16호 | 평안북도령 제4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을 고시하는 건 하-184 |
| 明治 42. 11. 1. | 마산이사청고시 제22호 | 경상남도령 제3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을 고시하는 건 하-250 [Ⅷ 471~2] |
| 明治 42. 11. 18. | 청진이사청고시 제29호 | 함경북도령 제5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을 고시하는 건 하-257 [Ⅷ 474] |
| 明治 43. 1. 28. | 청진이사청고시 제6호 | 함경북도령 제1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하-349 [Ⅸ 255] |
| 明治 42. 11. 30. | 경성이사청고시 제32호 | 경기도령 제2호, 충청북도령 제3호, 충청남도령 제5호, 강원도령 제5호, 황해도령 제3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을 고시하는 건 하-267 [Ⅷ 462~3, 465~6, 468~9, 490~1] |
| 明治 42. 12. 21. | 부산이사청고시 제37호 | 경상남도령 제3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을 고시하는 건 하-305 [Ⅷ 471~2] |
| 明治 43. 1. 7. | 원산이사청고시 제1호 | 강원도령 제5호 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을 고시하는 건 하-337 [Ⅷ 490~1] |

Ⅲ. 專賣

3.1. 印紙

| | | |
|---------------|------------|---|
| 明治 39. 2. 13. | 대장성령 제5호 | 韓國에서의 收入印紙 賣下에 관한 件 상-32 |
| 明治 42. 5. 22. | 통감부령 제11호 | 印紙犯罪處罰法에 의한 官沒에 관한 件 중-678 |
| 明治 40. 4. 24. | 통감부령 제17호 | 統監府郵便所의 郵便切手賣捌所에서 賣捌하는 郵便切手類 및 收入印紙의 割引保合 상-369 |
| 明治 40. 5. 23. | 통감부령 제25호 | 勸業債券購買媒介郵便規則(遞信省令 第21號)을 韓國에 準用하지 않는 件 상-418 |
| 明治 40. 6. 12. | 통감부고시 제81호 | 韓國政府收入印紙로 納付할 수 있는 韓國稅關納付金の 種別 상-419 |

3.2. 專賣

- 明治 41. 8. 11. 통감부고시 제120호 韓國法律 第14號 紅蔘專賣法, 第15號 人蔘稅法, 度支部令 第18號 紅蔘專賣法施行細則, 第17號 人蔘稅法施行細則, 第20號 人蔘特別耕作區域指定件을 告示하는 件 中-244 [VII 45~50. 7~13. 112]
- 明治 41. 9. 27. 통감부고시 제160호 度支部訓令 第34號 人蔘特別耕作區域 改正件을 告示하는 件 中-357 [VII 344~5]

IV. 租稅

4.1. 國稅

4.1.1. 一般

- 明治 41. 8. 13. 통감부고시 제122호 韓國法律 第10號 地稅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中-262 [VI 489~491]
- 明治 42. 3. 6. 통감부고시 제16호 韓國勅令 第20號 地稅 및 戶稅納期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中-544 [VIII 90~1]
- 明治 43. 4. 23. 통감부고시 제59호 韓國勅令 第27號 家屋稅法施行地 改正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하-538 [IX 401~3]
- 明治 42. 12. 25. 통감부고시 제133호 度支部令 第35號 煙草稅法施行細則 改正件을 告示하는 件 하-310 [IX 226]
- 明治 42. 2. 21. 통감부고시 제12호 韓國法律 第2號 家屋稅法, 第3號 酒稅法, 第4號 煙草稅法을 告示하는 件 中-528 [VIII 33~40]
- 明治 42. 2. 21. 통감부고시 제13호 度支部令 第2號 家屋稅法施行細則, 第3號 酒稅法 施行細則, 第4號 煙草稅法施行細則을 告示하는 件 中-528 [VIII 41~4]
- 明治 42. 4. 6. 인천이사청고시 제7호 韓國家屋稅法·酒稅法·煙草稅法 適用에 관한 件 中-607
- 明治 42. 4. 8. 청진이사청고시 제14호 韓國가옥세법·주세법·연초세법 적용에 관한 件 中-634
- 明治 42. 4. 10. 통감부고시 제31호 韓國勅令 第43號 家屋稅를 施行하는 市街地에 관

| | | | |
|--------|--------|--------------|---|
| | | 한 件 | 중-644 [Ⅷ 174~182] |
| 明治 42. | 5. 1. | 청진이사청고시 제15호 | 韓國家屋稅法 適用에 관한 件 중-655 |
| 明治 42. | 5. 31. | 경성이사청고시 제12호 | 한국가옥세법·주세법·연초세법 적용에 관한 건 중-691 |
| 明治 42. | 6. 5. | 청진이사청고시 제19호 | 한국가옥세법·주세법·연초세법에 의한 세금을 일본인회에서 징수하는 건 중-698 |
| 明治 42. | 3. 30. | 통감부고시 제25호 | 韓國法律 第10號 漁業稅法을 告示하는 件 중-596 [Ⅷ 128~131] |
| 明治 42. | 3. 30. | 통감부고시 제26호 | 度支部令 第11號 漁業稅法施行細則을 告示하는 件 중-596 [Ⅷ 133~135] |

4. 1. 2. 國稅徵收

| | | | |
|--------|--------|------------|---|
| 明治 42. | 3. 6. | 통감부고시 제17호 | 韓國法律 第5號 國稅徵收法을 告示하는 件 중-545 [Ⅷ 63~68] |
| 明治 42. | 3. 6. | 통감부고시 제18호 | 度支部令 第6號 國稅徵收法施行細則을 告示하는 件 중-545 [Ⅷ 71~84] |
| 明治 42. | 5. 29. | 통감부령 제15호 | 韓國家屋稅法·酒稅法·煙草稅法上의 稅金滯納 者 處分에 관한 件 중-688 |
| 明治 42. | 10. 2. | 통감부령 제25호 | 한국가옥법·주정법·연초법상의 세금채납자처 리에 관한 건 개정 하-90 |
| 明治 43. | 3. 19. | 통감부고시 제26호 | 韓國法律 第14號 國稅未勘金整理에 관한 件을 告 示하는 件 하-397 [Ⅷ 193~4] |

4. 2. 關稅

4. 2. 1. 一般

| | | | |
|--------|---------|--------------|---|
| 明治 39. | 11. 28. | 칙령 제304호 | 韓國 및 淸國의 生産에 係한 物品의 輸入稅率에 관한 件 상-242 |
| 明治 41. | 8. 7. | 평양이사청고시 제11호 | 平壤保稅貨物取扱所에서 取扱하는 輸入貨物의 箇 數制限撤廢에 관한 當局의 通牒을 告示하는 件 중-242 |
| 明治 41. | 8. 22. | 통감부고시 제127호 | 韓國法律 第21號 鑛業用器具機械의 輸入稅並銅 및 金銀銅鑛石의 輸出稅 免除에 관한 件을 告示 하는 件 중-274 [Ⅶ 166]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明治 42. 5. 29. 통감부고시 제48호 韓國法律 第19號 咸鏡北道清津港을 거쳐 間島 및 琿春地方으로 輸出入하는 貨物의 關稅 免稅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中-690 [VIII 261~2]
- 明治 42. 12. 18. 통감부고시 제128호 度支部令 第32號 間島 및 琿春地方免稅 貨物 取扱規程을 告示하는 件 하-305 [IX 186~7]

4.2.2. 稅 關

- 明治 42. 7. 31. 평양이사청고시 제23호 平壤稅關出張所 事務開始 하-15
- 明治 42. 12. 30. 평양이사청고시 제40호 度支部令 第36號 稅關休日改正件을 告示하는 件 하-326
- 明治 43. 1. 7. 목포이사청고시 제1호 탁지부령 제36호 세관휴일개정건을 告示하는 件 하-337
- 明治 43. 4. 13.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2호 鎭南浦稅關輕便軌條使用內規를 告示하는 件 하-499

4.3. 日本人 課稅

- 明治 43. 4. 9. 군산이사청유달 제2호 全州財務監督局의 管內 日本人所有地 地稅徵收에 관한 通知를 告示하는 件 하-495
- 明治 43. 7. 23. 대구이사청유고 제7호 民團稅의 納付를 督勵하는 件 하-637

第8章 社會·教育

I. 社會

1. 1. 宗教·言論

| | | | |
|----------------|-------------|--------------------------------|-------|
| 明治 39. 11. 17. | 통감부령 제45호 | 宗教의 宣布에 관한 規則 | 상-234 |
| 明治 41. 4. 30. | 통감부령 제12호 | 新聞紙規則 | 중-104 |
| 明治 42. 8. 30. | 통감부령 제22호 | 신문지규칙 개정 | 하-51 |
| 明治 42. 10. 23. | 통감부령 제35호 | 신문지규칙 개정 | 하-162 |
| 明治 41. 5. 1. | 경성이사청령 제5호 | 新聞紙·雜誌取締에 관한 件 | 중-110 |
| 明治 41. 5. 2. | 인천이사청령 제2호 | 新聞紙·雜誌의 發賣 기타 營業上의 取締에 관한 件 | 중-113 |
| 明治 41. 5. 6. | 원산이사청령 제7호 | 신문지·잡지의 영업 등에 관한 건 | 중-115 |
| 明治 41. 9. 11. | 인천이사청령 제5호 | 신문지·잡지의 발매 기타 영업상의 취체에 관한 건 개정 | 중-299 |
| 明治 41. 5. 7. | 군산이사청령 제1호 | 신문지·잡지취체규칙 | 중-115 |
| 明治 41. 5. 8. | 부산이사청령 제1호 | 신문지·잡지취체에 관한 건 | 중-116 |
| 明治 41. 5. 8. | 평양이사청령 제3호 | 新聞紙·雜誌·出版物取締에 관한 件 | 중-116 |
| 明治 41. 5. 9. | 대구이사청령 제2호 | 신문지·잡지취체에 관한 건 | 중-117 |
| 明治 41. 8. 11. | 청진이사청령 제10호 | 신문지·잡지취체규칙 | 중-243 |
| 明治 41. 10. 16. | 대구이사청령 제5호 | 신문지·잡지취체규칙 개정 | 중-386 |
| 明治 42. 7. 26. | 목포이사청령 제3호 | 신문지·잡지취체규칙 | 하-11 |
| 明治 42. 11. 1. | 평양이사청령 제5호 | 신문지·잡지·출판물취체에 관한 건 개정 | 하-246 |
| 明治 42. 11. 13. | 군산이사청령 제5호 | 신문잡지취체규칙 개정 | 하-252 |
| 明治 42. 12. 7. | 원산이사청령 제7호 | 新聞紙·雜誌의 營業등에 관한 件 改正 | 하-277 |
| 明治 43. 1. 8. | 경성이사청령 제1호 | 신문잡지취체에 관한 건 개정 | 하-338 |
| 明治 43. 5. 28. | 통감부령 제20호 | 出版規則 | 하-559 |

1.2. 安全規制

1.2.1. 消防

| | | | |
|----------------|-------------|-----------------------------|-------|
| 明治 42. 1. 6. | 원산이사청령 제1호 | 消防組規則 | 중-492 |
| 明治 42. 9. 5. | 부산이사청령 제7호 | 소방조규칙 | 하-54 |
| 明治 42. 10. 21. | 평양이사청령 제4호 | 소방조규칙 | 하-132 |
| 明治 42. 12. 24. | 경성이사청령 제13호 | 소방조규칙 개정 | 하-306 |
| 明治 42. 12. 27. | 목포이사청령 제8호 | 소방조규칙 | 하-312 |
| 明治 42. 12. 27. | 목포이사청령 제9호 | 消防組規則施行에 관한 件 | 하-316 |
| 明治 42. 9. 5. | 부산이사청령 제8호 | 義勇消防組規則 | 하-56 |
| 明治 42. 1. 29. | 청진이사청고시 제1호 | 淸津日本人會消防組認可와 警鍾方法 | 중-499 |
| 明治 43. 4. 29. | 대구이사청유고 제2호 | 家屋을 新改築할때 屋上에는 不燃物質을 使用하는 件 | 하-542 |

1.2.2. 銃器類

| | | | |
|----------------|---------------|---------------------------|-------|
| 明治 42. 5. 20. | 경성이사청고시 제10호 | 軍用銃器携帶 및 貸與願提出에 관한 件 | 중-675 |
| 明治 42. 7. 7. | 경성이사청령 제7호 | 漢江에서의 爆發物使用 禁止의 件 | 하-3 |
| 明治 42. 7. 23. | 부산이사청고시 제21호 | 日本人의 銃器携帶 禁止에 관한 件 | 하-7 |
| 明治 42. 9. 21. | 경성이사청고시 제22호 | 銃器携帶 貸與出願에 관한 件 | 하-81 |
| 明治 42. 9. 25. | 군산이사청고시 제20호 | 총기휴대 대여 출원에 관한 件 | 하-86 |
| 明治 42. 11. 20. | 대구이사청고시 제24호 | 銃器 爆發物輸入 및 庫出許可에 관한 手續改正 | 하-258 |
| 明治 42. 11. 22. | 경성이사청고시 제31호 |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 하-259 |
| 明治 42. 11. 22. | 마산이사청고시 제25호 |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 하-260 |
| 明治 42. 11. 22.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26호 |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 하-260 |
| 明治 42. 11. 22. | 평양이사청고시 제35호 |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 하-259 |
| 明治 42. 11. 23. | 인천이사청고시 제29호 |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 하-259 |

| | | |
|----------------|---------------|--|
| 明治 42. 11. 24. | 군산이사청고시 제30호 | 정 하-261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하-262 |
| 明治 42. 11. 24. | 원산이사청고시 제25호 |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하-262 |
| 明治 42. 11. 27. | 부산이사청고시 제33호 |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하-265 |
| 明治 42. 11. 30. | 성진이사청고시 제17호 |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하-267 |
| 明治 42. 12. 7. | 목포이사청고시 제30호 |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하-278 |
| 明治 42. 12. 11.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19호 |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하-294 |
| 明治 42. 12. 12. | 청진이사청고시 제32호 |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하-297 |
| 明治 43. 3. 9. | 목포이사청고시 제8호 | 총기 폭발물수입 및 고출허가에 관한 수속 개정 하-372 |
| 明治 41. 2. 21. | 대구이사청고시 제4호 | 獵用·護身用 外の 銃砲輸入을 禁止하는 件 중-24 |
| 明治 41. 2. 21. | 부산이사청고시 제2호 | 엽용·호신용 外の 총포수입을 금지하는 件 중-25 |
| 明治 41. 2. 21.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5호 | 엽용·호신용 外の 총포수입을 금지하는 件 중-25 |
| 明治 41. 2. 22. | 군산이사청고시 제6호 | 엽용·호신용 外の 총포수입을 금지하는 件 중-35 |
| 明治 41. 2. 23.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4호 | 엽용·호신용 外の 총포수입을 금지하는 件 중-36 |
| 明治 41. 2. 24. | 평양이사청고유 제2호 | 엽용·호신용 外の 총포수입을 금지하는 件 중-36 |
| 明治 41. 2. 26. | 원산이사청고시 제2호 | 엽용·호신용 外の 총포수입을 금지하는 件 중-45 |
| 明治 41. 2. 28. | 목포이사청고시 제2호 | 엽용·호신용 外の 총포수입을 금지하는 件 중-47 |
| 明治 41. 3. 4. | 성진이사청유달 제2호 | 엽용·호신용 外の 총포수입을 금지하는 件 중-51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明治 41. 3. 5. | 청진이사청고시 제4호 | 업용·호신용 외의 총포수입을 금지하는 건 중-52 |
| 明治 41. 5. 6. | 경성이사청령 제6호 | 鐵條網取締에 관한 件 中-114 |
| 明治 42. 9. 9. | 목포이사청령 제4호 | 石油取締規則 하-59 |
| 明治 42. 10. 28. | 목포이사청령 제7호 | 석유취체규칙 개정 하-179 |
| 明治 42. 9. 9. | 목포이사청령 제5호 | 石油取締規則施行期日 및 施行區域 하-60 |

1.3. 經濟活動

1.3.1. 營業規制

| | | |
|----------------|--------------|---------------------------------------|
| 明治 42. 12. 12. | 부산이사청령 제9호 | 工場取締規則 하-295 |
| 明治 41. 5. 23. | 마산이사청고시 제7호 | 馬山商業會議所 設立認可 中-139 |
| 明治 41. 1. 18. | 청진이사청령 제3호 | 營業 및 組合取締規則 中-8 |
| 明治 41. 8. 22. | 청진이사청령 제11호 | 영업 및 조합취체규칙 中-273 |
| 明治 41. 2. 26. | 원산이사청령 제1호 | 營業願屆에 관한 件 中-43 |
| 明治 41. 2. 26. | 평양이사청령 제1호 | 영업원계에 관한 건 中-39 |
| 明治 41. 6. 6. | 인천이사청령 제4호 | 영업 및 업무의 원계에 관한 건 中-147 |
| 明治 41. 10. 31. | 마산이사청령 제5호 | 영업 및 업무에 관한 원계의 건 中-412 |
| 明治 41. 12. 17. | 진남포이사청령 제2호 | 영업원계에 관한 건 中-449 |
| 明治 42. 5. 6. | 진남포이사청령 제3호 | 영업원계에 관한 건 개정 中-656 |
| 明治 42. 11. 1. | 평양이사청령 제6호 | 영업원계에 관한 건 개정 하-247 |
| 明治 42. 12. 7. | 원산이사청령 제6호 | 영업원계에 관한 건 개정 하-277 |
| 明治 42. 4. 9. | 인천이사청령 제4호 | 冲營業取締規則 中-634 |
| 明治 41. 12. 29. | 부산이사청령 제14호 | 諸營業 기타 願屆에 관한 件 中-474 |
| 明治 42. 8. 21. | 성진이사청령 제5호 | 제영업 기타 원계에 관한 건 하-32 |
| 明治 42. 9. 14. | 군산이사청령 제4호 | 제영업 기타 원계에 관한 규칙 하-71 |
| 明治 42. 11. 13. | 군산이사청령 제5호 | 제영업 기타 원계에 관한 규칙 개정 하-252 |
| 明治 43. 1. 1. | 신의주이사청령 제1호 | 제영업 기타 원계에 관한 건 하-329 |
| 明治 41. 5. 10. | 목포이사청령 제3호 | 管內在留帝國臣民의 業務에 관한 願屬의 件 중-118 |
| 明治 42. 10. 28. | 목포이사청령 제7호 | 관내재류제국신민의 업무에 관한 원계에 관한 건 개정 하-179 |
| 明治 42. 8. 21. | 경성이사청고시 제16호 | 韓國政府에 의 認許 請願에 관한 件 하-37 |
| 明治 42. 8. 21. | 대구이사청고시 제15호 | 한국정부에 의 인허 청원에 관한 건 하-38 |

| | | | |
|---------------|---------------|--------------------|-------|
| 明治 42. 8. 21. | 인천이사청고시 제20호 | 한국정부에의 인허 청원에 관한 건 | 하-38 |
| 明治 42. 8. 21.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5호 | 한국정부에의 인허 청원에 관한 건 | 하-38 |
| 明治 42. 8. 23. | 목포이사청고시 제14호 | 한국정부에의 인허 청원에 관한 건 | 하-38 |
| 明治 42. 8. 23.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10호 | 한국정부에의 인허 청원에 관한 건 | 하-39 |
| 明治 42. 8. 24. | 마산이사청고시 제16호 | 한국정부에의 인허 청원에 관한 건 | 하-39 |
| 明治 42. 8. 26. | 부산이사청고시 제22호 | 한국정부에의 인허 청원에 관한 건 | 하-48 |
| 明治 42. 8. 26. | 원산이사청고시 제18호 | 한국정부에의 인허 청원에 관한 건 | 하-49 |
| 明治 41. 7. 6. | 경성이사청령 제8호 | 街路에 있어서의 廣告取締의 件 | 중-224 |

1.3.2. 公衆接客

| | | | |
|----------------|--------------|--------------------------------|-------|
| 明治 41. 3. 8. | 평양이사청령 제2호 | 湯屋營業取締規則 | 중-55 |
| 明治 41. 4. 16. | 원산이사청령 제3호 | 탕옥취체규칙 개정 | 중-94 |
| 明治 42. 3. 5. | 대구이사청령 제1호 | 탕옥영업취체규칙 | 중-542 |
| 明治 42. 9. 12. | 군산이사청령고시 제3호 | 탕옥취체규칙 | 하-67 |
| 明治 42. 11. 1. | 평양이사청령 제7호 | 탕옥영업취체규칙 개정 | 하-247 |
| 明治 42. 11. 13. | 군산이사청령 제5호 | 탕옥취체규칙 개정 | 하-252 |
| 明治 41. 5. 22. | 마산이사청령 제1호 | 宿屋營業取締規則 | 중-128 |
| 明治 42. 3. 4. | 청진이사청령 제1호 | 숙옥취체규칙 | 중-532 |
| 明治 42. 3. 4. | 청진이사청령 제5호 | 숙옥취체규칙을 淸津 및 羅南일본인회지역내에 적용하는 건 | 중-540 |
| 明治 42. 8. 21. | 성진이사청령 제4호 | 숙옥영업취체규칙 | 하-30 |
| 明治 42. 11. 13. | 군산이사청령 제5호 | 숙옥영업취체규칙 개정 | 하-252 |
| 明治 43. 1. 1. | 신의주이사청령 제2호 | 숙옥영업취체규칙 | 하-332 |
| 明治 43. 4. 1. | 부산이사청령 제2호 | 興行取締規則 | 하-468 |
| 明治 43. 4. 1. | 부산이사청령 제1호 | 劇場寄席取締規則 | 하-466 |

1.3.3. 市場

| | | | |
|---------------|--------------|---------------------|-------|
| 明治 41. 9. 13. | 목포이사청령 제6호 | 市場取締規則 | 중-307 |
| 明治 42. 6. 29. | 청진이사청령 제11호 | 시장취체규칙 | 중-718 |
| 明治 41. 5. 6. | 청진이사청고시 제9호 | 淸津日韓市場開設 | 중-115 |
| 明治 41. 12. 5. | 청진이사청고시 제18호 | 淸津北星町 일한시장 개시에 관한 건 | 중-441 |
| 明治 42. 8. 28. | 청진이사청고시 제24호 | 청진 및 나남시장구역 지정 | 하-51 |
| 明治 42. 4. 20. | 진남포이사청령 제2호 | 魚市場取締規則 | 중-646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1.4. 風俗

| | | |
|----------------|---------------|--------------------------------------|
| 明治 41. 4. 10. | 청진이사청고시 제7호 | 淸津港의 料理屋 · 藝妓酌婦營業地域 制限 중-87 |
| 明治 41. 5. 28. | 청진이사청고시 제11호 | 청진항의 요리옥 · 예기작부영업지역 제한건 개정 중-143 |
| 明治 41. 3. 9. | 원산이사청고시 제4호 | 藝妓酌婦의 威興衛戍軍隊宿營區域內 出入을 制限하는 件 중-58 |
| 明治 41. 4. 16. | 원산이사청령 제6호 | 藝妓取締規則 改正 중-90 |
| 明治 41. 10. 29. | 대구이사청령 제12호 | 예기취체규칙 중-408 |
| 明治 41. 12. 12. | 원산이사청고시 제20호 | 함흥예기작부통행제한구역 폐지 중-448 |
| 明治 41. 12. 17. | 진남포이사청령 제4호 | 예기 및 작부영업취체규칙 중-455 |
| 明治 42. 1. 5. | 인천이사청령 제3호 | 藝妓取締規則 중-491 |
| 明治 42. 3. 4. | 청진이사청령 제4호 | 藝妓 및 酌婦取締規則 중-539 |
| 明治 42. 3. 4. | 청진이사청령 제8호 | 예기 및 작부취체규칙시행구역 중-541 |
| 明治 42. 3. 4. | 청진이사청령 제9호 | 예기 및 작부취체규칙시행기일 중-541 |
| 明治 42. 4. 9. | 경성이사청령 제1호 | 예기취체규칙 개정 중-635 |
| 明治 42. 5. 6. | 진남포이사청령 제5호 | 예기 및 작부영업취체규칙 개정 중-656 |
| 明治 42. 7. 25. | 부산이사청령 제6호 | 예기영업 및 취체규칙 개정 하-11 |
| 明治 42. 8. 18. | 원산이사청령 제4호 | 예기 및 작부취체규칙 하-24 |
| 明治 42. 8. 21. | 성진이사청령 제3호 | 예기 및 작부취체규칙 하-29 |
| 明治 42. 9. 8. | 대구이사청령 제3호 | 예기취체규칙 개정 하-58 |
| 明治 42. 11. 13. | 군산이사청령 제5호 | 예기영업취체규칙 개정 하-252 |
| 明治 43. 1. 1. | 원산이사청고시 제4호 | 예기 및 작부취체규칙 하-335 |
| 明治 43. 1. 20. | 군산이사청령 제1호 | 예기영업취체규칙 개정 하-346 |
| 明治 43. 4. 7. | 목포이사청령 제2호 | 예기 및 작부취체규칙 하-479 |
| 明治 43. 8. 27. | 경무총감부령 제4호 | 예기취체규칙 개정 하-713 |
| 明治 43. 8. 13. | 통감부경무총감부령 제1호 | 妓生團束令 改正 하-702 |
| 明治 43. 8. 13. | 통감부경무총감부령 제2호 | 娼妓團束令 改正 하-702 |

1.5. 其他

| | | |
|---------------|-------------|-------------------------|
| 明治 41. 5. 30. | 목포이사청령 제5호 | 投票募集 기타 取諦의 건 중-143 |
| 明治 42. 10. 1. | 청진이사청령 제13호 | 賴母子講 기타 講會取諦에 관한 건 하-89 |

明治 43. 5. 17. 목포이사청령 제6호 英國皇帝葬日에 歌舞를 停止하는 건 하-553

II. 交通

2. 1. 市街地

| | | | |
|----------------|--------------|---|-------|
| 明治 41. 8. 22. | 청진이사청령 제12호 | 道路取締規則 | 중-274 |
| 明治 42. 9. 11. | 군산이사청령 제1호 | 도로취체규칙 | 하-60 |
| 明治 42. 11. 13. | 군산이사청령 제5호 | 도로취체규칙 개정 | 하-252 |
| 明治 42. 9. 30. | 인천이사청령 제8호 | 道路 宅地 기타 地區의 境界表示를 위하여 設置한 木石標의 移轉 除去를 禁止하는 件 | 하-88 |
| 明治 41. 6. 19. | 부산이사청고시 제9호 | 釜山日本帝國專管居留地內 市街道路區劃改正 | 중-205 |
| 明治 41. 9. 18. | 부산이사청 제6호 | 新市街道路區劃 變更 | 중-344 |
| 明治 42. 6. 13. | 부산이사청고시 제15호 | 絶影島市街區劃 | 중-699 |
| 明治 43. 6. 12. | 경성이사청고시 제15호 | 京城南大門內 通路를 一般公衆에 開放하는 件 | 하-585 |
| 明治 41. 2. 15. | 청진이사청고시 제3호 | 清津市街에 町名을 付하는 件 | 중-22 |
| 明治 42. 6. 5. | 청진이사청령 제10호 | 家屋建築規則 | 중-697 |
| 明治 42. 11. 13. | 군산이사청령 제5호 | 가옥건축규칙 개정 | 하-252 |
| 明治 42. 11. 17. | 대구이사청령 제4호 | 家屋 기타 建造物에 관한 件 改正 | 하-257 |
| 明治 41. 9. 11. | 경성이사청령 제9호 | 京城公園規則을 倭城臺日本公園에 適用하는 件 | 중-300 |

2. 2. 交通手段

2. 2. 1. 陸上

| | | | |
|----------------|------------|-----------------|-------|
| 明治 41. 2. 22. | 인천이사청령 제1호 | 牛車 및 荷馬車取締規則 | 중-25 |
| 明治 42. 1. 5. | 인천이사청령 제1호 | 우마 및 마하차취체규칙 개정 | 중-488 |
| 明治 41. 5. 16. | 부산이사청령 제2호 | 荷車取締規則 | 중-125 |
| 明治 42. 9. 12. | 군산이사청령 제2호 | 하차취체규칙 | 하-65 |
| 明治 42. 11. 13. | 군산이사청령 제5호 | 하차취체규칙 개정 | 하-252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3. 4. 11.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4호 | 鎮南浦各國居留地會荷車取締規則을 告示하는 件 | 하-497 |
| 明治 41. 5. 22. | 마산이사청령 제2호 | 人力車營業取締規則 | 중-130 |
| 明治 42. 4. 9. | 경성이사청령 제2호 | 待合營業取締規則 | 중-636 |
| 明治 42. 8. 14. | 경성이사청령 제8호 | 대합영업취체규칙을 용산에 적용하는 건 | 하-17 |
| 明治 43. 8. 27. | 통감부경무총감부령 제6호 | 대합영업소허가에 관한 건 | 하-713 |

2.2.2. 渡 船

| | | | |
|----------------|--------------|-----------------------------|-------------------|
| 明治 42. 10. 23. | 평양이사청고시 제29호 | 平安南道令 第3號 渡船營業取締規則을 告示하는 件 | 하-172 |
| 明治 43. 1. 15. | 성진이사청고시 제1호 | 함경북도령 제6호 도선영업취체규칙을 고시하는 건 | 하-343 [IX187~9] |
| 明治 43. 1. 15. | 성진이사청고시 제2호 | 함경북도령 제7호 渡船夫영업취체규칙을 고시하는 건 | 하-343 [IX 189~40] |
| 明治 43. 1. 16. | 청진이사청고시 제1호 | 함경북도령 제6호 도선영업취체규칙을 고시하는 건 | 하-344 [IX 187~9] |
| 明治 43. 1. 16. | 청진이사청고시 제2호 | 함경북도령 제7호 도선부영업취체규칙을 고시하는 건 | 하-344 [IX 189] |
| 明治 42. 11. 13. | 군산이사청령 제5호 | 解船營業取締規則 改正 | 하-252 |

Ⅲ. 衛 生

3.1. 一 般

| | | | |
|----------------|--------------|-------------|-------|
| 明治 40. 12. 27. | 통감부고시 제155호 | 漢城衛生會規則 | 상-482 |
| 明治 41. 4. 2. | 경성이사청령 제1호 | 除穢規則 | 중-78 |
| 明治 41. 9. 14. | 경성이사청고시 제23호 | 제예규칙시행구역 | 중-310 |
| 明治 41. 6. 11. | 청진이사청령 제8호 | 汚物掃除規則 | 중-149 |
| 明治 42. 9. 14. | 인천이사청령 제6호 | 防疫에 관한 件 | 하-70 |
| 明治 42. 9. 30. | 인천이사청령 제7호 | 방역에 관한 건 | 하-87 |
| 明治 42. 10. 17. | 인천이사청령 제9호 | 방역에 관한 건 폐지 | 하-125 |
| 明治 42. 9. 24. | 통감부고시 제101호 | 臨時防疫本部規程 | 하-82 |
| 明治 42. 10. 16. | 통감부고시 제105호 | 임시방역본부규정 폐지 | 하-125 |

| | | |
|----------------|-------------|-------------------------------------|
| 明治 42. 9. 21. | 경성이사청령 제9호 | 防疫上京城·龍山에서의 諸興行을 禁하는 件 하-81 |
| 明治 42. 10. 15. | 경성이사청령 제11호 | 제홍행금지에 관한 건 폐지 하-95 |
| 明治 42. 10. 11. | 경성이사청령 제10호 | 漢江流域에서의 漁撈 漂衣 기타 洗滌을 禁止하는 件 하-93 |
| 明治 42. 10. 26. | 경성이사청령 제12호 | 한강유역에서의 세척 및 오예물투기금지에 관한 건 폐지 하-174 |

3.2. 水道

| | | |
|----------------|------------|---|
| 明治 42. 9. 23. | 평양이사청령 제3호 | 防疫上 給水所以外的 河水汲取를 禁하는 件 하-82 |
| 明治 42. 12. 10. | 평양이사청령 제8호 | 惡病豫防을 위한 給水에 관한 件 廢止 하-278 |
| 明治 43. 3. 5. | 통감부고시 제20호 | 韓國勅令 第8號 官營의 水道給水에 관하여 納付하게 할 金額徵收에 대하여는 國稅徵法の 規定을 準用할 수 있는 件, 內部令 第6號 官營의 水道給水에 관하여 納付하게 할 金額 徵收에 대하여 國稅徵收法の 規定을 準用한 경우에 그 施行規則準用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하-370 [IX 271~2, 297] |
| 明治 43. 4. 16. | 통감부고시 제52호 | 內部令 第2號 水道給水規則을 告示하는 件 하-508 [IX 72~8] |

3.3. 傳染病

| | | |
|----------------|-------------|-----------------------|
| 明治 41. 11. 14. | 대구이사청령 제14호 | 傳染病豫防規則 중-422 |
| 明治 42. 6. 1. | 경성이사청령 제4호 | 전염병예방규칙 중-691 |
| 明治 42. 8. 20. | 성진이사청령 제1호 | 전염병예방규칙 하-25 |
| 明治 42. 9. 14. | 목포이사청령 제6호 | 전염병예방규칙 하-74 |
| 明治 42. 10. 28. | 목포이사청령 제7호 | 전염병예방규칙 개정 하-179 |
| 明治 42. 8. 28. | 신의주이사청령 제1호 | 虎列刺豫防取締에 관한 件 하-49 |
| 明治 42. 10. 6. | 신의주이사청령 제2호 | 호열자에방취체에 관한 건 폐지 하-93 |
| 明治 42. 5. 14. | 경성이사청령 제3호 | 花柳病豫防規則 중-668 |

3.4. 個人衛生

3.4.1. 飲食物

| | | | |
|----------------|--------------|------------------------|-------|
| 明治 41. 4. 16. | 원산이사청령 제5호 | 料理店取締規則 改正 | 중-90 |
| 明治 41. 4. 28. | 경성이사청령 제2호 | 음식점취체규칙 | 중-99 |
| 明治 41. 4. 30. | 경성이사청령 제4호 | 요리점·음식점취체규칙 | 중-108 |
| 明治 41. 9. 22. | 평양이사청령 제4호 | 平壤乙種料理屋營業地域 指定 | 중-349 |
| 明治 41. 10. 16. | 대구이사청령 제6호 | 飲食物에 覆蓋를 設置하는 件 廢止 | 중-387 |
| 明治 41. 10. 29. | 대구이사청고시 제22호 | 料理屋取締規則 施行에 관한 件 | 중-410 |
| 明治 41. 10. 29. | 대구이사청령 제10호 | 음식점취체규칙 | 중-406 |
| 明治 41. 10. 29. | 대구이사청령 제11호 | 요리옥취체규칙 개정 | 중-407 |
| 明治 41. 10. 29. | 대구이사청령 제9호 | 요리옥취체규칙 | 중-403 |
| 明治 41. 12. 17. | 진남포이사청령 제3호 | 요리옥·음식점영업취체규칙 | 중-453 |
| 明治 42. 1. 5. | 인천이사청령 제2호 | 요리점·음식점취체규칙 | 중-488 |
| 明治 42. 3. 4. | 청진이사청령 제2호 | 요리점취체규칙 | 중-534 |
| 明治 42. 3. 4. | 청진이사청령 제3호 | 음식점취체규칙 | 중-537 |
| 明治 42. 3. 4. | 청진이사청령 제6호 | 요리점취체규칙 시행구역 | 중-540 |
| 明治 42. 3. 4. | 청진이사청령 제7호 | 요리점취체규칙시행기일 | 중-541 |
| 明治 42. 5. 6. | 진남포이사청령 제4호 | 요리옥·음식점 영업취체규칙 개정 | 중-656 |
| 明治 42. 8. 18. | 원산이사청령 제2호 | 요리옥·음식점취체규칙 | 하-21 |
| 明治 42. 8. 18. | 원산이사청령 제3호 | 요리옥영업구역 | 하-23 |
| 明治 42. 8. 21. | 성진이사청령 제2호 | 요리점·음식점영업취체규칙 | 하-27 |
| 明治 42. 9. 8. | 대구이사청령 제2호 | 요리옥취체규칙 개정 | 하-58 |
| 明治 42. 11. 13. | 군산이사청령 제5호 | 요리옥·음식점영업취체규칙 개정 | 하-252 |
| 明治 43. 1. 1. | 신의주이사청령 제3호 | 요리점·음식점영업취체규칙 | 하-334 |
| 明治 43. 4. 7. | 목포이사청령 제1호 | 요리점취체규칙 | 하-477 |
| 明治 43. 4. 16. | 목포이사청령 제3호 | 요리점취체규칙시행기일 및 구역 | 하-501 |
| 明治 43. 4. 24. | 목포이사청령 제5호 | 목포거류민단지역내 을중요리점영업지역 지정 | 하-541 |
| 明治 43. 6. 1. | 목포이사청령 제7호 | 光州일본인회지역내 을중요리점영업지역 지정 | 하-561 |
| 明治 43. 8. 27. | 경무총감부령 제5호 | 요리점취체규칙 개정 | 하-713 |
| 明治 41. 4. 10. | 청진이사청고시 제7호 | 淸津港의 料理屋·藝妓酌婦營業地域 制限 | 중-87 |

| | | |
|---------------|--------------|-----------------------------------|
| 明治 41. 5. 28. | 청진이사청고시 제11호 | 清津港의 料理屋·藝妓酌婦營業地域 制限件 개정 중-143 |
| 明治 42. 3. 6. | 청진이사청고시 제6호 | 羅南의 特別料理店營業區域 指定 중-545 |

3. 4. 2. 畜産物

| | | |
|----------------|--------------|--|
| 明治 41. 4. 19. | 원산이사청령 제4호 | 屠獸場取締規則 중-94 |
| 明治 41. 10. 22. | 원산이사청고시 제17호 | 屠獸規則에 의한 屆書式 改正 중-399 |
| 明治 41. 12. 22. | 부산이사청령 제9호 | 活牛賣買營業取締規則 중-460 |
| 明治 41. 12. 24. | 부산이사청고시 제24호 | 釜山埋築株式會社의 埋立地 町名에 관한 건 중-463 |
| 明治 42. 8. 28. | 통감부고시 제83호 | 한국법률 제24호 屠獸規則을 고시하는 건 하-50 [VIII 415~6] |
| 明治 42. 9. 28. | 통감부령 제24호 | 韓國屠獸規則違反者 賞罰에 관한 件 하- 87 |
| 明治 42. 12. 25. | 평양이사청고시 제39호 | 황해도령 제4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하 는 건 하-311 |
| 明治 42. 12. 27. | 원산이사청고시 제28호 | 함경남도령 제4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 하는 건 하-317 |
| 明治 43. 1. 7.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호 | 황해도령 제4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하 는 건 하-338 |
| 明治 43. 1. 16. | 청진이사청고시 제3호 | 함경북도령 제8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 하는 건 하-345 [IX 226~9] |
| 明治 43. 1. 20. | 군산이사청고시 제1호 | 전라북도령 제3호 도수규칙시행세칙, 고시 제 3호 屠場設立地等級地를 고시하는 건 하- 346 [IX 234~7] |
| 明治 43. 1. 20. | 성진이사청고시 제3호 | 함경북도령 제8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 하는 건 하-347 [IX 226~9] |
| 明治 43. 1. 26. | 군산이사청고시 제3호 | 충청남도령 제7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 하는 건 하-349 [IX 207~210] |
| 明治 43. 1. 30. | 군산이사청령 제2호 | 전라북도령 제3호, 충청남도령 제7호 도수규 칙시행세칙 위배자의 처벌에 관한 건 하- 351 |
| 明治 43. 2. 2. | 대구이사청고시 제1호 | 경상북도령 제8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 하는 건 하-352 [IX 212~5]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3. 2. 7. | 목포이사청고시 제4호 | 전라남도령 제7호 도수규칙시행세칙 正誤件을 고시하는 건 | 하-353 |
| 明治 43. 2. 8.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4호 | 평안남도령 제1호 도수규칙시행세칙, 제2호 獸肉販賣營業取締規則을 고시하는 건 | 하-358 |
| 明治 43. 2. 10. | 평양이사청고시 제5호 | 평안남도령 제1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하는 건 | 하-365 |
| 明治 43. 2. 12.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6호 | 평안남도령 제1호 도수규칙시행세칙 정오건을 고시하는 건 | 하-367 |
| 明治 43. 2. 24. | 대구이사청고시 제3호 | 경상북도령 제9호 수육판매영업취체규칙을 고시하는 건 | 하-368 [IX 215~6] |
| 明治 43. 2. 24. | 목포이사청고시 제2호 | 전라남도령 제7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하는 건 | 하-368 |
| 明治 43. 3. 2. | 부산이사청고시 제2호 | 경상남도령 제6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하는 건 | 하-368 [IX 218~221] |
| 明治 43. 3. 8. | 마산이사청고시 제4호 | 경상남도령 제6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하는 건 | 하-372 [IX 218~221] |
| 明治 43. 3. 18. | 부산이사청고시 제6호 | 강원도령 제6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하는 건 | 하-395 [IX 223~6] |
| 明治 43. 3. 19. | 부산이사청고시 제7호 | 경상북도령 제8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하는 건 | 하-399 |
| 明治 43. 3. 26. | 목포이사청고시 제11호 | 전라북도령 제3호 도수규칙시행세칙을 고시하는 건 | 하-450 [IX 234~7] |
| 明治 43. 3. 4. | 부산이사청고시 제3호 | 慶尙南道告示 第2號 屠場設立地 指定件을 告示하는 件 | 하-369 |
| 明治 43. 3. 8. | 마산이사청고시 제5호 | 경상남도고시 제2호 도장설립지정건을 고시하는 건 | 하-372 [IX 221~2] |
| 明治 43. 3. 26. | 목포이사청고시 제12호 | 전라북도고시 제4호 도장설립지등급지를 고시하는 건 | 하-450 |

3.4.3. 家畜

| | | | |
|---------------|------------|------------|-------|
| 明治 41. 9. 16. | 부산이사청령 제5호 | 畜犬取締에 관한 件 | 중-341 |
| 明治 42. 5. 22. | 부산이사청령 제4호 | 축견취체규칙 개정 | 중-680 |
| 明治 42. 6. 29. | 경성이사청령 제6호 | 축견취체규칙 | 중-717 |
| 明治 42. 10. 1. | 마산이사청령 제1호 | 축견취체규칙 | 하-88 |

- 明治 43. 4. 7. 경성이사청령 제2호 축견취체규칙을 개성에 적용하는 건 하-480
 明治 43. 5. 8. 인천이사청령 제3호 축견취체규칙 하-551

IV. 教育

4. 1. 一般

4. 1. 1. 法令

- 明治 42. 2. 11. 통감부고시 제3호 小學校規則 중-519
 明治 43. 3. 30. 통감부령 제9호 統監府中學校規則 하-456
 明治 43. 3. 26. 칙령 제99호 統監府中學校官制 하-411
 明治 43. 3. 26. 칙령 제179호 統監府中學校長任用に 관한 件 하-447
 明治 43. 3. 30. 통감부훈령 제3호 統監府中學校長職務章程 하-461
 明治 41. 9. 8. 통감부고시 제139호 韓國勅令 第62號 私立學校令·第63號 學會令·學部令 第15號 公私立學校認定에 관한 規程·第16號 教科用圖書檢定規程을 告示하는 件 중-294
 [Ⅶ 277~281, 285~9]

4. 1. 2. 學事行政

- 明治 40. 4. 28. 통감부훈령 제11호 學事狀況 申報事項의 件 상-375
 明治 42. 5. 15. 통감부훈령 제12호 관내학사상황신보사항 개정 중-670
 明治 40. 8. 31. 통감부훈령 제18호 學事狀況에 관한 報告중 職員 및 生徒兒童數에 관한 申報에 관한 件 상-440
 明治 41. 3. 14. 통감부훈령 제5호 학사상황에 관한 보고중 직원 및 생도아동수에 관한 신보에 관한 건 개정 중-60
 明治 41. 6. 24. 통감부훈령 제10호 在外指定學校職員의 採用解職增俸減俸·기타의 進退를 報告하는 件 중-212
 明治 43. 6. 1. 문부성고시 제163호 統監府中學校生徒·卒業者의 他學校入學轉學에 관한 件 하-562
 明治 43. 6. 11. 통감부령 제25호 在外指定學校職員의 職務 및 服務에 관한 件 하-580
 明治 43. 4. 9. 통감부훈령 제5호 統監府中學校會計事務에 관한 手續은 理事廳會計事務章程을 準用하는 件 하-493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4. 1. 3. 給 與

| | | | |
|----------------|-----------|---------------------------------|-------|
| 明治 39. 8. 17. | 통감부령 제29호 | 在外指定學校職員俸給額規則 | 상-157 |
| 明治 39. 12. 18. | 통감부령 제53호 | 재외지정학교직원봉급액규칙 | 상-275 |
| 明治 41. 11. 17. | 통감부령 제48호 | 재외지정학교직원봉급규칙 | 중-424 |
| 明治 43. 3. 26. | 칙령 제165호 | 統監府中學校敎諭 講師俸給支給등에 관한 件 | 하-445 |
| 明治 39. 8. 17. | 통감부령 제30호 | 在外指定學校職員手當 및 舍宅料에 관한 件 | 상-158 |
| 明治 39. 12. 18. | 통감부령 제54호 | 재외지정학교직원수당 및 사택에 속하는 件 | 상-277 |
| 明治 40. 2. 19. | 법률 제2호 | 在外指定學校職員退隱料 및 遺族扶助料法 改正 | 상-308 |
| 明治 41. 4. 13. | 법률 제56호 |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 개정 | 중-87 |
| 明治 41. 6. 19. | 통감부령 제19호 | 在外指定學校職員恩給審査規程 | 중-202 |
| 明治 40. 4. 22. | 법률 제44호 | 居留民團立 在外指定學校職員退隱料 및 遺族扶助料에 관한 件 | 상-366 |
| 明治 43. 3. 31. | 법률 제34호 | 거류민단립 재외지정학교직원의 퇴은료 및 유족부조료 개정 | 하-463 |

4. 2. 學校組合

4. 2. 1. 法 令

| | | | |
|----------------|-------------|--------------|-------|
| 明治 42. 12. 27. | 통감부령 제71호 | 學校組合令 | 하-311 |
| 明治 43. 2. 8. | 평양이사청령 제1호 | 學校組合令施行規則 | 하-354 |
| 明治 43. 3. 10. | 진남포이사청령 제1호 | 학교조합령시행규칙 | 하-373 |
| 明治 43. 3. 18. | 인천이사청령 제1호 | 學校組合施行規則 | 하-393 |
| 明治 43. 4. 18. | 경성이사청령 제3호 | 학교조합령시행규칙 | 하-511 |
| 明治 43. 4. 20. | 원산이사청령 제1호 | 학교조합령시행규칙 | 하-517 |
| 明治 43. 4. 21. | 인천이사청령 제2호 | 학교조합령시행규칙 개정 | 하-534 |
| 明治 43. 6. 28. | 평양이사청령 제3호 | 학교조합령시행규칙 개정 | 하-606 |
| 明治 43. 3. 25. | 신의주이사청령 제5호 | 학교조합령시행세칙 | 하-401 |
| 明治 43. 2. 8. | 평양이사청고시 제2호 | 學校組合規約準則 | 하-358 |

| | | | |
|---------------|--------------|-----------------|-------|
| 明治 43. 3. 25.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4호 | 학교조합규약준칙 | 하-405 |
| 明治 43. 6. 28. | 평양이사청고시 제27호 | 학교조합규약준칙 개정 | 하-606 |
| 明治 43. 4. 1. | 마산이사청령 제1호 | 學校組合令實施心得 | 하-469 |
| 明治 43. 4. 20. | 군산이사청고시 제14호 | 학교조합규약준칙 | 하-528 |
| 明治 43. 4. 20. | 군산이사청령 제3호 | 학교조합령시행규칙 | 하-514 |
| 明治 43. 4. 20. | 원산이사청고시 제11호 | 학교조합규약준칙 | 하-521 |
| 明治 43. 4. 21.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9호 | 학교조합규약준칙 개정 | 하-535 |
| 明治 43. 5. 17. | 원산이사청고시 제15호 | 학교조합규약준칙 개정 | 하-553 |
| 明治 43. 6. 16. | 대구이사청고시 제14호 | 學校組合의 財務에 관한 規程 | 하-585 |

4. 2. 2. 個別學校組合

| | | | |
|---------------|-------------|--------------|-------|
| 明治 43. 3. 26. | 통감부고시 제30호 | 강화읍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448 |
| 明治 43. 3. 26. | 통감부고시 제31호 | 서산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449 |
| 明治 43. 3. 26. | 통감부고시 제32호 | 광량만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449 |
| 明治 43. 4. 9. | 통감부고시 제41호 | 황주학교조합설립 인가 | 하-493 |
| 明治 43. 4. 16. | 통감부고시 제45호 | 영변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02 |
| 明治 43. 4. 16. | 통감부고시 제46호 | 차련관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02 |
| 明治 43. 4. 16. | 통감부고시 제48호 | 사리원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03 |
| 明治 43. 4. 16. | 통감부고시 제49호 | 겸이포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03 |
| 明治 43. 4. 23. | 통감부고시 제60호 | 하동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38 |
| 明治 43. 4. 23. | 통감부고시 제62호 | 정주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39 |
| 明治 43. 4. 30. | 통감부고시 제67호 | 용암포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43 |
| 明治 43. 4. 30. | 통감부고시 제72호 | 의주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45 |
| 明治 43. 5. 7. | 통감부고시 제75호 | 안주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48 |
| 明治 43. 5. 7. | 통감부고시 제76호 | 신안주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48 |
| 明治 43. 5. 14. | 통감부고시 제79호 | 강릉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52 |
| 明治 43. 5. 14. | 통감부고시 제80호 | 어청도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52 |
| 明治 43. 5. 14. | 통감부고시 제81호 | 선천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52 |
| 明治 43. 5. 21. | 통감부고시 제82호 | 고성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56 |
| 明治 43. 5. 28. | 통감부고시 제85호 | 증강진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59 |
| 明治 43. 5. 28. | 통감부고시 제86호 | 창원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60 |
| 明治 43. 5. 28. | 통감부고시 제87호 | 청도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60 |
| 明治 43. 5. 28. | 통감부고시 제88호 | 김천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60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100호 | 진영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3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101호 | 김해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4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102호 | 낙동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4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103호 | 방어진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4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104호 | 하단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5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105호 | 덕두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5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106호 | 삼랑진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5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107호 | 영일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6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90호 | 북진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0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92호 | 수원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1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93호 | 송진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1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94호 | 동래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1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95호 | 울산만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2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96호 | 다대포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2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97호 | 구포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2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98호 | 울산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3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99호 | 밀양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73 |
| 明治 43. 6. 11. | 통감부고시 제110호 | 물금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82 |
| 明治 43. 6. 11. | 통감부고시 제111호 | 울릉도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82 |
| 明治 43. 6. 11. | 통감부고시 제113호 | 경주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82 |
| 明治 43. 6. 11. | 통감부고시 제114호 | 자인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83 |
| 明治 43. 6. 11. | 통감부고시 제115호 | 영천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83 |
| 明治 43. 6. 11. | 통감부고시 제117호 | 안동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84 |
| 明治 43. 6. 18. | 통감부고시 제119호 | 통영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92 |
| 明治 43. 6. 18. | 통감부고시 제120호 | 고부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92 |
| 明治 43. 6. 18. | 통감부고시 제121호 | 삼천리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92 |
| 明治 43. 6. 18. | 통감부고시 제122호 | 영동포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93 |
| 明治 43. 6. 18. | 통감부고시 제123호 | 금산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93 |
| 明治 43. 6. 18. | 통감부고시 제124호 | 규암리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93 |
| 明治 43. 6. 18. | 통감부고시 제125호 | 영암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593 |
| 明治 43. 6. 25. | 통감부고시 제132호 | 추풍령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603 |
| 明治 43. 6. 25. | 통감부고시 제133호 | 왜관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603 |
| 明治 43. 6. 25. | 통감부고시 제134호 | 남원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603 |
| 明治 43. 6. 25. | 통감부고시 제135호 | 상주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603 |
| 明治 43. 6. 25. | 통감부고시 제136호 | 태변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604 |
| 明治 43. 7. 2. | 통감부고시 제144호 | 혜산진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619 |

| | | | |
|---------------|-------------|---------------|-------|
| 明治 43. 7. 9. | 통감부고시 제145호 | 진주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621 |
| 明治 43. 7. 9. | 통감부고시 제146호 | 경산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622 |
| 明治 43. 7. 16. | 통감부고시 제149호 | 흑교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631 |
| 明治 43. 7. 16. | 통감부고시 제150호 | 별교포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631 |
| 明治 43. 7. 16. | 통감부고시 제151호 | 황주학교조합지구 변경인가 | 하-631 |
| 明治 43. 7. 23. | 통감부고시 제153호 | 영동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635 |
| 明治 43. 7. 23. | 통감부고시 제154호 | 구조라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635 |
| 明治 43. 8. 27. | 통감부고시 제187호 | 지세포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714 |
| 明治 43. 8. 27. | 통감부고시 제188호 | 대장촌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714 |
| 明治 43. 8. 27. | 통감부고시 제189호 | 입좌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714 |
| 明治 43. 8. 27. | 통감부고시 제190호 | 영덕학교조합 설립인가 | 하-715 |

4. 3. 民團設立學校

| | | | |
|----------------|-------------|---|-------|
| 明治 43. 6. 4. | 통감부령 제23호 | 在外指定學校規程 | 하-566 |
| 明治 39. 8. 17. | 통감부고시 제85호 | 仁川居留民團立 尋常高等小學校를 在外指定學校 職員退隱料 및 遺族扶助料法에 의하여 指定하는 件 | 상-158 |
| 明治 39. 8. 29. | 통감부고시 제91호 | 京城居留民團立 京城尋常高等小學校를 在外指定 學校職員退隱料 및 遺族扶助料法에 의하여 指定 하는 件 | 상-161 |
| 明治 39. 10. 11. | 통감부고시 제112호 | 군산거류민단립 군산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 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 하는 件 | 상-204 |
| 明治 39. 10. 12. | 통감부고시 제113호 | 평양거류민단립 평양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 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 하는 件 | 상-205 |
| 明治 39. 10. 12. | 통감부고시 제114호 | 마산거류민단립 마산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 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 하는 件 | 상-205 |
| 明治 39. 10. 23. | 통감부고시 제117호 | 원산거류민단립 원산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 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 하는 件 | 상-209 |
| 明治 40. 1. 24. | 통감부고시 제10호 | 부산거류민국립 부산상업학교·부산고등여학교 ·부산고등소학교·부산심상소학교·초량심상 |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 | 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한 학교지정 상-298 |
| 明治 40. | 2. 7. | 통감부고시 제20호 | 목포거류민단립 목포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상-304 |
| 明治 40. | 2. 24. | 통감부고시 제28호 | 진남포거류민단립 진남포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상-311 |
| 明治 41. | 1. 19. | 통감부고시 제3호 | 대구거류민단립 대구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중-11 |
| 明治 41. | 3. 17. | 통감부고시 제39호 | 경성거류민단립 경성심상고등소학교를 경성거류민단립제일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하는 건 인가중-67 |
| 明治 41. | 3. 26. | 통감부고시 제46호 | 용산거류민단립 용산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중-71 |
| 明治 41. | 4. 1. | 통감부고시 제56호 | 경성거류민단립 제이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중-78 |
| 明治 41. | 4. 1. | 통감부고시 제57호 | 부산거류민단립 부산고등소학교를 부산거류민단립부산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하는 건 인가중-78 |
| 明治 41. | 9. 5. | 통감부고시 제138호 | 경성거류민단립 고등여학교를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중-293 |
| 明治 42. | 4. 24. | 통감부고시 제35호 | 신의주거류민단의 신의주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중-649 |
| 明治 42. | 6. 12. | 통감부고시 제51호 | 경성거류민단립 경성중학교를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중-699 |
| 明治 42. | 7. 3. | 통감부고시 제62호 | 대전일본거류민단립 대전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하-2 |

| | | | |
|--------|--------|-------------|---|
| 明治 42. | 7. 17. | 통감부고시 제65호 | 개성거류민립 개성심상고등소학교, 통영일본인회립 통영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하-4 |
| 明治 43. | 3. 30. | 통감부고시 제37호 | 경성거류민단립 제일심상고등소학교를 경성거류민단립 일출심상고등소학교로, 경성거류민단립 제이심상 고등소학교를 경성거류민단립 남대문심상고등소학교로 변경하는 건 하-463 |
| 明治 43. | 3. 31. | 통감부고시 제38호 | 경성거류민단립 경성중학교폐지건 인가 하-465 |
| 明治 43. | 4. 1. | 통감부고시 제39호 | 부산거류민단립 목도심상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 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하-471 |
| 明治 43. | 4. 11. | 통감부고시 제50호 | 경성거류민단립 櫻井심상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 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하-496 |
| 明治 43. | 6. 11. | 통감부고시 제118호 | 수원학교조합립 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 직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하-584 |
| 明治 43. | 7. 23. | 통감부고시 제152호 | 청진일본인회립 청진심상고등소학교를 재외지정학교퇴은료 및 유족부조료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건 하-634 |
| 明治 43. | 8. 5. | 통감부고시 제171호 | 용산거류민단립 용산심상고등소학교를 경성거류민단립 용산심상고등소학교로 변경하는 건 인가 하-695 |

第9章 産業

I. 農·漁業

1. 1. 勸業場

| | | | |
|---------------|------------|-----------------------------------|-------|
| 明治 39. 4. 26. | 칙령 제91호 | 統監府勸業模範場官制 | 상-65 |
| 明治 40. 3. 28. | 칙령 제69호 | 통감부권업모범장관제 폐지 | 상-343 |
| 明治 39. 6. 22. | 통감부훈령 제9호 | 統監府勸業模範場處務規程 | 상-91 |
| 明治 39. 4. 26. | 칙령 제92호 | 統監府勸業模範場職員의 給與에 관한 件 | 상-66 |
| 明治 39. 6. 15. | 통감부고시 제48호 | 통감부권업모범장을 경기수원에 설치하는 건 | 상-89 |
| 明治 39. 6. 24. | 통감부훈령 제10호 | 統監府勸業模範場長이 專行 處理할 主管事務에 관한 件 | 상-93 |
| 明治 39. 10. 9. | 통감부훈령 제23호 | 統監府 및 理事廳物品會計規程을 統監府勸業模範場에 準用하는 件 | 상-202 |

1. 2. 開墾 등

| | | | |
|---------------|--------------|---|-------------------|
| 明治 40. 7. 11. | 통감부고시 제97호 | 한국법률 제4호 國有未墾地利用法을 告示하는 件 | 상-428 [V 574~6] |
| 明治 40. 7. 13. | 통감부고시 제98호 | 농상공부령 제50호 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細則을 告示하는 件 | 상-429 [V 577~581] |
| 明治 40. 8. 11. | 통감부고시 제107호 | 농상공부령 제50호 國有未墾地利用法施行細則에 의한 願·請·屆書 提出에 관한 件 | 상-435 |
| 明治 41. 7. 27.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9호 | 黃草平島 葦草刈取를 禁하는 件 | 중-232 |
| 明治 41. 1. 11. | 진남포이사청령 제1호 | 輸出穀物用 및 繩取締規則 | 중-3 |
| 明治 42. 7. 17. | 통감부고시 제64호 | 한국법률 제21호 輸出牛檢疫法을 告示하는 件 | 하-4 [VIII 356~7] |
| 明治 42. 8. 28. | 통감부고시 제81호 | 한국법률 제23호 수출우검역법 개정건을 告示하는 件 | 하-50 [VIII 412~3] |

1.3. 山林

1.3.1. 一般

| | | | |
|---------------|------------|--|--------------------------|
| 明治 41. 3. 27. | 통감부고시 제47호 | 한국법률 제1호 森林法·農商工部令 第63號 國有森山野部分林規則을 告示하는 件 | 중-71 [VI 231~4, 286~295] |
| 明治 41. 5. 13. | 통감부고시 제71호 | 농상공부령 제65호 森林法施行細則을 告示하는 件 | 중-122 [VI 376~9] |
| 明治 40. 3. 28. | 법률 제24호 | 韓國森林特別會計法 | 상-340 |
| 明治 40. 3. 29. | 칙령 제88호 | 韓國森林特別會計規則 | 상-350 |
| 明治 41. 6. 2. | 칙령 제140호 | 한국삼림특별회계규칙 개정 | 중-144 |
| 明治 40. 3. 30. | 대장성훈령 제16호 | 韓國森林特別會計金庫出納事務規程 | 상-354 |

1.3.2. 營林廠

| | | | |
|----------------|-------------|--------------------------------------|-------|
| 明治 40. 3. 28. | 칙령 제72호 | 統監府營林廠官制 | 상-344 |
| 明治 43. 3. 26. | 칙령 제97호 | 통감부영림창관제 개정 | 하-410 |
| 明治 40. 3. 28. | 칙령 제73호 | 統監府營林廠職員 官等給與令 | 상-346 |
| 明治 40. 3. 28. | 칙령 제75호 | 통감부영림창고등관의 관등에 관한 건 | 상-347 |
| 明治 40. 3. 28. | 칙령 제74호 | 統監府營林廠職員 特別任用令 | 상-346 |
| 明治 40. 3. 28. | 칙령 제76호 | 陸軍現役將校 同相當官으로 統監府營林廠職員에 任用된 者에 관한 件 | 상-347 |
| 明治 42. 10. 16. | 통감부령 제27호 | 統監府營林廠木材 製品賣拂代金延滯의 擔保로 提供되는 有價證券의 種類 | 하-124 |
| 明治 41. 10. 9. | 통감부고시 제168호 | 統監府營林廠을 新義州理事廳廳舍로 移轉하는 件 | 중-378 |
| 明治 42. 10. 30. | 통감부고시 제109호 | 통감부영림창청사를 신의주로 이전하는 건 | 하-211 |

1.3.3. 保安林

| | | | |
|---------------|-------------|---|-------|
| 明治 41. 7. 30. | 통감부고시 제112호 | 農商工部告示 第10號 漢城5部內 區域森林을 保安林에 編入하는 件을 告示하는 件 | 중-236 |
| 明治 42. 10. 2. | 통감부고시 제103호 | 農商工部告示 第29號 慶尙北道安東郡府內面 松項堤 |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 浦項堤所在 國有森林을 保安林에 編入하는 件을 告示하는 件 | 하-92 |
| 明治 42. 10. 30. | 통감부고시 제110호 | 농상공부고시 제34호 함경남도 利原郡 南面 松端里 소재 國有森林을 保安林에 편입하는 件을 고시하는 件 | 하-211 |
| 明治 42. 10. 30. | 통감부고시 제111호 | 농상공부고시 제30호 漢城府 東部 踏十里 安岩洞 民有保安林解除를 고시하는 件 | 하-211 |

1.4. 漁業

| | | | |
|----------------|--------------|--|--------------------|
| 明治 41. 11. 13. | 통감부고시 제186호 | 日韓漁業協定을 告示하는 件 | 중-421 |
| 明治 41. 11. 13. | 통감부고시 제187호 | 韓國法律 第29號 漁業法을 告示하는 件 | 중-421 [VII 482~5] |
| 明治 41. 11. 27. | 통감부고시 제193호 | 농상공부령 제72호 漁業法施行細則을 告示하는 件 | 중-431 [VII 510~4] |
| 明治 43. 1. 15. | 통감부고시 제3호 | 탁지부령 제34호 어업범시행세칙개정건을 고시하는 件 | 하-340 [VIII 211~2] |
| 明治 42. 3. 10. | 통감부고시 제19호 | 한국칙령 제22호 漁業法施行期日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 중-546 [VIII 95] |
| 明治 42. 3. 10. | 통감부고시 제20호 | 농상부고시 제14호 漁業免許狀·許可狀·鑑札의 式樣, 제15호 漁業法施行細則 規定에 의한 請願書·申請書·申告書의 書式을 告示하는 件 | 중-546 [VIII 47~60] |
| 明治 42. 3. 17. | 통감부고시 제23호 | 한국칙령 제25호 漁業에 관한 手數料의 件을 告示하는 件 | 중-551 [VIII 125~7] |
| 明治 42. 3. 30. | 부산이사청령 제9호 | 韓國漁業法에 의한 届出은 朝鮮海水産組合을 經由하는 件 | 중-597 |
| 明治 42. 3. 31. | 군산이사청령 제9호 | 한국어업법에 의한 계출은 朝鮮海産조합 軍山 支부를 經유하는 件 | 중-598 |
| 明治 42. 3. 31. | 원산이사청령 제6호 | 한국어업법에 의한 계출은 朝鮮海産조합 元山 支부를 經유하는 件 | 중-598 |
| 明治 42. 4. 30. | 평양이사청고시 제14호 | 한국어업법에 의한 어업면허출원에 관한 件 | 중-650 |
| 明治 42. 11. 13. | 군산이사청령 제5호 | 漁業取締規則 改正 | 하-252 |
| 明治 43. 1. 15. | 평양이사청유고 제1호 | 韓國漁業法 第16條 해당 漁業者의 出願期限 | 하-344 |

| | | |
|---------------|--------------|--|
| 明治 43. 1. 18. | 마산이사청유고 제1호 | 한국어업법 제16조 해당어업자의 출원기한 하-345 |
| 明治 43. 1. 19. | 진남포이사청유고 제1호 | 한국어업법 제16조 해당어업자의 출원기한 하-345 |
| 明治 43. 1. 21. | 목포이사청유고 제1호 | 한국어업법 제16조 해당어업자의 출원기한 하-347 |
| 明治 43. 1. 24. | 군산이사청고시 제2호 | 한국어업법 제16조 해당어업자의 출원기한 하-348 |
| 明治 43. 6. 10. | 마산이사청고시 제15호 | 鎮海灣要塞司令部의 鎮海港要塞地帶區域中 內漁網沈設 禁止 通知를 告示하는 件 하-579 |

II. 海運 關係

2.1. 船舶

2.1.1. 一般

| | | |
|---------------|------------|---|
| 明治 43. 3. 12. | 통감부고시 제24호 | 韓國沿海 및 內河의 運航에 관한 約定書 改正 件을 告示하는 件 하-386 |
| 明治 43. 3. 12. | 통감부령 제3호 | 船舶規則 하-376 |
| 明治 43. 3. 19. | 통감부고시 제29호 | 韓國法律 제1호 船舶法, 제2호 船舶檢査法, 제3호 船舶積量測度法을 告示하는 件 하-399 [IX 326~338] |
| 明治 43. 4. 16. | 통감부고시 제44호 | 韓國勅令 제25호 船舶信號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하-502 [IX 379] |

2.2.2. 船舶檢査

| | | |
|---------------|-------------|--|
| 明治 43. 3. 12. | 통감부령 제4호 | 船舶檢査規則 하-380 |
| 明治 43. 6. 11. | 통감부고시 제112호 | 關稅局告示 第1號 船舶檢査執行地, 제2호 同 執行期日을 告示하는 件 하-582 [IX 413] |
| 明治 43. 4. 30. | 통감부고시 제73호 | 船舶檢査를 執行하는 件 하-545 |
| 明治 43. 4. 30. | 통감부고시 제74호 | 선박검사를 집행하는 건 하-545 |
| 明治 43. 6. 4. | 통감부고시 제108호 | 船舶檢査執行期日 하-576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3. 8. 23. | 통감부고시 제185호 | 선박검사집행기일 개정 | 하-711 |
| 明治 43. 6. 9. | 마산이사청고시 제14호 | 선박검사에 관한 건 | 하-578 |
| 明治 43. 6. 10. | 군산이사청고시 제17호 | 선박검사에 관한 건 | 하-580 |
| 明治 43. 6. 11. | 원산이사청고시 제17호 | 선박검사에 관한 건 | 하-585 |
| 明治 43. 7. 6.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23호 | 선박검사에 관한 건 | 하-620 |
| 明治 43. 8. 8.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22호 | 선박검사에 관한 건 | 하-695 |
| 明治 43. 8. 3. | 군산이사청고시 제24호 | 日本船舶의 檢査에 관한 件 | 하-659 |
| 明治 43. 4. 8. | 군산이사청고시 제12호 | 管内 船舶檢査에 관한 件 | 하-481 |
| 明治 43. 4. 11.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6호 | 관내선박검사에 관한 건 | 하-496 |
| 明治 43. 4. 12. | 목포이사청고시 제16호 | 관내선박검사에 관한 건 | 하-499 |
| 明治 43. 6. 9. | 청진이사청고시 제16호 | 관내선박의 검사는 당분간 부산이사청에 신 청하는 건 | 하-579 |
| 明治 43. 5. 1. | 성진이사청고시 제8호 | 관내선박의 검사는 당분간 부산이사청에 출 원하는 건 | 하-546 |
| 明治 43. 5. 14. | 성진이사청고시 제10호 | 관내선박의 검사는 당분간 원산이사청에 출 원하는 건 | 하-553 |
| 明治 43. 6. 16. | 청진이사청고시 제17호 | 관내선박의 검사를 당청에서 집행하는 건 | 하-587 |
| 明治 43. 4. 17. | 목포이사청고시 제18호 | 郵便船 기타 至急을 要하는 船舶에 대하여 夜 間檢疫을 執行하는 件을 告示하는 件 | 하-511 |
| 明治 43. 4. 19. | 군산이사청고시 제13호 | 우편선 기타 지급을 요하는 선박에 대하여 야 간검역을 집행하는 건을 고시하는 건 | 하-514 |

2.2. 航路 · 燈臺 · 觀測所

2.2.1. 航路

| | | | |
|----------------|--------------|--|-------|
| 明治 40. 12. 30. | 마산이사청고시 제20호 | 馬山浦 및 鎮海灣 立標 新設에 관한 當局의 通 牒을 告示하는 件 | 상-483 |
| 明治 41. 2. 15. | 마산이사청고시 제3호 | 馬山浦 燈立標位置에 관한 한국관세총장의 正 誤통지를 고시하는 건 | 중-21 |
| 明治 41. 4. 24. | 군산이사청고시 제10호 | 群山浦浮漂 新設에 관한 한국동대국 통지를 고시하는 건 | 중-97 |

| | | |
|----------------|---------------|--|
| 明治 41. 5. 9. | 마산이사청고시 제6호 | 釜山港內 瀨漸 燈立標 및 登年多利立標塗色變更에 관한 관세총장의 通牒을 고시하는 건 중-117 |
| 明治 41. 7. 29. | 마산이사청고시 제13호 | 압록강구 · 안동현간항로상 浮漂 및 陸標設置에 관한 당국의 통지를 고시하는 건 중-235 |
| 明治 42. 2. 3. | 군산이사청 제2호 | 군산포부표변경에 관한 등대국통지를 고시하는 건 중-487 |
| 明治 42. 4. 5.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5호 | 대동강중부부표정치에 관한 한국등대국 통지를 고시하는 건 중-600 |
| 明治 42. 6. 21. | 군산이사청고시 제15호 | 韓國西岸鳴洋島立標新設 및 群山浮漂位置變更에 관한 관세총장의 통지를 고시하는 건 중-712 |
| 明治 42. 6. 21. | 목포이사청고시 제11호 | 한국서안명양도립표신설 및 군산부표위치 변경에 관한 관세총장의 통지를 고시하는 건 중-713 |
| 明治 42. 9. 13.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9호 | 대동강철도부근 계등부표 신설에 관한 한국등대국통지를 고시하는 건 하-69 |
| 明治 42. 9. 18. | 군산이사청고시 제18호 | 군산포용당강계등립표 신설에 관한 한국등대국통지를 고시하는 건 하-78 |
| 明治 42. 9. 18. | 군산이사청고시 제19호 | 군산포전망산계등립표 신설에 관한 한국등대국통지를 고시하는 건 하-79 |
| 明治 42. 11. 16. | 군산이사청고시 제27호 | 한국등대국의 군산포부표철거 번호변경에 관한 통지를 고시하는 건 하-255 |
| 明治 42. 12. 4. | 목포이사청고시 제29호 | 관세국고시 제96호 韓國西岸木浦瓦斯浮漂의 변경건을 고시하는 건 하-276 |
| 明治 43. 4. 20. | 원산이사청고시 제10호 | 관세국고시 제105호 원산항 등의 신설 및 동제2호 부표의 철거를 고시하는 건 하-520 |
| 明治 43. 4. 28.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6호 | 韓國航路標識管理所의 大洞江東 · 西 · 中洲 浮標並鐵道 燈浮標의 碇置 通知를 告示하는 件 하-542 |
| 明治 43. 7. 4.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19호 | 韓國船路標識管理所의 鴨錄江浮標 및 陸標의 設置 通知를 告示하는 件 하-619 |

2.2.2. 燈臺

| | | |
|----------------|---------------|--|
| 明治 41. 1. 4.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호 | 한국등대국의 황해도 小青島 등대 및 霧笛新設通知를 고시하는 건 중-1 |
| 明治 41. 4. 6. | 군산이사청고시 제7호 | 평안북도 선천만층 대화도 등대점 등에 관한 한국등대국통지를 고시하는 건 중-80 |
| 明治 41. 6. 16. | 마산이사청고시 제8호 | 대동강부표신설 · 大洞江西島燈臺閃光時間變更에 관한 관세총장의 통첩을 고시하는 건 중-152 |
| 明治 41. 6. 17.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8호 | 대동강부표신설 · 대동강서도등대섬광시간변경에 관한 관세총장의 통첩을 고시하는 건 중-154 |
| 明治 41. 6. 18. | 군산이사청고시 제12호 | 대동강부표신설 · 대동강서도등대섬광시간변경에 관한 관세총장의 통첩을 고시하는 건 중-202 |
| 明治 41. 7. 28.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3호 | 韓國燈臺局告示 제42호를 고시하는 건 중-234 |
| 明治 41. 7. 29. | 마산이사청고시 제14호 | 韓國東岸 수원단燈臺霧笛吹鳴開始에 관한 당국의 통지를 고시하는 건 중-235 |
| 明治 41. 7. 31. | 원산이사청고시 제12호 | 수원단등대의 무적취명에 관한 등대국통지를 고시하는 건 중-238 |
| 明治 41. 9. 14.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15호 | 대동강 避島 · 簾島 등대신설에 관한 한국등대국 통지를 고시하는 건 중-309 |
| 明治 41. 11. 30.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20호 | 압록강 및 대동강 부표철거 및 동안대화도燈臺點燈停止에 관한 한국등대국통지를 고시하는 건 중-434 |
| 明治 42. 3. 16. | 군산이사청고시 제6호 | 群山浦丙號立標의 점등에 관한 한국등대국통지를 고시하는 건 중-550 |
| 明治 42. 9. 14.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13호 | 한국등대국통지를 고시하는 건 하-76 |
| 明治 42. 9. 18. | 군산이사청고시 제17호 | 한국서안 下鳥島燈臺 무적취명정지에 관한 한국등대국통지를 고시하는 건 하-78 |
| 明治 42. 9. 25. | 목포이사청고시 제10호 | 목포서안 하조도등대무적취명정지 통지를 고시하는 건 하-86 |
| 明治 42. 10. 16. | 목포이사청고시 제21호 | 목포서안하조도등대무적취명 개시 하-125 |

| | | | |
|----------------|---------------|---|-------|
| 明治 42. 10. 16. | 신의주이사청고시 제14호 | 한국등대국통지를 고시하는 건 | 하-125 |
| 明治 42. 11. 16. | 군산이사청고시 제28호 | 한국등대국의 전라북도 古群山未島 등대점등에 관한 통지를 고시하는 건 | 하-256 |
| 明治 43. 1. 24.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2호 | 한국등대국의 大洞江 鎮南浦 비발도등대의 점등정지에 관한 통지를 고시하는 건 | 하-349 |
| 明治 43. 3. 19. | 진남포이사청고시 제9호 | 한국항로표지관리소의 대동강진남포 비발도 등대 점등개시 통지를 고시하는 건 | 하-399 |
| 明治 43. 5. 18. | 목포이사청고시 제22호 | 한국남안 港門燈臺의 무적정지 통지를 고시하는 건 | 하-554 |
| 明治 43. 5. 18. | 목포이사청고시 제23호 | 한국서안 전라남도 목포항의 대로추도燈臺 건설과 점등개시 통지를 고시하는 건 | 하-554 |
| 明治 43. 6. 5. | 청진이사청고시 제15호 | 관세국고시 제111호 함경북도 청진 등대 및 무적신설통지를 고시하는 건 | 하-577 |
| 明治 43. 7. 24. | 목포이사청고시 제29호 | 한국정부의 목포 小茅島 등대 신설을 고시하는 건 | 하-637 |

2.2.3. 觀測所

| | | | |
|---------------|--------------|-------------------------------|-------|
| 明治 40. 3. 28. | 칙령 제70호 | 統監府觀測所官制 | 상-343 |
| 明治 41. 3. 29. | 칙령 제56호 | 통감부관측소관제 폐지 | 중-72 |
| 明治 40. 4. 9. | 통감부고시 제60호 | 統監府觀測所 同支所의 名稱 位置 | 상-361 |
| 明治 40. 3. 28. | 칙령 제71호 | 統監府觀測所 判任官의 給與에 관한 件 | 상-344 |
| 明治 41. 9. 26. | 인천이사청고시 제21호 | 月尾島暴風雨標設置에 관한 觀測所의 通知를 告示하는 件 | 중-357 |

Ⅲ. 鑛工業

3.1. 鑛業

| | | | |
|---------------|-------------|-------------------------|------------------|
| 明治 39. 7. 13. | 통감부고시 제67호 | 韓國法律 제3호 鑛業法을 告示하는 件 | 상-122 [IV 590~5] |
| 明治 40. 8. 10. | 통감부고시 제104호 | 한국법률 제3호 광업법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 상-434 [VI 4~5]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1. | 5. 12. | 통감부고시 제69호 | 한국법률 제4호 광업법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중-122 [VI 306] |
| 明治 41. | 7. 23. | 통감부고시 제108호 | 韓國法律 제11호 鑛業法改正件, 제12호 砂鑛採取法 改正件을 告示하는 件 中-229 [VII 2~3] |
| 明治 39. | 7. 29. | 통감부고시 제73호 | 농상공부령 제43호 광업법시행세칙을 고시하는 건 상-143 [V 7~13] |
| 明治 41. | 2. 28. | 통감부고시 제19호 | 농상공부령 제57호 광업법시행세칙개정건을 고시하 는 건 中-46 [VI 265] |
| 明治 39. | 8. 12. | 통감부고시 제82호 | 農商工部令 제45호 鑛業法施行細則附屬樣式을 告示 하는 件 上-154 [V 18~34] |
| 明治 41. | 2. 28. | 통감부고시 제20호 | 농상공부령 제58호 광업법시행세칙부속양식개정건 을 고시하는 건 中-47 [VI 265~6] |
| 明治 41. | 7. 23. | 통감부고시 제109호 | 農商工部令 제66호 鑛業法施行細則 改正件, 제67호 鑛業法施行細則附屬樣式 改正件, 제68호 砂鑛採取 法施行細則改正件, 제69호 砂鑛採取法施行細則附 屬樣式改正件을 告示하는 件 中-229 [VII 6~ 7, 13~8] |
| 明治 42. | 6. 19. | 통감부고시 제59호 | 農商工部告示 제23호 農商工部所屬 石炭 및 鐵鑛採 掘區域에 관한 件을 告示하는 件 中-710 [VII 283~4] |
| 明治 39. | 7. 29. | 통감부고시 제72호 | 韓國法律 제4호 砂鑛採取法을 告示하는 件 上-1 43 [V 47~9] |
| 明治 40. | 8. 10. | 통감부고시 제105호 | 한국법률 제4호 사광채취법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상-435 [VI 5~6] |
| 明治 41. | 5. 12. | 통감부고시 제70호 | 한국법률 제5호 사광채취법개정건을 고시하는 건 중-122 [VI 307] |
| 明治 39. | 8. 12. | 통감부고시 제83호 | 농상공부령 제46호 사광채취법시행세칙을 고시하는 건 上-154 [V 13~5] |
| 明治 39. | 8. 15. | 통감부고시 제84호 | 농상공부령 제47호 사광채취법시행세칙부속양식을 고시하는 건 上-155 [V 63~75] |
| 明治 41. | 2. 28. | 통감부고시 제21호 | 농상공부령 제59호 사광채취법시행세칙부속양식개 정건을 고시하는 건 中-47 [VI 266] |
| 明治 40. | 8. 10. | 통감부고시 제106호 | 한국칙령 제2호 宮內府鑛山廢止에 관한 件을 告示하 는 件 上-435 [VI 6] |
| 明治 41. | 8. 19. | 통감부고시 제124호 | 韓國勅令 제58호 國有土石採取規則을 告示하는 件 중-271 [VII 135~7] |

明治 42. 3. 17. 통감부고시 제24호 韓國勅令 제27호 國有土石採取規則 改正件을 告示하는 件 중-551 [VIII 132~3]

3.2. 無體財產權

3.2.1. 一般

明治 41. 8. 12. 조약 제4호 韓國에서 發明·意匠·商標 및 著作權의 保護에 관한 日美條約 중-253

明治 41. 9. 7. 대구이사청고시 제16호 韓國에 있어서의 發明·意匠·商標 및 著作權 保護에 관한 日美條約公布에 관한 件 중-293

明治 42. 10. 23. 칙령 제309호 韓國에서의 特許 意匠 商標 및 實用新案에 관한 審判 抗告審 및 出訴에 관한 費用에 관한 件 하-156

明治 41. 8. 12. 칙령 제201호 關東州 및 帝國이 治外法權을 行使할 수 있는 外國에서의 特許權·意匠權·商標權 및 著作權의 保護에 관한 件 중-250

明治 42. 10. 23. 칙령 제311호 관동주 및 제국이 治외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外國에서의 特許權·의장권·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件 개정 하-157

3.2.2. 特許

3.2.2.1. 法令

明治 41. 8. 12. 칙령 제196호 韓國特許令 중-244

明治 42. 10. 23. 칙령 제304호 韓國特許令 개정 하-152

明治 41. 8. 15. 통감부령 제25호 韓國特許令施行規則 중-263

明治 42. 11. 1. 통감부령 제56호 韓國特許令시행규칙 개정 하-241

3.2.2.2. 官制

明治 41. 8. 12. 칙령 제202호 統監府特許局官制 중-251

明治 42. 10. 23. 칙령 제310호 통감부특허국관제 개정 하-157

明治 43. 3. 26. 칙령 제98호 통감부특허국관제 개정 하-410

明治 41. 8. 27. 통감부훈령 제17호 統監府特許局分課規程 중-286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2. 10. 2. | 통감부훈령 제19호 | 통감부특허국분과규정 개정 | 하-90 |
| 明治 42. 11. 13. | 통감부훈령 제42호 | 통감부특허국분과규정 개정 | 하-253 |
| 明治 42. 10. 23. | 칙령 제308호 | 韓國特許辦理士令 | 하-156 |
| 明治 42. 11. 1. | 통감부령 제60호 | 韓國特許辦理士試驗規則 | 하-244 |
| 明治 41. 8. 19. | 통감부령 제30호 | 韓國特許代理業者登錄規則 | 중-270 |
| 明治 42. 11. 1. | 통감부령 제61호 | 한국특허대리업자등록규칙 폐지 | 하-245 |
| 明治 41. 8. 12. | 칙령 제203호 | 統監府特許局職員官等俸給令 | 중-252 |

3.2.2.3. 業務

| | | | |
|----------------|-------------|-------------------------------------|-------|
| 明治 41. 8. 16. | 통감부고시 제123호 | 統監府特許局을 統監府構內에 設置하는 件 | 중-270 |
| 明治 42. 5. 15. | 통감부고시 제43호 | 統監府特許局事務所를 大阪府廳內에 設置하는 件 | 중-674 |
| 明治 42. 11. 13. | 통감부고시 제120호 | 통감부특허국사무소를 대판부청내에 설치하는 건 개정 | 하-254 |
| 明治 41. 8. 19. | 통감부고시 제126호 | 統監府特許局出張所를 東京에 設置하는 件 | 중-272 |
| 明治 42. 11. 13. | 통감부고시 제119호 | 통감부특허국출장소를 동경에 설치하는 건 개정 | 하-254 |
| 明治 42. 7. 24. | 통감부령 제20호 | 統監府特許局特許品陳列所規則 | 하-8 |
| 明治 42. 11. 13. | 통감부고시 제118호 | 統監府特許局特設品陳列所 開所 | 하-254 |
| 明治 43. 5. 21. | 통감부고시 제83호 | 統監府特許局特許品陳列所를 당분간 閉鎖하는 件 | 하-556 |
| 明治 42. 2. 10. | 통감부고시 제10호 | 統監府特許局 移轉 | 중-518 |
| 明治 43. 7. 23. | 통감부고시 제158호 | 통감부특허국청사 이전 | 하-637 |
| 明治 41. 8. 27. | 통감부고시 제128호 | 特許出願書類에 관한 件 | 중-287 |
| 明治 42. 11. 1. | 통감부고시 제114호 | 특허출원서류에 관한 건 개정 | 하-248 |
| 明治 41. 9. 8. | 통감부고시 제142호 | 統監府特許局圖書閱覽規程 | 중-295 |
| 明治 42. 7. 17. | 통감부훈령 제17호 | 統監府特許局會計事務에 관한 手續은 理事廳會計事務章程에 의하는 件 | 하-3 |

3.2.3. 意匠 · 實用新案

| | | | |
|----------------|----------|----------|-------|
| 明治 41. 8. 12. | 칙령 제197호 | 韓國意匠令 | 중-246 |
| 明治 42. 10. 23. | 칙령 제305호 | 한국의장령 개정 | 하-153 |

| | | | |
|----------------|-----------|----------------|-------|
| 明治 41. 8. 15. | 통감부령 제26호 | 韓國意匠令施行規則 | 중-264 |
| 明治 42. 11. 1. | 통감부령 제57호 | 한국의장령시행규칙 개정 | 하-242 |
| 明治 42. 10. 23. | 칙령 제307호 | 韓國實用新案令 | 하-155 |
| 明治 42. 11. 1. | 통감부령 제59호 | 한국실용신안령시행규칙 개정 | 하-244 |

3.2.4. 商標 · 商號 · 著作權

| | | | |
|----------------|-----------|--------------|-------|
| 明治 41. 8. 12. | 칙령 제198호 | 韓國商標令 | 중-247 |
| 明治 42. 10. 23. | 칙령 제306호 | 한국상표령 개정 | 하-154 |
| 明治 41. 8. 15. | 통감부령 제27호 | 韓國商標令施行規則 | 중-265 |
| 明治 42. 11. 1. | 통감부령 제58호 | 한국상표령시행규칙 개정 | 하-243 |
| 明治 41. 8. 12. | 칙령 제199호 | 韓國商號令 | 중-248 |
| 明治 41. 8. 19. | 통감부령 제29호 | 한국상호령시행규칙 | 중-270 |
| 明治 41. 8. 12. | 칙령 제200호 | 韓國著作權令 | 중-249 |
| 明治 41. 8. 15. | 통감부령 제28호 | 한국저작권령시행규칙 | 중-265 |
| 明治 43. 7. 2. | 통감부령 제33호 | 한국저작권시행규칙 개정 | 하-618 |

3.3. 電氣

| | | | |
|---------------|-------------|------------------------------|-------|
| 明治 43. 6. 25. | 진남포이사청령 제2호 | 電氣事業取締規則 | 하-599 |
| 明治 40. 3. 24. | 통감부고시 제43호 | 청천강 · 대동강 · 임진강에 布設하는 水底電線區域 | 상-335 |
| 明治 40. 4. 14. | 통감부고시 제61호 | 의주 · 안동 · 현관 수저전선구역 | 상-363 |
| 明治 42. 3. 10. | 통감부고시 제22호 | 부산절영도간외에 수저전선을 포설하는 건 | 중-547 |

IV. 鐵道

4.1. 官制

| | | | |
|----------------|----------|---------------|-------|
| 明治 39. 6. 29. | 칙령 제176호 | 統監府鐵道管理局官制 | 상-104 |
| 明治 40. 3. 25. | 칙령 제55호 | 통감부철도관리국관제 | 상-337 |
| 明治 41. 3. 29. | 칙령 제57호 | 통감부철도관리국관제 개정 | 중-73 |
| 明治 42. 6. 18. | 칙령 제160호 | 統監府鐵道廳官制 | 중-701 |
| 明治 42. 12. 15. | 칙령 제336호 | 鐵道院官制 改正 | 하-299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39. 7. 1. | 통감부고시 제19호 | 統監府鐵道管理局各部分掌規程 | 상-112 |
| 明治 39. 7. 1. | 통감부훈령 제13호 | 통감부철도관리국분과규정 | 상-116 |
| 明治 40. 3. 30. | 통감부령 제14호 | 통감부철도관리국각부분장규정 폐지 | 상-355 |
| 明治 40. 3. 30. | 통감부훈령 제3호 | 統監府鐵道管理局各部課分掌規程 | 상-355 |
| 明治 41. 1. 16. | 통감부훈령 제2호 | 통감부철도관리국각부과분장규정 개정 | 중-4 |
| 明治 42. 6. 19. | 통감부훈령 제15호 | 統監府鐵道廳事務分掌規程 | 중-706 |
| 明治 39. 7. 1. | 통감부고시 제61호 | 통감부철도관리국을 경성남대문외에 설치하는 건 | 상-117 |
| 明治 40. 3. 30. | 통감부훈령 제4호 | 통감부철도관리국 용산·평양출장소 설치 | 상-358 |
| 明治 41. 1. 16. | 통감부훈령 제1호 | 통감부철도관리국 용산·평양출장소 설치건 개정 | 중-4 |
| 明治 41. 11. 8. | 통감부고시 제183호 | 통감부철도관리국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건 | 중-418 |
| 明治 42. 6. 19. | 통감부훈령 제16호 | 統監府鐵道廳地方事務所 設置 | 중-707 |
| 明治 39. 7. 1. | 통감부훈령 제12호 | 통감부철도관리국출납관리 및 출납원임명규정 | 상-114 |
| 明治 39. 9. 1. | 통감부훈령 제20호 | 통감부철도관리국 임시철도건설부 분과규정 | 상-162 |

4.2. 官 員

4.2.1. 任 用

| | | | |
|----------------|------------|---------------------------|-------|
| 明治 39. 6. 29. | 칙령 제178호 | 統監府鐵道管理局職員特別任用令 | 상-106 |
| 明治 40. 7. 16. | 칙령 제276호 | 통감부철도관리국직원특별임용령 개정 | 상-429 |
| 明治 42. 6. 18. | 칙령 제162호 | 통감부철도청직원특별임용령 | 중-703 |
| 明治 40. 9. 19. | 통감부훈령 제20호 | 統監府鐵道管理局出納官吏 및 出納員任命規程 改正 | 상-455 |
| 明治 40. 3. 30. | 통감부훈령 제5호 | 통감부철도관리국출납관리 및 출납원임명규정 개정 | 상-359 |
| 明治 42. 10. 31. | 통감부훈령 제41호 | 통감부철도청출납관리 및 출납원임명규정 개정 | 하-241 |
| 明治 39. 6. 29. | 칙령 제180호 | 統監府鐵道管理局雇員 使用의 件 | 상-107 |
| 明治 41. 3. 29. | 칙령 제58호 | 통감부철도관리국고원 사용에 관한 건 | 중-73 |

| | | |
|----------------|-----------|--|
| 明治 39. 9. 1. | 통감부령 제32호 | 統監府鐵道管理局書記 및 技手任用에 관한 件 상-162 |
| 明治 39. 6. 29. | 칙령 제179호 | 統監府鐵道管理局職員官等の 初級 및 陞級에 관한 件 상-107 |
| 明治 39. 11. 20. | 칙령 제286호 | 통감부철도관리국직원관등의 초서 및 승서에 관한 건 상-241 |
| 明治 41. 5. 24. | 통감부령 제17호 | 統監府鐵道管理局職員 現業從事者の 略服 服制 중-139 |
| 明治 42. 12. 15. | 칙령 제342호 | 統監府鐵道院職員으로 鐵道院職員이 된 자의 制服에 관한 件 하-301 |

4.2.2. 給與

| | | |
|----------------|------------|---|
| 明治 39. 6. 29. | 칙령 제177호 | 統監府鐵道管理局職員官等給與令 상-105 |
| 明治 42. 6. 18. | 칙령 제161호 | 통감부철도청직원관등급여령 중-702 |
| 明治 39. 8. 27. | 칙령 제227호 | 臨時軍用鐵道監部所屬職員을 統監府鐵道管理局職員 으로 任用하는 경우에 있어서 俸給의 支給에 관한 件 상-161 |
| 明治 41. 10. 31. | 통감부훈령 제20호 | 統監府鐵道管理局職員의 臺灣·樺太旅行은 遞信省 內國旅費規程을 準用하는 件 중-414 |
| 明治 41. 11. 28. | 통감부훈령 제21호 | 統監府鐵道管理局旅費規程 중-432 |
| 明治 41. 11. 28. | 통감부훈령 제22호 | 統監府鐵道管理局囑託員 및 傭人의 內國旅費 중-434 |
| 明治 42. 12. 15. | 칙령 제343호 | 鐵道院現業員의 共濟組合에 관한 規定을 鐵道院 韓 國鐵道管理局所屬의 者에 適用하지 않는 件 하- 301 |

4.3. 業務

4.3.1. 會計

| | | |
|---------------|------------|------------------------------------|
| 明治 39. 4. 10. | 법률 제39호 | 韓國에서 帝國이 經營하는 鐵道の 會計에 관한 件 상-50 |
| 明治 39. 6. 21. | 칙령 제159호 | 한국에서 제국에 경영하는 철도의 회계에 관한 건 상-89 |
| 明治 39. 7. 1. | 통감부고시 제18호 | 帝國鐵道官署現金受拂規則을 統監府鐵道管理局에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 | 準用하는 件 上-111 |
| 明治 39. | 7. 25. | 통감부훈령 제16호 | 統監府鐵道管理局은 帝國鐵道官署會計事務取扱規程 · 帝國鐵道官署物品出納規程 · 帝國鐵道用品計算事務規程을 準用하는 件 上-141 |
| 明治 39. | 7. 31. | 會計檢査院達 제4호 | 韓國에서의 鐵道出納官吏의 現金出納證明은 帝國鐵道官署現金出納證明規程을 準用하는 件 上-146 |
| 明治 39. | 9. 19. | 통감부훈령 제21호 | 統監府鐵道管理局臨時鐵道建設部出納官吏 및 出納員任命 規程 上-172 |
| 明治 39. | 10. 11. | 통감부훈령 제27호 | 통감부철도관리국임시철도건설부출납관리 및 출납원임명규정 개정 上-204 |
| 明治 41. | 2. 25. | 통감부훈령 제4호 | 통감부철도관리국출납관리 및 출납원임명규정 개정 중-37 |
| 明治 39. | 9. 27. | 통감부훈령 제22호 | 帝國鐵道官署會計事務取扱規程 第86條의 保管金現在高報告는 提出하지 않는 件 上-197 |
| 明治 40. | 3. 19. | 법률 제15호 | 韓國鐵道の 收益勘定 缺損補充에 관한 件 上-332 |
| 明治 40. | 8. 6. | 통감부령 제33호 | 統監府鐵道管理局現金出納官吏의 雜部保管金取扱에 관한 件 上-434 |
| 明治 40. | 8. 20. | 대장성훈령 제36호 | 통감부철도관리국 현금출납관리의 잡부보관실에 관한 취급수속에 관한 건 上-437 |
| 明治 41. | 2. 23. | 통감부훈령 제3호 | 統監府鐵道管理局長관은 部下官吏로 하여금 歲入徵收事務를 分掌케 할 수 있는 件 中-36 |
| 明治 41. | 2. 27. | 법률 제6호 | 韓國에서의 鐵道用品資金會計에 관한 件 中-46 |
| 明治 41. | 6. 13. | 통감부훈령 제9호 | 帝國鐵道官署會計事務取扱規程準用に 관한 件 中-150 |

4. 3. 2. 營業

| | | | |
|--------|---------|-------------|--|
| 明治 39. | 12. 11. | 통감부령 제49호 | 統監府鐵道管理局運輸營業規程 上-253 |
| 明治 40. | 7. 19. | 통감부령 제29호 | 통감부철도관리국 운수영업규정 개정 上-430 |
| 明治 40. | 7. 19. | 통감부고시 제100호 | 統監府鐵道管理局運輸營業規程을 統監府鐵道管理局運輸規程으로 改稱하는 件 上-431 |
| 明治 41. | 5. 9. | 통감부령 제13호 | 統監府鐵道管理局運輸規程 改正 中-117 |
| 明治 41. | 12. 27. | 통감부령 제51호 | 통감부철도관리국운수규정 개정 中-466 |
| 明治 42. | 5. 1. | 통감부령 제6호 | 통감부철도관리국운수규정 개정 中-650 |
| 明治 39. | 6. 30. | 통감부고시 제60호 | 京釜鐵道買收後의 旅客 · 貨物運賃과 運送條件은 京釜鐵道株式會社規程을 準據하는 件 上-109 |

| | | |
|----------------|------------|---|
| 明治 39. 12. 27. | 통감부령 제55호 | 統監府鐵道管理局運輸營業規程에 의하여 徵收하는 增賃金에 관한 件 상-278 |
| 明治 40. 3. 28. | 통감부고시 제53호 | 京義線 馬山線의 旅客·貨物·便乘·便載에 관한 件 상-349 |
| 明治 40. 9. 8. | 통감부령 제37호 | 統監府鐵道管理局線各驛과 淸國安東縣相互間 旅客荷物の 連絡 輸送의 取扱에 관한 件 상-446 |
| 明治 41. 1. 24. | 통감부령 제4호 | 統監府鐵道管理局所管 旅客賃金 중-14 |
| 明治 41. 2. 25. | 통감부고시 제17호 | 鐵道管理局所管 京義線·馬山線에서의 鐵道一般의 運輸營業 開始 중-38 |
| 明治 41. 3. 15. | 통감부고시 제34호 | 統監府鐵道管理局所管京釜線 草梁·釜山間에서의 鐵道一般의 運輸營業 開始 중-62 |
| 明治 40. 2. 20. | 통감부령 제8호 | 統監府鐵道管理局小蒸汽船釜山港內運航規程 상-309 |
| 明治 41. 3. 19. | 통감부령 제8호 | 통감부철도관리국소증기선부산항내운항규정폐지 중-68 |
| 明治 41. 3. 31. | 통감부고시 제54호 | 統監府鐵道管理局에서 機械 기타의 製作修理를 하는 件 중-77 |
| 明治 41. 3. 31. | 통감부훈령 제6호 | 제국철도청물품취급규정을 통감부철도관리국에 준용하는 件 중-76 |

4.4. 鐵道建設

4.4.1. 一般

| | | |
|---------------|-------------|--|
| 明治 39. 3. 30. | 법률 제18호 | 京釜鐵道買收法 상-38 |
| 明治 39. 4. 10. | 법률 제40호 | 철도국유법·경부철도매수법에 의하여 매수한 철도의 출납관리에 관한 件 상-50 |
| 明治 39. 4. 30. | 遞信省告示 제188호 | 京釜鐵道買收期日指定 상-72 |
| 明治 39. 7. 26. | 칙령 제192호 | 統監府鐵道管理局 臨時鐵道建設部를 設置하는 件 상-141 |

4.4.2. 土地收用

| | | |
|--------------|------------|--|
| 明治 43. 4. 9. | 통감부고시 제43호 | 內部告示 제28호 龍山之山間·大田木浦間 鐵道用地의 收用을 完了할 때까지 該當各坊面內 土 |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 | 地 地上物件의 賣買 典當 및 家屋 墳墓의 新造를 禁하는 件을 告示하는 件 하-494 |
| 明治 43. | 4. 23. | 통감부고시 제61호 | 내부고시 제31호 용산원산간·대전목포간 철도 용지의 수용을 완료할 때까지 해당각면내토지 지상물건의 매매 전당 및 가옥 분묘의 신조 등 금지지구를 추가하는 건 하-539 |
| 明治 43. | 4. 23. | 통감부고시 제63호 | 내부고시 제33호 남대문의부터 남대문정차장까지의 도로용지의 수용을 종료할 때까지 토지 지상물건의 매매 전당 및 가옥 분묘의 신조를 금지하는 건을 고시하는 건 하-539 |
| 明治 43. | 4. 23. | 통감부고시 제65호 | 내부고시 제36호 대전목포간 철도용지의 수용을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각면의 토지 지상물건의 매매 전당 및 가옥 분묘의 신조 등 금지구중 추가하는 건을 고시하는 건 하-540 |
| 明治 43. | 5. 25. | 목포이사청고시 제24호 | 대전목포간철도용지의 수용을 종료할 때까지 당 해면내토지 지상물건의 매매 전당 및 가옥, 분묘의 신조를 금지하는 건을 고시하는 건 하-558 |
| 明治 43. | 5. 28. | 통감부고시 제89호 | 내부고시 제41호 용산원산선철도용지수용이 종료될 때까지 당해선내 각면 토지 지상물건의 매매 및 가옥 분묘의 신조 등 금지지구중 추가하는 건을 고시하는 건 하-560 |
| 明治 43. | 6. 18. | 통감부고시 제126호 | 내부고시 제57호 용산지산간 및 대전목포간 철도 용지에 관한 금지행위 추가건을 고시하는 건 하-594 |
| 明治 43. | 7. 30. | 통감부고시 제161호 | 내부고시 제70호 용산원산간 대전목포간 철도용 지중 당해 부근의 토지 지상물건의 매매 전당 및 가옥 분묘의 신조 등 금지를 일부 해제하는 건 하-640 |

第10章 通信

I. 綜合

1. 1. 官制

| | | | |
|----------------|------------|-----------------|-------|
| 明治 38. 12. 20. | 칙령 제268호 | 統監府通信官署官制 | 상-5 |
| 明治 39. 2. 15. | 칙령 제22호 | 통감부통신관서관제 개정 | 상-33 |
| 明治 39. 5. 14. | 칙령 제105호 | 통감부통신관서관제 개정 | 상-75 |
| 明治 40. 9. 30. | 칙령 제320호 | 통감부통신관서관제 개정 | 상-457 |
| 明治 41. 4. 7. | 칙령 제78호 | 통감부통신관서관제 개정 | 중-81 |
| 明治 42. 3. 26. | 칙령 제35호 | 통감부통신관서관제 개정 | 중-589 |
| 明治 43. 3. 26. | 칙령 제96호 | 통감부통신관서관제 개정 | 하-409 |
| 明治 39. 10. 24. | 통감부훈령 제28호 | 統監府通信管理局分課規程 改正 | 상-209 |
| 明治 42. 4. 6. | 통감부훈령 제5호 | 통감부통신관리국분과규정 개정 | 중-602 |
| 明治 39. 7. 25. | 통감부고시 제71호 | 統監府通信管理局 移轉 | 상-141 |
| 明治 39. 6. 21. | 통감부고시 제53호 | 統監府通信官署의 徽章 | 상-91 |

1. 2. 官員

| | | | |
|----------------|----------|---|-------|
| 明治 38. 12. 20. | 칙령 제274호 | 統監府通信官署職員官等給與令 | 상-10 |
| 明治 39. 6. 25. | 칙령 제163호 | 통감부통신관서관직원관등급여령 개정 | 상-97 |
| 明治 40. 4. 22. | 칙령 제148호 | 통감부통신관서관직원 관등급여령 개정 | 상-367 |
| 明治 38. 12. 20. | 칙령 제278호 | 統監府通信官署職員特別任用令 | 상-13 |
| 明治 39. 1. 11. | 통감부령 제2호 | 鐵道書記補通信手試驗規則(明治 28年 遞信省令 제 2호)을 統監府通信官署에 準用하는 件 | 상-17 |

1. 3. 業務

| | | | |
|---------------|----------|--|------|
| 明治 39. 1. 11. | 통감부령 제1호 | 郵便法·郵便爲替法·郵便貯金法·鐵道船舶郵便法 ·電信法の 施行은 遞信令 및 告示에 의하는 件 | 상-17 |
| 明治 39. 1. 11. | 통감부령 제3호 | 郵便電信電話官署現金受拂規則(明治 36年 遞信省令 |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 | 제23호) 出納員現金取扱規則(明治 37年 遞信省令 제38호) · 通信官署經費渡切規則施行細則(明治 38年 遞信省令 제30호)을 統監府通信官署에 準用하는 件 상-17 |
| 明治 43. | 1. 29. | 통감부고시 제12호 | 統監府通信官署에서 使用하는 通信日附印의 形式 하-350 |
| 明治 43. | 7. 28. | 통감부고시 제160호 | 特殊通信日附印 使用 하-639 |
| 明治 43. | 3. 15. | 칙령 제25호 | 郵便官署로 하여금 年金 恩給等의 支給事務를 取扱케 하는 件 하-387 |
| 明治 43. | 3. 17. | 체신성령 제6호 | 年金 恩給支給規則 하-389 |
| 明治 43. | 3. 17. | 체신성고시 제341호 | 郵便局所에서 取扱하는 年金 恩給遺族扶助料 및 退隱料 등의 支給期日 하-392 |
| 明治 43. | 6. 25. | 통감부고시 제137호 | 日韓通信事業合同五周年紀念 特殊通信日附印 使用 하-604 |
| 明治 42. | 5. 12. | 체신성령 제19호 | 郵便爲替規則 改正 중-666 |
| 明治 43. | 3. 30. | 통감부령 제7호 | 郵便振替貯金規則 개정 하-451 |
| 明治 43. | 6. 11. | 통감부고시 제116호 | 경성 · 광화문 · 서대문 · 남대문 · 인천 · 용산 · 개성 · 대전 · 목포 · 군산 · 전주 · 부산 · 마산 · 대구 · 평양 · 진남포 · 신의주 · 원산 · 함흥 · 청진 · 나남 우편국에서 郵便爲替金 居宅拂을 取扱하는 件 하-583 |
| 明治 43. | 6. 11. | 통감부령 제26호 | 특히 指定한 우편국에서 우편위체금의 거택拂을 취급하는 件 하-581 |

1.4. 經費

| | | | |
|--------|---------|-------------|---|
| 明治 38. | 12. 20. | 칙령 제280호 | 明治 33年 칙령 제408호 · 明治 36年 칙령 제23호 및 通信官署經費渡切規則을 統監府通信官署에 準用하는 件 상-15 |
| 明治 39. | 4. 10. | 통감부고시 제20호 | 통감부통신관서 渡切經費에 관한 件 상-51 |
| 明治 39. | 9. 26. | 통감부고시 제107호 | 통감부통신관서 渡切經費에 관한 件 상-196 |
| 明治 40. | 4. 20. | 통감부고시 제62호 | 渡切經費의 교부를 指定한 通감부통신관서 개정 상-366 |
| 明治 40. | 5. 15. | 통감부고시 제76호 | 渡切로 經費의 全部 혹은 一部를 交付하는 統監府通信官署 指定 상-415 |

| | | |
|---------------|-------------|--|
| 明治 41. 6. 16. | 통감부고시 제87호 | 渡切經費의 교부를 지정한 통감부통신관서 개정 중-151 |
| 明治 41. 9. 2. | 통감부고시 제136호 | 渡切經費의 교부를 지정한 통감부통신관서 개정 중-292 |
| 明治 42. 7. 31. | 통감부고시 제67호 | 渡切로 경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교부하는 통감부통신관서지정하는 건 개정 하-12 |

II. 郵便

2.1. 官制

2.1.1. 官制

| | | |
|----------------|------------|----------------------|
| 明治 40. 1. 10. | 통감부훈령 제1호 | 統監府郵便局長職務章程 상-290 |
| 明治 40. 11. 23. | 통감부훈령 제25호 | 통감부우편국장직무장정 개정 상-474 |
| 明治 41. 8. 12. | 통감부훈령 제15호 | 統監府郵便局分課規程 중-255 |
| 明治 41. 8. 12. | 통감부훈령 제16호 | 통감부우편국장직무장정 중-259 |
| 明治 42. 4. 6. | 통감부훈령 제6호 | 통감부우편국분과규정 개정 중-603 |
| 明治 42. 4. 6. | 통감부훈령 제7호 | 통감부우편국장직무장정 개정 중-605 |

2.1.2. 官員

| | | |
|---------------|-----------|-------------------------|
| 明治 40. 1. 8. | 통감부령 제1호 | 統監府郵便所長採用規則 상-289 |
| 明治 43. 3. 26. | 칙령 제166호 | 統監府郵便所長의 給與에 관한 件 하-446 |
| 明治 40. 1. 8. | 통감부령 제2호 | 統監府郵便所長手當金年額 상-290 |
| 明治 43. 7. 2. | 통감부령 제34호 | 통감부우편소장수당금 연액 하-618 |

2.2. 業務

2.2.1. 一般

| | | |
|---------------|------------|---------------------------------|
| 明治 39. 1. 11. | 통감부고시 제1호 | 統監府通信官署官制에 의한 郵便局所事務 繼承의 件 상-18 |
| 明治 39. 5. 6. | 통감부고시 제27호 | 新設郵便電信受取所·郵便受取所の 郵便集配事務 取扱 상-73 |
| 明治 39. 6. 19. | 통감부고시 제49호 | 목포순라선내우편수취소는 거문도정박중 郵便物集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 | | 配事務 不取扱 | 상-89 |
| 明治 39. | 7. 1. | 통감부고시 제63호 | 경성신정·경성동대문동·인천停車場前·대구서문의·평양대화정·원산리우편수취소의 우편집배사무 불취급 | 상-119 |
| 明治 39. | 9. 21. | 통감부고시 제100호 | 郵便 및 電信取扱所の取扱事務 | 상-179 |
| 明治 39. | 9. 23. | 통감부고시 제102호 | 예산·천안·울산우편취급소의 小包郵便物配達·郵便爲替·郵便貯金 및 取立金受拂事務 取扱 | 상-184 |
| 明治 39. | 10. 6. | 통감부고시 제110호 | 원성의우편소의 우편물집배사무 취급 | 상-202 |
| 明治 39. | 11. 10. | 통감부고시 제125호 | 통감부고시 제102호 개정 | 상-231 |
| 明治 39. | 12. 2. | 통감부고시 제135호 | 巡邏船內 郵便受取所の 郵便物 集配事務取扱에 관한件 | 상-246 |
| 明治 39. | 12. 29. | 통감부고시 제152호 | 절영도우편수취소의 우편집배사무 불취급 | 상-286 |
| 明治 40. | 1. 23. | 통감부고시 제8호 | 원산리우편수취소의 우편물집배사무 취급 | 상-297 |
| 明治 40. | 1. 24. | 통감부고시 제13호 | 예산·천안·울산우편취급소의 小包郵便物配達郵便爲替·郵便貯金 및 取立金受拂事務 取扱件 改正 | 상-299 |
| 明治 40. | 1. 30. | 통감부고시 제15호 | 예산·천안·울산우편취급소의 소포우편물배달우편위체·우편저금 및 취립금수불사무를 취급건 폐지 | 상-301 |
| 明治 40. | 2. 27. | 통감부고시 제29호 | 거제도우편수취소의 우편집배사무 취급 | 상-312 |
| 明治 40. | 3. 10. | 통감부고시 제36호 | 郵便所の 取扱事務 | 상-324 |
| 明治 40. | 3. 23. | 체신성령 제5호 | 체신성령 제15호중 下關郵便爲替貯金管理支所受持區域 改正 | 상-335 |
| 明治 41. | 7. 3. | 통감부령 제22호 | 高額電信爲替에 관한件 | 중-222 |
| 明治 41. | 8. 26. | 통감부령 제33호 | 郵便私書函使用規則 | 중-283 |
| 明治 41. | 9. 13. | 통감부령 제35호 | 第3種郵便物認可規則 | 중-303 |
| 明治 42. | 4. 6. | 통감부령 제5호 | 郵便·電信·電話에 관한 滯納料金徵收規則 | 중-600 |
| 明治 42. | 11. 13. | 통감부령 제65호 | 우편사서함사용규칙 개정 | 하-251 |
| 明治 43. | 3. 26. | 통감부령 제6호 | 우편사서함사용규칙 개정 | 하-448 |
| 明治 43. | 4. 9. | 통감부령 제13호 | 한국내발착 소포우편물에 관한 건 | 하-481 |

2.2.2. 郵票

| | | | | |
|--------|---------|-------------|------------------------------------|-------|
| 明治 39. | 4. 16. | 체신성령 제16호 | 陸軍凱旋觀兵式紀念郵便切手を發行하는 件 | 상-52 |
| 明治 39. | 4. 21. | 통감부고시 제22호 | 육군개선식기념절수류를 통감부우편국 및 동출장소에서 賣捌하는 件 | 상-58 |
| 明治 40. | 8. 22. | 통감부령 제34호 | 韓國皇帝陛下即位記念郵便繪葉書發行 | 상-438 |
| 明治 40. | 8. 22. | 통감부고시 제113호 | 韓國皇帝陛下即位記念郵便繪葉書の 種類發賣價格 및 發賣期日 | 상-439 |
| 明治 42. | 5. 8. | 통감부고시 제42호 | 郵便切手類 및 收入印紙賣捌郵便局所 指定 | 중-663 |
| 明治 42. | 5. 8. | 통감부령 제10호 | 郵便切手類 및 收入印紙賣捌規則 | 중-659 |
| 明治 42. | 5. 22. | 통감부령 제12호 | 郵票類의 使用禁止에 관한 件 | 중-678 |
| 明治 42. | 7. 3. | 통감부고시 제63호 | 紀念郵便繪葉書 發行에 관한 件 | 하-2 |
| 明治 42. | 7. 3. | 통감부령 제19호 | 기념우편회엽서 발행에 관한 件 | 하-1 |
| 明治 42. | 10. 23. | 통감부고시 제108호 | 수입인지賣捌우편국소 개정 | 하-170 |
| 明治 42. | 11. 27. | 통감부령 제67호 | 年賀特別郵便規則 | 하-263 |
| 明治 43. | 4. 23. | 통감부고시 제64호 | 수입인지를 賣捌하는 우편국소 추가 | 하-540 |
| 明治 43. | 6. 18. | 통감부령 제27호 | 日韓通信事業合同5周年紀念 郵便繪葉書 賣捌 | 하-589 |
| 明治 43. | 6. 18. | 통감부고시 제129호 | 日韓通信事業合同5周年紀念 郵便繪葉書の 種類 定價 發賣期日 | 하-595 |
| 明治 43. | 7. 28. | 통감부고시 제159호 | 紀念郵便繪葉書の 種類 定價 發賣期日 | 하-638 |
| 明治 43. | 7. 28. | 통감부령 제40호 | 기념우편회엽서 발행 | 하-638 |

2.2.3. 金融

| | | | | |
|--------|---------|-------------|---|-------|
| 明治 39. | 4. 21. | 통감부고시 제21호 | 신의주우편국 용암포출장소의 郵便·小包郵便·郵便爲替·郵便貯金事務 開始 | 상-58 |
| 明治 39. | 6. 13. | 통감부고시 제46호 | 성진우편국 부거·경성·경원·온성출장소의 小包郵便·郵便爲替 및 郵便貯金事務 取扱 | 상-85 |
| 明治 41. | 9. 12. | 통감부고시 제148호 | 光化門郵便局的 郵便貯金局待拂 取扱 | 중-302 |
| 明治 42. | 2. 11. | 통감부고시 제2호 | 韓文郵便貯金通帳 交付에 관한 件 | 중-518 |
| 明治 42. | 12. 11. | 통감부고시 제126호 | 統監府通信管理局의 郵便振替貯金事務開始에 관한 件 | 하-293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2. 12. 11. | 통감부령 제69호 | 우편진체저금규칙 | 하-278 |
| 明治 42. 12. 11. | 통감부령 제70호 | 약속우편취급규칙 개정 | 하-293 |
| 明治 43. 3. 19. | 통감부령 제5호 | 우편진체저금규칙 개정 | 하-396 |
| 明治 43. 7. 9. | 통감부령 제37호 | 우편진체저금규칙 개정 | 하-621 |
| 明治 42. 1. 27. | 통감부령 제1호 | 고액전신위체에 관한 건 개정 | 중-498 |

2.3. 個別郵便局

| | | | |
|---------------|------------|--|------|
| 明治 39. 3. 19. | 통감부고시 제8호 | 신의주우편국 동차련관출장소 · 안주우편국 정주출장소 · 京城郵便局 春川出張所の事務開始 | 상-34 |
| 明治 39. 3. 19. | 통감부고시 제9호 | 밀양 · 황주우편수취소를 밀양 · 황주우편전신수취소로 개칭하는 건 | 상-34 |
| 明治 39. 3. 19. | 통감부고시 제10호 | 신의주우편국 용암포출장소 설치 | 상-35 |
| 明治 39. 3. 30. | 통감부고시 제16호 | 성진우편국 명천 · 수성 · 부녕 · 부거 · 옹기 · 온성 · 경원 · 북창평 · 경성 · 행영 · 고평산 · 창평출장소, 의주우편국 창성출장소 설치 | 상-47 |
| 明治 39. 3. 30. | 통감부고시 제18호 | 안주우편국 원산일리출장소 폐지 | 상-49 |
| 明治 39. 3. 30. | 통감부고시 제7호 | 성진우편국 경흥출장소 설치 | 상-46 |
| 明治 39. 3. 31. | 통감부고시 제19호 | 경흥 · 경원 · 온성임시우체소 설치 | 상-49 |
| 明治 39. 4. 18. | 통감부고시 제23호 | 종성임시우체소 설치 | 상-54 |
| 明治 39. 4. 23. | 통감부고시 제24호 | 적등포우편수취소를 이전하여 옥천우편 수취소로 개칭하는 건 | 상-58 |
| 明治 39. 4. 29. | 통감부고시 제25호 | 가덕도우편수취소 설치 | 상-72 |
| 明治 39. 4. 29. | 통감부고시 제26호 | 저도우편수취소 폐지 | 상-72 |
| 明治 39. 5. 13. | 통감부고시 제30호 | 성진우편국 수성 · 북창평 · 옹기출장소의 우편 · 소포우편 · 우편위체 · 우편저금사무 개시 | 상-74 |
| 明治 39. 6. 2. | 통감부고시 제36호 | 거문도우편수취소 설치 | 상-80 |
| 明治 39. 6. 3. | 통감부고시 제37호 | 광화문 · 남대문 · 서대문 · 수원 · 강경 · 충주 · 광주 · 전주 · 진주 · 춘천 · 강릉 · 용암포 · 함흥 · 경성우편국 설치 | 상-80 |
| 明治 39. 6. 3. | 통감부고시 제38호 | 경성우편국 광화문 · 남대문 · 서대문 · 수원 · 충주 · 춘천 · 강릉, 군산우편국 강경 · 전주, 목포우편국 광주, 마산우편국 진주, 신의주우편국 용암포, 원산우편국 함흥, 성진우편국 경성출장소 폐지 | 상-81 |

| | | | |
|---------------|-------------|---|-------|
| 明治 39. 6. 3. | 통감부고시 제39호 | 수원·진주우편수취소를 수원성의·진주성의 우편수취소로 개칭하는 건 | 상-82 |
| 明治 39. 6. 3. | 통감부고시 제40호 | 팔포우편수취소 폐지 | 상-82 |
| 明治 39. 6. 5. | 통감부고시 제41호 | 무산우편전신수취소 설치 | 상-83 |
| 明治 39. 6. 5. | 통감부고시 제42호 | 성진우편국 무산출장소 폐지 | 상-83 |
| 明治 39. 6. 15. | 통감부고시 제47호 | 진도우편수취소 설치 | 상-88 |
| 明治 39. 6. 21. | 통감부고시 제50호 | 성환우편수취소를 성환우편전신수취소로 개칭하는 건 | 상-90 |
| 明治 39. 6. 21. | 통감부고시 제51호 | 마포우편전신수취소 설치 | 상-90 |
| 明治 39. 6. 21. | 통감부고시 제52호 | 경성우편국 직산·마포출장소 폐지 | 상-91 |
| 明治 39. 7. 1. | 통감부고시 제62호 | 경성신정·경성동대문통·인천停車場前·독도·한강방·문산·천안·예산·울산·장생포·경산·대구서문의·사리원·신막·평양대화정·신안주·선천·백도·원산리우편수취소 설치 | 상-118 |
| 明治 39. 7. 4. | 통감부고시 제64호 | 대구우편국의 이전 | 상-119 |
| 明治 39. 7. 20. | 통감부고시 제69호 | 거문도·송진·울릉도우편수취소를 거문도·송진·울릉도우편전신수취소로 개칭하는 건 | 상-140 |
| 明治 39. 7. 20. | 통감부고시 제70호 | 원산우편국 송전출장소 설치 | 상-140 |
| 明治 39. 8. 1. | 통감부고시 제80호 | 대구서문의우편수취소 위치 변경 | 상-146 |
| 明治 39. 8. 3. | 통감부고시 제79호 | 성진우편국 고평산·행영·창평출장소 폐지 | 상-149 |
| 明治 39. 8. 23. | 통감부고시 제87호 | 광화문우편국 이전 | 상-159 |
| 明治 39. 8. 25. | 통감부고시 제88호 | 울산·부산진·동래우편수취소를 울산·부산진·동래우편전신수취소로 개칭하는 건 | 상-159 |
| 明治 39. 9. 6. | 통감부고시 제95호 | 은산우편전신수취소 설치 | 상-166 |
| 明治 39. 9. 6. | 통감부고시 제96호 | 평양우편국 은산출장소 폐지 | 상-166 |
| 明治 39. 9. 6. | 통감부고시 제97호 | 토성우편수취소 설치 | 상-167 |
| 明治 39. 9. 6. | 통감부고시 제98호 | 조포우편수취소 폐지 | 상-167 |
| 明治 39. 9. 23. | 통감부고시 제101호 | 창성·명천우편전신취급소 양주 등 123개 우편취급소 설치 | 상-180 |
| 明治 39. 9. 23. | 통감부고시 제103호 | 의주우편국 창성출장소, 성진우편국 명천출장소, 진도우편수취소 폐지 | 상-184 |
| 明治 39. 9. 23. | 통감부고시 제104호 | 밀양우편전신수취소, 옥천우편수취소를 밀양停車場前우편전신수신소, 옥천停車場前우편수취소로 개칭하는 건 | 상-185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39. 9. 26. | 통감부고시 제105호 | 양주 등 125개 우체소 폐지 | 상-187 |
| 明治 39. 9. 26. | 통감부고시 제106호 | 가평 등 218개 임시우체소를 우체소로 개칭하는 건 | 상-190 |
| 明治 39. 10. 3. | 통감부고시 제108호 | 청도우편수취소를 청도停車場前우편수취소로 개칭하는 건 | 상-201 |
| 明治 39. 10. 17. | 통감부고시 제116호 | 수원성의우편수취소를 수원停車場前우편수취소로 개칭하는 건 | 상-207 |
| 明治 39. 10. 26. | 통감부고시 제119호 | 광주·강화·문의·홍덕·용천우편취급소 인천읍 무안·구례·고창우체소의 위치명칭 변경 | 상-216 |
| 明治 39. 10. 26. | 통감부고시 제120호 | 인천·무장·옥구·동래·창원·삼화·의주·덕원·경흥·성진·군산·부산·마산 등 12개우편국, 제주 등 5개우편국 출장소, 인천停車場前 등 10개 우편수취소, 동래 등 4개 우편전신수취소, 인천 등 19개 우체소의 위치명칭 변경 | 상-217 |
| 明治 39. 11. 3. | 통감부고시 제122호 | 부상우편수취소 폐지 | 상-230 |
| 明治 39. 11. 3. | 통감부고시 제123호 | 약목우편수취소 설치 | 상-230 |
| 明治 39. 11. 10. | 통감부고시 제124호 | 황주우편전신수취소 폐지 | 상-231 |
| 明治 39. 11. 10. | 통감부고시 제125호 | 통감부고시 제101호 개정 | 상-231 |
| 明治 39. 11. 29. | 통감부고시 제131호 | 창성·명천우편전신취급소, 양주 등 123개 우편취급소설치, 양주 등 125개 우편소 폐지건 개정 | 상-242 |
| 明治 39. 11. 29. | 통감부고시 제132호 | 용산임시우체소 폐지 | 상-244 |
| 明治 39. 11. 30. | 통감부고시 제133호 | 용산우편국 설치 | 상-245 |
| 明治 39. 11. 30. | 통감부고시 제134호 | 용산우편전신수취소를 龍山元町우편수취소로 개칭하는 건 | 상-245 |
| 明治 39. 12. 13. | 통감부고시 제140호 | 용산우편전신수취소를 용산원정우편수취소로 개칭하는 건 개정 | 상-272 |
| 明治 39. 12. 9. | 통감부고시 제136호 | 대전 등 19개 우편국, 차련관 등 13개 우편전신취급소, 안성 등 6개 우편취급소 설치 | 상-248 |
| 明治 39. 12. 9. | 통감부고시 제138호 | 안성 등 38개 우편국출장소, 대전우편수취소 폐지 | 상-250 |
| 明治 39. 12. 9. | 통감부고시 제139호 | 안성·장흥·철원·서흥·벽동·운산·장진·갑산·부녕·온성·경성·경원우체소 폐지 | 상-252 |
| 明治 39. 12. 28. | 통감부고시 제6호 | 안성·장흥·철원·서흥·벽동·운산·장진·갑산·부녕·온성·경성·경원우체소 폐지건 개정 | |

| | | | |
|----------------|-------------|---|-------|
| | | 상-280 | |
| 明治 39. 12. 29. | 통감부고시 제149호 | 홍양우편취급소 · 낙안우체소 설치 | 상-285 |
| 明治 39. 12. 29. | 통감부고시 제150호 | 낙안우편취급소 · 홍양우체소 폐지 | 상-285 |
| 明治 39. 12. 29. | 통감부고시 제151호 | 진영 · 절영도 · 대장촌 · 서호진우편수취소 설치 | 상-286 |
| 明治 40. 1. 23. | 통감부고시 제9호 | 필동 · 화개동 · 영산포 · 장생포 · 평양대화정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개시와 필동 · 화개동 · 영산포 · 장생포 · 평양대화정우편전신수취소로 개칭하는 건 | 상-297 |
| 明治 40. 1. 24. | 통감부고시 제11호 | 울산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 개시와 울산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 상-299 |
| 明治 40. 1. 24. | 통감부고시 제12호 | 울산우편전신취급소 폐지 | 상-299 |
| 明治 40. 1. 30. | 통감부고시 제16호 | 천안 · 예산 · 선천우편수취소 폐지 | 상-301 |
| 明治 40. 2. 20. | 통감부고시 제24호 | 일세촌우편취급소 논산 · 나주우편수취소 나주우체소 설치 | 상-309 |
| 明治 40. 2. 20. | 통감부고시 제25호 | 나주우편취급소 · 마구평우편취급소 폐지 | 상-310 |
| 明治 40. 3. 3. | 통감부고시 제30호 | 京城本町 등 7개 우편소 설치 | 상-313 |
| 明治 40. 3. 3. | 통감부고시 제31호 | 필동 등 7개 우편전신수취소 폐지 | 상-315 |
| 明治 40. 3. 17. | 통감부고시 제39호 | 인천 · 무안 · 옥구 · 창원 · 삼화 · 의천 · 덕원 · 성진 · 경흥우체소 이전 | 상-332 |
| 明治 40. 3. 21. | 통감부고시 제41호 | 경성본정 등 71개 우편소설치건 개정 | 상-334 |
| 明治 40. 3. 21. | 통감부고시 제42호 | 은산우편전신취급소 폐지 | 상-334 |
| 明治 40. 3. 27. | 통감부고시 제45호 | 왜관우편소위치 개정 | 상-338 |
| 明治 40. 3. 27. | 통감부고시 제46호 | 호도우편취급소 설치 | 상-339 |
| 明治 40. 3. 27. | 통감부고시 제47호 | 호도우편수취소 폐지 | 상-339 |
| 明治 40. 3. 27. | 통감부고시 제48호 | 경성본정 등 7개 우편소 설치건, 필동 등 7개 우편전신수취소 폐지건 개정 | 상-339 |
| 明治 40. 3. 28. | 통감부고시 제51호 | 경성본정 등 7개 우편소 설치건, 필동 등 71개 우편전신수취소 폐지건 개정 | 상-349 |
| 明治 40. 3. 30. | 통감부고시 제58호 | 동래우체소 폐지 | 상-359 |
| 明治 40. 4. 30. | 통감부고시 제63호 | 인천내동우편소 설치 | 상-379 |
| 明治 40. 5. 5. | 통감부고시 제67호 | 정의 · 정선우체소의 위치 명칭 개정 | 상-396 |
| 明治 40. 5. 14. | 통감부고시 제68호 | 제천 · 완도 · 함평 · 용담 · 노산 · 장련 · 송화우편취급소, 덕산 · 한산 · 은진 · 문의 · 단양 · 동북 · 여산 · 무주 · 창녕 · 은율 · 장연우편소 설치 | 상-403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0. 5. 14. | 통감부고시 제70호 | 덕산·한산·은진·문의·단양·동북·여산·무주·창녕·은율·장연우편취급소, 제천·완도·함평·용담·영산·장연·송화우체소 폐지 | 상-404 |
| 明治 40. 5. 14. | 통감부고시 제74호 | 부거우편전신취급소 폐지 | 상-413 |
| 明治 40. 5. 15. | 통감부고시 제75호 | 인천·개성·수원·공주·홍주·충주·청주·광주·무안·전주·남원·옥구·진주·대구·경주·상주·춘천·강릉·금성·해주·삼화·의주·정주·영변·초산·강계·함흥·북청·덕원·성진·경성·회령·경흥우체소 폐지 | 상-413 |
| 明治 40. 6. 15. | 통감부고시 제82호 | 평택·온양·영동·나주·창원·진남포·경산우체소 폐지 | 상-419 |
| 明治 40. 6. 27. | 통감부고시 제91호 | 밀양停車場前우편소 폐지 | 상-424 |
| 明治 40. 6. 30. | 통감부고시 제92호 | 온정우편소 설치 | 상-425 |
| 明治 40. 7. 4. | 통감부고시 제94호 | 혜산진우편전신취급소 설치 | 상-427 |
| 明治 40. 7. 4. | 통감부고시 제95호 | 혜산진우편소 폐지 | 상-427 |
| 明治 40. 7. 24. | 통감부고시 제101호 | 경성·남대문·군산·대구·원산우편국, 경성본정·경성신정·용산원정·평양대화정우편소, 부산본정우편취급소위치 개정 | 상-432 |
| 明治 40. 8. 20. | 통감부고시 제111호 | 인천화개동·인천내동·인천停車場前우편소를 인천화정·인천경정·인천화방정우편소로 개칭하는 건 | 상-438 |
| 明治 40. 8. 20. | 통감부고시 제112호 | 인천 부산우편국의 위치 개정 | 상-438 |
| 明治 40. 9. 9. | 통감부고시 제118호 | 영흥우편취급소를 영흥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 상-447 |
| 明治 40. 9. 14. | 통감부고시 제121호 | 신포우편소 설치 | 상-448 |
| 明治 40. 9. 15. | 통감부고시 제122호 | 선천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개시와 선천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 상-448 |
| 明治 40. 9. 19. | 통감부고시 제125호 | 운산우편전신취급소 폐지 | 상-455 |
| 明治 40. 9. 19. | 통감부고시 제126호 | 간도우편국 설치 | 상-456 |
| 明治 40. 10. 5. | 통감부고시 제130호 | 진해·삼천포·원산신정우편소 설치 | 상-458 |
| 明治 40. 10. 26. | 통감부고시 제134호 | 경성본정사정목우편소 설치 | 상-466 |
| 明治 40. 10. 26. | 통감부고시 제135호 | 경성본정우편소를 경성본정육정목우편소로 개칭하는 건 | 상-466 |
| 明治 40. 11. 14. | 통감부고시 제142호 | 연안우편취급소를 연안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 상-471 |

| | | | |
|----------------|-------------|--|-------|
| 明治 40. 11. 30. | 통감부고시 제146호 | 직산금광우편소 이전 | 상-475 |
| 明治 40. 12. 5. | 통감부고시 제147호 | 남원·강릉우편국 평창·제천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 개시와 평창·제천우편취급소를 평창·제천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 상-475 |
| 明治 40. 12. 11. | 통감부고시 제148호 | 평양대화정우편전신취급소 설치 | 상-477 |
| 明治 40. 12. 11. | 통감부고시 제149호 | 평양대화정우편소 폐지 | 상-478 |
| 明治 40. 12. 27. | 통감부고시 제156호 | 중강진우편취급소 설치 | 상-483 |
| 明治 41. 2. 19. | 통감부고시 제9호 | 왜관우편소위치 개정 | 중-23 |
| 明治 41. 2. 22. | 통감부고시 제12호 | 함안·홍해우편취급소 폐지 | 중-27 |
| 明治 41. 2. 22. | 통감부고시 제13호 | 함안·홍해우체소 설치 | 중-27 |
| 明治 41. 2. 25. | 통감부고시 제18호 | 광화문·남대문·서대문우편국·경성신정·경성동대문통·인천화정우편소의 위치 개정 | 중-38 |
| 明治 41. 3. 3. | 통감부고시 제22호 | 노량진·부산보수정·숙천·영미우편소 설치 | 중-48 |
| 明治 41. 3. 3. | 통감부고시 제23호 | 영동우편취급소 설치 | 중-49 |
| 明治 41. 3. 3. | 통감부고시 제24호 | 파주·옥천·금산·청도·봉산우편취급소의 이전과 파주·부산·봉산우편취급소를 문산·금천·사리원우편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 중-49 |
| 明治 41. 3. 3. | 통감부고시 제25호 | 황간우편취급소, 영동·문산·옥천停車場前·청도停車場前·금천·사리원우편소 폐지 | 중-50 |
| 明治 41. 3. 6. | 통감부고시 제30호 | 군위우편취급소를 군위우편전신취급소로, 의성우편취급소를 의성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 중-53 |
| 明治 41. 3. 24. | 통감부고시 제43호 | 초량우편소 설치 | 중-69 |
| 明治 41. 3. 24. | 통감부고시 제44호 | 초량우편취급소 폐지 | 중-70 |
| 明治 41. 3. 24. | 통감부고시 제45호 | 부산전신취급소 설치 | 중-70 |
| 明治 41. 4. 1. | 통감부고시 제55호 | 신막우편소 이전 | 중-77 |
| 明治 41. 4. 15. | 통감부고시 제58호 | 이천·고부·고폐·장전·장연·박천우편취급소, 양지·부안·홍덕·통천·송화·가산우편소 설치 | 중-88 |
| 明治 41. 4. 15. | 통감부고시 제59호 | 양지·부안·홍덕·통천·송화·가산우편취급소·이천·고부·고창·장연·박천우편소 폐지 | 중-89 |
| 明治 41. 4. 15. | 통감부고시 제60호 | 연일우편취급소위치 개정 | 중-90 |
| 明治 41. 4. 26. | 통감부고시 제65호 | 하동우편취급소를 하동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 | 건 중-97 |
| 明治 41. | 5. 13. | 통감부고시 제74호 | 포천우편취급소 이전 중-123 |
| 明治 41. | 5. 21. | 통감부고시 제78호 | 영등포·신의주·함흥·청진우편국의 위치 명칭 변경 중-127 |
| 明治 41. | 5. 24. | 통감부고시 제81호 | 한강방우편소 폐지 중-142 |
| 明治 41. | 6. 13. | 통감부고시 제84호 | 김화우편국 설치와 전신사무·한국국고금출납보관 사무취급 중-150 |
| 明治 41. | 6. 13. | 통감부고시 제85호 | 금성우체소 설치 중-150 |
| 明治 41. | 6. 13. | 통감부고시 제86호 | 금성우편국 김화우체소 폐지 중-151 |
| 明治 41. | 6. 16. | 통감부고시 제88호 | 운산금광우편취급소 설치 중-152 |
| 明治 41. | 6. 21. | 통감부고시 제91호 | 수성우편전신취급소 폐지 중-211 |
| 明治 41. | 8. 30. | 통감부고시 제133호 | 길주우편취급소 설치 중-290 |
| 明治 41. | 8. 30. | 통감부고시 제134호 | 길주우편소 폐지 중-290 |
| 明治 41. | 9. 8. | 통감부고시 제140호 | 차련관우편소 설치 중-294 |
| 明治 41. | 9. 8. | 통감부고시 제141호 | 차련관우편전신취급소 폐지 중-295 |
| 明治 41. | 9. 12. | 통감부고시 제146호 | 관리사무분장우편국 및 수지구역표 중-300 |
| 明治 41. | 9. 15. | 통감부고시 제150호 | 남평·금성우체소 폐지 중-312 |
| 明治 41. | 9. 15. | 통감부고시 제151호 | 京城명치정·남평·대정동·줄포·금성우편소 설치 중-312 |
| 明治 41. | 9. 22. | 통감부고시 제155호 | 일세촌우편소의 이전과 규암리우편소로 개칭하는 건 중-349 |
| 明治 41. | 9. 30. | 통감부고시 제161호 | 양근우편취급소를 양평우편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중-358 |
| 明治 41. | 9. 30. | 통감부고시 제162호 | 저평·진해·웅천·칠원우체소 폐지 중-359 |
| 明治 41. | 9. 30. | 통감부고시 제163호 | 양근우편취급소·진해우편소 위치 개정 중-359 |
| 明治 41. | 10. 4. | 통감부고시 제166호 | 부산우편국분실 설치 중-367 |
| 明治 41. | 10. 28. | 통감부공시 제174호 | 화순·낙안·옥과우체소 폐지 중-403 |
| 明治 41. | 11. 19. | 통감부고시 제189호 | 군산·마산·진남포·신의주우편국, 김천·나남우편전신취급소, 영산포·통영·구마산포·가덕도우편소의 위치 개정 중-426 |
| 明治 41. | 11. 20. | 통감부고시 제191호 | 나남우편국 설치 중-427 |
| 明治 41. | 11. 20. | 통감부고시 제192호 | 나남우편전신취급소 폐지 중-428 |
| 明治 41. | 12. 10. | 통감부고시 제198호 | 절영도우편소의 우편물집배사무 취급 중-447 |
| 明治 41. | 12. 12. | 통감부고시 제200호 | 남대문우편국 이전 중-447 |
| 明治 41. | 12. 23. | 통감부고시 제205호 | 삼등·자산·은산·함흥우체소 폐지 중-462 |

| | | | |
|----------------|-------------|---------------------------------|-------|
| 明治 41. 12. 25. | 통감부고시 제207호 | 용산원정우편소 이전 | 중-464 |
| 明治 42. 1. 16. | 통감부고시 제1호 | 경성신정우편소의 이전과 경성본정구정목우편소를 개칭하는 건 | 중-494 |
| 明治 42. 2. 17. | 통감부고시 제11호 | 경성본정·물금·하단우편소 설치 | 중-527 |
| 明治 42. 2. 23. | 통감부고시 제14호 | 강익·풍천·문화우체소 폐지 | 중-529 |
| 明治 42. 2. 28. | 통감부고시 제15호 | 마산우편소 설치 | 중-532 |
| 明治 42. 4. 10. | 통감부고시 제29호 | 대구서문의우편소를 대구본정우편소로 개칭하는 건 | 중-643 |
| 明治 42. 8. 28. | 통감부고시 제82호 | 가덕도우편소 폐지 | 하-50 |
| 明治 42. 9. 11. | 통감부고시 제86호 | 대구·간도우편국, 평택우편소의 위치개정 | 하-63 |
| 明治 42. 9. 25. | 통감부고시 제95호 | 대구본정우편소 이전 | 하-84 |
| 明治 42. 9. 25. | 통감부고시 제96호 | 용산우편국 이전 | 하-84 |
| 明治 42. 9. 25. | 통감부고시 제97호 | 고산우편소 설치 | 하-85 |
| 明治 42. 11. 20. | 통감부고시 제121호 | 부산우편국위치 개정 | 하-258 |
| 明治 42. 12. 6. | 통감부고시 제125호 | 통영우편소 이전 | 하-276 |
| 明治 42. 12. 11. | 통감부고시 제127호 | 임진강전신취급소 폐지 | 하-294 |
| 明治 42. 12. 25. | 통감부고시 제129호 | 경성영락정·방어진우편소 설치 | 하-309 |
| 明治 42. 12. 25. | 통감부고시 제131호 | 나로도우편소 설치 | 하-310 |
| 明治 43. 1. 8. | 통감부고시 제1호 | 황간·광량우편소 설치 | 하-339 |
| 明治 43. 1. 15. | 통감부고시 제5호 | 경성사동·함창우편소 설치 | 하-341 |
| 明治 43. 1. 15. | 통감부고시 제6호 | 함창우체소 폐지 | 하-341 |
| 明治 43. 2. 5. | 통감부고시 제13호 | 평양우편국·평양정차장전우편소의 위치변경 | 하-352 |
| 明治 43. 2. 5. | 통감부고시 제14호 | 북하동·곽산우편소 설치 | 하-353 |
| 明治 43. 2. 5. | 통감부고시 제15호 | 곽산우체소 폐지 | 하-353 |
| 明治 43. 2. 12. | 통감부고시 제16호 | 통천우편전신취급소·장전우편소 설치 | 하-366 |
| 明治 43. 2. 12. | 통감부고시 제17호 | 장전우편전신취급소·통천우체소 폐지 | 하-366 |
| 明治 43. 2. 12. | 통감부고시 제18호 | 문의우편소 설치 | 하-366 |
| 明治 43. 2. 12. | 통감부고시 제19호 | 문의우체소 폐지 | 하-367 |
| 明治 43. 3. 12. | 통감부고시 제22호 | 용산한강통·법성포·사천·장기우편소 설치 | 하-386 |
| 明治 43. 3. 12. | 통감부고시 제23호 | 사천·장기우체소 폐지 | 하-386 |
| 明治 43. 3. 30. | 통감부고시 제36호 | 금천우체소 폐지 | 하-463 |
| 明治 43. 4. 9. | 통감부고시 제40호 | 왜관우편소 이전 | 하-493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明治 43. | 4. 16. | 통감부고시 제53호 | 경성태평정우편소의 이전과 경성남대문내우편소로 개칭하는 건 | 하-509 |
| 明治 43. | 6. 25. | 통감부고시 제138호 | 구마산포우편소의 우편물집배사무 개시 | 하-605 |
| 明治 43. | 7. 9. | 통감부고시 제147호 | 평양남문통·삭주·신축파우편소 설치 | 하-622 |
| 明治 43. | 7. 9. | 통감부고시 제148호 | 숙천·삭주우체소 폐지 | 하-622 |
| 明治 43. | 7. 23. | 통감부고시 제155호 | 현동우편소 설치 | 하-635 |
| 明治 43. | 7. 30. | 통감부고시 제162호 | 흑교우편소 설치 | 하-641 |
| 明治 43. | 7. 30. | 통감부고시 제165호 | 구마산포우편소를 마산원정우편소로 개정하는 건 | 하-642 |
| 明治 43. | 8. 20. | 통감부고시 제176호 | 은율·송화우편전신취급소, 장련·장연우체소 설치 | 하-705 |
| 明治 43. | 8. 20. | 통감부고시 제177호 | 장련·장연우편전신취급소, 은율·송화우체소 폐지 | 하-706 |
| 明治 43. | 8. 27. | 통감부고시 제194호 | 군포장·음성·기장·홍원우편소 폐지 | 하-716 |
| 明治 43. | 8. 27. | 통감부고시 제195호 | 음성·기장·홍원우체소 설립 | 하-717 |

2.4. 外國郵便

| | | | | |
|--------|---------|-------------|--|-------|
| 明治 39. | 10. 5. | 통감부고시 제109호 | 韓國에서 外國으로 보내는 郵便繪葉書表面 記載에 관한 件 | 상-201 |
| 明治 40. | 10. 25. | 통감부고시 제133호 | 국제반신절수권은 우편국에 한하여 賣捌 및 引換하는 건 | 상-465 |
| 明治 40. | 10. 25. | 통감부령 제39호 | 國際返信切手券의 賣捌 및 引換에 관한 件 | 상-465 |
| 明治 41. | 3. 17. | 통감부고시 제36호 | 경성·인천·목포·군산·부산·평양·의주·원산 우편국을 外國郵便爲替 交換局으로 하는 건 | 중-65 |
| 明治 41. | 3. 17. | 통감부고시 제37호 | 外國郵便爲替交換局所在地에 설치한 郵便局所는 香港과의 條約에 의한 通常爲替의 拂渡를 取扱하게 하는 件 | 중-66 |
| 明治 41. | 9. 22. | 통감부고시 제156호 | 管理事務分掌郵便局을 外國郵便爲替交換局으로 하는 件 | 중-349 |
| 明治 41. | 12. 1. | 체신성령 제49호 | 대만·화태 또는 한국에 있는 우편국소와 그 이외에 있는 우편국소간에 취조하는 電信爲替料金 및 청국에 있는 우편국 상호간 또는 동국소와 그 이외의 우 | |

| | | | |
|--------|---------|-----------|---|
| | | | 편국소간에 취초하는 우편위체요금에 관한 건 중-437 |
| 明治 43. | 3. 30. | 통감부령 제8호 | 日清郵便規則 하-453 |
| 明治 43. | 8. 27. | 통감부령 제48호 | 일청우편규칙 개정 하-712 |
| 明治 43. | 6. 21. | 체신성령 제74호 | 淸韓郵便規則 改正 하-595 |
| 明治 40. | 3. 30. | 체신성령 제11호 | 청한소포우편규칙 개정 상-353 |
| 明治 40. | 10. 22. | 통감부령 제38호 | 청한소포우편물의 한국내우편소에서의 유치기간 및 관세납부기간 상-465 |

Ⅲ. 電信

3.1. 業務

| | | | |
|--------|---------|-------------|---|
| 明治 39. | 3. 20. | 통감부고시 제13호 | 郵便電信受取所 · 電信受取所의 電報配達事務 取扱 상-36 |
| 明治 39. | 6. 30. | 통감부령 제16호 | 電信法중 電話의 施行에 關하여는 電話規則을 準用 하지 않는 件 상-109 |
| 明治 39. | 10. 14. | 통감부령 제40호 | 電報料金後納規則 상-205 |
| 明治 39. | 12. 29. | 통감부고시 제153호 | 韓國內電報別使配達料 및 舢船配達料 상-286 |
| 明治 40. | 4. 30. | 통감부고시 제64호 | 한국내전보별사료 및 부선배달료 개정 상-380 |
| 明治 41. | 3. 20. | 통감부고시 제41호 | 한국내전보별사 배달료 및 부선배달료 개정 중- 68 |
| 明治 41. | 9. 16. | 통감부령 제41호 | 電信電話에 關한 別使達料 및 舢船配達料 중-340 |
| 明治 42. | 1. 31. | 통감부고시 제7호 | 용산 등 56개전신취급소의 전보취급에 관한 제한 개 정 중-499 |
| 明治 42. | 4. 10. | 통감부훈령 제10호 | 統監府通信管理局長의 電信 · 電話 · 路線 및 機械受 持 指定에 關한 件 중-643 |
| 明治 42. | 12. 25. | 통감부고시 제132호 | 電信呼出地域 改正 하-310 |

3.2. 個別電信

| | | | |
|--------|--------|------------|---|
| 明治 40. | 6. 16. | 통감부고시 제84호 | 용산우편소의 특설전화교환업무 및 전선탁송전보취 급 폐지 상-421 |
| 明治 40. | 6. 27. | 통감부고시 제90호 | 밀양우편취급소의 이전전신사무 개시와 밀양우편전 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상-423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明治 39. | 3. 26. | 통감부고시 제6호 | 진남포우편국의 전선탕송전보취급 개시 | 상-37 |
| 明治 39. | 3. 30. | 통감부고시 제14호 | 성진우편국청진·회령, 의주우편국초산·강경, 원산우편국장진·갑산, 성진우편국 무산출장소의 전신사무 개시 | 상-46 |
| 明治 39. | 3. 30. | 통감부고시 제15호 | 원산·함흥·북청·성진·경성·청진·회령 軍用通信所의 公衆電報取扱事務를 일반우편국소로 인계하는 건 | 상-47 |
| 明治 39. | 5. 23. | 통감부고시 제35호 | 마산우편국의 전선탕송전보 취급 | 상-77 |
| 明治 39. | 6. 9. | 통감부고시 제44호 | 원산우편국의 전선탕송전보 취급 | 상-84 |
| 明治 39. | 6. 22. | 통감부고시 제54호 | 경성우편국의 언문전보 취급 | 상-92 |
| 明治 39. | 6. 23. | 통감부고시 제56호 | 대구우편국의 電話加入者電線託送電報 취급 | 상-93 |
| 明治 39. | 6. 30. | 통감부고시 제59호 | 춘천우편국의 諺文電報取扱 | 상-109 |
| 明治 39. | 9. 4. | 통감부고시 제92호 | 경성우편국의 언문전보취급 | 상-165 |
| 明治 39. | 9. 6. | 통감부고시 제94호 | 용산우편전신취급소의 歐文電報 취급 | 상-166 |
| 明治 39. | 10. 6. | 통감부고시 제111호 | 목포우편국 제주출장소의 전신사무 개시 | 상-202 |
| 明治 39. | 12. 29. | 통감부고시 제154호 | 인천·부산우편국의 전보집배달구역추가 | 상-287 |
| 明治 40. | 9. 10. | 통감부고시 제119호 | 용암포·회녕우편국, 원천리우편소의 언문전보 취급 | 상-447 |
| 明治 40. | 12. 26. | 통감부고시 제154호 | 경성동대문통우편소의 언문전보 취급 | 상-481 |
| 明治 39. | 3. 19. | 통감부고시 제11호 | 낙동전신수취소 설치 | 상-35 |
| 明治 39. | 3. 19. | 통감부고시 제12호 | 개성·평양·진남포·의주·신의주·정주·차련관·밀양·황주·용암포 軍用通信所의 공중전보취급 사무를 일반우편국소로 인계하는 건 | 상-35 |
| 明治 39. | 3. 30. | 통감부고시 제17호 | 해산전신수취소 설치 | 상-48 |
| 明治 39. | 5. 13. | 통감부고시 제31호 | 해산전·낙동전신수취소를 해산전·낙동우편전신수취소로 개정하는 건 | 상-75 |
| 明治 39. | 8. 25. | 통감부고시 제89호 | 부산우편국상주출장소의 전신사무 개시 | 상-160 |
| 明治 39. | 11. 17. | 통감부고시 제127호 | 용산·문산·개성·토성·금천·신막·홍수·사리원·황주·검이포·평양·순안·숙천·신안주·영미·정주·선천·차련관·백마·신의주·창원·진영·마산전신취급소 설치 | 상-235 |
| 明治 40. | 1. 16. | 통감부고시 제7호 | 소사·부강전신취급소 설치 | 상-295 |
| 明治 40. | 3. 5. | 통감부고시 제33호 | 구마산·대구서문의·원산리·서호진우편소의 전신 | |

| | | | | |
|--------|---------|-------------|--|-------|
| | | | 전화사무 개시 | 상-321 |
| 明治 40. | 3. 28. | 통감부고시 제49호 | 무산우편전신취급소 설치 | 상-348 |
| 明治 40. | 3. 28. | 통감부고시 제50호 | 무산우편전신취급소 우체소 폐지 | 상-348 |
| 明治 40. | 5. 14. | 통감부고시 제72호 | 나남우편전신취급소 설치 | 상-412 |
| 明治 40. | 8. 18. | 통감부고시 제108호 | 수원전신취급소의 전보직배달구역 | 상-436 |
| 明治 40. | 9. 14. | 통감부고시 제120호 | 나주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 | 상-447 |
| 明治 40. | 9. 19. | 통감부고시 제124호 | 온정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 | 상-455 |
| 明治 40. | 9. 21. | 통감부고시 제127호 | 선천전신취급소의 전보직배달구역 개정 | 상-456 |
| 明治 40. | 10. 1. | 통감부고시 제129호 | 간도우편국의 전신사무취급 | 상-458 |
| 明治 40. | 10. 6. | 통감부고시 제131호 | 밀양·성환전신취급소 전보직배달구역 개정 | 상-459 |
| 明治 40. | 10. 15. | 통감부고시 제132호 | 경성동대문통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 | 상-463 |
| 明治 40. | 10. 26. | 통감부고시 제138호 | 천안·장단·한포·남천·서흥·중화·어파·곽산·비현전신취급소 설치 | 상-467 |
| 明治 40. | 10. 27. | 통감부고시 제139호 | 갑산우편전신취급소의 언문전보 취급 | 상-469 |
| 明治 40. | 11. 23. | 통감부고시 제144호 | 신포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 | 상-474 |
| 明治 40. | 12. 19. | 통감부고시 제152호 | 경산전신취급소 설치 | 상-479 |
| 明治 41. | 1. 10. | 통감부고시 제1호 | 연안우편전신취급소의 언문전보 취급 | 중-2 |
| 明治 41. | 1. 23. | 통감부고시 제6호 | 안동우편국의 전신취급사무 개시 | 중-13 |
| 明治 41. | 3. 12. | 통감부고시 제31호 | 太田우편국을 大田우편국으로, 長端전신취급소를 長湍전신취급소로, 太田전신취급소를 大田전신취급소로, 沙利院전신취급소를 沙里院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 중-59 |
| 明治 41. | 3. 12. | 통감부고시 제32호 | 통영·진해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 | 중-60 |
| 明治 41. | 3. 15. | 통감부고시 제35호 | 용산·상주·신의주·정주·초산·간도우편국, 울산·평양대화정·차련관·선천·영흥·온성·경원·중성·북창평·부녕·명천·무산·나남우편전신취급소, 경성본정육정목·인천화정·나주·송진·부산진·동래·장생포·대구서문의·낙동우편소의 언문전보취급 | 중-62 |
| 明治 41. | 3. 17. | 통감부고시 제38호 | 천안전신취급소의 전신취급시간 개정 | 중-66 |
| 明治 41. | 3. 29. | 통감부고시 제50호 | 서흥·사리원·중화전신취급소 전보직배달구역 개정 | 중-74 |
| 明治 41. | 3. 29. | 통감부고시 제51호 | 평택전신취급소 설치 | 중-74 |
| 明治 41. | 4. 17. | 통감부고시 제61호 | 남원·안동·강릉·강계·청진·경흥우편국, 제천 |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 | · 밀양 · 군위 · 의성 · 평창 · 황주 · 창성 · 해산진 · 장진 · 수성 · 용기우편전신취급소, 수원停車場前 · 통영 · 울릉도 · 영산포 · 온정 · 서호진 · 신포우 편소의 언문전보처리 중-92 |
| 明治 41. | 5. 10. | 통감부고시 제68호 | 단천우편취급소를 단천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중-120 |
| 明治 41. | 5. 12. | 통감부고시 제72호 | 대전우편국의 전신사무 개시 중-123 |
| 明治 41. | 5. 12. | 통감부고시 제73호 | 대전전신취급소의 전보직배달구역 중-123 |
| 明治 41. | 6. 24. | 통감부고시 제93호 | 김해우편취급소를 김해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중-214 |
| 明治 41. | 6. 24. | 통감부고시 제94호 | 조치원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 중-214 |
| 明治 41. | 6. 26. | 통감부고시 제97호 | 조치원전신취급소의 전보배달구역 중-215 |
| 明治 41. | 6. 30. | 통감부고시 제98호 | 하동 · 송전 · 단천우편전신취급소, 구마산포 우편소 의 언문전보취급 중-217 |
| 明治 41. | 7. 9. | 통감부고시 제103호 | 청주우편국의 전신사무개시 중-224 |
| 明治 41. | 7. 12. | 통감부고시 제104호 | 김해우편전신취급소의 언문전보 취급 중-225 |
| 明治 41. | 7. 28. | 통감부고시 제110호 | 천안우편취급소를 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중-232 |
| 明治 41. | 7. 28. | 통감부고시 제111호 | 은천리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 중-232 |
| 明治 41. | 8. 8. | 통감부고시 제118호 | 천안전신취급소의 전보직배달구역 개정 중-242 |
| 明治 41. | 8. 19. | 통감부고시 제125호 | 이천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 개시 중-272 |
| 明治 41. | 8. 27. | 통감부고시 제129호 | 이천우편전신취급소의 언문전보 처리 중-288 |
| 明治 41. | 9. 10. | 통감부고시 제143호 | 임진강전신취급소 설치 중-297 |
| 明治 41. | 9. 10. | 통감부고시 제144호 | 축현 · 일산 · 계정전신취급소 설치 중-298 |
| 明治 41. | 9. 10. | 통감부고시 제145호 | 전신취급소의 전보취급시간 중-298 |
| 明治 41. | 9. 12. | 통감부고시 제147호 | 차련관전신취급소의 전보직배달구역 중-302 |
| 明治 41. | 9. 17. | 통감부고시 제154호 | 벽동우편전신취급소의 전신사무 개시 중-344 |
| 明治 41. | 10. 3. | 통감부고시 제165호 | 벽동우편전신취급소의 언문전보 취급 중-366 |
| 明治 41. | 10. 8. | 통감부고시 제167호 | 금성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 중-367 |
| 明治 41. | 10. 16. | 통감부고시 제169호 | 길주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 개시와 길주우편전신취 급소로 개칭하는 건 중-387 |
| 明治 41. | 10. 21. | 통감부고시 제170호 | 축현 · 신안주전신취급소의 전보직배달구역 개정 중-391 |
| 明治 41. | 10. 29. | 통감부고시 제176호 | 김천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개시와 김천우편전신취 급소로 개칭하는 건 중-409 |

| | | | |
|----------------|-------------|--|-------|
| 明治 41. 10. 29. | 통감부고시 제177호 | 김천전신취급소의 전보직배달구역 개정 | 중-410 |
| 明治 41. 11. 11. | 통감부고시 제184호 | 청주우편국·조치원·논산, 진해우편소의 언문전보 처리 | 중-419 |
| 明治 41. 11. 12. | 통감부고시 제185호 | 길주우편전신취급소의 언문전보 취급 | 중-420 |
| 明治 41. 11. 20. | 통감부고시 제190호 | 경주우편국의 전신사무 개시 | 중-427 |
| 明治 41. 12. 1. | 통감부고시 제194호 | 금성우편소의 언문전보 취급 | 중-439 |
| 明治 41. 12. 10. | 통감부고시 제199호 | 경성신정·원산신정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 | 중-447 |
| 明治 41. 12. 20. | 통감부고시 제203호 | 신막우편소의 전신사무개시 | 중-458 |
| 明治 41. 12. 26. | 통감부고시 제208호 | 신막전신취급소 전보직배달구역 개정 | 중-464 |
| 明治 42. 1. 24. | 통감부고시 제3호 | 절영도우편소의 언문전보 처리 | 중-496 |
| 明治 42. 1. 27. | 통감부고시 제6호 | 남대문전신취급소의 전보직배달사무 취급 | 중-498 |
| 明治 42. 4. 24. | 통감부고시 제32호 | 회령우편국·부녕·무산 우편전신취급소에 전신통화사무개시 | 중-648 |
| 明治 42. 5. 1. | 통감부고시 제40호 | 경성본정구정목·원산신정우편소의 언문전보취급 | 중-655 |
| 明治 42. 5. 8. | 통감부고시 제41호 | 포천·김포·해남·능주·포항·영주·영덕·울진·사리원·재녕·용진·신계·양덕·성천·운산·금광·자성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개시와 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 중-663 |
| 明治 42. 5. 22. | 통감부고시 제44호 | 옥천전신취급소 설치 | 중-683 |
| 明治 42. 5. 29. | 통감부고시 제47호 | 신막우편소의 언문전보 취급 | 중-690 |
| 明治 42. 5. 29. | 통감부고시 제49호 | 사리원전신취급소의 전보취급제한 개정 | 중-690 |
| 明治 42. 7. 31. | 통감부고시 제68호 | 양주·여주·장흥·태인·거창·청송·장전·회양·덕천·개천·회천우편취급소, 초량·삼천포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와 양주·여주·장흥·태인·거창·청송·장전·회양·덕천·개천·회천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 하-13 |
| 明治 42. 7. 31. | 통감부고시 제69호 | 초량전신취급소의 전보취급에 관한 제한 개정 | 하-13 |
| 明治 42. 8. 7. | 통감부고시 제72호 | 김포·포천·해남·완주·포항·영천·영덕·울진·사리원·재녕·용진·신계·양덕·함천·운산·금광·자성우편전신취급소의 謄文電報 처리 | 하-15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明治 42. 8. 21. 통감부고시 제79호 정산·영암·금산·삼가·함양·양양우편취급소, 용산원정·창원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와 정산·영암·금산·삼가·함양·양양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하-36
- 明治 42. 8. 31. 통감부고시 제84호 창원전신취급소 폐지 하-53
- 明治 42. 9. 11. 통감부고시 제90호 소사·진영전신취급소의 전보취급에 관한 제한 개정 하-65
- 明治 42. 9. 18. 통감부고시 제93호 연천·홍산·순천·영천·철원·간성·중강진우편취급소, 남평우편소의 전신사무개시와 연천·홍산·순천·영천·철원·간성·중강진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하-77
- 明治 42. 10. 2. 통감부고시 제102호 입좌촌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 하-92
- 明治 42. 10. 23. 통감부고시 제107호 홍주우편국, 강화·예산·연산·영광·함평·고부·고창·순창·안악·장련·후창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 개시와 강화·예산·연산·영광·함평·고부·고창·순창·안악·장련·후창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하-169
- 明治 42. 10. 30. 통감부고시 제112호 부산보수정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 하-211
- 明治 42. 10. 30. 통감부고시 제113호 장흥·함양·거창·회천우편전신취급소, 삼천포우편소의 언문전보 취급 하-212
- 明治 42. 11. 13. 통감부고시 제117호 박천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개시와 박천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하-253
- 明治 42. 11. 27. 통감부고시 제123호 담양·장성·여수·용담·진안·합천·원주·양구·홍천·삼척·장연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 개시와 담양·장성·여수·용담·진안·합천·원주·양구·홍천·삼척·장연우편전신취급소로 정칭하는 건 하-264
- 明治 42. 11. 27. 통감부고시 제124호 홍주우편국, 홍산·예산·철원·안악·중강진우편전신취급소의 언문전보 취급 하-265
- 明治 43. 1. 8. 통감부고시 제2호 인천우편국의 전보직배달구의 수지구역 하-339
- 明治 43. 1. 22. 통감부고시 제9호 구성우편취급소 줄포우편소의 전화사무 개시와 구성우편취급소를 구성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하-347
- 明治 43. 3. 19. 통감부고시 제27호 남양·면천·전의·홍양·자인우편취급소, 경산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와 남양·면천·전의·홍양

| | | | |
|--------|--------|-------------|--|
| | | | · 자인우편취급소를 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하-398 |
| 明治 43. | 3. 19. | 통감부고시 제28호 | 경산전신취급소의 전보취급제한 개정 하-398 |
| 明治 43. | 3. 26. | 통감부고시 제33호 | 선산·서흥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개시와 선산·서 흥우편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하-449 |
| 明治 43. | 3. 26. | 통감부고시 제34호 | 서흥전신취급소의 전보취급제한 개정 하-449 |
| 明治 43. | 3. 30. | 통감부고시 제35호 | 별교·금천·동점우편소설치와 별교·동점우편소의 전신사무취급 하-462 |
| 明治 43. | 4. 16. | 통감부고시 제54호 | 옥천전신취급소의 전보취급제한 개정 하-509 |
| 明治 43. | 4. 16. | 통감부고시 제55호 | 안성·장단·옥천·보은·곡성·곡산우편취급소의 전신사무개시와 안성·장단·옥천·보은·곡성· 곡산우전신취급소로 개칭하는 건 하-509 |
| 明治 43. | 4. 16. | 통감부고시 제56호 | 줄포우편소의 언문전보 취급 하-510 |
| 明治 43. | 4. 16. | 통감부고시 제57호 | 흑교·남시전신취급소 설치 하-510 |
| 明治 43. | 4. 16. | 통감부고시 제58호 | 서흥전신취급소 폐지 하-511 |
| 明治 43. | 4. 30. | 통감부고시 제68호 | 옥천전신취급소 폐지 하-543 |
| 明治 43. | 4. 30. | 통감부고시 제69호 | 장단전신취급소의 전신취급제한 개정 하-544 |
| 明治 43. | 4. 30. | 통감부고시 제70호 | 오산·물금전신취급소 설치 하-544 |
| 明治 43. | 7. 30. | 통감부고시 제164호 | 대정동우편소의 전신사무 개시 하-642 |
| 明治 43. | 8. 20. | 통감부고시 제183호 | 안성·홍양우편전신취급소의 언문전보취급 하- 709 |

3.3. 外國電信

3.3.1. 外國電報

| | | | |
|--------|--------|-------------|--------------------------------|
| 明治 39. | 4. 9. | 체신성고시 제151호 | 外國新聞電報料金表 改正 상-49 |
| 明治 39. | 4. 19. | 체신성고시 제168호 | 외국전보요금표 개정 상-54 |
| 明治 39. | 4. 19. | 체신성고시 제169호 | 외국신문전보요금표 개정 상-57 |
| 明治 39. | 6. 14. | 체신성령 제26호 | 외국신문전보규칙 개정 상-85 |
| 明治 39. | 8. 8. | 체신성고시 제332호 | 외국전보요금표 개정 상-151 |
| 明治 39. | 8. 25. | 체신성고시 제357호 | 외국전보요금표 개정 상-159 |
| 明治 39. | 9. 1. | 체신성고시 제367호 | 외국전보요금표 개정 상-163 |
| 明治 39. | 9. 1. | 체신성고시 제368호 | 외국신문전보요금표 개정 상-164 |
| 明治 39. | 9. 1. | 체신성고시 제370호 | 明治 38年 5월 체신성고시 제249호 개정 상-165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 明治 39. | 9. | 25. | 체신성고시 제423호 | 외국전보요금표 개정 | 상-185 |
| 明治 39. | 9. | 26. | 체신성고시 제426호 | 외국전보요금표 개정 | 상-186 |
| 明治 39. | 12. | 1. | 체신성고시 제538호 | 외국전보요금표 개정 | 상-246 |
| 明治 39. | 12. | 10. | 체신성고시 제547호 | 외국전보요금표 개정 | 상-252 |
| 明治 40. | 1. | 12. | 체신성고시 제8호 | 외국전보요금표 개정 | 상-293 |
| 明治 40. | 2. | 9. | 체신성고시 제46호 | 외국전보요금표 개정 | 상-305 |
| 明治 40. | 3. | 30. | 체신성고시 제215호 | 외국전보요금표 개정 | 상-358 |
| 明治 40. | 3. | 30. | 체신성고시 제216호 | 외국전보요금표(체신성고시 제217호) 개정 | 상-358 |
| 明治 40. | 4. | 27. | 체신성령 제19호 | 외국신문전보규칙 개정 | 상-370 |
| 明治 41. | 5. | 30. | 체신성고시 제585호 | 明治 37年 체신성고시 제317호 외국전보요금표 개정 | 중-144 |
| 明治 42. | 8. | 7. | 통감부고시 제73호 | 경성우편국의 料金受信人拂 外國新聞電報 取扱 하-16 | |
| 明治 42. | 9. | 4. | 통감부고시 제85호 | 광화문·서대문·인천·부산·평양·원산·청진·성진우편국의 요금수신인불 외국신문전보 취급 하-53 | |
| 明治 39. | 8. | 17. | 체신성령 제43호 | 제만주 및 화태우편국소와 기외 재한국각우편국소등 간의 전신위체요금 | 상-155 |
| 明治 40. | 1. | 18. | 체신성고시 제11호 | 萬國電信條約附屬細目規則에 의한 本邦隨意規定事項 改正 | 상-296 |

3.3.2. 新聞電報

| | | | | | |
|--------|----|-----|-----------|--|-------|
| 明治 40. | 2. | 9. | 통감부령 제6호 | 新聞電報規則(遞信省令 제61호)第二條第一項料金에 관한件 | 상-305 |
| 明治 40. | 3. | 15. | 통감부령 제10호 | 新聞電報規則(遞信省令 제61호)을 韓滿發着電報에 準用하는件 | 상-331 |
| 明治 40. | 5. | 15. | 통감부령 제22호 | 新聞電報料豫納 및 後納規則(明治 40年 遞信省令 제20호)을 韓國에 準用하지 않은件 | 상-413 |
| 明治 40. | 9. | 8. | 통감부령 제36호 | 豫約新聞電報規則(明治 40年 遞信省令 제38호)을 韓國에 適用하지 않은件 | 상-446 |

IV. 電話

4. 1. 電話規則

| | | | | |
|--------|---------|-------------|-------------------------------|--------|
| 明治 41. | 9. 16. | 통감부령 제37호 | 電話規則 | 중-314 |
| 明治 41. | 10. 22. | 통감부고시 제172호 | 전화규칙 개정 | 중-397 |
| 明治 41. | 11. 25. | 통감부령 제49호 | 전화규칙 개정 | 중-428 |
| 明治 42. | 6. 5. | 통감부고시 제50호 | 전화규칙 개정 | 중-698 |
| 明治 42. | 6. 5. | 통감부령 제15호 | 전화규칙 개정 | 중-694 |
| 明治 42. | 9. 11. | 통감부고시 제88호 | 전화규칙 개정 | 하-64 |
| 明治 43. | 6. 29. | 통감부고시 제141호 | 전화규칙 개정 | 하-6.14 |
| 明治 43. | 7. 30. | 통감부고시 제166호 | 전화규칙 개정 | 하-643 |
| 明治 41. | 9. 16. | 통감부령 제39호 | 特設電話規則 | 중-333 |
| 明治 42. | 6. 19. | 통감부령 제17호 | 특설전화규칙 개정 | 중-704 |
| 明治 39. | 9. 30. | 통감부령 제39호 | 官應用·軍用 및 私設電信電話維持規程 | 상-198 |
| 明治 41. | 9. 16. | 통감부령 제40호 | 官應用·軍用 및 私設電信電話 및 特設電話維持規程 | 중-337 |
| 明治 42. | 6. 19. | 통감부령 제18호 | 관청용·군용 및 사설전신전화 및 특설전화유지규정 개정 | 중-705 |
| 明治 42. | 10. 30. | 통감부령 제55호 | 관청용·군용 및 사설전신전화 및 특설전화유지규정 개정 | 하-210 |
| 明治 43. | 6. 25. | 통감부령 제30호 | 관청용·군용 및 사설전신전화 및 특설전화유지규정 개정 | 하-599 |
| 明治 39. | 7. 7. | 통감부고시 제65호 | 전신전화선건설조례·채납요금징수규정에 의한 증표 | 상-120 |

4. 2. 業務

| | | | | |
|--------|--------|-----------|---------------------------------------|-------|
| 明治 39. | 8. 11. | 통감부령 제27호 | 電話加入者の 電話機 修理를 所屬電話交換取扱局所에 無料로 請求하는 件 | 상-153 |
|--------|--------|-----------|---------------------------------------|-------|

4. 2. 1. 電話料金

| | | | | |
|--------|--------|-----------|-------------|-------|
| 明治 40. | 8. 23. | 통감부령 제35호 | 電話料 및 電話呼出料 | 상-439 |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明治 41. | 1. 17. | 통감부령 제1호 | 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 중-7 |
| 明治 41. | 9. 16. | 통감부고시 제152호 | 전화규칙 제49조의 갑지을지의 구별, 통화구역 및 전화료에 관한 건 | 중-341 |
| 明治 41. | 9. 16. | 통감부령 제38호 | 電話·特設電話加入者の 電話使用料·附加使用料·電話交換料 및 附加交換料 免除에 관한 件 | 중-332 |
| 明治 41. | 12. 4. | 통감부고시 제197호 | 電話規則 第49條 第1項 第5號 이외의 通話區域 및 電話料 改正 | 중-441 |
| 明治 41. | 12. 12. | 통감부고시 제201호 | 電話規則 第49條 第1項 第5號 이외의 通話區域 및 電話料 改正 | 중-448 |
| 明治 42. | 1. 26. | 통감부고시 제5호 | 전화규칙 제49조 제1항 제5호 이외의 통화구역 및 전화료 개정 | 중-497 |
| 明治 42. | 2. 5. | 통감부고시 제9호 | 전화규칙 제49조 제1항 제5호 이외의 통화구역 및 전화료 개정 | 중-518 |
| 明治 42. | 4. 24. | 통감부고시 제34호 | 전화규칙 제49조 제1항 제5호 이외의 통신구역 및 전화료 개정 | 중-649 |
| 明治 42. | 6. 19. | 통감부고시 제54호 | 전화규칙 제49조의 갑지을지의 구별, 통화구역 및 전화료에 관한 건 개정 | 중-708 |
| 明治 42. | 8. 14. | 통감부고시 제75호 | 전화규칙 제49조의 갑지을지의 구별통화구역 및 전화료에 관한 건 개정 | 하-17 |
| 明治 43. | 5. 7. | 통감부고시 제78호 | 전화규칙 제49조의 갑지을지의 구별통화구역 및 전화료에 관한 건 개정 | 하-549 |
| 明治 43. | 7. 23. | 통감부고시 제156호 | 전화규칙 제49조의 갑지을지의 규칙, 통화구역 및 전화료에 관한 건 개정 | 하-636 |
| 明治 43. | 7. 30. | 통감부고시 제168호 | 전화규칙 제49조의 갑지을지의 구별, 통화구역 및 전화료에 관한 건 개정 | 하-645 |
| 明治 43. | 8. 13. | 통감부고시 제175호 | 전화규칙 제49조의 갑지을지의 구별, 통화구역 및 전화료에 관한 건 개정 | 하-703 |
| 明治 39. | 3. 30. | 통감부령 제7호 | 동일전화가입구역내의 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 상-40 |
| 明治 40. | 10. 30. | 통감부령 제41호 | 임시가설전화의 사용료계산에 관한 건 | 상-470 |
| 明治 41. | 1. 21. | 통감부령 제3호 | 電話料 및 電話呼出料 | 중-12 |
| 明治 42. | 8. 21. | 통감부고시 제80호 | 電話料呼出地域 改正 | 하-37 |
| 明治 43. | 1. 15. | 통감부고시 제8호 | 電話料金 改正 | 하-342 |
| 明治 43. | 8. 27. | 통감부고시 제192호 | 通話區域 및 電話料 改正 | 하-715 |

明治 40. 5. 19. 통감부령 제23호 長距離電話通話附加使用料 상-417

4.2.2. 地域

明治 41. 9. 26. 통감부고시 제158호 電話交換加入區域 중-352
 明治 41. 9. 26. 통감부고시 제159호 電話規則에 의한 電話呼出地域 중-353
 明治 41. 10. 22. 통감부고시 제173호 전화호출지역 개정 중-398
 明治 41. 12. 1. 통감부고시 제195호 전화호출구역 개정 중-9
 明治 42. 1. 23. 통감부고시 제2호 전화호출지역 개정 중-495
 明治 42. 4. 24. 통감부고시 제33호 전화호출지역 개정 중-648
 明治 42. 6. 19. 통감부고시 제57호 전화가입구역 개정 중-709
 明治 42. 6. 19. 통감부고시 제58호 전화호출구역 개정 중-710
 明治 42. 9. 18. 통감부고시 제91호 전화가입구역 개정 하-76
 明治 42. 9. 18. 통감부고시 제92호 전화호출구역 개정 하-76
 明治 43. 1. 22. 통감부고시 제10호 전화호출지역 개정 하-348
 明治 43. 6. 18. 통감부고시 제127호 전화가입구역 개정 하-594
 明治 43. 6. 29. 통감부고시 제142호 전화가입구역 개정 하-614
 明治 43. 7. 23. 통감부고시 제157호 전화호출지역 개정 하-636
 明治 43. 7. 30. 통감부고시 제169호 전화호출구역 개정 하-653
 明治 43. 8. 13. 통감부고시 제174호 전화호출지역 개정 하-703
 明治 43. 8. 20. 통감부고시 제180호 전화호출지역 개정 하-708
 明治 43. 8. 20. 통감부고시 제181호 전화호출지역 개정 하-708
 明治 43. 8. 27. 통감부고시 제193호 전화호출지역 개정 하-716

4.3. 個別電話

明治 39. 3. 26. 통감부고시 제3호 진남포우편국의 電話交換業務及 電話通話事務開始 상-36
 明治 39. 3. 26. 통감부고시 제4호 평양우편국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상-37
 明治 39. 3. 26. 통감부고시 제5호 진남포·평양우편국의 전화호출구역 상-37
 明治 39. 3. 30. 통감부령 제8호 진남포 평양간 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상-40
 明治 39. 5. 12. 통감부고시 제28호 군산우편국·동 강경출장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상-73
 明治 39. 5. 12. 통감부고시 제29호 군산우편국·동 강경출장소의 전화호출구역 상-74
 明治 39. 5. 12. 통감부령 제12호 군산 강경간 전화료·전화호출료 상-73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39. 5. 23. | 통감부고시 제34호 | 마산우편국의 전화호출구역 | 상-77 |
| 明治 39. 5. 29. | 통감부고시 제33호 | 마산우편국의 전화교환업무 · 전화통화사무 개시 | 상-78 |
| 明治 39. 6. 9. | 통감부고시 제43호 | 원산우편국의 전화교환업무 및 전화통화사무 개시 | 상-84 |
| 明治 39. 6. 9. | 통감부고시 제45호 | 원산우편국전화호출지역 | 상-84 |
| 明治 39. 6. 23. | 통감부고시 제55호 | 대구우편국의 전화교환업무 · 전화통화사무 개시 | 상-92 |
| 明治 39. 6. 23. | 통감부고시 제57호 | 대구우편국의 전화호출지역 | 상-93 |
| 明治 39. 6. 29. | 통감부고시 제58호 | 마산우편국과 부산우편국 · 동 초량출장소 · 동래우편수취소 · 부산진우편수취소간 전화통화 개시 | 상-108 |
| 明治 39. 6. 29. | 통감부령 제15호 | 마산과 부산 · 초량 · 동래 · 부산진간 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 상-108 |
| 明治 39. 7. 10. | 통감부고시 제20호 | 대구와 부산 · 초량 · 동래 · 부산진 · 마산간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 상-121 |
| 明治 39. 7. 10. | 통감부고시 제66호 | 대구우편국과 부산우편국 · 동 초량출장소 · 동래우편수취소 · 부산우편수취소 · 마산우편국간 전화통화 개시 | 상-122 |
| 明治 39. 8. 3. | 통감부고시 제77호 | 목포 · 강경 · 군산 · 평양 우편국의 전화가입신입서 수리 | 상-148 |
| 明治 39. 8. 3. | 통감부고시 제78호 | 평양 · 목포 · 강경 · 군산 우편국의 전화가입구역 | 상-149 |
| 明治 39. 8. 3. | 통감부령 제25호 | 목포 · 강경 · 군산 · 평양의 전화가입등기료 및 전화사용료 | 상-148 |
| 明治 39. 9. 5. | 통감부고시 제93호 | 영등포 · 수원우편국 · 용산우편전신수취소의 전화가입자전선탁송전보 취 및 | 상-165 |
| 明治 40. 2. 9. | 통감부고시 제21호 | 신의주우편국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 상-305 |
| 明治 40. 2. 9. | 통감부고시 제22호 | 신의주우편국의 특설전화가입신청서수리 | 상-305 |
| 明治 40. 2. 9. | 통감부고시 제5호 | 신의주 청국안동현간 전화료 전화호출료 | 상-304 |
| 明治 40. 2. 10. | 통감부고시 제23호 | 신의주우편국전화호출 지역 | 상-307 |
| 明治 40. 2. 23. | 통감부고시 제27호 | 신의주우편국의 전화통화개시 | 상-311 |
| 明治 40. 2. 28. | 통감부고시 제32호 | 금천전화취급소의 명칭 위치 개정 | 상-312 |
| 明治 40. 3. 5. | 통감부고시 제34호 | 함흥우편국 · 부산본정우편취급소 · 인천 화개동우편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 상-321 |

| | | |
|---------------|-------------|---|
| 明治 40. 3. 5. | 통감부고시 제35호 | 구마산포·대구서문의·원산리·함흥·인천 화개동 우편소 부산본정우편취급소의 전화통화 개시 상-322 |
| 明治 40. 3. 5. | 통감부령 제9호 | 함흥 서호진간 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상-321 |
| 明治 40. 3. 14. | 통감부고시 제37호 | 용산우편국의 電話加入伸込書 수리 상-327 |
| 明治 40. 3. 14. | 통감부고시 제38호 | 용산우편국의 전화가입구역 상-327 |
| 明治 40. 3. 14. | 통감부령 제11호 | 용산의 전화가입등기료 및 전화사용료 상-326 |
| 明治 40. 3. 19. | 통감부고시 제40호 | 춘천우편국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상-333 |
| 明治 40. 3. 19. | 통감부령 제12호 | 춘천 경성·춘천 용산간 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상-333 |
| 明治 40. 3. 24. | 통감부고시 제44호 | 춘천우편국의 전화호출지역 상-337 |
| 明治 40. 3. 28. | 통감부고시 제52호 | 함흥우편국·서호진우편소 전화호출지역 상-349 |
| 明治 40. 3. 29. | 통감부고시 제54호 | 군산·강경우편국의 전화교환업무 및 전화통신사무 개시 상-352 |
| 明治 40. 3. 29. | 통감부고시 제55호 | 목포우편국의 전화교환업무 및 전화통신사무 개시 상-352 |
| 明治 40. 3. 30. | 통감부고시 제56호 | 목포우편국의 전화보통가입구역 개정 상-358 |
| 明治 40. 3. 30. | 통감부고시 제57호 | 목포우편국의 전화호출구역 상-359 |
| 明治 40. 4. 6. | 통감부고시 제59호 | 원산우편국전화보통가입구역·호출구역 개정 상-361 |
| 明治 40. 5. 15. | 통감부고시 제77호 | 경성우편국전화보통가입구역 상-416 |
| 明治 40. 5. 15. | 통감부고시 제78호 | 인천내동우편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상-416 |
| 明治 40. 5. 19. | 통감부고시 제79호 | 평양우편국의 전화교환업무 개시 상-418 |
| 明治 40. 5. 19. | 통감부령 제24호 | 경성·평양간 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상-417 |
| 明治 40. 5. 19. | 통감부고시 제80호 | 경성·평양간 장거리전화통화 개시 상-418 |
| 明治 40. 6. 16. | 통감부고시 제83호 | 용산우편국의 전화교환업무 개시 상-420 |
| 明治 40. 6. 16. | 통감부령 제26호 | 경성·용산간전화호출료 상-420 |
| 明治 40. 6. 21. | 통감부고시 제87호 | 함흥·경성우편국의 특설전화가입신청서수리 상- 422 |
| 明治 40. 6. 25. | 통감부고시 제88호 | 용산우편국의 전화보통가입구역 개정 상-422 |
| 明治 40. 6. 25. | 통감부고시 제89호 | 신의주우편국의 특설전화교환업무 개시 상-423 |
| 明治 40. 7. 14. | 통감부고시 제99호 | 용산 평양간 장거리전화통화 개시 상-429 |
| 明治 40. 7. 14. | 통감부령 제28호 | 용산평양간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상-429 |
| 明治 40. 8. 18. | 통감부고시 제109호 | 수원停車場前우편소의 전화 및 전화통신사무 개시 상-436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明治 40. | 8. 18. | 통감부고시 제110호 | 수원停車場前우편소와 각국소간 전화통화 개시 상-437 |
| 明治 41. | 1. 17. | 통감부고시 제2호 | 충주·강릉우편국, 제천·평창우편전신취급소의 전 화통화사무 개시 중-7 |
| 明治 41. | 1. 21. | 통감부고시 제4호 | 개성·해주우편국 연안우편전신취급소의 전화통화 사무 개시 중-12 |
| 明治 41. | 1. 21. | 통감부고시 제5호 | 충주·강릉·개성·해주우편국·제천·평창·연안 우편전신취급소의 전화호출지역 중-13 |
| 明治 41. | 1. 21. | 통감부령 제2호 | 관청용·군용 및 사설전신전화유지규정 개정 중-12 |
| 明治 41. | 3. 3. | 통감부고시 제26호 | 광주우편국의 특허전화가입신청 수리 중-50 |
| 明治 41. | 3. 3. | 통감부고시 제27호 | 광주우편국·영산포·나주우편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중-50 |
| 明治 41. | 3. 3. | 통감부고시 제28호 | 광주우편국 나주·영산포우편소의 전화호출지역 중-51 |
| 明治 41. | 3. 3. | 통감부령 제6호 | 전화료 및 전화호출구역 중-48 |
| 明治 41. | 3. 14. | 통감부고시 제33호 | 함흥우편국의 특설전화교환업무 개시 중-61 |
| 明治 41. | 3. 28. | 통감부고시 제48호 | 경성우편국의 특설전화교환업무·전화통화사무 개 시 중-71 |
| 明治 41. | 3. 28. | 통감부고시 제49호 | 경성우편국의 전화호출지역 중-72 |
| 明治 41. | 3. 31. | 통감부령 제10호 | 신의주 청국안동간 전화료 전화호출료 개정 중- 76 |
| 明治 41. | 4. 17. | 통감부고시 제62호 | 나남우편전신취급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중-93 |
| 明治 41. | 4. 17. | 통감부고시 제63호 | 나남우편전신취급소의 전화호출지역 중-94 |
| 明治 41. | 4. 17. | 통감부령 제11호 | 경성·나남간 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중-92 |
| 明治 41. | 5. 1. | 통감부고시 제67호 | 평양대화정우편전신취급소의 전화통신사무 개시 중-112 |
| 明治 41. | 5. 16. | 통감부고시 제75호 | 용암포우편국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중-126 |
| 明治 41. | 5. 16. | 통감부고시 제76호 | 용암포우편국의 전화호출구역 중-126 |
| 明治 41. | 5. 16. | 통감부령 제16호 | 용암포·신의주간 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중-124 |
| 明治 41. | 5. 24. | 통감부고시 제80호 | 청진우편국의 특설전화가입신청 수리 중-141 |
| 明治 41. | 6. 18. | 통감부고시 제89호 | 청진우편국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중-201 |
| 明治 41. | 6. 18. | 통감부고시 제90호 | 청진우편국의 전화호출지역 중-201 |
| 明治 41. | 6. 18. | 통감부령 제18호 | 경성청진간·나남청진간 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중-154 |

| | | |
|----------------|-------------|--|
| 明治 41. 6. 24. | 통감부고시 제95호 | 논산우편소의 전신사무 및 전화통화사무 개시 중-215 |
| 明治 41. 6. 24. | 통감부고시 제96호 | 논산우편소의 전화호출지역 중-215 |
| 明治 41. 6. 24. | 통감부령 제20호 | 강경 논산간 · 군산 논산간 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중-212 |
| 明治 41. 6. 30. | 통감부고시 제99호 | 광주우편국의 특설전화교환업무 개시 중-218 |
| 明治 41. 7. 2. | 통감부고시 제101호 | 의주우편국의 전화통화 사무 개시 중-222 |
| 明治 41. 7. 2. | 통감부고시 제102호 | 의주우편국의 전화호출구역 중-222 |
| 明治 41. 7. 2. | 통감부령 제21호 | 의주신의주간 · 의주용암포간 전화료 및 전화호출료 중-221 |
| 明治 41. 8. 4. | 통감부고시 제117호 | 평양정차장전우편소 설치와 전화통화사무 개시 중-241 |
| 明治 41. 8. 8. | 통감부고시 제119호 | 나남우편전신취급소의 특설전화가입신청수리 중-2 |
| 明治 41. 8. 30. | 통감부고시 제130호 | 전주우편국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중-289 |
| 明治 41. 8. 30. | 통감부고시 제131호 | 전주우편국의 전화호출지역 중-289 |
| 明治 41. 8. 30. | 통감부고시 제132호 | 전주우편국의 특설전화가입신청 수리 중-289 |
| 明治 41. 8. 30. | 통감부령 제34호 | 군산전주간 · 전주강경간 · 전주논산간 · 전화료급전 화호출료 중-288 |
| 明治 41. 9. 16. | 통감부고시 제153호 | 경성진남포간 · 용산진남포간 · 인천진남포간 · 인천 평양간 장거리전화통화 개시 중-343 |
| 明治 41. 9. 23. | 통감부고시 제157호 | 경성동대문우편소의 전화통신사무 개시 중-350 |
| 明治 41. 10. 21. | 통감부고시 제171호 | 남원 · 안동우편국, 울산 · 군위 · 의성우편전신취급 소, 장생포우편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중-391 |
| 明治 41. 12. 4. | 통감부고시 제196호 | 절영도우편소의 전신 및 전화통화사무 개시 중- 440 |
| 明治 41. 12. 24. | 통감부고시 제206호 | 청진우편국의 특설전화교환업무 개시 중-462 |
| 明治 42. 1. 26. | 통감부고시 제4호 | 천안우편전신취급소, 성환 · 온천리우편소의 전화통 신사무 개시 중-496 |
| 明治 42. 2. 5. | 통감부고시 제8호 | 대정동 · 원산신정우편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중-517 |
| 明治 42. 3. 10. | 통감부고시 제21호 | 전주우편국의 特設電話交換業務 開始 중-547 |
| 明治 42. 6. 19. | 통감부고시 제52호 | 나남우편국의 특설전화교환업무 개시 중-708 |
| 明治 42. 6. 19. | 통감부고시 제53호 | 신의주우편국의 電話加入申請 受理 중-708 |
| 明治 42. 6. 19. | 통감부고시 제55호 | 신의주우편국의 전화교환업무 개시 중-709 |

第三編 統監府法令 分野別 目錄

| | | | | |
|--------|---------|-------------|---|-------|
| 明治 42. | 6. 19. | 통감부고시 제56호 | 신의주우편국의 특설전화교환업무 폐지 | 중-709 |
| 明治 42. | 8. 14. | 통감부고시 제74호 | 공주·진주우편국, 하동·영흥우편전신취급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 하-17 |
| 明治 42. | 9. 11. | 통감부고시 제87호 | 개성우편국의 전화가입 신청수리 | 하-63 |
| 明治 42. | 9. 11. | 통감부고시 제89호 | 동래서호진우편소의 특설전화가입신청 수리 | 하-64 |
| 明治 42. | 9. 28. | 통감부고시 제100호 | 용산원정우편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 하-87 |
| 明治 42. | 12. 25. | 통감부고시 제130호 | 개성우편국의 전화교환업무 개시 | 하-309 |
| 明治 43. | 1. 15. | 통감부고시 제4호 | 서호진우편소의 특설전화업무 개시 | 하-341 |
| 明治 43. | 1. 15. | 통감부고시 제7호 | 직산금광우편소의 전신사무 및 전화통화사무 개시 | 하-342 |
| 明治 43. | 1. 29. | 통감부고시 제11호 | 동래우편소의 특설전화교환업무 개시 | 하-350 |
| 明治 43. | 4. 30. | 통감부고시 제71호 | 전화호출지역 개정 | 하-544 |
| 明治 43. | 5. 7. | 통감부고시 제77호 | 대전·경주우편국, 영천우편전신취급소, 창원우편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 하-548 |
| 明治 43. | 5. 21. | 통감부고시 제84호 | 진주·해주·성진우편국, 절영도·광량우편소의 특설전화가입신청 수리 | 하-556 |
| 明治 43. | 6. 29. | 통감부고시 제140호 | 공주·대전·전주·청진나남우편국의 전화가입신청 수리 | 하-614 |
| 明治 43. | 7. 30. | 통감부고시 제163호 | 경성남대문·경성영락정·경성사동·용산한강통우편소의 전신사무 전화통화사무 개시 | 하-641 |
| 明治 43. | 7. 30. | 통감부고시 제167호 | 홍주 등 60개 향편국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 하-643 |
| 明治 43. | 8. 13. | 통감부고시 제173호 | 능주향편전신취급소·줄포·금성우편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 하-702 |
| 明治 43. | 8. 20. | 통감부고시 제178호 | 영변우편국, 신안주우편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 하-706 |
| 明治 43. | 8. 27. | 통감부고시 제191호 | 청주우편국, 홍산우편국 전신취급소, 조치원우편소의 전화통화사무 개시 | 하-715 |

附 錄

附錄 I. 統監府 現行法令 目錄

解 說

1. 統監府法令은 원칙적으로 日本人이 그 적용대상이나 適用地域은 韓國이므로 韓日 兩國의 法令이 모두 적용된다.
2. 본자료는 1910년 7월 15일 현재 일본인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적용된 법령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3. 본자료는 酒井與三吉 編, 『司法法規類纂』(明治 43年 7月 27日 京城 發行)에 수록된 法令의 目次를 정리한 것이다.
4. 위 『類纂』은 범례, 목차, 본문 및 제1추록, 제2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菊判으로 目次 27面, 本文 1323面: 第1追錄 66面, 第2追錄 9面 등 총 1425面이다.
5. 위 『類纂』은 13輯으로 구분하여 日本法令(統監府 法令 포함)과 韓國法令을 함께 수록하였다.
6. 이해를 돕기 위하여 凡例와 目次를 수록하였으며, 一連番號는 編者가 붙인 것이다.
7. 收錄方式은 法令名, 公布年, 法令形式 및 號數, 收錄面이다.
예) 韓國에 統監府 및 理事廳을 설치하는 件(明治 38 勅令 第240號) 13

明治 43年 7月 15日 現行

司法法規類纂

凡 例

1. 本書에는 明治 43年(1910) 4月 16日 現行 韓國에서 司法事務와 관련이 있는 日本 및 韓國法令을 輯錄한다.
1. 앞의 法令 가운데 浩瀚하고 또 施行된 지 오래 된 것은 생략한다.
1. 韓國과 관련이 있는 法令으로 參考할 필요가 있다고 認定되는 것은 직접 司法事務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輯錄한다.
1. 準用한 다른 法令은 이를 該當法令과 함께 같은 事類 가운데에 게재한다. 그러나 특별히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생략한다.
1. 各 法令의 첫 부분에는 題目을 게재하고 法令의 公布樣式은 생략하고 公布年月 및 法令의 種類·公布番號는 題目 아래에 게재한다.
1. 各 法令 가운데 改正된 것은 직접 該當法令을 修正하며, 改正法令의 年次 公布番號는 該當法令의 公布番號 아래에 게재한다.
1. '統令', '統訓', '統告'는 '統監府令', '統監府訓令', '統監府告示'를 '農令', '度令'은 '農商工部令', '度支部令'을 가르키며 다른 것도 이와 같다.
1. 明治 43年 4月 16日 이후 7月 15日까지 公布된 法令은 追錄 및 第二追錄으로 말미에 수록한다. 단 第二追錄은 분류하지 않는다.

司法法規類纂目次

第1輯 法例·公文式

- 第1章 法例
- 第2章 公文式
- 韓國法規

第2輯 官制

第3輯 官規

- 第1章 官等 等級 及 俸給
- 第2章 手當·諸給·旅費
- 第3章 任用 及 採用
- 第4章 試驗
- 第6章 服務
- 第7章 賞罰
- 第8章 恩給·退隱料·扶助料

第4輯 服制 及 徽章

第5輯 外事

第6輯 裁判

- 第1章 裁判所
- 第2章 執達吏
- 第3章 辯護士

第7輯 民事

韓國法規

第8輯 商事

韓國法規

第9輯 刑事

韓國法規

第10輯 警察

韓國法規

第11輯 監獄

第12輯 會計

- 第1章 會計法
- 第2章 收入
- 第3章 支出
- 第4章 出納官吏
- 第5章 金庫
- 第6章 官有財產管理
- 第7章 保管·供託

第13輯 雜

韓國法規

第1輯 法例·公文式

第1章 法 例

1. 法例(明治 31 法律 第10號) 1

第2章 公文式

1. 公式令(明治 40 勅令 第6號) 5
2. 韓國 및 關東州에서 適用하는 法律命令의 施行時期에 관한 件(明治 40 勅令 第11號) 9
3. 統監府令公文式(明治 39 統監府令 第4號) 9
4. 理事廳令公文式(明治 39 統監府令 第5號) 9

韓國法規

1. 公文式(開國 504 勅令 第86號) 10
2. 地方官廳에서 發하는 命令의 公布式(隆熙 2 勅令 第66號) 11
3. 警視廳令公布式(隆熙 2 警視廳令 第7號) 11
4. 部令, 警務廳令, 府令에 附하는 罰則制限에 관한 件(開國 504 法律 第16號) 12

第2輯 官 制

1. 韓國에 統監府 및 理事廳을 設치하는 件(明治 38 勅令 第240號) 13
2. 統監府事務分掌規程(明治 40 統監府訓令 第21號) 13
3. 統監府 및 理事廳 官制(明治 38 勅令 第267號) 15
4. 理事廳位置 및 管轄區域(明治 39 統監府令 第6號) 18
5. 領事館職務에 관한 件(明治 32 法律 第70號) 22
6. 領事館職務規則(明治 33 勅令 第153號) 24
7. 內國官憲의 管掌에 속하는 事項에 대한 統監의 職權에 관한 件(明治 39 法律 第57號) 26
8. 韓國에서 內國官憲의 管掌事項을 統監의 職權에 속하게 하는 件(明治 39 勅令 第167號)
27
9. 韓國駐筭憲兵에 관한 件(明治 40 勅令 第323號) 27
10. 憲兵條例(明治 31 勅令 第337號) 27
11. 韓國駐筭憲兵隊의 配置 및 憲兵分隊의 管區(明治 42 統監府令 第50號) 31

12. 統監府司法廳官制(明治 42 勅令 第242號) 33
13. 統監府司法廳分課規程(明治 42 統監府訓令 第24號) 34
14. 統監府監獄官制(明治 42 勅令 第243號) 35
15. 統監府監獄設置의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31號) 36
16. 奏任 및 判任待遇 統監府監獄職員의 定員에 관한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45號) 38
17. 統監府監獄에 看守部長職을 설치하는 件(明治 42 勅令 第46號) 38
18. 統監府司法警察官官制(明治 42 勅令 第244號) 38
19. 統監府裁判所의 名稱·位置 및 管轄區域(明治 42 統監府令 第28號) 追錄 1
20. 統監府地方裁判所支部의 名稱·位置 및 管轄區域의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29號) 追錄 7
21. 統監府監獄設置의 件 중 改正件(明治 43 統監府令 第24號) 追錄 9
22. 拓殖局官制(明治 43 勅令 第279號) 追錄 10
23. 統監府警察官署官制(明治 43 勅令 第296號) 追錄 11
24. 韓國駐箭憲兵隊에 관한 件 중 改正件(明治 43 勅令 第301號) 追錄 13

第3輯 官規

第1章 官等·等級 및 俸給

1. 高等官官等俸給令(明治 43 勅令 第134號) 41
2. 統監府 및 所屬官署職員 特別給與令(明治 43 勅令 第162號) 80
3. 判任官俸給令(明治 43 勅令 第135號) 81
4. 文官俸給支給細則(明治 25 大藏省令 第11號) 85
5. 官制 및 俸給令 改正時 俸給支給方法의 件(明治 24 勅令 第165號) 87
6. 初級官等の 制限을 받지 않는 高等文官이 다른 高等文官이 되는 경우의 官等에 관한 件(明治 38 勅令 第285號) 87
7. 統監府 및 所屬官署職員의 加俸額에 관한 件(明治 40 統監府令 第52號) 88
8. 月奉 30圓 미만의 判任官待遇者의 俸給에 관한 件(明治 40 勅令 第244號) 88
9. 統監府判事 및 統監府檢事官等給與令(明治 42 勅令 第247號) 88
10. 巡查給與令(明治 39 勅令 第259號) 90
11. 奏任 및 判任待遇 統監府 監獄職員給與令(明治 42 勅令 第251號) 92
12. 奏任 및 判任待遇 監獄職員給與令(明治 39 勅令 第276號) 93
13. 奏任 및 判任待遇 統監府 監獄職員 및 統監府 巡查의 加俸額에 관한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47號) 96
14. 韓國人 統監府看守의 給與에 관한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44號) 96

附 錄

15. 高等官官等俸給令 중 改正件(明治 43 勅令 第237號) 追錄 15
16. 文武判任官等級令(明治 43 勅令 第267號) 追錄 15
17. 高等官官等俸給令 중 改正件(明治 43 勅令 第287號) 追錄 17
18. 高等官官等俸給令 중 改正件(明治 43 勅令 第291號) 追錄 18
19. 高等官官等俸給令 중 改正件(明治 43 勅令 第298號) 追錄 19
20. 統監府警察官署職員의 俸給 등의 支給에 관한 件(明治 43 勅令 第299號) 追錄 19
21. 統監府警察官署職員의 官等等級에 관한 件(明治 43 勅令 第300號) 追錄 19

第2章 手當 · 諸給 · 旅費

22. 統監府司法廳 · 統監府裁判所 및 統監府監獄의 職員手當에 관한 件(明治 42 勅令 第250號) 97
23. 統監府看守 및 統監府女監取締非番勤務手當 · 宿料 및 特別手當 支給規則(明治 42 統監府訓令 第32號) 98
24. 統監府 및 所屬官署職員宿舍料의 件(明治 40 勅令 第149號) 99
25. 宿直 또는 徹夜勤務者 食料給與 및 特別用 文具使用의 件(明治 24 勅令 第27號) 100
26. 統監府看守 · 統監府女監取締給與品 및 貸與品規則(明治 42 統監府令 第53號) 100
27. 統監府監獄 傭人給與品 및 貸與品 規程(明治 42 統監府令 第54號) 103
28. 內國旅費規則(明治 30 勅令 第333號) 110
29. 外國旅費規則(明治 20 閣令 第12號) 112
30. 韓國人으로서 統監府裁判所 및 統監府監獄의 官吏 · 奏任 및 判任待遇者 · 雇員 및 傭人인 者의 韓國內에서의 旅費에 관한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52號) 122
31. 奏任 및 判任待遇 統監府監獄職員 旅費規則(明治 42 統監府令 第62號) 123
32. 統監府司法廳 · 統監府裁判所 및 統監府監獄囑託員 · 雇員 · 傭人 旅費規則(明治 42 統監府令 第63號) 123
33. 統監府監獄傭人 給與品 및 貸與品規程 중 改正件(明治 43 統監府令 第17號) 追錄 20
34. 統監府看守 및 統監府女監取締 非番勤務手當 · 宿料 및 特別手當支給規則 중 改正件(明治 43 統監府訓令 第10號) 追錄 21
35. 內國旅費規則(明治 43 勅令 第274號) 追錄 21
36. 大藏省所管 旅費支給規則(明治 43 大藏省令 第33號) 追錄 25

第3章 任用 및 採用

37. 文官任用令(明治 32 勅令 第61號) 124
38. 統監府 및 理事廳職員 特別任用令(明治 38 勅令 第267號) 126
39. 統監府司法廳職員 特別任用令(明治 42 勅令 第254號) 127

- 40. 統監府判事 및 檢事の 任用에 관한 件(明治 42 勅令 第255號) 128
- 41. 統監府 裁判所書記長 및 統監府 裁判所書記 特別任用令(明治 42 勅令 第257號) 128
- 42. 統監府典獄 및 統監府看守長 特別任用令(明治 42 勅令 第256號) 129
- 43. 統監府裁判所 및 統監府監獄의 職員인 韓國人의 任用分限 및 給與에 관한 件(明治 42 勅令 第259號) 130
- 44. 統監府看守採用規則(明治 42 統監府令 第43號) 131
- 45. 看守採用規則(明治 26 內務省訓令 第26號) 132
- 46. 統監府警視警部の 任用 및 分限에 관한 件(明治 42 勅令 第258號) 134
- 47. 統監府巡查採用 및 給與令(明治 42 統監府令 第42號) 135
- 48. 文官試補 및 見習에 관한 件(明治 43 勅令 第275號) 追錄 28
- 49. 巡查 및 巡查補의 採用에 관한 件(明治 43 統監府令 第32號) 追錄 28
- 50. 統監府 警務總長·警務部長·警視·警部の 任用 및 分限에 관한 件(明治 43 勅令 第302號) 追錄 29
- 51. 統監府警察官署의 職員인 韓國人의 任用分限 및 給與에 관한 件(明治 43 勅令 第303號) 追錄 29

第4章 試驗

- 52. 文官試驗規則(明治 26 勅令 第197號) 136
- 53. 統監府看守考査 및 試驗規則(明治 42 統監府訓令 第49號) 138
- 54. 統監府判事·統監府檢事 特別任用試驗規則(明治 43 統監府令 第15號) 追錄 31

第5章 分限

- 55. 文官分限令(明治 32 勅令 第62號) 142
- 56. 官吏의 勤續에 관한 件(明治 26 勅令 第198號) 144
- 57. 外國政府에 聘用된 官吏에 관한 件(明治 37 勅令 第195號) 145
- 58. 官吏의 待遇를 받는 在職者로서 外國政府에 聘用된 者에 관한 件(明治 37 勅令 第237號) 145
- 59. 韓國政府에 聘用된 者에 관한 件(明治 39 勅令 第150號) 145
- 60. 統監府看守 및 巡查의 勤續에 관한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64號) 146

第6章 服務

- 61. 官吏服務規律(明治 20 勅令 第39號) 146
- 62. 統監府 및 所屬官署의 執務時間(明治 39 閣令 第3號) 148

附 錄

63. 統監府 및 所屬官署의 執務時間(明治 39 統監府令 第22號) 148

第7章 賞 罰

64. 統監府看守 및 統監府女監取締의 精勤證書授與에 관한 件(明治 42 統監府訓令 第50號)
149
65. 看守女監取締 精勤證書授與規則(明治 36 司訓 第7號) 149
66. 文官懲戒令(明治 32 勅令 第63號) 152
67. 官吏待遇者의 懲戒에 관한 件(明治 40 勅令 第177號) 156
68. 判任待遇 統監府監獄職員의 懲戒에 관한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49號) 156
69. 監獄判任待遇職員 懲戒規程(明治 36 司法省令 第7號) 156

第8章 恩給 · 退隱料 · 扶助料

70. 官吏恩給法(明治 23 法律 第43號) 158
71. 官吏恩給法 施行規則(明治 23 閣令 第3號) 162
72. 官吏遺族扶助法(明治 23 法律 第44號) 165
73. 官吏遺族扶助法 施行規則(明治 23 閣令 第4號) 168
74. 官吏恩給法 및 官吏遺族扶助法 補則(明治 29 法律 第36號) 170
75. 官吏恩給法 및 官吏遺族扶助法 補則 施行規則(明治 29 閣令 第2號) 171
76. 統監府 및 關東都督府 등 在勤官吏의 恩給 및 遺族扶助料에 관한 件(明治 40 法律 第48號)
172
77. 臺灣 또는 樺太에 在勤하는 官吏의 恩給 및 遺族扶助料에 관한 件(明治 33 法律 第75號)
173
78. 明治40년 法律 第48號를 적용받지 않는 官吏에 관한 件(明治 40 勅令 第189號) 174
79. 巡查 · 看守退隱料 및 遺族扶助料法(明治 34 法律 第38號) 174
80. 巡查 · 看守退恩料 및 遺族扶助料法 施行令(明治 34 勅令 第148號) 180
81. 統監府 · 關東都督府 및 樺太 등 在勤巡查 · 看守 및 女監取締의 退恩料 및 遺族扶助料에 관
한 件(明治 40 法律 第49號) 181
82. 臺灣에 在勤하는 巡查 · 看守退恩料 및 遺族扶助料에 관한 件(明治 35 法律 第29號) 181
83. 明治40년 法律 第49號를 적용받지 않는 巡查 · 看守 및 女監取締에 관한 件(明治 40 勅令
第189號) 182
84. 內閣恩給局長管掌의 巡查 · 看守退恩料 및 遺族扶助料 取扱規程(明治 34 閣令 第1號)
182
85. 郵便官署에서 年金 · 恩給 등의 支給事務를 取扱하게 하는 件(明治 43 勅令 第25號) 186

86. 年金恩給支給規則(明治 43 遞信省令 第6號) 186
87. 統監府看守 및 統監府女監取締의 療治料·給助料 및 弔祭料給與에 관한 件(明治 43 勅令 第195號) 190
88. 巡查·看守要治療·給助料 및 弔祭料給與令(明治 34 勅令 第149號) 190
89. 官吏恩給法 중 改正件(明治 43 法律 第60號) 追錄 33

第4輯 服制 및 徽章

1. 統監府 및 所屬官署職員服制(明治 39 勅令 第14號) 193
2. 統監府 및 所屬官署職員의 襟章(明治 39 統監府令 第23號) 202

第5輯 外事

1. 韓國의 開港開市地(明治 9 太正官告示 第128號) 205
2. 釜山港 居留地 借入約書(明治 10년 1월) 206
3. 元山津 居留地 地租取極約書(明治 14년 8월) 207
4. 仁川港에서 居留地 借入約書(明治 16년 9월) 208
5. 朝鮮間行里程取極約書(明治 16 太正官達 第32號) 211
6. 朝鮮間行里程取極約書 附錄(明治 17 外務省告示 第2號) 213
7. 韓國에서의 日本人民貿易 規則 및 海關稅目(明治 16 太正官告示 第34號) 214
8. 仁川濟物浦 各國居留地 約書(明治 17년 11월) 238
9. 津南浦 및 木浦 居留地規則(明治 30 外務省告示 第14號) 243
10. 群山·馬山浦·城津 居留地規則(光武 3년 6월) 252
11. 馬山 日本專管居留地 取極書(明治 35 外務省告示 第5號) 262
12. 韓國通信機關 委託에 관한 取極書(明治 38년 4월) 263
13. 日韓議定書(明治 37년 2월) 264
14. 日韓協約(明治 38년 11월) 265
15. 日韓協約(明治 40년 7월) 266
16. 在韓國 帝國臣民에 대한 警察事務의 執行에 관한 取極書(明治 40 統監府告示 第140號) 267
17. 在韓國外國人에 대한 警察事務에 관한 協定(明治 42 統監府告示 第30號) 268
18. 淸津土地規則(明治 41 統監府告示 第52號) 268
19. 淸津官有地賣下規則(明治 41 統監府令 第53號) 269
20. 日韓兩國臣民의 漁業에 관한 協定(明治 41 統監府告示 第186號) 271

附錄

21. 韓國의 司法 및 監獄事務委託에 관한 覺書(明治 42 統監府告示 第66號) 271
22. 韓國中央銀行에 관한 覺書(明治 42 統監府告示 第76號) 272
23. 韓國에서 發明·意匠·商標 및 著作權의 保護에 관한 日美條約(明治 41 조약 第4號)
273
24. 淸韓國境에 관한 日淸間協約(明治 42년 9월 官報號外) 276
25. 外國旅券規則(明治 40 統監府令 第16號) 278
26. 護證下付 및 查證心得(明治 39 統監府訓令 第6號) 281
27. 關東州 및 帝國이 治外法權을 행사할 수 있는 外國에서 特許權·意匠權·商標權 및 著作權
의 保護에 관한 件(明治 41 勅令 第201號) 282
28. 韓露條約廢棄 勅宣書 및 理由書 譯文(明治 37년 5월) 283
29. 韓美修好通商條約(開國 491. 4. 6 西曆 1882. 5. 22 調印) 284
30. 韓美修好通商條約互換續約(開國 492. 4. 13 西曆 1883. 5. 19 調印) 287
31. 韓英修好通商條約 및 附續通商章程·稅則·稅則章程(開國 492. 10. 27 西曆 1883. 11.
26 調印) 288
32. 韓英修好通商條約 善後續條(開國 492. 10. 27 西曆 1883. 11. 26 調印) 308
33. 韓淸通商條約(光武 3. 9. 11 調印 西紀 1899. 9. 11) 308
34. 韓淸通商條約互換條約(光武 3. 12. 14 調印) 313
35. 仁川釜山 및 元山淸國 居留地規程(明治 43 統監府告示 第51號) 追錄 35
36. 警察事務委託에 관한 覺書(明治 43 統監府告示 第139號) 追錄 38

第6輯 裁判

第1章 裁判所

1. 統監府裁判所令(明治 42 勅令 第236號) 315
2. 統監府裁判所 司法事務取扱令(明治 42 勅令 第237號) 319
3. 韓國人에 關係되는 司法에 관한 件(明治 42 勅令 第238號) 322
4. 未開廳區裁判所 事務取扱에 관한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30號) 323
5. 統監府 裁判所 開廳告示(明治 42 統監府告示 第106號) 325
6. 統監府裁判所 및 檢事局 事務章程(明治 42 統監府令 第33號) 325
7. 統監府裁判所 및 檢事局 處務規程(明治 42 統監府訓令 第26號) 327
8. 統監府裁判所 書記課 處務規程(明治 42 統監府訓令 第38號) 329
9. 民事月報·刑事月報 및 檢事搜查事件 月報樣式·報告例(明治 43 統監府訓令 第4號) 338
10. 統監府警視警部の 區裁判所 檢事の 職務取扱方法(明治 42 統監府訓令 第28號) 354
11. 間島에서 領事館의 裁判에 관한 件(明治 43 法律 第40號) 354

12. 明治43년 法律 第40號에 의해 管轄權을 갖지 않는 統監府裁判所 指定의 件(明治 43 統監府令 第14號) 355
13. 韓國人에게 日本法規를 適用하는 경우에 관한 件(明治 43 勅令 第196號) 356
14. 裁判所 · 臺灣總督府法院 · 統監府裁判所 및 關東都督府法院 · 關東都督府民政署長 또는 民政支署長 상호간에 法律上的 共助에 관한 件(明治 40 法律 第52號) 356
15. 裁判所 및 臺灣總督府法院 共助法(明治 33 法律 第83號) 356
16. 裁判所 · 臺灣總督府法院 · 統監府裁判所 · 關東都督府法院 · 關東都督府民政署 또는 民政支署 判決의 執行에 관한 件(明治 42 法律 第36號) 357
17. 裁判所 · 臺灣總督府法院 · 統監府裁判所 및 關東都督府法院 關東都督府民政署 또는 民政支署의 共助에 관한 費用 및 囚人 刑事被告人 押送에 관한 件(明治 40 勅令 第292號) 358
18. 統監府地方裁判所 支部開廳의 件(明治 43 統監府告示 第109號) 追錄 41

第2章 執達吏

19. 執達吏에 관한 職務를 행사하는 경우에 手數料에 관한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36號) 358
20. 執達吏手數料規則(明治 23 法律 第52號) 359
21. 執達吏規則(明治 23 法律 第51號) 363

第3章 辯護士

22. 辯護士規則(明治 42 統監府令 第34號) 367
23. 韓國人辯護士 試驗規則(明治 43 統監府令 第16號) 追錄 41

第7輯 民事

1. 金錢利割稱呼(明治 11 太達乙 第21號) 373
2. 失火責任에 관한 件(明治 32 法律 第40號) 373
3. 外國人の 署名捺印 및 無資力證明에 관한 件(明治 32 法律 第50號) 373
4. 外國人の 署名捺印 및 無資力證明에 관한 法律施行의 件(明治 32 勅令 第327號) 374
5. 國籍喪失者의 權利에 관한 件(明治 32 法律 第94號) 374
6. 地上權에 관한 件(明治 33 法律 第72號) 374
7. 民法의 規定에 의한 遺言의 確認에 관한 件(明治 33 法律 第13號) 375
8. 救育所에 있는 孤兒의 後見職務에 관한 件(明治 33 法律 第51號) 375

附 錄

9. 敎育所에 있는 孤兒의 後見職務執行에 관한 特例(明治 33 勅令 第144號) 376
10. 敎育所에 있는 孤兒가 아닌 棄兒·迷兒의 後見職務에 관한 件(明治 33 內務省令 第11號) 376
11. 相續人不存在의 경우 國庫에 歸屬된 財産의 引導에 관한 件(明治 33 勅令 第409號) 377
12. 年齡計算에 관한 件(明治 35 法律 第50號) 377
13. 記名國債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에 관한 件(明治 37 法律 第17號) 377
14. 建物保護에 관한 件(明治 42 法律 第40號) 377
15. 立木에 관한 件(明治 42 法律 第22號) 378
16. 立木의 先取特權에 관한 件(明治 43 法律 第56號) 381
17. 民事訴訟費用法(明治 23 法律 第64號) 382
18. 家資分散法(明治 23 法律 第69號) 383
19. 土地建物 證明規則(明治 39 統監府令 第42號) 384
20. 土地建物 證明規則에 의한 證明 또는 査證을 받은 典當의 執行에 대한 準據方法(明治 41 統監府令 第3號) 384
21. 土地建物 所有權證明規則(明治 41 統監府令 第24號) 385
22. 統監府 및 所屬官署의 民事訴訟에 관해 國家를 代表하는 件(明治 39 勅令 第184號) 385
23. 統監府 및 所屬官署의 司掌事務에 관계되는 民事訴訟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하는 件(明治 39 統監府令 第24號) 386
24. 訴訟書類 郵便送達 手數料 納付方法(明治 24 勅令 第54號) 386
25. 立木에 관한 法律施行期日의 件(明治 43 勅令 第221號) 追錄 43
26. 土地所有者 立木의 先取特權에 관한 法律施行期日의 件(明治 43 勅令 第222號) 追錄 43

韓國法規

1. 民事訴訟規則(隆熙 2 法律 第13號) 386
2. 利息規例(光武 10 法律 第5號) 406
3. 民事訴訟 期限規則(隆熙 2 法律 第20號) 406
4. 民事訴訟 手數料 規則(隆熙 2 勅令 第75號) 407
5. 非訟事件 手續規則(隆熙 2 法律 第26號) 409
6. 民事訴訟 費用規則(隆熙 2 法律 第28號) 411
7. 民事證據 調查費用에 관한 件(隆熙 3 法律 第15號) 413
8. 土地建物 證明規則(光武 10 勅令 第65號) 414
9. 土地建物 證明規則 施行細則(光武 10 法部令 第4號) 415
10. 土地家屋 證明事務에 관한 件(隆熙 3 勅令 第95號) 435
11. 土地建物 典當執行規則(光武 10 勅令 第80號) 435

12. 土地建物 典當執行規則 施行細則(光武 11 法部令 第2號) 437
13. 土地建物 所有權證明規則(隆熙 2 勅令 第47號) 441
14. 土地建物 所有權證明規則 施行細則(隆熙 法部令 第14號) 441

第8輯 商事

1. 商法 중 署名해야 할 경우에 관한 件(明治 33 法律 第17號) 447
2. 小商人의 範圍에 관한 件(明治32 勅令 第271號) 447
3. 商法施行法 第122조에 의한 湖川港灣 및 沿岸小航海의 範圍의 件(明治 32 遞信省令 第20號) 447
4. 韓國商號令(明治 41 勅令 第199號) 447
5. 韓國商號令 施行規則(明治 41 統監府令 第29號) 448
6. 東洋拓植株式會社法(明治 41 法律 第63號) 448
7. 外國에서의 銀行事業에 관한 件(明治 38 法律 第47號) 455
8. 韓國에서의 銀行業에 관한 件(明治 40 勅令 第31號) 455
9. 韓國에서의 銀行業에 관한 規則(明治 40 勅令 第20號) 457
10. 銀行에 관한 法定過料處分の 件(明治 32 法律 第53號) 459
11. 韓國銀行總裁 · 理事, 韓國銀行條例 第41條의 事犯의 處分方法(明治 42 統監府令 第21號) 460
12. 船舶規則(明治 43 統監府令 第3號) 460
13. 船舶檢查規則(明治 43 統監府令 第4號) 462

韓國法規

1. 農工銀行條例(光武 10 勅令 第13號) 466
2. 農工銀行條例 施行規則(隆熙 2 度支府令 第15號) 469
3. 手形條例(光武 10 勅令 第71號) 472
4. 手形組合條例(光武 9 度支部令 第16號) 477
5. 韓國銀行條例(隆熙 3 法律 第22號) 478
6. 船舶法(隆熙 4 法律 第1號) 484
7. 船舶法 施行細則(隆熙 4 度支部令 第11號) 487
8. 船舶檢查法(隆熙 4 法律 第2號) 497
9. 船舶檢查法 施行細則(隆熙 4 度支部令 第13號) 500
10. 船舶積量測度法(隆熙 4 法律 第3號) 507
11. 船準牌規則(隆熙 4 度支部令 第12號) 510

第9輯 刑事

1. 刑法(明治 40 法律 第45號) 513
2. 刑法施行法(明治 41 法律 第29號) 545
3. 刑法施行 前에 공포된 命令에 관한 件(明治 41 勅令 第217號) 555
4. 刑法施行 後 施行命令에 게재된 刑法의 刑名에 관한 件(明治 42 勅令 第120號) 556
5. 外國에서 流通하는 貨幣·紙幣·銀行券·證券偽造變造 및 模造에 관한 件(明治 38 法律 第66號) 556
6. 印紙犯罪處罰法(明治 42 法律 第39號) 558
7. 韓國政府公布의 家屋稅法·酒稅法·煙草稅法·地稅에 관한 件·地方費法에 정한 稅金을 期限內에 納付하지 않는 자에 대한 處分方法의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15號) 559
8. 韓國의 屠獸規則 違背者의 處分方法의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24號) 559
9. 刑執行猶豫에 관한 取扱規程(明治 42 統監府訓令 第31號) 560
10. 勳章褫奪令(明治 41 勅令 第291號) 562
11. 勳章褫奪令 施行細則(明治 41 閣令 第2號) 564
12. 勳章·記章·褒章의 佩用取締에 관한 件(明治 41 勅令 第292號) 565
13. 勳章·勳記·功記·年金證書 또는 外國勳章佩用 免許證 沒收의 경우에서 犯人 本籍地 戶籍吏에게 通知方法(明治 43 統監府訓令 第1號) 565
14. 韓國軍人·軍屬의 犯罪審判에 관한 件(明治 42 勅令 第292號) 566
15. 檢事가 呼出한 刑事證人·鑑定人 및 通事의 日當·旅費·止宿料 支給에 관한 件(明治 43 統監府令 第2號) 567

韓國法規

1. 刑法大全(光武 9 法律 第3號) 568
2. 刑事裁判費用規則(隆熙 2 法律 第24號) 641

第10輯 警察

1. 在韓國 本邦人에 대한 司法警察官 執務規則(明治 42 統監府訓令 第34號) 643
2. 韓國人에 대한 司法警察事務取扱에 관한 件(明治 42 統監府訓令 第30號) 677
3. 司法警察官의 外國人에 관한 執務心得(明治 42 統監府訓令 第29號) 678
4. 韓國에서의 犯罪即決令(明治 42 勅令 第240號) 679
5. 警察犯處罰令(明治 41 統監府令 第44號) 680

6. 朝鮮國在留 帝國臣民取締法(明治 29 法律 第80號) 685
7. 保安規則(明治 39 統監府令 第10號) 686
8. 普通警察報告例(明治 39 統監府訓令 第7號) 687
9. 韓國에서의 犯罪即決令에 의해 沒收된 金品の 處分方法과 罰金·科料 및 收贖金の 徵收手續(明治 43 統監府訓令 第2號) 691
10. 普通警察報告例 改正件(明治 43 統監府訓令 第8號) 追錄 45
11. 韓國政府委託의 警察事務에 관한 準據規定의 件(明治 43 統監府令 第31號) 追錄 46
12. 統監府警務總長 및 統監府 警務部長이 發한 命令에 관한 件(明治 43 勅令 第297號) 追錄 47

韓國法規

1. 韓國司法警察官 執務規程(隆熙 3 法部令 第2號) 692
2. 司法警察官 執務規程에 관한 書式의 件(隆熙 3 法部訓令 第6號) 701
3. 保安法(光武 11 法律 第2號) 731
4. 銃砲 및 火藥類 團束法(隆熙 4 法律 第5號) 732
5. 寄附金品募集取締規則(隆熙 3 閣令 第2號) 733
6. 屠獸規則(隆熙 3 法律 第24號) 734

第11輯 監獄

1. 統監府監獄 事務取扱에 관한 件(明治 42 勅令 第239號) 737
2. 監獄法(明治 41 法律 第28號) 737
3. 監獄法 施行規則(明治 41 司法省訓令 第18號) 747
4. 監獄則(明治 22 勅令 第93號) 768
5. 監獄則 施行細則(明治 32 內務省令 第38號) 775
6. 統監府監獄 職員에 銃을 携帶시키는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48號) 786
7. 囚人 및 被告人 護送規則(明治 42 統監府令 第51號) 786
8. 監獄領置品 取扱規則(明治 42 統監府訓令 第45號) 790
9. 特赦 및 減刑에 관한 件(明治 41 勅令 第215號) 797
10. 韓國·臺灣·關東州 및 帝國이 治外法權을 行使하는 地域에서 特赦 및 減刑에 관한 件(明治 41 勅令 第230號) 799
11. 假出獄 取締細則(明治 41 司法省令 第25號) 799
12. 假出獄 取締細則에 의해 交付할 旅券 및 證明書雛形(明治 41 內務省訓令 第9號) 802
13. 監獄作業規程(明治 41 司法省訓令 第6號) 811

附錄

14. 假出獄 및 假出場에 관한 取扱手續(明治 41 司法省訓令 第7號) 814
15. 統監府監獄에 監獄法 施行規則을 準用하는 件(明治 43 統監府令 第18號) 追錄 49
16. 假出獄者 取締에 관한 件(明治 43 統監府令 第19號) 追錄 49
17. 假出獄 및 假出場에 관한 取扱方法의 件(明治 43 統監府訓令 第7號) 追錄 49

第12輯 會計

第1章 會計法

1. 統監府裁判所 및 統監府監獄 會計事務章程(明治 42 統監府訓令 第33號) 821
2. 會計法(明治 22 法律 第4號) 903
3. 會計規則(明治 22 勅令 第60號) 908
4. 諸計算書 仕拂命令領收證 및 諸帳簿樣式(明治 26 大藏省令 第32號) 925
5. 在外公館에서 會計規則에 정해진 手續省略制를 統監府 및 理事廳에 準用하는 件(明治 39 勅令 第7號) 935
6. 在外公館에서 會計規則에 정해진 手續省略의 件(明治 30 勅令 第58號) 935
7. 國庫出納 상 1錢 미만의 端數計算에 관한 件(明治 40 法律 第31號) 936
8. 明治 40년 法律 第31號 第4條 第2項에 의한 命令의 件(明治 40 勅令 第98號) 936
9. 勸業債券 興業債券 및 貯蓄債券을 會計規則의 保證金에 사용할 수 있는 件(明治 36 勅令 第283號) 937
10. 政府에 納付하여야 할 保證金 기타 擔保에 充用하는 國債의 價格에 관한 件(明治 41 勅令 第287號) 937
11. 鐵道株式會社의 株券을 國債證券에 代用하는 件(明治 40 勅令 第291號) 938
12. 政府私人間 債務相殺에 관한 件(明治 34 勅令 第131號) 938
13. 政府私人間 債務相殺의 경우 仕拂命令書式(明治 34 大藏省令 第12號) 938
14. 政府私人間 債務相殺金額 取扱順序(明治 34 大藏省訓令 第26號) 939
15. 政府押留命令을 받는 경우 會計上의 規程(明治 26 勅令 第261號) 940
16. 政府가 第三債權者로서 押留당한 債權額 仕拂停止·仕佛執行·供託에 관한 手續(明治 27 大藏省令 第2號) 941
17. 金穀收納證書 중 數字 등 改削塗抹禁止(明治 7 太正官達 第4號) 947
18. 在外各廳工事 또는 物件賣買貸借隨意契約의 件(明治 27 勅令 第40號) 948
19. 物品會計規則(明治 22 勅令 第84號) 948
20. 歲入歲出豫算概定順序(明治 22 閣令 第12號) 950
21. 歲入概算書樣式制定(明治 22 大藏省訓令 第21號) 951
22. 豫定經費産出概則(明治 22 閣令 第19號) 952

23. 會計檢事院法(明治 22 法律 第15號) 953
24. 會計檢事院 事務章程(明治 32 勅令 第457號) 956

第2章 收入

1. 諸收入收納 取扱規程(明治 33 大藏省訓令 第27號) 960
2. 收入證明規程(明治 33 會計檢査局達 第2號) 964
3. 租稅外 歲入徵收額 證明規程(明治 34 會計檢査局達 第4號) 968
4. 歲入調定濟額으로 익년 6월 30일까지 收入整理를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한 取扱方法(明治 24 大藏省訓令 第68號) 985
5. 收入金繰越에 관한 件(明治 25 大藏省訓令 第25號) 988
6. 收入金繰越計算表(明治 31 大藏省訓令 第12號) 988
7. 統監府 및 所屬官署 諸收入 取扱規程(明治 39 統監府訓令 第25號) 990
8. 租稅 기타 歲入金 代用證券 取扱에 관한 件(明治 38 勅令 第34號) 990
9. 官吏遺族扶助法 納金收入規則(明治 23 勅令 第125號) 990
10. 國債證券 및 그 利札로써 租稅 기타 歲入金에 代用納付하는 件(明治 38 大藏省令 第7號) 991
11. 收入印紙로써 手數料·罰金·科料·過料·刑事追徵金·訴訟費用 및 非訟事件費用納付의 件(明治 38 勅令 第227號) 994
12. 統監府 및 所屬官署에서 徵收하는 手數料 중 收入印紙로써 納付하는 種目(明治 39 統監府令 第38號) 994
13. 收入印紙로써 罰金·科料·過料·刑事追徵金·訴訟費用 및 非訟事件의 費用을 納付하는 경우에 納付書樣式 및 印紙消印方法의 件(明治 42 統監府訓令 第44號) 995
14. 民事訴訟用印紙法(明治 23 法律 第65號) 997
15. 商事非訟事件印紙法(明治 23 法律 第66號) 1001
16. 登錄稅法(明治 29 法律 第27號) 1003
17. 登錄稅法 施行規則(明治 32 勅令 205號) 1019
18. 印紙稅法(明治 32 法律 第54號) 1019
19. 非訟事件手續法에 의해 申請하는 謄本抄本 手數料의 件(明治 31 司法省令 第10號) 1023
20. 私署證書確定日附請求手數料 및 納付方法(明治 42 司法省令 第16號) 1024
21. 訴訟 및 非訟事件에 대하여 韓國人이 貼用할 收入印紙에 관한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37號) 1024
22. 刑事判決의 正本·謄本 및 抄本의 手數料에 관한 件(明治 42 統監府令 第38號) 1025
23. 納額告知書 記載의 年度誤謬 發見의 경우 訂正手續(明治 24 大藏省令 第11號) 1052

附 錄

24. 登錄稅法 중 改正件(明治 43 法律 第64號) 追錄 51

第3章 支出

1. 會計年度開始前 現金支出規則(明治 22 勅令 第95號) 1026
2. 特別會計의 第一豫備金 支出에 관한 件(明治 30 勅令 第118號) 1026
3. 仕佛命令委任規程(明治 22 勅令 第89號) 1026
4. 仕佛命令·仕佛請求書·集合仕佛命令 및 集合仕佛請求書 發付 등에 관한 取扱手續(明治 26 大藏省訓令 第40號) 1027
5. 仕佛命令 등의 盜難 또는 亡失한 경우에 관한 取扱手續(明治 38 大藏省令 第39號) 1031
6. 仕佛命令·仕佛請求書·現金交付 前에 誤拂過渡를 발견했을 時의 整理手續(明治 23 大藏省令 第27號) 1032
7. 支出證明規程(明治 32 會計檢査局達 第1號) 1033
8. 仕佛證明規程(明治 32 會計檢査局達 第2號) 1046
9. 統監府 및 所屬官署職員의 俸給·手當 및 宿舍料前金渡에 관한 件(明治 40 勅令 第150號)
1054
10. 旅費 기타 概算渡 前金渡의 件(明治 22 勅令 第121號) 1055
11. 官廳에서 印刷局製造의 物件買入에 관한 件(明治 40 法律 第5號) 1055
12. 俸給旅費 기타 諸給與仕佛 時의 錢位未滿의 端數切捨에 관한 件(明治 38 勅令 第130號)
1056

第4章 出納官吏

1. 物品出納證明規程(明治 34 會計檢査局達 第1號) 1056
2. 歲入歲出 외 現金取扱出納官吏에 관한 件(明治 23 勅令 第35號) 1068
3. 歲入歲出 외 現金出納證明規程(明治 24 會計檢査局達 第2號) 1069
4. 出納官吏 檢査規程(明治 25 大藏省訓令 第30號) 1073
5. 出納官吏交替 時의 事務引繼手續(明治 23 大藏省訓令 第54號) 1073
6. 出納官吏 現金取扱規則(明治 22 大藏省令 第13號) 1077
7. 出納官吏 現金取扱規則 第1조에 의한 保管現金委託의 경우 樣式(明治 26 大藏省訓令 第63號) 1079
8. 出納官吏 身元保證金에 관한 件(明治 35 勅令 第205號) 1080
9. 出納官吏 現金出納簿 記帳方法에 관한 件(明治 35 大藏省訓令 第10號) 1081

第5章 金庫

1. 金庫規則(明治 22 勅令 第126號) 1084
2. 金庫出納事務規程(明治 26 大藏省訓令 第39號) 1085
3. 預金·保管物 및 供託物金庫出納事務規程(明治 26 大藏省訓令 第32號) 1101
4. 韓國內 金庫 名稱位置(明治 39 大藏省告示 第866號) 1111
5. 在韓國 各金庫 開庫時間(明治 41 大藏省告示 第36號) 1111
6. 韓國內支金庫 設置에 관한 件(明治 43 大藏省告示 第70號) 追錄 53

第6章 官有財産管理

1. 官有財産管理規則(明治 23 勅令 第275號) 1112

第7章 保管·供託

1. 保管金規則(明治 23 法律 第1號) 1114
2. 保管物 取扱規程(明治 26 大藏省令 第20號) 1115
3. 政府에서 保管義務가 있는 公有金·私有金·寄託 및 保管方法(明治 23 勅令 第2號) 1118
4. 預金局寄託金에 대한 心得方法에 관한 件(明治 23 大藏省訓令 第78號) 1118
5. 各官廳官吏의 政府所有 및 保管 有價證券 寄託方法(明治 26 勅令 第70號) 1119
6. 保管現金에 대한 利子取扱에 관한 件(明治 33 大藏省訓令 第56號) 1119
7. 保管金金庫換 및 振換拂 및 그 利子支拂手續(明治 36 大藏省令 第9號) 1119
8. 各裁判所에서 金庫에 寄託하여야 하는 假納金 및 民事豫納金 取扱方法(明治 31 大藏省訓令 第6號) 1120
9. 在監人所持金 預金 및 拂戻方法(明治 23 大藏省訓令 第140號) 1121
10. 在監人所持金 工錢移送 時 金庫取扱의 件(明治 27 大藏省訓令 第6號) 1121
11. 寄託前保管金 在監人所持金 工錢移送取扱方法(明治 27 大藏省訓令 第15號) 1121
12. 預金規則(明治 18 太政官布告 第13號) 1122
13. 預金取扱規程(明治 26 大藏省令 第19號) 1123
14. 供託法(明治 32 法律 第15號) 1126
15. 供託物取扱規程(明治 32 大藏省令 第6號) 1127

第13輯 雜

1. 居留民團法(明治 38 法律 第41號) 1143
2. 居留民團法 施行規則(明治 39 統監府令 第21號) 1143
3. 居留民團法 施行規則 實施心得(明治 39 統監府訓令 第15號) 1152
4. 新聞紙規則(明治 41 統監府令 第12號) 1154
5. 宗教의 宣布에 관한 規則(明治 39 統監府令 第45號) 1158
6. 統監府 및 所屬官署에서 使用하는 時間에 관한 件(明治 41 統監府令 第5號) 1159
7. 韓國著作權令(明治 41 勅令 第200號) 1160
8. 韓國著作權令 施行規則(明治 41 統監府令 第28號) 1160
9. 韓國特許令(明治 42 勅令 第304號) 1162
10. 韓國特許令 施行規則(明治 42 統監府令 第56號) 1163
11. 韓國意匠令(明治 42 勅令 第305號) 1164
12. 韓國意匠令 施行規則(明治 42 統監府令 第57號) 1164
13. 韓國商標令(明治 42 勅令 第306號) 1165
14. 韓國商標令 施行規則(42 統監府令58) 1165
15. 韓國實用新案令(明治 42 勅令 第307號) 1166
16. 韓國實用新案令 施行規則(明治 42 統監府令 第59號) 1166
17. 韓國特許辨理士令(明治 42 勅令 第308號) 1167
18. 韓國特許辨理士 試驗規則(明治 42 統監府令 第60號) 1168
19. 韓國에서 特許·意匠·商標 및 實用新案에 관한 審判·抗告審判 및 出訴에 관한 費用의 件
(明治 42 勅令 第309號) 1168
20. 度量衡에 관하여서는 韓國의 度量衡法 및 度量衡法 施行規則에 의하는 件(明治 42 統監府
令 第23號) 1168
21. 年賀特別郵便規則(明治 42 統監府令 第67號) 1169
22. 郵便振替貯金規則(明治 42 統監府令 第67號) 1170
23. 清韓郵便規則(明治 43 遞信省令 第11號) 1183
24. 日清郵便規則(明治 43 統監府令 第8號) 1189
25. 韓國內發着 小包郵便物에 관한 件(明治 43 統監府令 第13號) 1193
26. 出版規則(明治 43 統監府令 第20號) 追錄 55
27. 居留民團法 施行規則 중 改正件(明治 43 統監府令 第38號) 追錄 60
28. 居留民團法 施行規則實施心得 중 改正件(明治 43 統監府訓令 第9號) 追錄 60
29. 清韓郵便規則 중 改正件(明治 43 遞信省令 第74號) 追錄 60
30. 韓國著作權令 施行規則 중 改正件(明治 43 統監府令 第33號) 追錄 61

韓國法規

1. 移民保護法(光武 10 法律 第2號) 1194
2. 移民保護法 施行細則(光武 10 農商工部令 第44號) 1196
3. 鑛業法(光武 10 法律 第3號) 1200
4. 鑛業法 施行細則(光武 10 農商工部令 第43號) 1204
5. 砂鑛採取法(光武 10 法律 第4號) 1210
6. 砂鑛採取法 施行細則(光武 10 農商工部令 第46號) 1211
7. 國有未墾地利用法(隆熙 元年 法律 第4號) 1214
8. 國有未墾地利用法 施行細則(隆熙 元年 農商工部令 第50號) 1226
9. 新聞紙法(光武 11 法律 第1號) 1220
10. 森林法(隆熙 2 法律 第1號) 1224
11. 森林法 施行細則(隆熙 2 農商工部令 第65號) 1227
12. 國有森林山野 部分林規則(隆熙 2 農商工部令 第63號) 1237
13. 典當舖規則(光武 2 法律 第11號) 1241
14. 典當舖細則(光武 2 農商工部令 第31號) 1244
15. 紅蔘專賣法(隆熙 2 法律 第14號) 1245
16. 紅蔘專賣法 施行細則(隆熙 2 度支部令 第18號) 1248
17. 人蔘稅法(隆熙 2 法律 第15號) 1250
18. 人蔘稅法 施行細則(隆熙 2 度支部令 第17號) 1252
19. 漁業法(隆熙 2 法律 第29號) 1252
20. 漁業法 施行細則(隆熙 2 農商工部令 第72號) 1255
21. 家屋稅法(隆熙 3 法律 第2號) 1259
22. 家屋稅法 施行細則(隆熙 3 度支部令 第2號) 1261
23. 家屋稅法에 의해 市街地指定에 관한 件(隆熙 3 勅令 第43號) 1262
24. 酒稅法(隆熙 3 法律 第3號) 1274
25. 酒稅法 施行細則(隆熙 3 度支部令 第3號) 1276
26. 煙草稅法(隆熙 3 法律 第4號) 1277
27. 煙草稅法 施行細則(隆熙 3 度支部令 第4號) 1278
28. 國稅徵收法(隆熙 3 法律 第5號) 1279
29. 國稅徵收法 施行細則(隆熙 3 度支部令 第6號) 1284
30. 出版法(隆熙 3 法律 第6號) 1290
31. 民籍法(隆熙 3 法律 第8號) 1292
32. 民籍法 執行心得(隆熙 3 內部訓令 第39號) 1294

附 錄

33. 漁業稅法(隆熙 3 法律 第10號) 1303
34. 漁業稅法 施行細則(隆熙 3 度支部令 第11號) 1306
35. 度量衡法(隆熙 3 法律 第26號) 1307
36. 度量衡法 施行細則(隆熙 3 農商工部令 第3號) 1311
37. 度量衡法 施行地域에 관한 件(隆熙 3 農商工部令 第4號) 1315
38. 大韓國標準時에 관한 件(隆熙 2 勅令 第5號) 1316
39. 地稅에 관한 件(隆熙 2 法律 第10號) 1316
40. 國有土石採取規則(隆熙 2 勅令 第58號) 1318
41. 地方費法(隆熙 3 法律 第12號) 1320
42. 國稅未勘金整理에 관한 件(隆熙 3 法律 第14號) 1321
43. 家屋稅法施行地 改正에 관한 件(隆熙 4 勅令 第27號) 追錄 61
44. 國庫債券條例(隆熙 4 法律 第5號) 追錄 63
45. 度量衡法施行地域에 관한 件(隆熙 4 農商工部令 第4號) 追錄 65

第二追錄

1. 統監府警察官署 巡查의 勤績에 관한 件(明治 43 統監府令 第35號) 第2追錄 1
2. 警務總監部令 및 警務部令 公文式(明治 43 統監府令 第36號) 第2追錄 1
3. 郵便振替貯金規則 中 改正件(明治 43 統監府令 第37號) 第2追錄 1
4. 警察에 관한 規定 中 理事官에 속하는 職務執行에 관한 件(明治 43 統監府訓令 第13號)
第2追錄 2
5. 理事廳에서 警察事務引繼에 관한 件(明治 43 統監府訓令 第13號) 第2追錄 2
6. 統監府 警務總監部 分課規程(明治 43 統監府訓令 第14號) 第2追錄 3
7. 統監府 및 所屬官吏의 執務時間 中 改正件(明治 43 統監府令 第39號) 第2追錄 8

附錄 II. 主要 日本法令 翻譯

解 說

1. 統監府는 일본의 機關이므로 日本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統監府 法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日本法令을 알아야 한다.
2. 主要 日本 法令의 全文을 翻譯하여 收錄한다.
3. 수록한 法令은 다음과 같다.
 1. 大日本帝國憲法(明治 23. 2)
 2. 法例 (明治 31年 6月, 法律 第10號)
 3. 公文式(明治 19年 2月, 勅令 第1號)
 4. 公式令 (明治 40年 2月, 勅令 第6號)
 5. 領事官職務에 관한 件 (明治 32年 3月, 法律 第70號)
 6. 領事官職務規則 (明治 33年 4月, 勅令 第153號)
 7. 憲兵條例(明治 40年 勅令 第322號)
 8. 拓殖局官制 (明治 43年 6月, 勅令 第279號)
4. 翻譯에는 金昌祿(釜山大學校 法科大學 專任講師)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1. 大日本帝國憲法

公布 明治 23年 2月 11日

施行 明治 23年 11月 29日

告 文

저 天皇은 삼가 皇祖皇宗의 神靈에게 告하노니, 저 天皇은 天壤無窮의 宏謨(큰 계획)에 따라, 惟神의 寶祚를 承繼하고, 舊圖를 保持하여 敢히 失墜시키지 않습니다. 돌아보건대 世局의 進運에 對應하고, 人文의 發達에 따르며, 마땅히 皇祖皇宗의 遺訓을 明徵하여, 典憲을 만들고 條章을 昭示함으로써, 안으로는 子孫이 率由할 바로 하고, 밖으로는 臣民翼贊의 길을 넓히고 永遠히 遵行하게 하여, 더욱더 國家의 丕基를 鞏固히 하고, 八洲民生의 慶福을 增進하여야 할 것이기에, 이에 皇室典範 및 憲法을 제정합니다. 생각컨대 이것은 모두 皇祖皇宗이 後裔에게 남기신 統治의 洪範을 紹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朕이 體得하여 언제나 舉行할 수 있는 것은 실로 皇祖皇宗 및 皇考의 威靈에 依支하지 않는 바 없습니다. 저 天皇은 우리러 皇祖皇宗 및 皇考의 神祐를 祈願하며, 아울러 朕의 現在 및 將來의 臣民에 率先하여 이 憲章을 履行하여 그르침이 없을 것을 誓約합니다. 원컨대 神靈이시여 이를 굽어 살피소서.

憲法發布勅語

朕은 國家의 隆昌과 臣民의 慶福을 으뜸가는 欣榮으로 삼으며, 朕이 祖宗에게서 이어받은 大權에 의하여 現在 및 將來의 臣民에 대하여 이 不磨의 大典을 宣布한다.

생각컨대, 우리 祖宗은 우리 臣民의 祖先의 協力輔翼에 의하여 우리 帝國을 肇造하여, 無窮히 남겼다. 우리 神聖한 祖宗의 威德과 함께 臣民이 忠實勇武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殉公함으로써, 이 光輝로운 國史의 成跡을 남긴 것이다. 朕은, 우리 臣民이 곧 祖宗의 忠良한 臣民의 子孫임을 回想하고, 朕의 뜻을 奉體하고 朕의 事業을 獎順하고, 더불어 和衷協同하여, 더욱더 우리 帝國의 光榮을 中外에 宣揚하고, 祖宗의 遺業을 永久히 鞏固하게 하고자 하는 希望을 함께 하며, 이 負擔을 나누기를 마지 않을 것임을 疑心하지 않는다.

上 諭

朕은, 祖宗의 遺烈을 이어받아 萬世一系의 帝位에 올라, 朕이 親愛하는 臣民이 곧 朕의 祖宗이 惠撫慈養하신 臣民임을 헤아려, 그 康福을 增進하며, 그 懿德良能을 發達시킬 것을 원하고,

또 그 翼贊에 의하여 함께 더불어 國家의 進運을 扶持할 것을 希望하여, 明治 14年 10月 12日의 詔明을 履踐하여, 이에 大憲을 制定하여, 朕이 率由할 바를 밝히고, 朕의 後嗣 및 臣民 및 臣民의 子孫인 者로 하여금 永遠히 循行할 바를 알린다.

國家統治의 大權은 朕이 祖宗에게서 이어받아 子孫에게 傳하는 바이다. 朕 및 朕의 子孫은 將來 이 憲法이 條章에 따라 그것을 行하는 것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朕은 우리 臣民의 權利 및 財産의 安全을 貴重히 여겨, 그것을 保護하고, 이 憲法 및 法律의 範圍內에서 그 享有를 完全하게 할 것을 宣言한다.

帝國議會는 明治 23年에 召集하며, 議會開會의 時點(明治 23. 11. 29)을 이 憲法을 有效하게 하는 時期로 할 것이다.

將來 만일 이 憲法의 어떤 條章을 改正하는 것이 必要한 時期가 되면, 朕 및 朕의 繼統의 子孫이 發議權을 行使하여 이를 議會에 付議하고, 議會가 이 憲法에 定한 要件에 따라 이를 議決하는 外에는, 朕의 子孫 및 臣民은 敢히 이의 紛更을 試圖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朕의 在廷의 大臣은 朕을 위하여 이 憲法을 施行하는 職責에 任할 것이며, 朕의 現在 및 將來의 臣民은 이 憲法에 대하여 永遠히 順從할 義務를 질 것이다.

睦仁 天皇御璽

明治 22年 2月 11日

| | |
|--------|---------|
| 內閣總理大臣 | 伯爵 黑田清隆 |
| 樞密院 議長 | 伯爵 伊藤博文 |
| 外務大臣 | 伯爵 大隈重信 |
| 海軍大臣 | 伯爵 西鄉從道 |
| 農商務大臣 | 伯爵 井上馨 |
| 司法大臣 | 伯爵 山田顯義 |
| 大藏大臣 兼 | |
| 內務大臣 | 伯爵 松方正義 |
| 陸軍大臣 | 伯爵 大山巖 |
| 文部大臣 | 子爵 森有禮 |
| 遞信大臣 | 子爵 榎本武揚 |

大日本帝國憲法

第1章 天皇

第1條 大日本帝國은 萬世一系의 天皇이 統治한다.

第2條 皇位는 皇室典範이 定하는 바에 따라 皇男子孫이 繼承한다.

附 錄

- 第3條 天皇은 神聖하여 犯하여서는 안된다.
- 第4條 天皇은 國家의 元首로서 統治權을 總攬하며 이 憲法의 條規에 따라 이를 行使한다.
- 第5條 天皇은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쳐 立法權을 行使한다.
- 第6條 天皇은 法律을 裁可하며 그 公布 및 執行을 命한다.
- 第7條 天皇은 帝國議會를 召集하며, 그 開會, 閉會, 停會 및 衆議院의 解散을 命한다.
- 第8條 天皇은 公共의 安全을 保持하거나, 그 災殃을 避하기 위하여 緊急한 必要에 따라 帝國議會 閉會의 경우에 法律에 대신할 勅令을 發한다.
이 勅令은 다음 會期에 帝國議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만일 議會에서 承諾하지 않을 때에는, 政府는 將來에 向하여 그 效力을 喪失함을 公布하여야 한다.
- 第9條 天皇은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保持하고 臣民의 幸福을 增進하기 위하여 必要한 命令을 發하거나 發하게 한다. 단 命令으로 法律을 變更할 수 없다.
- 第10條 天皇은 行政各部의 官制 및 文武官의 俸給을 定하며, 文武官을 任免한다. 단 이 憲法 기타의 法律에 特例를 둔 경우는 각각 그 條項에 따른다.
- 第11條 天皇은 陸海軍을 統帥한다.
- 第12條 天皇은 陸海軍의 編制 및 常備兵額을 定한다.
- 第13條 天皇은 戰爭을 宣布하고 講和를 하며, 諸般 條約을 締結한다.
- 第14條 天皇은 戒嚴을 宣布한다.
戒嚴의 要件과 效力은 法律로 定한다.
- 第15條 天皇은 爵位, 勳章 기타의 榮典을 授與한다.
- 第16條 天皇은 大赦, 特赦, 減刑 및 復權을 命한다.
- 第17條 攝政을 두는 것은 皇室典範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攝政은 天皇의 이름으로 大權을 行한다.

第2章 臣民의 權利義務

- 第18條 日本臣民의 要件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19條 日本臣民은 法律, 命令이 定하는 바의 資格에 따라 均等하게 文武官에 任命되며, 기타의 公務에 就任할 수 있다.
- 第20條 日本臣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兵役의 義務를 진다.
- 第21條 日本臣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納稅의 義務를 진다.
- 第22條 日本臣民은 法律이 範圍內에서 居住 및 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 第23條 日本臣民은 法律에 의하지 않고서 逮捕, 拘禁, 審問, 處罰을 받지 않는다.
- 第24條 日本臣民은 法律에 定하는 裁判官의 裁判을 받을 權利를 剝奪당하지 않는다.
- 第25條 日本臣民은 法律에 定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許諾없이 住居를 侵入당하거나 搜索당하지 않는다.

- 第26條 日本臣民은 法律이 定한 경우를 제외하고 信書의 秘密을 侵害당하지 않는다.
- 第27條 日本臣民은 그 所有權을 侵害받지 않는다.
公益을 위하여 必要한 處分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28條 日本臣民은 安寧秩序를 妨害하지 않고, 臣民으로서의 義務에 違背되지 않는 限度內에 서 信敎의 自由를 가진다.
- 第29條 日本臣民은 法律의 範圍內에서 言論, 著作, 印行, 集會 및 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 第30條 日本臣民은 相當한 敬禮를 지켜서, 별도로 定하는 規程에 따라 請願을 할 수 있다.
- 第31條 本章의 條規는 戰時 또는 國家事變의 경우에 天皇大權의 施行을 妨害하지 않는다.
- 第32條 本章의 條規는 陸海軍의 法令 또는 紀律에 抵觸되지 않는 것에 限하여 軍人에게 準行 한다.

第3章 帝國議會

- 第33條 帝國議會는 遺族院과 衆議院의 兩院으로 이루어진다.
- 第34條 遺族院은 遺族院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皇族, 華族 및 勅任된 議員으로 組織한다.
- 第35條 衆議院은 選舉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公選된 議員으로 組織된다.
- 第36條 누구라도 동시에 兩議院의 議員이 될 수 없다.
- 第37條 무릇 法律은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쳐야 한다.
- 第38條 兩議院은 政府가 提出하는 法律案을 議決하고, 또 각각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다.
- 第39條 兩議院 중 어느 한 쪽에서 否決된 法律案은 같은 會期中에 다시 提出할 수 없다.
- 第40條 兩議院은 法律 또는 기타의 事件에 대하여 각각 그 意見을 政府에 建議할 수 있다. 단 採納되지 못한 것은 같은 會期中에 다시 建議할 수 없다.
- 第41條 帝國議會는 每年 召集된다.
- 第42條 帝國議會는 3個月을 會期로 한다. 必要한 경우에는 勅命으로 이를 延長할 수 있다.
- 第43條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常會 이외에 臨時會를 召集할 수 있다.
臨時會의 會期를 定하는 것은 勅命에 의한다.
- 第44條 帝國議會의 開會, 閉會, 會期의 延長 및 停會는 兩院이 同時에 이를 하여야 한다.
衆議院 解散을 命받은 때에는 遺族院은 同時에 停會하여야 한다.
- 第45條 衆議院解散을 命받은 때에는 勅命으로 새로 議員을 選舉하게 하여 解散日로 부터 5個月 以內에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 第46條 兩議院은 각각 그 總議員의 3분의 1이상이 出席하지 않으면 開議하고 議決을 할 수 없다.
- 第47條 兩議院의 議事는 過半數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48條 兩議院의 會議는 公開한다. 단 政府의 要求 또는 그 院의 議決에 의하여 秘密會로 할 수 있다.

附 錄

- 第49條 兩議院은 각각 天皇에게 上奏할 수 있다.
- 第50條 兩議院은 臣民이 提出하는 請願書를 接受할 수 있다.
- 第51條 兩議院은 이 憲法 및 議院法에서 定하는 이외에 内部의 整理에 必要한 諸規則을 定할 수 있다.
- 第52條 兩議院의 議員은 議院에서 發言한 意見 및 表決에 대하여 院外에서 責任을 지지 않는다. 단 議員 스스로 그 言論을 演說, 刊行, 筆記 또는 기타의 方法으로 公布한 때에는 一般의 法律에 의하여 處分된다.
- 第53條 兩議院의 議員은 現行犯罪 또는 內亂, 外患에 관한 罪를 제외하고 會期中 그 院의 許諾없이 逮捕되지 않는다.
- 第54條 國務大臣 및 政府委員은 언제라도 各議院에 出席하고 發言할 수 있다.

第4章 國務大臣 및 樞密顧問

- 第55條 國務各大臣은 天皇을 輔弼하며 그 責任을 진다.
무릇 法律, 勅令 기타 國務에 관한 詔勅은 國務大臣의 副署를 要한다.
- 第56條 樞密顧問은 樞密院官制가 定하는 바에 따라 天皇의 諮詢에 應하여 重要한 國務를 審議한다.

第5章 司法

- 第57條 司法權은 天皇의 이름으로 法律에 따라 裁判所가 行한다.
裁判所의 構成은 法律로 定한다.
- 第58條 裁判官은 法律에 定하는 資格을 갖춘 者를 任命한다.
裁判官은 刑法의 宣告 또는 懲戒의 處分에 의하는 외에는 罷免되지 않는다.
懲戒의 條規는 法律로 定한다.
- 第59條 裁判의 對審, 判決은 公開한다. 단 安寧秩序 또는 風俗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法律에 따라 또는 裁判所의 決議에 의하여 對審의 公開를 停止할 수 있다.
- 第60條 特別裁判所의 管轄에 속하는 事項은 別도의 法律로 定한다.
- 第61條 行政官廳의 違法處分에 의한 權利侵害에 관한 訴訟으로서, 別도로 法律로 定한 行政裁判所의 裁判에 속하는 것은 司法裁判所에서 受理할 수 없다.

第6章 會計

- 第62條 새로운 租稅의 賦課와 稅率의 變更은 法律로 이를 定하여야 한다. 단 報償에 속하는 行政上의 手數料 및 기타의 收納金은 그렇지 않다.

- 國債의 起債와 豫算에서 定하는 것을 제외한 國庫의 負擔이 될 契約의 締結은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쳐야 한다.
- 第63條 現行의 租稅는 새로 法律로 이를 改正하지 않는 한은 既存의 法律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第64條 國家의 歲出歲入은 每年 豫算으로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쳐야 한다.
豫算의 款項을 超過하거나 豫算 外에 생긴 支出이 있을 때에는 나중에 帝國議會의 承諾을 求할 것을 要한다.
- 第65條 豫算은 미리 衆議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66條 皇室經費는 現在의 定額에 따라 每年 國庫로부터 이를 支出하며 將來 增額을 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帝國議會의 協贊을 要하지 않는다.
- 第67條 憲法上의 大權에 基礎한 既定의 歲出 및 法律의 結果에 의하여 또는 法律上 政府의 義務에 속하는 歲出은 政府의 同意없이 帝國議會가 이를 廢除하거나 削減할 수 없다.
- 第68條 特別한 須要가 있을 경우 政府는 미리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帝國議會의 協贊을 要求할 수 있다.
- 第69條 피할 수 없는 豫算의 不足을 補充하기 위하여 또는 豫算 外에 생긴 必要經費에 充當하기 위하여 豫備費를 들 수 있다.
- 第70條 公共의 安全을 保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需用이 있는 경우, 政府는 內外의 定形으로 인하여 帝國議會를 召集할 수 없을 때에는 勅令으로 財政上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前項의 경우에는 다음 會期에 帝國議會에 提出하여 그 承諾을 求할 것을 要한다.
- 第71條 帝國議會에서 豫算을 議定하지 않거나 또는 豫算成立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前年度의 豫算을 施行할 수 있다.
- 第72條 國家의 歲出歲入의 決算은 會計檢査院이 檢査確定하며, 政府는 그 檢査報告와 함께 이를 帝國議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會計檢査院의 組織과 職權은 法律로 定한다.

第7章 補則

- 第73條 將來 이 憲法의 條項을 改正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勅令으로 議案을 帝國議會의 審議에 붙여야 한다.
그 경우에 兩議院은 각각 그 總員의 3분의 2 이상이 出席하지 않으면 開議할 수 없다.
出席議員 3분의 2이상의 多數를 얻지 못하면 改正의 議決을 할 수 없다.
- 第74條 皇室典範의 改正은 帝國議會의 審議를 거칠 것을 要하지 않는다.
皇室典範으로 이 憲法의 條規를 變更할 수 없다.
- 第75條 憲法 및 皇室典範은 攝政을 두는 동안은 變更할 수 없다.
- 第76條 法律, 規則, 命令 또는 어떠한 名稱을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이 憲法에 矛盾되지

않는 現行의 法令은 모두 遵由의 效力을 가진다.

歲出上 政府의 義務에 관한 現在의 契約 또는 命令은 모두 第67條의 例에 따른다.*

2. 法 例(明治 31年 6月 法律 第10號)

朕은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친 法例를 裁可하여 公布한다.

法例는 別冊과 같이 정한다.

이 法律의 施行期日은 勅令으로 정한다.

明治 23年 法律 第97號 法例는 이 法律의 發布日부터 廢止한다.

(別冊)

法 例

第1條 法律은 公布日부터 起算하여 滿20日이 經過한 때에 施行한다. 단 法律로 다른 施行時期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臺灣, 홋카이도오(北海道), 오키나와(沖繩)縣 기타 섬地方에 대해서는 勅令으로 특별한 施行時期을 정할 수 있다.

第2條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에 反하지 않는 慣習은 法令의 規定에 의해 인정된 것 및 法令에 規定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한하여 法律과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

第3條 사람의 能力은 그 本國法에 의해 정한다.

外國人이 日本에서 法律行爲를 한 경우에, 그 外國人이 本國法에 의하면 無能力者라도 日本의 法律에 의하면 能力者인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관계없이 能力者로 看做한다.

前項의 規定은 親族法 또는 相續法의 規定에 의해야 할 法律行爲 및 外國에 있는 不動産에 관한 法律行爲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告文은 천황이 헌법제정의 사실을 그 조상들에게 고평하는 일종의 祭文이며, 憲法發布勅語는 천황이 헌법제정의 사실을 臣民들에게 선평하는 담화문의 일종이다. 이 양자는 헌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단 이 해석은 반드시 모든 학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에 비해 上諭는 憲法 前文에 해당하는 것으로 大日本帝國憲法이라는 명칭이 붙은 부분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일본의 公式令 제3조 참조).

* 金昌祿, 「日本에서의 西洋 憲法思想의 受容에 관한 研究 : '大日本帝國憲法'의 制定에서 '日本國憲法'의 "출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4, <부록 1>에서 인용.

- 第4條 禁治産의 原因은 禁治産者의 本國法에 의하고, 그 宣告의 效力은 宣告를 한 國家의 法律에 의한다.
日本에 住所 또는 居所가 있는 外國人에 대해 그 本國法에 의해 禁治産의 原因이 있는 때에는 裁判所는 그 者에 대해 禁治産의 宣告를 할 수 있다. 단 日本의 法律이 그 原因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5條 前條의 規定은 準禁治産의 경우에 準用한다.
- 第6條 外國人의 生死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裁判所는 日本에 있는 財産 및 日本의 法律에 의해야 할 法律關係에 대해서만 日本의 法律에 의해 失蹤의 宣告를 할 수 있다.
- 第7條 法律行爲의 成立 및 效力에 대해서는 當事者의 意思에 따라 어느 國家의 法律에 의해야 할 것인가를 정한다.
當事者의 意思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行爲地法에 의한다.
- 第8條 法律行爲의 方式은 그 行爲의 效力을 정하는 法律에 의한다.
行爲地法에 의한 方式은 前項의 規定에 상관없이 有效하다고 본다. 단 物權 기타 登記해야 할 權利를 設定하거나 處分하는 法律行爲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9條 法律을 달리하는 곳에 있는 者에 대해 행한 意思表示에 대해서는 그 通知를 발한 곳을 行爲地로 看做한다.
契約의 成立 및 效力에 대해서는 請約의 通知를 발한 곳을 行爲地로 看做한다. 만일 그 請約을 받은 者가 承諾을 한 당시에 請約의 發信地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請約者의 住所地를 行爲地로 看做한다.
- 第10條 動産 및 不動産에 관한 物權 기타 登記해야 할 權利는 그 目的物의 所在地法에 의한다.
前項의 權利의 得喪은 그 原因事實이 완성된 당시의 目的物의 所在地法에 의한다.
- 第11條 事務管理, 不當利得 또는 不法行爲에 의해 발생하는 債權의 成立 및 效力은 그 原因事實이 발생한 곳의 法律에 의한다.
前項의 規定은 不法行爲에 대해서는 外國에서 발생한 사실이 日本의 法律에 의하면 不法이 아닐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外國에서 발생한 사실이 日本의 法律에 의해 不法일 때도 被害者는 日本의 法律이 인정한 損害賠償 기타의 處分이 아니면 請求할 수 없다.
- 第12條 債權讓渡의 第3者에 대한 效力은 債務者의 住所地法에 의한다.
- 第13條 婚姻成立의 要件은 各當事者에 대해 그 本國法에 의해 정한다. 단 그 方式은 婚姻舉行地의 法律에 의한다.
前項의 規定은 民法 第777條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第14條 婚姻의 效力은 夫의 本國法에 의한다.
外國人이 女戶主와 入夫婚姻을 하거나 日本人의 婿養子가 된 경우에는 婚姻의 效力은 日本의 法律에 의한다.

附 錄

- 第15條 夫婦財産制는 婚姻 당시의 夫의 本國法에 의한다.
外國인이 女戶主와 入父婚姻을 하거나 日本人이 壻養子가 된 경우에는 夫婦財産制는 日本의 法律에 의한다.
- 第16條 離婚은 그 原因事實이 발생한 때의 夫의 本國法에 의한다. 단 裁判所는 그 原因事實이 日本의 法律에 의해서도 離婚의 原因인 경우가 아니면 離婚의 宣告를 할 수 없다.
- 第17條 子の 嫡出 여부는 그 出生 당시 母의 夫가 속하는 國家의 法律에 의해 정한다. 만일 그 夫가 子の 出産前에 死亡한 때에는 그 최후에 속한 國家의 法律에 의해 정한다.
- 第18條 私生子 認知의 要件은 그 父 또는 母에 관해서는 認知 당시 父 또는 母가 속하는 國家의 法律에 의해 정하고, 그 子에 관해서는 認知 당시 子가 속하는 國家의 法律에 의해 정한다.
認知的 效力은 父 또는 母의 本國法에 의한다.
- 第19條 入養의 要件은 각 當事者에 대해 그 本國法에 의해 정한다.
入養의 效力 및 罷養은 養親의 本國法에 의한다.
- 第20條 親子間의 法律關係는 父의 本國法에 의한다. 만일 父가 없을 때에는 母의 本國法에 의한다.
- 第21條 扶養의 義務는 扶養義務者의 本國法에 의해 정한다.
- 第22條 前9條에 열거한 이외의 親族關係 및 그것에 의해 발생하는 權利義務는 當事者의 本國法에 의해 정한다.
- 第23條 後見은 被後見人의 本國法에 의한다.
日本에 住所 또는 居所가 있는 外國人의 後見은, 그 本國法에 의해 後見開始의 原因은 있으나 後見의 事務를 行할 者가 없을 때 및 日本에서 禁治産의 宣告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日本의 法律에 의한다.
- 第24條 前條의 規定은 保佐에 準用한다.
- 第25條 相續은 被相續人의 本國法에 의한다.
- 第26條 遺言의 成立 및 效力은 그 成立 당시의 遺言者의 本國法에 의한다.
遺言의 取消는 그 당시의 遺言者의 本國法에 의한다.
前2項의 規定은 遺言의 方式에 대해 行爲地法에 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 第27條 當事者의 本國法에 의해야 할 경우에 그 當事者가 2개 이상의 國籍을 가질 때에는 최후에 取得한 國籍에 의해 그 本國法을 정한다. 단 그 1개가 日本의 國籍인 때에는 日本의 法律에 의한다.
國籍을 가지지 않는 者에 대해서는 그 住所地法을 本國法으로 看做한다. 그 住所를 모를 때에는 그 居所地法에 의한다.
地方에 따라 法律이 다른 國家의 人民에 대해서는 그 者가 속하는 地方의 法律에 의한다.
- 第28條 當事者의 住所地法에 의해야 할 경우에 그 住所를 모를 때에는 그 居所地法에 의한다.
前條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當事者의 住所地法에 의해야 할 경우에 準用한다.

第29條 當事者の本國法에 의해야 할 경우, 그 國家의 法律에 따라 日本의 法律에 의해야 할 경우에는 日本의 法律에 의한다.

第30條 外國法에 의해야 할 경우에 그 規定이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에 反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公文式(明治 19年 2月 26日 勅令 第1號)

朕은 法律 命令의 格式을 制定할 필요를 인정하여 이에 公文式을 裁可하여 公布한다.

公文式

第一 法律 命令

第1條 法律 勅令은 上諭로써 이를 公布한다.

法律이 元老院의 協議를 거쳐야 하는 것은 舊例에 의한다.

第2條 法律 勅令은 內閣이 起草하거나 또는 各省大臣이 案을 갖추어 內閣에 提出하며 모두 內閣總理大臣이 上奏하여 裁可를 請한다.

第3條 法律 및 一般行政에 관한 勅令은 親署한 후에 御璽를 찍고 內閣總理大臣은 年月日을 記入하고 主任大臣과 함께 副署한다. 各省의 專任事務에 속하는 것은 主任大臣이 年月日을 記入하고 이에 副署한다.(明治 22年 勅令 第139號 全面改正)

第4條 內閣總理大臣 및 各省大臣은 法律 勅令의 範圍內에서 그 職權 또는 特別委任에 의하여 法律 勅令을 施行하거나 또는 安寧秩序를 保持하기 위하여 閣令 또는 省令을 發할 수 있다.

第5條 閣令은 內閣總理大臣이 이를 발하고 省令은 各省大臣이 이를 발한다.

第6條 閣令은 年月日을 記入하여 內閣總理大臣이 이에 署名한다.

第7條 省令은 年月日을 記入하여 主任大臣이 이에 署名한다.

第8條 各 官廳 一般에 관한 規則은 內閣總理大臣이 이를 정하고 各廳處務細則은 主任大臣이 이를 정한다.

第9條 內閣總理大臣 및 各省大臣의 所屬官吏 및 그 監督에 속하는 官吏에게 達하는 訓令도 역시 第6條 第7條의 예에 의한다.

第二 布告

第10條 무릇 法律 命令은 官報로써 公布하며, 官報의 各府縣廳 到達日數에 7일을 더하여 施

附 錄

行期限으로 한다. 단 官報到達日數는 明治 16年 5月 26日 第14號 布達에 의한다.

第11條 天災時變에 의해 官報到達日數內에 到達하지 않으면 그 到達日의 翌日부터 起算한다.

第12條 홋카이도오(北海島) 및 오키나와(沖繩)縣은 官報到達日數를 정하지 않고 실제로 道廳 또는 縣廳에 到達한 翌日부터 起算한다.

島地는 所轄郡役所에 官報가 到達한 翌日부터 起算한다.

第13條 法律 命令의 發布當日부터 施行하여야 하거나 또는 특히 施行日을 掲載한 것은 第10條, 第11條, 第12條의 예에 의하지 않는다.

第三 印 璽

第14條 國璽 御璽는 內大臣이 이를 항상 保管한다.

國璽 御璽는 親署한 후에 內大臣이 이를 찍는다.

第15條 法律 勅令은 親署한 후에 御璽를 찍는다.

第16條 國書 條約比准 外國派遣官吏 委任狀 在留各國領事認證狀 및 三等 이상 勳章의 勳記는 親署후에 國璽를 찍는다.

四等 이하 勳章의 勳記는 國璽를 찍는다.

第17條 勅任官의 任命은 그 辭令書에 御璽를 찍고 奏任官의 任命은 그 奏薦書에 御璽를 찍는다.

4. 公式令(明治 40年 2月 勅令 第6號)

朕은 樞密顧問의 諮詢을 거쳐 公式令을 裁可하여 公布한다.

公式令

第1條 皇室의 大事의 宣誥 및 大權의 施行에 관한 勅旨의 宣誥는 별단의 형식에 의하는 것을 除外하고 詔書로써 한다.

詔書에는 親署한 후 御璽를 찍고, 皇室의 大事에 관한 것에는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記入하고 內閣總理大臣과 함께 副署하며, 大權의 施行에 관한 것에는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記入하고 副署하거나 다른 國務各大臣과 함께 副署한다.

第2條 文書로 발하는 勅旨로서 宣誥하지 않는 것은 別단의 형식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勅書로써 한다.

勅書에는 親書한 후 御璽를 찍고, 皇室의 事務에 관한 것에는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記入하고 副署하며, 國務大臣의 職務에 관한 것에는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記入하고

副署한다.

第3條 帝國憲法の改正은 上諭를 붙여 公布한다.

前項의 上諭에는 樞密顧問의 諮詢 및 帝國憲法 第73條에 의한 帝國議會의 議決을 거쳤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親書한 후 御璽를 찍고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다른 國務各大臣과 함께 副署한다.

第4條 皇室典範의改正은 上諭를 붙여 公布한다.

前項의 上諭에는 皇族會議 및 樞密顧問의 諮詢을 거쳤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親書한 후 御璽를 찍고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國務各大臣과 함께 副署한다.

第5條 皇室典範에 기초한 諸規則, 宮內官制 기타 皇室의 事務에 관해 勅定을 거친 規程으로서 발표를 요하는 것을 皇室令이라고 하며, 上諭를 붙여 公布한다.

前項의 上諭에는 親書한 후 御璽를 찍고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副署한다. 國務大臣의 職務에 관련된 皇室令의 上諭에는 內閣總理大臣 또는 內閣總理大臣 및 主任 國務大臣이 함께 副署한다.

皇族會議 및 樞密顧問 또는 그 일방의 諮詢을 거친 皇室令의 上諭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第6條 法律은 上諭를 붙여 公布한다.

前項의 上諭에는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쳤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親書한 후 御璽를 찍고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副署하거나, 다른 國務各大臣 또는 主任 國務大臣과 함께 副署한다.

樞密顧問의 諮詢을 거친 法律의 上諭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第7條 勅令은 上諭를 붙여 公布한다.

前項의 上諭에는 親書한 후 御璽를 찍고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副署하거나, 다른 國務各大臣 또는 主任 國務大臣과 함께 副署한다.

樞密顧問의 諮詢을 거친 勅令 및 貴族院의 諮詢 또는 議決을 거친 勅令의 上諭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帝國憲法 第8條 第1項 또는 第70條 第1項에 의해 발하는 勅令의 上諭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帝國議會에서 帝國憲法 第8條 第1項의 勅令을 承諾하지 않는 경우 그 效力을 상실한다는 것을 公布하는 勅令의 上諭에는 同條 第2項에 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第8條 國際條約을 발표할 때에는 上諭를 붙여 公布한다.

前項의 上諭에는 樞密顧問의 諮詢을 거쳤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親書한 후 御璽를 찍고,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主任 國務大臣과 함께 副署한다.

第9條 豫算 및 豫算外 國庫의 부담이 될 契約을 하는 件은 上諭를 붙여 公布한다.

前項의 上諭에는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쳤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親書한 후 御璽를 찍고,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主任 國務大臣과 함께 副署한다.

第10條 閣令에는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署名한다.

附 錄

- 省令에는 各省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署名한다.
宮內省令에는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署名한다.
- 第11條 皇室令, 勅令, 閣令 및 省令은 별단의 施行時期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公布日부터 起算하여 滿20日이 경과한 때에 施行한다.
- 第12條 前數個條의 公文의 公布는 官報로써 한다.
- 第13條 國書 기타 外交上의 親書, 條約批准書, 全權委任狀, 外國派遣官吏委任狀, 名譽領事委任狀 및 外國領事認可狀에는 親書한 후 國璽를 찍고 主任 國務大臣이 副署한다. 外務大臣에게 수여하는 全權委任狀에는 內閣總理大臣이 副署한다.
- 第14條 親任式으로써 任命하는 官의 官記에는 親書한 후 御璽를 찍고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副署한다. 宮內官에 대해서는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副署한다. 內閣總理大臣을 임명하는 官記에는 다른 國務大臣이 또는 內大臣이, 宮內大臣을 임명하는 官記에는 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副署한다.
前2項에 의하는 것 외에 勅任官의 官記에는 御璽를 찍고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奉行한다. 宮內官에 대해서는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奉行한다.
奏任官의 官記에는 內閣의 印을 찍고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宣布한다. 宮內官에 대해서는 宮內省의 印을 찍고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宣布한다.
- 第15條 親任式으로써 임명한 官을 免하는 辭令書에는 御璽를 찍고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奉行한다. 宮內官에 대해서는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奉行한다. 內閣總理大臣을 免하는 辭令書에는 다른 國務大臣 또는 內大臣, 宮內大臣을 면하는 辭令書에는 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奉行한다.
前2項에 의하는 것 외에 勅任官을 免하는 辭令書에는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奉行한다. 宮內官에 대해서는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奉行한다.
奏任官을 면하는 辭令書에는 內閣總理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宣布한다. 宮內官에 대해서는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宣布한다.
- 第16條 爵記에는 親書한 후 御璽를 찍고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副署한다.
- 第17條 1位の 位記에는 親書한 후 御璽를 찍고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고 副署한다.
2位 이하 4位 이상의 位記에는 御璽를 찍고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奉行한다.
5位 이하의 位記에는 宮內省의 印을 찍고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宣布한다.
- 第18條 爵位の 返納을 命하거나 允許하는 辭令書에는 宮內大臣이 年月日을 기입하여 奉行한다.
- 第19條 勳3等 功5級 이상의 勳記에는 親書한 후 國璽를 찍고, 勳4等 功6級 이하의 勳記에는 國璽를 찍고 內閣總理大臣이 취지를 奉行하고, 賞勳局總裁로 하여금 年月日을 기입하고 署名하게 한다.
勳記에는 勳章의 種別에 따라 號數를 붙이고 簿冊에 기입한다는 취지를 附記하고, 賞勳局의 印을 찍고 賞勳局書記官이 署名한다.

第20條 記章의 證狀, 外國勳章 및 記章의 佩用免許의 證狀에는 內閣總理大臣이 취지를 奉行하고, 賞勳局總裁로 하여금 年月日을 기입하고 賞勳局의 印을 찍고 署名하게 한다. 證章에는 그 種별에 따라 號數를 붙이고 簿冊을 기입한다는 취지를 附記하고 賞勳局의 印을 찍고 賞勳局書記官이 署名한다.

第21條 勳章 및 記章, 外國勳章 및 記章의 佩用免許의 證章을 奪하는 辭令書에는 內閣總理大臣이 취지를 奉行하고 賞勳局總裁로 하여금 年月日을 기입하고 署名하게 한다.

附則

本令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公文式은 廢止한다.

5. 領事官職務에 관한 件(明治 32年 3月 法律 第70號)

朕은 帝國議會의 協贊을 거친 領事官의 職務에 관한 法律을 裁可하여 公布한다.

第1條 條約에서 특히 領事官의 權限에 속하게 한 사항에 관해서는 法律에 저촉되지 않는 範圍에서 命令으로 制限을 둘 수 있다.

第2條 條約에서 領事官의 職務에 관해 法律의 規定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 法律의 規定이 없는 때에는 命令으로 필요한 規定을 둘 수 있다.

第3條 領事官 기타 本法에 의해 職務를 행하는 者는 法令 및 條約의 規定에 따라 그 職務를 행해야 한다. 단 國際法에 기초하는 慣例 또는 駐在地의 특별한 慣例에 따를 수 있다. 前項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命令으로 특별한 規定을 둘 수 있다.

第4條 外國에서의 施行期日을 정하지 않은 法律에 대해서는 命令으로 그 施行期日을 정할 수 있다.

第5條 領事官의 職務에 관한 管轄區域은 命令으로 정한다.

第6條 條約 또는 慣例에 의해 領事裁判權을 행사할 수 있는 領事官은 第7條 내지 第17條의 規定에 따라 訴訟事件 및 非訟事件에 관한 事務 및 登記事務를 행한다.

第7條 前條의 事務에 관해 領事官은 法令, 條約 및 慣例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地方裁判所 및 區裁判所의 職務를 행한다.

第8條 領事官은 重罪의 公判을 할 수 없다.

輕罪의 裁判에 대해서는 豫審을 하지 않는다.

第9條 領事官이 豫審을 한 重罪의 公判은 나가사키(長崎)地方裁判所가 管轄한다.

第10條 領事官의 管轄에 속하는 刑事에 관해 國交上 必要가 있을 때에는, 外務大臣은 그 사

건을 管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領事官에 명하고, 被告人을 內國의 監獄에 移送하게 할 수 있다.

前項의 경우에 司法大臣은, 그 사건이 地方裁判所의 權限에 속할 때에는 나가사키控訴院 檢事로 하여금 裁判管轄 指定의 申請을 그 控訴院에 하게 하고, 그 사건이 區裁判所의 權限에 속할 때에는 나가사키地方裁判所 檢事로 하여금 裁判 管轄 指定의 申請을 그 地方裁判所에 하게 해야 한다.

第11條 前條의 申請 및 裁判에 관해서는 刑事訴訟法 第3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2條 地方裁判所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領事官이 행한 裁判에 대한 控訴 또는 抗告는 나가사키控訴院이 管轄한다.

區裁判所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領事官이 행한 裁判에 대한 控訴 또는 抗告는 나가사키地方裁判所가 管轄한다.

第13條 領事官은 領事館員 또는 警察官으로 하여금 檢事 또는 裁判所書記의 職務를 행하게 해야 한다.

裁判所書記의 職務를 행하게 할 前項의 官吏가 없을 때에는, 領事官은 그 管轄區域 내에 在留하는 帝國臣民 중에서 선임하여 임시로 그 職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第14條 領事官은 領事館員 또는 警察官吏로 하여금 執達吏의 職務를 행하게 해야 한다.

前項의 職務를 행하는 者는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임시로 그 職務의 執行을 委任할 수 있다.

第15條 法令의 規定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訴訟代理人 또는 辯護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領事官의 許可를 받을 것을 요한다.

第16條 通常裁判所に 있어서의 忌避 또는 回避에 관한 規定은 領事官 기타 本法에 의해 職務를 행하는 者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第17條 第13條 및 第14條에 열거한 職務를 행할 者가 없을 때에는, 外務大臣은 同一國內의 다른 領事館官吏를 파견하여 그 職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第18條 領事館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한하여, 命令의 規定으로 本法 기타의 法律 중 領事官이 취급해야 할 사항은 領事官이 아닌 者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第19條 本法 기타의 法律 중 단지 領事 또는 領事官이라고 칭하는 것은 名譽領事가 아닌 領事 및 그 代理를 말한다.

第20條 本法의 施行을 위해 필요한 規定은 命令으로 정한다.

第21條 淸國 및 朝鮮國駐在領事裁判規則은 本法 施行일부터 廢止한다.

6. 領事官職務規則(明治 33年 4月 勅令 第153號)

朕은 樞密顧問의 諮詢을 거쳐 領事官職務規則을 裁可하여 公布한다.

領事官職務規則

- 第1條 領事官은 外務大臣의 指揮監督 및 그 駐在國에 있는 帝國公使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外務大臣이 特정의 사항에 관해 領事官을 指揮하는 것을 그 駐在國에 있는 帝國公使에게 명한 때에는 領事官은 당해 사항에 관해 帝國公使의 指揮를 받아야 한다.
- 第2條 領事官은 駐在國에서 日本臣民을 保護하고 帝國의 通商航海에 관한 利益을 維持增進해야 한다.
- 第3條 領事官은 駐在國이 條約 또는 國際法에 의해 帝國에 대해 부담하는 義務의 遵守를 視察하고, 日本臣民의 이익 또는 帝國의 通商航海에 관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駐在國의 官廳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第4條 領事官은 그 駐在國에 있는 帝國軍艦에 대해 필요한 援助를 해야 한다.
- 第5條 領事官은 그 管轄區域 내에 있는 日本臣民의 救助 또는 團束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領事官은 구조 또는 단속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日本臣民의 送還을 日本船舶의 船長에게 명할 수 있다.
- 第6條 領事官은 그 管轄區域 내에서 日本臣民의 財産 또는 遺産의 保護管理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第7條 領事官은 그 管轄 구역내에 있는 日本臣民의 名簿를 구비하고, 居住 및 身分에 관한 申告를 受理하고, 申告 또는 기타의 사실에 의해 確知한 日本臣民의 居住 및 身分에 관한 사항을 당해 名簿에 登錄해야 한다.
- 第8條 領事官은 그 駐在國에 있는 日本船舶 및 그 船員에 대해 필요한 보호 및 단속을 해야 한다.
- 第9條 領事官은 帝國軍艦 기타 日本船舶의 乘務員이 脫船한 때에는 艦長 또는 船長의 請求에 의해 脫船者를 服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第10條 領事官은 그 駐在國의 官廳 또는 公署가 발한 文書의 眞正을 증명할 수 있다.
- 第11條 領事官은 日本臣民 또는 外國人의 申請에 의해 그 職務上 취급해야 할 사항 및 職務를 행할 때 알 수 있었던 사실의 認證을 할 수 있다.
- 第12條 領事官은 日本臣民에게 旅券을 부여하거나 그 旅券을 査證할 수 있다.
領事官은 日本을 여행하고자 하는 外國人의 신청에 의해 그 旅券을 査證할 수 있다.
- 第13條 領事官은 그 管轄區域 내에서 日本臣民 또는 外國人의 신청에 의해 日本臣民 또는 日本에 있는 土地에 관한 法律行爲에 대해 公證을 할 수 있다.
- 第14條 領事官은 日本臣民 상호간 또는 日本臣民 및 外國人 사이에 발생한 民事上의 紛爭에 관해 和解를 하게 하거나 仲裁를 할 수 있다.
- 第15條 條約 또는 慣例에 의해 領事裁判權을 행할 수 있는 領事官은 그 所管事務에 대해 命令

을 발할 수 있다.

領事官이 발하는 命令에는 10원 이내의 罰金 또는 拘留의 罰則을 附加할 수 있다.

領事官이 발하는 命令의 公布에 관한 規定은 領事官이 정한다.

第16條 外務大臣은 領事官이 발한 命令이 條約 또는 法令에 違反되거나 公益에 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取消을 명할 수 있다.

領事官의 駐在國에 있는 帝國公使는 領事官이 발한 命令이 條約 또는 法令에 違反되거나 公益에 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施行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外務大臣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前項의 施行停止는 3個月을 경과한 때에는 그 效力을 상실한다.

第17條 領事官은 그 職務上 필요한 때에는 帝國軍艦에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第18條 領事官은 그 職務上의 사항에 대해 外務大臣에게 보고해야 한다.

第19條 領事官은 미리 外務大臣의 인가를 얻은 경우 외에 帝國의 다른 官廳 또는 公署와 직접 통신할 수 없다.

第20條 領事官이 徵收하는 手數料 및 出張費用에 관한 規程 外務大臣이 정한다.

第21條 名譽領事 外務大臣 및 貿易事務官은 外務大臣의 訓令에 기초하고, 本令 기타 領事官의 職務에 관한 法令 및 條約의 規定에 준거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第22條 本令의 施行期日은 外務大臣이 정한다.

第23條 日本帝國領事規則 및 明治 23年 勅令 第258號는 廢止한다.

7. 憲兵條例(明治 40年 勅令 第322號)

朕은 憲兵條例의 改正을 裁可하여 公布한다.

憲兵條例

第1章 總 則

第1條 憲兵은 陸軍大臣의 管轄에 속하며, 주로 軍事警察을 管掌하고, 아울러 行政警察, 司法警察을 管掌한다.

第2條 憲兵은 그 職務의 執行에 대해, 軍事警察에 관한 것은 陸軍大臣 및 海軍大臣, 行政警察에 관한 것은 內務大臣, 司法警察에 관한 것은 司法大臣의 指揮를 받는다. 臺灣 및 南滿洲에서의 軍事警察, 行政警察, 司法警察에 관한 것은 臺灣總督 또는 關東都督의 指揮를 받는다.

第3條 憲兵은 行政警察, 司法警察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警視總監, 北海島廳長官, 府縣知事(토오쿄오(東京)府知使 제외), 檢事, 臺灣總督府廳長, 同法院檢察官, 關東都督府民政署長 및 同法院檢察官의 지시를 받는다.

憲兵은 要塞地帶에 관한 法令의 施行에 대해서는 要塞司令官 또는 그 職務를 행하는 官廳, 軍港要港規則 및 旅順港規則의 施行에 대해서는 鎮守府司令長官 또는 要塞部司令官 또는 鎮守府司令長官 또는 要港府司令官의 職務를 행하는 官廳의 指示를 받는다.

憲兵은 地方守備에 관한 軍事警察에 대해서는 臺灣에서는 臺灣守備隊司令官(司令官이 없는 곳에서는 守備隊將), 南滿洲에서는 師團長(師團長이 없는 곳에서는 그 地方 駐劄 軍隊長)의 지시를 받는다.

第4條 憲兵은 그 職務에 관해 正當한 職權을 가지는 者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第5條 憲兵은 아래에 기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兵器를 사용할 수 없다.

1. 暴行을 받은 때.
2. 그 占守하는 土地 또는 委託받은 場所 또는 사람을 防衛하는 데 兵力을 사용하는 외에 달리 手段이 없을 때, 또는 兵力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抗抵에 이길 수 없을 때.

第2章 配置職員

第6條 토오쿄오에 憲兵司令部를 두고 各憲兵隊管區에 한 개의 憲兵隊를 배치한다.
憲兵隊管區는 別표에 의한다.

第7條 各憲兵隊 本部는 師團司令部 所在地에 둔다.

各憲兵隊는 分隊로 나눈다. 그 配置 및 管轄은 陸軍大臣이 정한다.

臺灣 및 南滿洲에서의 憲兵隊本부의 位置, 分配 및 管區는 臺灣總督, 關東都督이 정한다.

第8條 (삭 제)

第9條 (삭 제)

第10條 憲兵司令部에 아래의 직원을 둔다.

憲兵司令官

憲兵副官

憲兵下士

憲兵隊에 아래의 職員을 둔다.

憲兵隊長

憲兵隊副官

憲兵分隊長

憲兵隊附士官

憲兵准士官, 下士, 上等兵

附 錄

憲兵司令部 및 憲兵隊에는 經理部, 衛生部 및 獸醫部士官, 準士官, 下士, 判任文官 및 蹄鐵工長을 둘 수 있다.

第11條 (삭 제)

第12條 陸軍大臣, 臺灣總督 및 關東都督은 필요할 때 일시 憲兵隊의 일부를 그 管區 밖에 派遣할 수 있다.

第13條 (삭 제)

第14條 憲兵司令官은 各憲兵隊를 統轄하고 司令部의 事務를 總理한다.

第15條 憲兵司令官은 憲兵隊의 軍紀, 風紀, 訓練, 教育 및 職務服行의 정도를 檢閲해야 한다.

第16條 憲兵隊長은 各分隊를 統轄하고 그 근무방법을 지정하며 隊의 事務를 총리한다.

第16條의2 憲兵副官은 司令官, 憲兵隊副官은 隊長의 명을 받아 各部內의 事務에 복무한다.

第17條 憲兵分隊長은 部下를 指揮監督하고, 그 근무의 방법을 지정하며, 分隊의 事務를 處理한다.

第18條 憲兵隊副士官은 隊長의 명을 받아 근무에 服務한다.

第19條 (삭 제)

第20條 憲兵의 服務에 관한 規定은 各主管大臣이 정한다. 단 臺灣에서는 臺灣總督, 南滿洲에서는 關東都督이 정한다.

부 칙

第21條 當分간 憲兵隊長, 副官, 分隊長, 隊附士官, 憲兵準士官 이하는 豫備役, 後備役인 者로 充원할 수 있다. 그 身分取扱은 召集中인 者와 같다.

第22條 (삭 제)

第23條 本令은 明治 31年 12月 1일부터 施行한다.

(별표) 憲兵隊 管區表

韓國駐劄憲兵隊管區

韓 國

8. 拓殖局官制(明治 43年 6月 勅令 第279號)

朕은 樞密顧問의 諮詢을 거쳐 拓殖局官制를 裁可하여 公布한다.

拓殖局官制

第1條 拓殖局은 內閣總理大臣에게 隸屬하여, 臺灣, 樺太 및 韓國에 관한 사항을 統理한다.

前項 이외에 拓殖局에서는 外交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關東州에 관한 사항을 統理한다.

第2條 拓殖局에 아래의 職員을 둔다.

總裁

副總裁 1인

部長 2인

書記官 專任 4인

秘書官 專任 1인

翻譯官 專任 2인

屬

通譯 專任 28인

第3條 總裁는 親任으로 한다. 內閣總理大臣의 監督을 받아 局의 일체의 事務를 總理한다.

第4條 總裁는 所部の 管리를 指揮監督하고 奏任官의 進退는 內閣總理大臣에게 具狀하고, 判任官 이하의 進退는 직접 행한다.

第5條 拓殖局에 總裁官房 외에 아래 2부를 둔다.

第一部

第二部

第6條 副總裁는 親任으로 한다. 總裁를 보좌하고 總裁가 사고가 있을 때 그 職務를 대리한다.

第7條 部長은 勅任으로 한다. 總裁의 命을 받아 部の 事務를 掌理한다.

第8條 書記官은 奏任으로 한다. 總裁의 命을 받아 事務를 分掌한다.

第9條 秘書官은 奏任으로 한다. 總裁의 命을 받아 機密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다.

第10條 翻譯官은 奏任으로 한다. 上관의 命을 받아 翻譯을 管掌한다.

第11條 屬은 判任으로 한다. 上관의 指揮를 받아 庶務에 종사한다.

通譯은 判任으로 한다. 上관의 指揮를 받아 翻譯에 종사한다.

부 칙

本令은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錄 Ⅲ. 舊韓國 條約 目錄

解 說

1. 1876년 開港 이후 1910년 韓日合邦까지의 條約은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에서 1964년, 1965년에 번역하여 原文과 함께 수록하였다.
2. 본 자료는 통감부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國會圖書館 立法調查局 편, 『舊韓末條約彙纂 상·중·하』, 1964~1965, <立法參考資料 18·26·27집>에 수록된 條約과 수록처를 수록한 것이다.
3. 體制는 一連番號, 調印日字, 條約名稱, 收錄處이다.
예) 1. [1876. 2. 26] 韓·日修好條規(丙子修好條約 江華條約) / 상-3

目 次

第一編 對日本關係條約 및 協定

- 第1章 政治에 關한 條約
- 第2章 通商·航海·電信 및 經濟에 關한 條約
- 第3章 租界에 關한 條約
- 第4章 旅行에 關한 條約
- 第5章 漁業에 關한 條約

第四編 對淸國關係條約

- 第1章 通商條約
- 第2章 租界에 關한 條約
- 第3章 電信에 關한 條約

第五編 鐵道·鑛山·森林에 關한 條約

第二編 韓國에 關한 日本과 第三國間의 條約 및 協定

第三編 歐美各國과의 修好通商航海條約

- 第1章 政治 및 通商에 關한 條約
- 第2章 租界에 關한 條約

第一編 對日本關係條約 및 協定

第1章 政治에 關한 條約

1. [1876. 2. 26] 韓·日修好條規(丙子修好條約 江華條約) / 상-3
2. [1876. 8. 24] 韓·日修好條規 附錄 / 상-17
3. [1882. 8. 30] 濟物浦條約 / 상-24
 - * [1882. 8. 30] 濟物浦條約 第3條 遭難者에 對한 要償約定 / 상-29
 - * [1882. 10. 27] 濟物浦條約 第4條 年賦支拂約定 / 상-29
 - * [1884. 11. 9] 濟物浦條約 第4條 賠償金의 一部償還에 關한 往復文書 / 상-30
4. [1882. 8. 30] 韓·日修好條規 續約 / 상-35
5. [1885. 1. 9] 漢城條約 및 附則 / 상-38
 - * [1885. 7. 18] 護衛兵派遣의 權利保留에 關한 往復文 / 상-44
6. [1894. 8. 20] 暫定合同條款 / 상-47
 - * [1894. 5. 7] 韓國出兵·內政改革 等에 關한 淸·日兩國政府間의 往復文 / 상-51
7. [1894. 8. 26] 韓·日兩國盟約(韓·日攻守同盟) / 상-62
8. [1904. 2. 23] 韓·日議定書 / 상-65
9. [1904. 8. 22] 韓·日外國人顧問僱聘에 關한 協定書(韓·日協約) / 상-70
 - * [1904. 10. 15] 韓國財政顧問 目賀田種太郎과 韓國政府代表者間의 僱聘協約要項 / 상-72
10. [1905. 11. 17] 韓·日協商條約(乙巳保護條約) / 상 74
 - * 日本政府가 韓·日協商條約을 英·美·佛·獨·奧·伊·白·丁·淸 各國政府에 通知함에 있어서 添附한 覺書 / 상-80
 - * [1906. 10. 15] 1906년 7월 6일의 第2回「제네바」條約에 對한 韓國의 地位에 關한 外交文書 / 상-81
11. [1907. 7. 24] 韓·日新協約(丁未7條約) / 상-87
12. [1907. 10. 29] 在韓國日本臣民에 對한 警察事務執行에 關한 協定書 / 상-90
13. [1909. 3. 15] 在韓國外國人民에 對한 警察事務에 關한 韓·日協定書 / 상-92
14. [1909. 7. 12] 己酉覺書(韓國의 司法及 監獄事務를 日本政府에 委託하는 覺書) / 상-93
15. [1910. 6. 24] 韓國警察權委託覺書 / 상-96
16. [1910. 8. 22] 韓·日併合條約 / 상-98
17. [1910. 8. 29] 韓日併合에 關한 宣言 / 상-104

第2章 通商·航海·電信 및 經濟에 關한 條約

1. [1876. 8. 24] 韓·日貿易規則(韓·日通商暫定協約) / 상-110

- * [1876. 8. 24] 韓·日貿易의 革弊와 關稅에 關한 趙寅熙·宮本小一間の 議定書 / 상-117
- * [1876. 8. 24] 韓·日漂民經費償還의 件에 關한 往復文 / 상-120
- * [1886. 9. 7] 韓·日漂民經費償還法改正의 件에 關한 往復文 / 상-121
- 2. [1877. 7. 3] 韓國漂流船取扱約定 / 상-128
 - * [1878. 5. 14] 韓國漂流船取扱補約에 關한 往復文 / 상-130
 - * [1887. 7. 1] 韓·日漂民船貨救撈費償還法協定에 關한 往復文 / 상-132
- 3. [1883. 7. 25] 韓·日通商章程 및 海關稅則 / 상-136
 - * [1883. 9. 27] 韓·日通商章程 및 海關稅則批准通知에 關한 往復文 / 상-175
- 4. [1883. 3. 3] 韓·日海底電線敷設條約 / 상-176
- 5. [1885. 12. 21] 韓·日海底電線敷設條款 續約 / 상-181
- 6. [1888. 9. 23] 辦理通聯萬國電報約定書 / 상-184
- 7. [1905. 4. 1] 通信管理協定書 / 상-186
- 8. [1905. 8. 13] 韓國沿海及 內河의 航行에 關한 約定書 / 상-192
- 9. [1908. 3. 20] 一時貸付金에 關한 契約 / 상-196
- 10. [1909. 7. 26] 韓國中央銀行에 關한 韓·日覺書 / 상-199

第3章 租界에 關한 條約

- 1. [1877. 1. 30] 釜山港租界條約 / 중-1
- 2. [1879. 8. 30] 元山津開港豫約 / 중-3
 - * [1879. 8. 30] 元山津開港豫約決定書翰 / 중-6
- 3. [1883. 9. 30] 仁川港日本租界條約 / 중-7
- 4. [1886. 1. 31] 絶影島地所借入約書 / 중-14
- 5. [1891. 1. 21] 月尾島地所借入約書 / 중-16
- 6. [1902. 5. 17] 馬山浦日本專管租界協定書 / 중-18
- 7. [1881. 8. 4] 元山津租界協定書 / 중-21
 - * [1899. 11. 13] 平壤開市에 關한 駐韓使臣의 宣言 / 중-23
 - * [1904. 2. 25] 義州開市에 關한 韓國外部大臣의 宣言 / 중-24
 - * [1904. 3. 23] 龍岩浦開市에 關한 韓國外部大臣의 宣言 / 중-25
 - * [1908. 1.] 咸鏡北道富寧郡清津開放에 關한 件 / 중-26
- 8. [1908. 3. 30] 清津土地管理에 關한 協定書 / 중-27
 - * [1908. 3.] 清津官有地賣下規則 / 중-29
- 9. [1897. 11. 26] 仁川日本居留地擴張에 關한 駐韓各國使臣會議 協定書 / 중-32
- 10. [1913. 4. 21 調印; 1914. 4. 1 實施] 在朝鮮各國居留地制度廢止에 關한 朝鮮總督府外事局長과 當該締約國領事官協議會議 議定書 / 중-35

附錄

11. [1914. 3. 27] 在朝鮮各國居留地廢止의 實施期日에 關한 外交文書 / 중-44

第4章 旅行에 關한 條約

1. [1883. 7. 25] 韓國間行里程協定約書 / 중-47
2. [1884. 11. 29] 韓國間行里程協定約書 附錄 / 중-52

第5章 漁業에 關한 條約

1. [1883. 7. 25] 約定한 韓國海岸에서 犯法한 日本國漁民取扱規則 / 중-54
2. [1889. 11. 12] 韓·日通漁章程 / 중-58
3. [1900. 2. 14] 捕鯨業에 關한 約定書 / 중-66
* [1900. 9. 15] 京畿道沿岸에서의 漁業에 關한 往復文 / 중-68
* [1904. 6. 4] 忠淸·黃海·平安道에서의 漁業에 關한 往復文 / 중-71
4. [1908. 10. 31] 漁業에 關한 協定 / 중-74
5. [1908. 11.] 漁業法 / 중-76
6. [1908. 11.] 漁業法 施行細則 / 중-82
7. [1929. 12. 10] 朝鮮漁業保護取締規則 / 중-91
* [1952. 1. 18] 大韓民國隣接海洋의 主權에 對한 大統領의 宣言 / 중-138

第二編 韓國에 關한 日本과 第三國間의 條約 및 協定

1. [1885. 4. 18] 淸·日天津條約 및 附屬公文 / 중-142
2. [1895. 5. 8] 淸·日講和條約 (馬關條約=下關係約) / 중-148
3. [1895. 4. 17] 淸·日講和條約 議定書 / 중-167
4. [1895. 4. 17] 淸·日講和條約 別約 / 중-170
5. [1896. 5. 14] 朝鮮問題에 關한 日·露覺書 / 중-173
6. [1896. 6. 9] 朝鮮問題에 關한 日·露莫府議定書 / 중-179
(1) 公開條款 / 중-180 (2) 秘密條款 / 중-181
7. [1898. 4. 25] 韓國問題에 關한 日·露議定書 / 중-186
8. [1896. 5. 22] 淸·露密約 / 중-191
9. [1902. 1. 30] 第1次 英·日同盟條約 / 중-195
10. [1902. 3. 12] 露·佛同盟宣言 및 露國의 附帶宣言 / 중-202
11. [1905. 8. 12] 第2次 英·日同盟條約 / 중-204
12. [1905. 7. 29] 美·日秘密協約(태프트·桂[가쓰라]協約) / 중-211

13. [1905. 9. 5] 日·露講和條約(포오쓰마스條約) / 중-215
 1905. 10. 14 批准 / 1905. 10. 15 日·露兩國批准通告 / 1905. 11. 25 워싱턴에서 批准書交換
 * [1905. 7. 16] 高宗皇帝의 密使가 美國大統領에게 提出한 請願書 / 중-241
14. [1907. 6. 10] 佛·日協約 및 宣言書 / 중-244
15. [1907. 7. 30] 第1次日·露協約 / 중-248
 (1) 公開協約 / 중-250 (2) 秘密協約 / 중-250 (3) 追加約款 / 중-252
16. [1910. 7. 4] 第2次日·露協約 / 중-256
 (1) 公開協約 / 중-257 (2) 秘密協約 / 중-258
17. [1909. 9. 4] 間島에 關한 淸·日協約 / 중-262
18. [1908. 5. 19] 韓國에서의 發明·意匠·商標 및 著作權保護에 關한 美·日條約 / 중-268
19. [1903. 3. 13] 韓國이 1864년 8월 22일의 「제네바」條約加入에 關한 瑞西 聯邦政府로부터 日本政府에 보내는 覺書 / 중-275
20. [1897. 7. 1] 韓國이 1891년 7월 4일의 萬國郵便聯合條約加入에 關한 瑞西聯邦政府로부터 英國政府에 보내는 覺書 / 중-278

第三編 歐美各國과의 修好通商航海條約

第1章 政治 및 通商에 關한 條約

1. [1882. 5. 22] 韓·美修好通商條約 / 중-280
2. [1883. 5. 19] 韓·美修好通商條約 互換續約 / 중-306
3. [1883. 11. 26] 韓·英修好通商條約 / 중-308
4. [1883. 11. 26] 韓·英修好通商條約 附續通商章程 / 중-337
5. [1883. 11. 26] 韓·英修好通商條約 稅則 / 중-349
6. [1883. 11. 26] 韓·英修好通商條約 稅則章程 / 중-366
7. [1883. 11. 26] 韓·英修好通商條約 善後續約 / 중-368
8. [1883. 11. 26] 韓·獨修好通商條約 / 중-371
9. [1883. 11. 26] 韓·獨修好通商條約 附續通商章程 / 중-401
10. [1883. 11. 26] 韓·獨修好通商條約 稅則章程 / 중-414
11. [1883. 11. 26] 韓·獨修好通商條約 稅則 / 중-416
12. [1883. 11. 26] 韓·獨修好通商條約 善後續約 / 중-428
13. [1883. 6. 26] 韓·伊修好通商條約 / 중-432
14. [1884. 6. 26] 韓·伊修好通商條約 附續通商章程 / 중-457
15. [1884. 6. 26] 韓·伊修好通商條約 稅則 / 중-469

附 錄

16. [1884. 6. 26] 韓·伊修好通商條約 稅則章程 / 중-487
17. [1885. 7. 10] 韓·伊修好通商條約 續約 / 중-489
18. [1884. 7. 7] 韓·露修好通商條約 / 하-1
19. [1884. 7. 7] 韓·露修好通商條約 附續通商章程 / 하-28
20. [1884. 7. 7] 韓·露修好通商條約 稅則 / 하-40
21. [1884. 7. 7] 韓·露修好通商條約 稅則章程 / 하-50
22. [1884. 7. 7] 韓·露修好通商條約 善後續約 / 하-52
* [1884. 7. 7] 韓·露修好通商條約에 關하여 韓國國王께서 露國皇帝에게 보낸 親書 / 하-55
23. [1888. 8. 20] 韓·露陸路通商章程 / 하-56
24. [1904. 5. 18] 韓·露條約 廢棄勅宣書 및 理由書 / 하-81
25. [1886. 6. 4] 韓·佛修好通商條約 / 하-85
26. [1886. 6. 4] 韓·佛修好通商條約 附續通商章程 / 하-113
27. [1886. 6. 4] 韓·佛修好通商條約 稅則 / 하-125
28. [1886. 6. 4] 韓·佛修好通商條約 稅則章程 / 하-137
29. [1886. 6. 4] 韓·佛修好通商條約 善後續約 / 하-139
30. [1901. 4. 17] 韓·佛郵便協定 / 하-142
31. [1892. 6. 23] 韓·塙修好通商條約 / 하-144
32. [1892. 6. 23] 韓·塙修好通商條約 附續通商章程 / 하-171
33. [1892. 6. 23] 韓·塙修好通商條約 稅則 / 하-183
34. [1892. 6. 23] 韓·塙修好通商條約 稅則章程 / 하-194
35. [1892. 6. 23] 韓·塙修好通商條約 附續約款 / 하-196
36. [1901. 3. 23] 韓·白修好通商條約 / 하-198
37. [1901. 3. 23] 韓·白修好通商條約 附續通商章程 / 하-223
38. [1901. 3. 23] 韓·白修好通商條約 稅則 / 하-234
39. [1901. 3. 23] 韓·白修好通商條約 稅則章程 / 하-246
40. [1902. 7. 15] 韓·丁修好通商條約 / 하-248
41. [1902. 7. 15] 韓·丁修好通商條約 附續通商章程 / 하-274
42. [1902. 7. 15] 韓·丁修好通商條約 稅則 / 하-286
43. [1902. 7. 15] 韓·丁修好通商條約 稅則章程 / 하-297

第2章 租界에 關한 條約

1. [1884. 10. 3] 仁川濟物浦 各國租界章程 / 하-299
2. [1897. 10. 16] 鎮南浦 및 木浦 各國租界章程 / 하-311

3. [1899. 6. 2] 群山·馬山浦·城津 各國租界章程 / 하-339
4. [1900. 3. 18] 馬山浦地所租借에 관한 韓·露條約 / 하-366
5. [1900. 3. 18] 巨濟島不租借에 관한 韓·露條約 / 하-368

第四編 對清國關係條約

第1章 通商條約

1. [1899. 9. 11] 韓·清通商條約 / 하-369
- * [1899. 12. 13] 韓·清通商條約에 관한 在韓清國公使와 韓國外部大臣間의 往復文書 / 하-387
2. [1899. 12. 14] 韓·清通商修約 互換條約 / 하-390
3. [1882. 8. 23] 韓·清商民水陸貿易章程 / 하-392
4. [1883. 3.] 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 24條 / 하-407

第2章 租界에 관한 條約

1. [1884. 4. 2] 仁川口華商地界章程 / 하-422

第3章 電信에 관한 條約

1. [1885. 7. 17] 韓·清電線條約 / 하-429
2. [1886. 3. 24] 韓·清釜山電線條約 / 하-434
3. [1891. 3. 24] 韓·清元山電線規約 / 하-439

第五編 鐵道·鑛山·森林에 관한 條約

1. [1898. 9. 8] 京釜鐵道合同條約 / 하-441
2. [1896. 3. 29] 京仁鐵道契約 / 하-450
3. [1896. 7. 3] 京義鐵道契約 / 하-459
4. [1896. 4. 22] 露國人「니시첸스키」咸鏡道鑛山採掘特許契約 / 하-465
5. [1897. 4.] 獨逸人「C. 뵘터어」鑛山採掘契約 / 하-469
6. [1898. 9. 27] 英國人「프리차드 몰간」鑛山採掘特許契約 / 하-472
7. [1900. 8. 16] 日本人「淺野」等 稷山郡金鑛採掘合同條約 / 하-478
8. [1891. 9. 28] 龍潭金鑛採掘에 관한 約定書 / 하-483

附 錄

9. [1896. 8. 28] 露國人「브리네르」茂山·鬱陵島 山林伐採 및 植樹에 關한 約定書 / 하-487
10. [1899. 3. 29] 露國人「헨리 케어젤링」의 蔚山浦·長津·陳布島 地所使用에 關한 約定書 / 하-491
11. [1906. 10. 19] 鴨綠江·豆滿江 森林經營에 關한 協同約款 / 하-498

연구보고 95-7 統監府法令 體系分析

1995년 12월 25일 印刷

1995년 12월 30일 發行

發行人 白 南 辰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 한국컴퓨터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03
전 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값 7,000 원

